獨逸商社의 對極東進出

—1900年까지에 있어서 韓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金 光 洙*

目 次

Ⅰ. 序 言
Ⅱ. 獨逸의 政治的 및 經濟的 狀況
1. 獨逸帝國의 政治的 統一
2. 關稅同盟의 締結과 그 政策
3. 產業革命과 工業의 發達
Ⅲ. 使節團의 派遣과 條約締結
1. 使節團의 編成과 航海
2. 條約의 締結
Ⅳ. 獨逸商社의 極東進出
1. 通商條約 締結以前에 있어서의 往來
2. 通商條約 締結後에 있어서의 獨逸商人
Ⅴ. 結 言
參考文獻

Ⅰ. 序 言

프로이센이 統一된 獨逸聯邦國家를 組織하기 以前에 이미 極東地域에 使節艦隊를 편성 파견하여서 中國, 日本 그리고 韓國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는 事實은 독일국민이 永遠히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社會的인 原因에 의하여 統一을 일찍 이룩할 수 없었던 독일은 比較的 뒤늦게 產業革命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또한 經濟的 現況도 퍽 劣位에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極東이 그들에게 紹介되자 極東에 대한 그들의 進出慾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컸었기에 比較的 短期間에 이미 어느정도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있었던 諸國들을 相對로 競爭하며 그들의 位置를

* 崇實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굳힐 수가 있었다. 처음 極東으로 向하였던 獨逸商人이나 商社는 勇氣와 의욕을 가지고 開拓者的 精神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成長과 擴充은 놀라울만 했다. 그리고 많은 선구적 獨逸商人들은 必要한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므로써 史料로 제공하려 했었다. 그러나 世界1次大戰, 日本에 있어서의 大지진 2次世界大戰은 貴重한 문헌과 資料의 거의 대부분을 없애버렸고 또 史料를 제공할만한 人員들도 이미 存在치 아니하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이 分野에 관한 分析이나 硏究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苦境을 通過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問題에 관하여 硏究를 가까이 하려하지 아니한다.

1961年부터 68年까지의 滯獨期間 중에 이 問題에 관하여 우연히 關係를 맺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우선 一次的으로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紹介作業을 試圖해 보려는 생각에서 착수했으나 모든 것이 如意치 않음을 인정하며 보다 좋은 結果는 다음 機會로 미루어야만 할 것 같다.

Hamburg市 Ballindamm 15에 位置하고 있는 Ostasiatischer Verein e.V.의 行政責任者 중의 한 사람인 H. Stoltenberg-Lerche씨는 이 硏究에 적극적으로 助力해 준 분으로 그 亦是 이 硏究의 어려운 이유로서 첫째 초창기에 있어서 極東交易에 종사한 대부분의 企業體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社史料를 보관 分析할만한 정신적 재정적 여유가 적었다. 둘째 앞서 지적된대로 戰爭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집된 자료가 망실 또는 소실당했다. 세째 當時 상업에 종사하던 商社 중 많은 회사가 이미 存在치 아니한다. 그리고 넷째로 존재하는 會社 중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紹介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等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개 3部分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독일이 工業化하는 時期에 있어서의 產業의 구조 발달을 분석했다. 둘째는 對極東 通商交涉使節團의 편성과정과 그들의 航海日誌를 살폈고, 마지막으로 독일이 極東의 諸國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 時期를 前과 後로 나누어 당시에 실제로 무역에 종사한 商社의 설립과 經營을 紹介했다. 보다 충분한 史料

를 구하여 보다 충실한 검토와 分析이 계속되어지리라 믿는다.

Ⅱ. 獨逸의 政治的 및 經濟的 狀況

1. 獨逸帝國의 政治的 統一

1806年 Napoleon 1世가 Rhein聯邦을 組織하자 獨逸內의 諸候伯은 이 聯邦에 參加하므로써 그 數가 37個國에 이르렀다. 聯邦에 加入치 아니한 2國인 Preussen과 Österreich 중 프로이센은 Napoleon 打倒를 至上目標로 설정하고 충실히 國力의 增強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프로이센의 念願은 1813年 Leipzig에서 Napoleon軍을 英露聯合軍과 더불어 격파하므로써 그 첫 과정을 이룩했다고 본다. Napoleon의 侵略後 Wien 列國會議의 結果 프로이센은 以前보다 廣大한 國土를 領有케 되었고 獨逸內의 여러 작은 諸候伯國은 Deuucher Bund를 結成케 되었다.[1] 1816年에 組織되어진 독일연방은 Österreich, Preussen 以下 35個國의 君主國과 Lübeck, Hamburg, Bremen 및 Frankfurt의 4自由市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Frankfurt 聯邦議會를 開設했다. 盟主格인 오스트리아는 Clemens Metternich가 首相으로 있으면서 列國間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外交的 手腕을 發揮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現狀維持主義者 혹은 保守主義者였으며 自由主義를 억압하고 專制主義를 謳歌하고 있었다. 프로이센 역시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같은 전제정치를 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兩國을 除外한 독일 특히 南獨의 諸邦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간섭과 壓迫을 두려워했으며 또한 나아가 國民들의 후원을 必要로 했었기 때문에 比較的 自由가 확보되어졌었다.[2] 專制政治에 反抗하는 組織的이면서도 과격한 鬪爭을 계속했던

---

1) Crane Brin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A History of Civiliz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 J., 1960, (梁秉祐·閔錫泓·李善珩·金擎近 共譯, 世界文化史, 中, 서울, 1963), S. 556~561.

2) & 3) 丸山國雄, 日獨交涉史話, 東京, 1941, S. 2~7.

바 이 때 파리에서 돌발한 요소와 그 革命의 영향을 크게 받아 독일 統一運動을 助長하므로 言論의 自由, 陪審制의 採用, 國民兵의 編成, 獨逸中央政府의 創設 및 中央議會의 開設 등을 強力히 要求하는 독일국민의 改革運動은 聯邦 各國에 있어서의 自由主義的 內閣의 出現을 가져왔던 것이다.[3]

獨逸聯邦會議는 이러한 情勢를 정확히 判斷하고 Frankfurt/M에 代表者를 召集하여 當面한 問題를 협의했다.[4] 프로이센도 이를 支持했으며 오스트리아는 1848年 3月 25日을 期하여 各國君主를 Dresden에 會集시켜 本議題를 檢討하려 했으나 Wien, Berlin 등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國王은 國民과 妥協하여 그들의 要求에 따라 5月 18日 586名으로 구성된 獨逸國會를 열었고 立憲君主制를 採擇하도록 決定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帝國中央政府를 設立하고 6月 29日 오스트리아의 Johann公을 Reichs Verweser로 選任하므로써 大獨逸主義가 이긴 純然한 聯邦國家가 組織되었으나[5] 다만 各國 政府의 代表者가 모여 組織되었으므로 何等의 實權도 갖지 못했고 또 各 邦國을 직접 統御할 實力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한 例로 Schleswig-Holstein 兩公國의 問題가 후랑크훌트 國會의 無能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1850年 10月 獨逸內의 Hessen-Kassel國의 內政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일어난 事件으로 프로이센은 굴욕적인 입장을 甘受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1862年 9月 Otto von Bismarck의 任命을 계기로 獨逸統一이라는 課題를 향하여 매진하는 強硬政策을 採用했다. 軍備擴張을 主張하면서 독일의 문제는 1848年 및 49年頃과 같은 연설이나 多數決로서는 결코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다만 鐵과 血에 맡길 수 밖에 없다라고 主張한 비스마르크의 열변이 이를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비스마르크의 鐵血政策은 1864年에 있어서 對 덴마크, 1866年의 對 오스트리아 그리고 1870年의 對 佛戰爭을 惹起시켰으며, 이 3戰

---

4) 梁秉祐 · 閔錫泓 · 李普珩 · 金擧近 共譯, a. a. O., 中 S. 592.

5) 丸山國雄, a. a. O., S. 8.

爭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勝利는 1871年 1月 18日 프로이센 王 Wilhelm 1세를 독일황제로 하고 독일은 聯邦的 帝國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프로이센 王이 거의 聯邦政府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2. 關稅同盟의 締結과 그 政策

獨逸資本主義는 18世紀末부터 19世紀後半에 걸쳐 그 構造를 확립했으며 유럽大陸 제일의 經濟的 強國으로 급속한 약진은 一般的으로 1871年의 帝國創建에 의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물론 全體的으로 보아 이러한 主張은 正當하다. 그러나 帝國의 創建 以前의 독일은 빈약한 農業國家였고 經濟的 發展面에 있어서 他 西歐諸國에 比하여 훨씬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분명히 유럽 工業化의 中心은 1870年 以前에는 Rhein의 西方에 있었기 때문이다. 獨逸資本主義가 그의 構造를 확립하는 時期에 있어서 이미 世界의 工場이라는 地位를 獨占하고 있었던 英國을 中心으로 해서 形成되어지고 있던 國際經濟의 소용돌이 속에서 英國의 영향을 받으면서 獨自의 方向으로 國民經濟를 건설 발전시키고 있었던 獨逸은 群立되어 있었던 多數의 領邦國家狀態를 프로이센의 主導下에서 國家的 統一을 達成해가는 過程에 있었다. 1790年頃의 독일은 거의 1800의 關稅領域으로 分裂되어 있었다.[6]

1815年의 Wien 會議以後도 39의 小領國으로 分割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時의 獨逸經濟는 統一的인 國內市場의 形成에는 아직 먼 狀態이었다. 獨逸人들은 마치 죄수가 감방에 창살박힌 창문을 通하여 行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去來를 영위하고 있었다고[7] 한 外國人에 의하여 조소되었지만 이 감방의 창살에 해당하는 것이 번잡이 극하였던 國內關稅 즉 內國消費稅와 關稅라는 存在이었다. 독일은 19世紀 前半으로부터 普佛戰爭에 이르는 期間 主로 域內關稅를 輕減하고 關稅同盟을 形成하

6) 大塚久雄編, 西洋經濟史, 東京, 1968, S. 197.
7) a. a. O., S. 197.

는 것에 의하여 國內經濟發展의 基礎를 強化하고 있었다. 1815年 비엔나議會에 의하여 獨逸聯邦이 構成되었지만 이것은 각각 自主權을 所有하고 있는 38의 領國과 都市에 의하여 이룩되어진 애매한 聯合體이며 결코 統一的 國家가 아니었기 때문에 各國은 獨自의 經濟政策과 主로 財政收入을 확보하기 위한 目的으로 獨自的으로 關稅政策을 採擇하고 있었다.

독일에 있어서 諸小主權國家들은 各自 獨自的인 關稅組織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프로이센은 他에 비하여 높은 高率關稅制度를 採擇하고 있었다. 당시 獨逸工業의 4大中心地 중 Berlin, Westfahlen 그리고 Schlesien의 3地域을 占有하고 있었고 거기다 새로 Rhein 工業地帶를 획득한 프로이센은 產業과 貿易의 振興에 힘을 傾注하여야 했기에 1818年에 새로운 關稅法과 關稅率을 採擇했다. 프로이센은 內國關稅를 철폐하고 輸入關稅率을 輕減하므로써 自由貿易에로의 움직음을 強化시켰던 것이다.[8]

1828年에 關稅同盟에도 第2段階를 맞이했다. 南獨의 Byern과 Wüttemberg가 프로이센의 關稅同盟에 對抗하여 共通의 關稅率을 採用하고 南獨關稅同盟을 結成했다.[9] Hannover, Sachsen, Kur-Hessen, Braunschweig, Thüringen 諸邦 Frankfurt/M 그리고 Bremen 등의 中部 諸邦은 프로이센의 의도에 反하여 結集했다.[10] 이것은 全獨의 關稅統一에 의하여 外國市場을 상실할 것이 두렵던 英國에 의하여 支援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독일은 3個의 關稅地域으로 並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프로이센은 적극적으로 南獨 關稅同盟에 接近하였고 1829年에는 南獨 關稅同盟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데 成功했다.

1834年에는 프로이센을 盟主로 하여 獨逸諸邦 18個國이 獨逸關稅同

---

8) Theodor Plaut, *Deuts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S. 76~77.

9)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2, Göttingen & Heidelberg, 1960, S. 415.

10) a. a. O., S. 415.

盟(der Deutscher Zollverein)을 結成하므로 8253 meilen^2, 人口 2,500萬名을 함유하는 強力한 關稅障壁에 둘러싸인 經濟圈을 形成했다.[11] 그리고 이 關稅同盟은 점차 擴大하여 1852年에는 거의 대부분의 獨逸國家에 波及되었고 其間에 獨逸商業에 대한 많은 內部的 制限을 철폐하는 政策이 착착 진행되었던 것이다. 1867年에는 北獨同盟과 南獨諸國과의 條約에 의하여 新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 그 加入者의 範圍도 한층 더 擴大되어 보다 有效 有力한 것으로 發展했다. 1871年 독일제국이 成立當時에 있어서 독일의 關稅는 일반적으로 낮았고 其後에 1873年, 1877年의 關稅改正을 通하여 保護關稅를 全廢하므로써 독일에 있어서 自由貿易時代를 現實化했던 것이다.[12] 그러나 1879年에 비스마르크에 의한 關稅改正을 계기로 하여서 독일은 本格的인 保護貿易政策으로 轉換했으며 其後의 關稅政策은 v. Bülow와 Caprivi 등에 의하여 계승 집행되었고 第I次 世界大戰까지 幼稚產業保護論者 F. List의 祖國은 계속적인 保護貿易政策을 採擇한 國家로 나타났던 것이다.[13]

3. 產業革命과 工業의 發達

독일에 있어서 產業革命의 準備期는 英國에 있어서 本格的인 산업혁명이 開始되었다고 보는 時點 즉 대략 1780年代의 中葉이라고 主張되어지고 있는바 그 이유는 이 時期에 있어서 Sachen, Berlin 그리고 Düsseldorf에서는 近郊의 Rhein 右岸地域에서 最初의 紡績機를 發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4] Brüggelmann이 英國人技師의 도움을 받으

---

11) a. a. O., S. 416.

12) Kwang-Soo Kim, *Der Auss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8, S. 26.

13) Vgl., Thedor Plaut, a. a. O., S. 90,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Jena, 1920, S. 387.

14) Hans Mottek : *Einleitende Bemerkungen-Zum Verlauf und einigen*

면서 이미 1784年에 Water-fram을 제작하고 1785年에는 領主로부터 獨占特權을 획득하여 유럽大陸 最初의 紡績工場을 건설했던 것이다.[15] 그리고 같은 때 Sachen地方에서는 家內工業間에 手動의 Spinning Jenny가 나타났으며 여기서 紡機의 利用은 紡績工場의 건설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小經營內에 퍼져 곧 紡機의 製作工이 出現케 되었다.[16]

1797年에 Mule紡績機의 제작에 成功하고 99年에는 Chemnitz 近郊의 Haltau에서 英人技師 왓트슨과 英人紡績工 에비안즈의 도움으로 紡績 및 紡機製作을 위한 Mule工場을 건설하는 등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했으나[17] 그러나 독일에 있어서의 發展은 극히 완만했고 產業革命의 準備段階가 比較的 長期間이었다. 이 原因으로써 Hans Mottek敎授는 그의 저서에서 대개 다음과 같은 3要因을 지적하고 있다.[18] 즉 첫째 19세기 初葉에 있어서 시작한 農村의 封建的 生產關係와 都市의 中世的 工業體制의 廢止 등 變革이 長期化했다는 것, 둘째 政治的, 經濟的 觀點에서 본 독일의 國民的 分裂, 셋째 독일에 있어서 새로운 生產諸力의 導入, 成長速度와 新技術을 기초로 한 不變固定資本의 大量投下의 開始를 지연시킨 具體的인 歷史的인 要因으로써 90年代에 있어서의 英國과의 競爭開始, 유럽에 있어서의 戰爭, 그리고 보나발트的 불란서에 의한 독일에 대한 民族的 억압 등이다.

완만한 發展에도 불구하고 20年代 및 30年代 初에 있어서 서서히 產業資本主義 發現의 前提가 이룩되었으며 產業革命 準備期가 이렇게 하여서 독일의 대부분에 대한 經濟的 統一을 達成한 關稅同盟의 設立으로써 終結했다고 본다. 이어서 產業革命 自體가 始作하여 1873年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不變固定資本의 強力한 投下를 基礎로 하여 30年代

Hauptproblemen der industriellen Revolution in Deutschland, Berlin, 1960(大島陸雄 譯, ドイツ產業革命, 東京, 1968), S. 17.

15) Hans Mottek, a. a. O., S. 17.

16) 大塚久雄編, a. a. O., S. 203.

17) a. a. O., S. 203.

18) 大島陸雄譯, a. a. O., S. 18~19.

後半 특히 40年代에는 生產 특히 資本主義的 工業經營의 生產成長 速度가 急速化해졌다. 換言하면 1840年代 以後는 鑛山業 冶金業 그리고 機械工業을 中心으로한 產業化가 비약적으로 進展한 時期라고 볼 수 있다. 鑛山 및 銑鐵生產面을 살펴보면 1835年으로부터 47年까지의 期間에 鑛山業에 있어서는 1834年을 100으로 할 때 162.5%의 生產上昇을 볼 수 있으며 一方 1822年으로부터 34年까지의 上昇은 1821年을 100으로 하고 겨우 33%에 不過했다. 鐵工業에 있어서 對應하는 數字는 138.09%와 61.53%이다.[19]

1830年代 末부터 重工業用의 機械와 原材料의 수입이 격증하기 시작했다. 關稅同盟의 鐵材輸入量은 1837年에 있어서 15.6萬 Zentner였으나 1844年에는 151.8萬 Zentner로 근 10배가량 增加하고 있다. 기계 原材料의 輸入에 의거하면서 出發했던 독일은 곧 海外依存으로부터 脫却하여 重工業의 自立體制를 굳혔고 70年代頃에는 반대로 重工業製品의 輸出國으로 轉換하고 있다. 즉 1850年代에는 지금까지 多目的으로 使用되어졌던 萬能型의 工作機械에 대하여 特殊한 工作機械가 代替 普及됨과 同時에 獨逸製 機械가 外國市場 특히 Russland와 Österreich에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1863年에는 關稅同盟地域의 機械輸出額이 비로소 輸入額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0] 뿐만 아니라 40年代까지는 英國과 벨지움으로부터의 銑鐵수입에 대한 依存度가 무척 컸었으나 50~60年代에는 Saal 및 Ruhr地方에 있어서 코오크스高爐의 普及結果 輸入銑鐵에 대한 競爭力이 強化되었고 68~69年에 이르러서 輸出量이 輸入量을 처음으로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機械製作 및 製鐵業의 發達과 關聯하여 30年代以來 石炭生產이 急增하여 1865年에는 2,500만톤을 生產하여 英國에 이어 世界 第2位의 자리를 확보했다.[21]

1837年에 비로소 10,300錘를 가진 5個의 機械化된 紡績工場을 가졌

---

19) t. Kuczynski : *Die Geschichte der Lage der Arbeiter in Deutschland von 1800 bis in die Gegenwart*, Bd. 1, Berlin, 1947, S. 77~78.

20) 大塚久雄編, a. a. O., S. 212~213.

21) a. a. O., S. 213~214.

던 독일이 9年後에는 그 수가 14個處 그리고 그 錘數는 45,000으로 增加했다.[22] 1846年에 있어서 全關稅同盟 諸國에는 313紡績工場이 750,274紡錘의 시설을 확보하고 1834~35年으로부터 1848~49年內에 있어서 독일의 綿糸需要에 대한 독일 紡績業의 供給率은 31.7%로부터 37.7%로 上昇하고 있다.[23]

이와같은 産業化의 進行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역할을 다한 것이 鐵道의 敷設과 이 分野에 나타난 새로운 企業形態이다. 1835年 Nürnberg-Fürth間의 5哩거리의 鐵道가 開通되므로써 시작되는 독일에 있어서의 鐵道敷設은 독일산업혁명의 開始期에 시작하므로써 市場의 擴大와 關聯産業에 대한 波及效果가 컸을 뿐만 아니라 産業化의 급속한 進行에로의 有力한 돌파구이기도 하였다. 他國에 비하여 鐵道의 必要性과 利點을 정확히 理解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독일은 인접 제국에 비하여 그 建設費用이 적게 들었고 또한 全國民을 陶醉케 했던 鐵道株의 投機는 40年代에 있어서의 독일로 하여금 鐵道망의 擴充率을 유럽에서 第1位에 서게 했다. 프로이센만 하더라도 1844年에는 800km, 1848年에는 2,400km, 그리고 1860年에는 5,600km가 開通되어지므로 國內外 商品輸送에 크게 기여케 되었다.[24]

1887年에는 겨우 20,390척의 內航船舶만을 확보하고 있었던 독일도[25] 外國貿易과 植民地 爭奪이 加重하자 점차 그 保有高가 急增하여 1880年에는 33.5에는 33.5 Milliarden Tonnen Kilometer의 外航船舶을 기록하고 있으며[26] 10年後인 1890年에는 內航 5.6外航 74.1

---

22) Werner Sombat, *Die deutsche Volkswiitschaft im neunzehnten Jahrhundert und im Arfang des 20. Jahrhunderts*, stuttgart, 1954, S. 304.

23) 大島陸雄譯, a. a. O., S. 63~64.

24) Kwang-Soo Kim, a. a. O., S. 21.

25) Sartorius von Waltershausen, A. a. a. O., S. 541.

26) Walter G. Hoffmann ; *Das Wachstum der deutshen Wirtschaft seit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Berlin, Heidelberg & New York, S. 417.

Milliarden Tonnen Kilometer를 기록하므로서 海外市場開拓과 商品輸送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27]

비록 英國에 비하여 늦게 產業革命 過程에 들어갔으나 독일은 모든 基礎產業이 括目할만한 成長을 이룩하였고 또 적극적인 對外進出을 支援할 輸送手段이 급속히 發展하므로써 外國市場 開拓 및 確保를 위한 능동적인 政策을 採擇케 되었는바 그 一環으로써 對 極東進出도 적극적으로 숙고케 되었던 것이다.

Ⅲ. 使節團의 派遣과 條約 締結

1. 使節團의 編成과 航海

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써 독일의 統一은 經濟的 方面으로부터 점차 이룩되기 시작했다. 그후 10年 즉 1843年에 프로이센 議會는 처음으로 東洋方面에 대한 貿易開拓에 관한 建議案이 提出되어졌다. 그 내용은 먼저 Singapol에 근거지를 設置하고 對 中國貿易을 開始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후 中國과의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이어 계속하여 極東의 諸國으로 進出하려는 것이었다.[28]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以前에 獨逸商人들이 極東을 전혀 訪問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1620年代에 이미 宗敎人들이 中國을 訪問하였으며[29] 그 후부터는 宗敎 및 學術目的 등을 위한 여행이 계속되었다.[30] 18世紀初에 이미 對 東洋貿易을 目的으로한 商社가 組織되기 시작했으며 1745年에는 Asiatische Handlungs-Kompanie가 設立되었다. 이 會社는 1750年에 Friedrich den Grossen에 의하여 Königliche Preussishe Asiatische Companie로 發

27) a. a. O., S. 417.

28) 丸山國雄, a. a. O., S. 22.

29)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Gedank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 S. 23.

30) O.A.V., a. a. O., S. 24.

展되었으며 이 商社의 첫 선박인 "König im preussen"은 6개월간의 航海 끝에 中國을 訪問하고 다시 1753年 7月 6日에 Emden에 歸港했다.[31] 그후 점차 極東을 향한 航海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주로 中國으로부터 絹織物, 茶, 陶磁器, 螺鈿 그리고 漆器 등을 구입했었으나 어디까지나 國家 對 國家의 正式交易은 아니었다.

1842年에 英國과 中國間에 소위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이을 통하여 英國이 莫大한 利益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開港場에 있어서 個人交易의 自由가 保障되고 Hong Kong을 英國에 割讓했다는 사정이 歐洲 諸國에 알려지자 各國은 競爭하여 中國에 대한 關心을 갖게 되었고 또한 注意를 集中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센도 역시 使節을 파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1843年에 프로이센 政府에 提出되어진 함대파견에 관한 建議案은 그후 잠시 放任되어져야만 했다. 그 이유는 獨逸領內에는 아직 小國家들의 對立이 尙存했고 Östereich, Frankreich 그리고 Russland 3個國과의 關係 등 國內外的으로 무척 복잡 多難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나 計劃은 결코 폐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프로이센 政府는 이 建議案의 趣旨에 따라 Hansa 同盟 諸市의 協贊을 얻으며 敢行하려 했었기 때문에 Hansa 同盟 諸市의 도움을 얻을 후 1859年 8月 9日 使節의 任命과 隨行하여야 할 專門家의 人選 혹은 파견함대의 편성 및 贈與할 物品의 구입 등을 위한 豫算案이 可決되었졌던 것이다.[32]

먼저 使節로는 당시 Hamburg 駐在 프로이센 全權公使 Frhr. von Richthofen 男爵이 任命되었으나 그가 固辭했기 때문에 그의 後任으로 公使館 參事館 兼 Warschau 總領事 Friedrich Albrecht Graf zu Eulenburg가 任命되므로써 소위 Eulenburg-Mission을 편성케 되었으며 그의 隨行員 중의 代表的인 人物은 다음과 같다.[33]

---

31) a. a. O., s. 25~26.

32) 丸山國雄, a. a. O., S. 26~28.

33) a. a. O., S. 29~35.

使節團長 Eulenburg는 1815年 6月 29日 Königsberg에서 出生하였으며 1849年에 內務部에 들어갔으며 여기서부터 官吏生活을 시작했다. 1852年 外務部로 옮겨 Antwerpen, Warshau 等地에서 총영사로 근무했고 1859年에는 全權大使로 任命되어 極東航海를 指揮케 되었던 것이다. 1862年 2月 8日 Bismark 內閣의 內務部長官에 補任되어 行政改革을 斷行하기도 했다. 1881年 6月 2日 Berlin의 Schöneberg에서 死亡할 때까지 그는 프로이센의 內外政에 큰 공로를 세웠다.

Yachman, Edward Karl Emanuel(1822~1887) 1845年에 海軍에 入隊하고 '64年에 덴마크함대와의 海戰에서 功을 세웠고 1860年 海軍中領으로 Eulenburg 使節團의 Thetis艦의 함장으로 極東航海에 참여했다. 그는 그후 海軍中將으로까지 榮進했다.

Werner, Reinhold von(1825~1909) 1852年에 海軍에 入隊한 그는 1860年에 Elbe艦의 함장으로 極東을 訪問했다. 그의 많은 저서 중 Die Preussische Expedition nach China, Japan und Siam은 一讀의 價値가 있다.

Sundewal(?~1884) 極東訪問時 海軍大領으로 Eulenburg-Mission 艦隊의 司令官 兼 Arcona艦의 함장으로 航海를 총지휘했다.

Frhr. von Richthofen 地質學者로서 使節一行에 참가한 후에 樞密고문에 任命되었다. Berlin大學校의 명예교수 科學學士院會員 등으로 被選되어 獨逸學界를 위하여 크게 공헌했다.

Retzke 海軍中尉 Frauenlob艦의 함장으로 極東訪問 중 1860年 9月 3日 日本近海에서 日氣關係로 破船하여 배와 더불어 運命을 같이 함으로써 獨逸通商交涉을 위한 첫 희생자가 되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파견함대는 처음 3艦艇으로 편성되었었으나 후에 Elbe號를 더하여서 贈與品 및 食糧, 燃料 등을 적재 運送시켰으며 따로 小汽艇 뷔스터號를 배에다 싣고 南方海岸에 있어서 必要한 경우에 牽引을 擔當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다. 4함선은 다음과 같다.[34]

① Arcona艦(Dampfkorvette) 2,320톤이며 武裝은 36磅砲 6門, 그리고 30磅砲 20門으로 乘務員數는 319名이었다.

② Thetis艦(Selffregatte) 1,533톤, 30磅砲 32門, 그리고 68磅砲 6門으로 장치했으며 乘務員數는 333名이었다.

③ Frauenlob艦(Selffregatte) 95톤, 30磅砲 1門을 무장했으며 41名의 乘務員을 탑승시켰다.

④ Elbe艦(Kripperfregatte) 톤수 未洋 武裝은 6磅砲 6門으로 乘務員數는 47名이었다.

Thetis號와 Frauenlob號는 1859年 10月 25日에 그리고 旗艦 Arcona號는 1859年 12月 11日에 Danzig港을 出港했으며 運送船 Elbe號는 1860年 3月 7日 Hamburg港을 出帆했던 것이다. 使節艦隊의 編成艦들의 向極東 旅行日誌는 다음과 같다.[35]

Thetis艦과 Frauenlob艦은 1859年 11月 12日 Spithead에 入港하여 '60年 3月 15日까지 정박하고 있다가 出發하여 Funchal에 잠깐 寄港한 후 5月 18日 Rio de Janeiro에 도착했으며, Arcona艦은 1859年 12月 11日 出航하여 1月 10日 Southampton에 到着 4月 8日까지 정박하며 수리한 후 Spithead 및 Madeira 群島를 거쳐 5月 23日에, 30日에는 Thetis號가 그리고 8月 5日에는 Frauenlob號가 Singapol에 入港했다. 가장 늦게 Elbe號는 1860年 3月 7日에 Hamburg港을 出帆하여 Spithead를 거쳐 8月 6日에 Singapol에 到着한 후 4艦은 最終準備를 갖추고 Thetis號가 8月 12日에 제일 먼저 Singapol을 出港한 후 다른 함선도 그 뒤를 따랐다. 1860年 9月 3日 月曜日 Frauenlob는 目的地에 到達하기 直前 遭難 破船하여 침몰당하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9月 4日 Arcona號가 제일 먼저 江戶灣에 모습을 나타낸 후 Thetis艦은 9月 14日에 Elbe艦은 12月 7日에 神奈川에 入港하므로서 Thetis號가 Danzig港을 出港하므로 시작한 一年餘의 긴 여행의 前半이 끝나고 使節의 條

34) a. a. O., S. 28~29.

35) 丸山國雄, a. a. O., S. 35~37.

約締結을 위한 協商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 條約의 締結

1860年 9月 4日 火曜日 使節團長 Eulenburg가 乘船하고 있었던 Arcona艦은 伊豆半島를 돌아 江戶灣에 入港했다. 入港하자 駐日 프랑스 代理公使 Duchesne de Bellecourt는 使者 Abbe Girard를 파견하여 對 日本交涉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하였으며 駐日 美合衆國辦理公使 Townsend Harris는 불어에 能通한 秘書官 Huysken을 使節團을 위한 通譯으로 利用하도록 허락했다. Eulenburg-Mission은 Huysken의 도움으로 上陸許可를 얻고 9月 8日 6척의 小艇에 分乘하여 品川海岸에 上陸하고 赤羽接遇所에 들어가 그 뜰안에 프로이센의 國旗를 게양하므로써 通商條約 締結을 위한 作業이 시작됐던 것이다.

Eulenburg는 9月 29日과 10月 3日 2次에 걸쳐 文書로서 條約의 체결을 要求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却下되었다. 이때 獨逸代表는 "만일 내가 군함 몇척을 인솔하고 온다면 우리들의 요구는 곧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잠시 참으며 허가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日本幕府는 獨逸使節들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貴國政府의 희망에 응하여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上下의 不平을 招來하여 國論의 紛糾를 齎來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永久히 貴國의 要求를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잠시동안 時期를 기다려서 永遠한 親交를 맺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使節團은 日本과 和蘭國間에 1855年 12月 23日에 체결했던 和日和親條約의 附錄 第11條의 規定을 引用하여 強力히 日本幕府의 態度의 변경을 재촉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他面에서는 美合衆國의 Harris公使를 통한 적극적인 助力을 바랬다. 그는 1860年 11月 24日 安藤閣老를 訪問하고 프로이센과 條約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860年 12月 13日 日本幕府는 外國奉行 堀織不正利熙 竹本圖書頭正雅 등을 代表交涉委員으로 任命하여 協商에 임하게 했으나 一時 獨逸聯邦의 國號칭 개념

의 해석을 中心한 問題로 會談이 停頓되어졌었으나 해결되어 1861年 1月 24日 兩國間에 修好通商條約 및 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36]

本 條約의 批准은 이것을 後日로 保留하고 假條約에 兩當事國의 全權委員의 調印을 받고 假條約 調印日로부터 24개월 후인 1863年 1月 1日부터 實施하도록 約定했던 것이다. 이 條約의 체결을 통하여 프로이센人이 아닌 독일人들은 프로이센 國民으로 귀화한다든가 혹은 프로이센人이라고 作稱하지 아니하면 對日通商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이 事實은 他面에 있어서는 北部獨逸聯邦에 있어서 프로이센의 影響力이 擴增되어지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全文 23條項으로 구성된 通商條約은 독일과 日本間에 체결되기 以前에 이미 체결되어진 他國과 체결한 條約과 大差가 없었다. 이때 체결된 關稅規定은 1899年에 행하여진 關稅改正까지 有效하였다. 日本幕府가 外國과 關稅條約을 체결하는데 基本이 된 것이 美合衆國과 日本間에 체결된 條約인바 兩國間에 協約을을 規定하기 위하여 會談할 때 日本은 輸出入商品에 대하여 12.5%의 稅率을 主張했으나 美合衆國 代表 Harris는 다른 의견이었다. 會談의 結果는 輸出入商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5%의 關稅率을 규정했던 것이다. 물론 알콜系 음료라든가 英國으로부터 主로 수입되어졌던 몇 종류의 工產品에 대하여는 20~35%의 例外規定도 있었다.[37] 一方的이고 不平等하고 그리고 극히 不利한 關稅規定이라는 事實을 알자 곧 日本幕府는 改正을 要求케 되었으나 하여튼 프로이센은 퍽 有利한 關稅條約을 체결케 됨으로써 自國商人들에게 퍽 有利한 立場을 확보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창기에 있어서 독일과 日本間의 무역은 量的으로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日本政府와 近 5個月間의 교섭끝에 條約의 假調印에 成功할 수 있었던 Eulenburg-Mission은 1月 31日 江戶를 떠나 長崎에 一時 寄港했다가 上海로 向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中國과의 通商條約의 체결에 成

36) O.A.V., a. a. O., S. 64.

37) 輿西正雄, 日本資本主義の成立, 卷一, 東京, S. 131~132.

功하고 귀국했던 것이다. 그후 1868年에 다시 協議가 시작되어 1869年 2月 20日에 獨逸北部聯邦과의 修好通商航海條約은 成立하고 이 條約은 同年 9月 9日 批准되어 同月 11日에 東京에서 批准書가 교환되어졌다.

독일과 韓國과의 通商協商은 1870년 駐日獨逸公使 Max von Brandt의 訪韓으로부터 시작했다. von Brandt가 한국을 訪問하고 通商條約을 체결한 最初의 獨逸人은 아니다. 이미 19世紀 中葉에 유대系 獨逸人인 Ernst Opert가 通商을 要求하고 있다.[38] 1882年 5月 15日 兩國間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고 1883年 10月 27日에 正式으로 서명되어졌다. 獨逸側을 代表해서 駐橫濱 독일총영사였던 Eduard Zapper가 서명했고[39] 條約締結 후 副領事 Budler가 첫 駐韓 독일 外交官으로 파송되었고 1884年 8月 26日에 兩國間에 조인된 通商修好章程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이것은 韓國과 英國間에 체결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석된다. 한국과 독일間의 關稅率은 韓日合邦時까지 그대로 維持되었다. 독일의 무역 相對國은 대략 3分類할 수 있는바[40] 그 첫째는 關稅條約을 체결한 國家群, 둘째는 相互 最惠國 대우를 인정하고 있는 國家群, 그리고 셋째는 貿易協定을 체결하지 아니한 國家群이다. 韓國과 日本은 다함께 最惠國 대우를 인정한 國家群에 속한다. 韓獨, 獨日間에 條約이 체결되기 前에도 이미 獨商人과 商社들의 訪問이나 進出이 있었으나 체결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交易을 目的으로한 獨逸人의 來訪이 急增하였던 것이다.

Ⅳ. 獨逸商社의 極東進出

1. 通商條約 締結以後에 있어서의 往來

1832年에 廣東에 入港했던 西歐船舶을 船積別로 보면 英國船 90척

38) Ernst Opert, *A forbidden Land*, London 1890.

39) 亞細亞問題硏究所編, 舊韓國外交文書, 15卷, 서울, 1966, S. 6~7.

40) O.A.V., a. a. O., S. 41.

美合衆國船 62척인데 비하여 오직 1척의 Hamburg船舶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2年後인 1834年에는 총 182척의 유럽 및 美合衆國적 船舶中 오직 3척만이 함부르크旗를 붙이고 있었으므로 독일의 對 極東貿易이 극히 미미했음을 알수가 있다.[41] William O'swald는 1843年 2月 6日 그가 Berlin으로 보낸 52面의 Denkschrift에서 對 極東貿易을 위한 國家와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을 提案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843年에는 프로이센과 關稅同盟에 加入한 國家間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Preussischer Ökonmierat Friedrich Wilhelm Grube aus Düsseldorf를 극동으로 파송하므로써 獨逸商品을 위한 市場과 그 貿易의 可能性에 관한 分析을 시켰던바 Grube는 가장 먼저 極東으로 進出한 獨逸商人 Karl Gützlaff와 Richard von Carlowitz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42]

Leipzig에 本社를 두었던 貿易商社인 C. Hirzel & Companie와 Carl Gustav Harkort는 Bernhard Harkort와 그의 親友 Richard von Carlowitz를 極東으로 파송했으며 이들은 1843年 11月 2日 Bremerhaven을 出港한 "Anna und Elise"號에 적재된 작센과 베스트팔 地方産인 纖維製品과 金屬製品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봉쇄되어 있었던 市場의 사정을 報告할 責務를 맡았던 것이다.[43] 이 두 青年은 1846年 1月 1日에 廣東에다가 Carlowiz Harkort & Co.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獨逸商人의 極東進出을 先導했던 것이다. 이 以外에도 Altona 出身商人 Wilheln von Pustau에 의하여 설립된 Wilhelm Pustau & Co.와 Georg Theodor Siemssen에 의하여 설립된 Siemssen & Co.가 활약하고 있었다. Bremen에서 發行되어졌던 Weser-Zeitung에 紹介된 것을 보면 1846年에 독일 外國에 存在했던 獨逸商社는 465名의 Chef와 774名의 雜種員을 가진 393社였다. 그중 277社가 Hansa系였다. 地域別

41) O.A.V., a. a. O., S. 44.
42) O.A.V., a. a. O., S. 45~46.
43) a. a. O., S. 45~46.

로 보면 137社가 北美에, 48社가 멕시코, 35社가 西印度 그리고 南美에 98社가 있었다. 아시아에는 64商社가 있었는데 그중 57社가 Hansa系였다.[44]

K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에 의하여 指揮되어진 4척의 군함이 江戶灣을 訪問하고 日本의 開港을 要求한 후부터 독일의 商域이 中國으로부터 日本으로 계속 擴大되기 始作했던 것이다. 日本政府와의 關聯을 맺고 通商條約을 위하여 교섭한 最初의 獨逸商人은 Fr. August Lühdorf이었다. 그는 350톤 크기의 Brigg. "Greta"에 탑승하여 Hakodate와 Shimoda로 航海하여 自己計算으로 판매했고 Greta號의 船長 G. Thaulow와 더불어 Shimoda-Nagasalki의 Gouverner를 통하여 日本이 독일과도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開港해 주도록 幕府에 청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이다.[45]

1859年에 獨逸商人 Louis Kniffler가 그의 체재지 Batavia로부터 Bremen人 Martin Hermann Gildmeister를 同伴하여 日本에 入國하였으며 이어 그들은 同年 7月 1日에 日本에 最初로 獨逸商社 Firma L. Kniffler & Co.를 설립하므로 新紀元을 이룩했다. Louis Kniffler는 Düsseldorf 出身으로 젊어서 Hamburg로 옮겨 Firma Bellenhagen & Co.에 근무했다. 이 會社는 Batavia에 設立되었던 Firma Pandal & Stiehauser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契機로 Kniffler는 1853年에 Java의 首府로 옮겼다가 和蘭政府가 소위 Kultursystem을 導入하고 商易에 있어서 獨占權을 享有하자 日本으로 移動하였던 것이다. Kniffler가 會社를 설립한 거의 같은 때에 다른 5個의 獨逸商社가 設立되었는바 그것은

① Schutze, Reis & Co., ② Textor & Co., ③ Gütschow & Co., ④ Grösser & Co. 그리고 ⑤ W. Grauert商社였다. 그리고 이어서 ⑥

---

44) a. a. O., S. 56~57.

45) a. a. O., S. 61~62.

Firmen Lindau & Co., ⑦ A. Schnepel & Co. 및 ⑧ A. Schmidt & Co.가 設立되므로서 1860年 Eulenburg Expedition이 日本을 訪問했을 때에는 그곳에서 9個의 獨逸商社가 있었던 것이다. 1862年 橫濱에는 다만 25名의 프로이센 人만이 살고 있었다.[46] 독일과 日本間에 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기 以前에 日本에 설립되어졌던 獨逸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47]

1) Carlowitz & Co.

阿片戰爭後 1842年에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中國의 5個港이 西歐商人들에게 開放되자 두 獨逸青年 즉 Richard von Carlowitz와 Bernhard Harkort가 1843年 Bremerhaven을 出港했으며 이들은 各各 Manila, Macao, Ningpo, Shanghai, Amoy, Hong Kong 등을 訪問한 후 1845年 가을에 廣東에다가 Firma Carlowitz, Harkort & Co.라는 商號로 開店했던 것이다. 1847年부터 Carlowitz는 작센과 프로이센의 駐廣東領事로 任命되므로 事實上 그는 中國에 있어서의 最初의 獨逸代表로 활약하여야만 했으며 後에 그는 北獨聯邦과 독일제국의 代表로 補任되기까지 했다. 약 10年間의 幸運의 發展을 이룩했던 이 商社도 英國人에 의한 공격과 太平革命으로 말미암아 큰 損害를 입었다. 1856年 Bernhard harkort와 分離하여 商號를 Carlowitz & Co.로 개명했으며 西歐 특히 London, Marseille와 中國과의 船舶往來가 활발해지자 1866年에 社員 Theodor Eimbcke의 지휘 밑에 홍콩에 支社를 開設했다. 일반적인 商品賣買나 輸出入業務 이외에 海岸航海를 위한 선박의 대여 및 판매업무까지 擔當했다. 1871年 홍콩과 西歐間에 海底電線이 開通되자 그 업무가 한층 더 활발해졌다. Shanghai, Tientsin, Peking, Tsingtao 그리고 Tsinanfu 등에 계속 支店을 開設한 Carlowitz會社는 1903年에 神戶에로 進出하여 적극적인 對日交易을 擔當했다. 이 商社

46) O.A.V., a. a. O., S. 75~76.
47) a. a. O., S. 186~210.

는 주로 武器, 軍製品, 鐵道附屬品 그리고 鑛山機械를 交易對象 上品으로 取扱했으며 政府에 대한 獨逸資金 차관교섭도 擔當했다.

2) Wilhelm Pustau & Co.

Conrad Hinrich Donner 밑에서 商人으로서의 修練을 쌓은 Altona 出身인 Wilhem von Pustau는 1842年 즉 그가 22歲 때에 Carl Brodersen과 더불어 독일을 떠나 홍콩을 거쳐 廣東에 도착하여 Wilhelm Pustau & Co.를 開設했다. 이 會社는 美合衆國政府에게 자기선박 Greta를 대여해 줌으로 獨逸商人 Lühdorf가 이 기회를 利用해서 自己計算으로 상업에 從事하게 했던 것이다.

3) Siemessen & Co.

Georg Thedor Siemssen은 1837年 가을에 Ross, Vidal & Co.의 任務를 맡고 독일을 出港하여 Australien과 Batavia를 거쳐 1846年 10月 1日 廣東에 商社를 設立했는바 이때 그는 그가 1841年부터 45年까지 4年間 Batavia에 있었던 T.E. & C. Vidal商社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活用했던 것이다. Siemssen은 Woldeman Nissen과 Ludwig Wiese를 同僚로 隨伴했었다. 이미 그는 1855年에 홍콩에도 商社를 開設하고 있었다. 이 商社는 藥, 설탕, 조미료, 藥材, 대나무, 쌀, 石炭 그리고 纖維製品 등을 主要去來 商品으로 取扱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船舶의 貸與業務와 海岸航海業務部門에도 깊은 關心과 업적을 올리고 있다. 1865年부터는 銀行 金融業務도 擔當하기 시작했으며 그후 保險分野까지 業務를 擴大시켰다. Siemssen & Co.가 그의 Foochow 所在 支店을 廢社하자 1885年 Gustav Siemssen은 Hongnamen von Siemssen & Co.와 더불어 이것을 맡아 Gustav Siemssen 이란 商號로 변경 開設했다. 1895年 1月 1日 그는 Werner Krohn과 合同으로 Firma Siemssen & Krohn로 改名 發展시켰는바 그때까지 Werner Krohn은 Foochow에 所在했던 Firma Schönfeld商社의 同業人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兩會社는 적극적인 對日交易은 行하지 아니

하였으나 間接的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Carl Ernst Boeddinghaus

日本에 있어서 獨逸商人 활약의 先導的인 역할을 한 會社 중의 하나이다. Carl Ernst Boeddinghaus는 1834年 2月 3日 Lüttringshausen에서 出生했으며 1859年末에 極東을 향하여 出帆하여 약 300日後에 Macao에 寄着했으며 잠시 체재한 후 곧 長崎로 향하였다. 開港直後인 日本은 外國商社 및 商人에 대하여 많은 制限을 加하였다. 外國人은 Desima섬에 商社를 설치하고 日本內陸으로 여행하려할 때에는 特別許可를 얻어야만 했었다. Boeddinghaus는 數年間 Firma Textor & Co.에서 근무한 후 F. Dittmer와 더불어 1867年에 長崎에 Firma Boeddinghaus, Dittmer & Co.를 설치했으나 오래가지 못하여 70年代에 Dittmer와 分離하여 Carl Ernst Boeddinghaus라고 商號를 改名하고 單獨經營했다. 交易은 日本은 물론 獨, 和, 中國 그리고 韓國을 相對로 行하였며 主要 去來商品은 茶, 銅, 生糸, 樹脂 등이었으며 航海船舶에 대한 石炭供給도 擔當했다. 여기에 特記해야 할 것은 Carl Ernst Boeddinghaus은 韓國으로부터 호랑이 등 맹수를 유럽으로 輸出하므로 歐洲에 있는 많은 동물원에 그 수요를 맡았던 事實이다.

5) China Export-Import & Bank Compagnie Ltd.

Paul Ehers은 1856年 5月 8日 Bank "Esperanz"로 廣東을 향하여 出港하였으며 1859年 1月 1日 Theodor Hesse와 같이 Firma hesse, Ehlers & Co.를 開店했으며 1861年 7月 7日에는 香港에다 支社를 설치했다. 그는 당시 中國과 日本이 물감분야에 있어서 몹시 뒤떨어져 있는데 着眼하여 염료의 수입에 적극성을 띄우기 시작했으며 그 結果 1883年에는 Hoechster Farbwerke의 生產染料의 日本 및 中國의 單獨代行業務를 獨占하였다. 獨佛戰爭後 Ehlers는 그의 Prokuristen인 Justus Peter Lembke에게 香港業務를 委任하였는바 그는 Firma Justus Lembke & Co.로 계속 經營했다. Firma Justus Lembke & Co.는

1890年에 China Export-Import & Bank Co., Hamburg와 關係를 맺고 1893年에 神戶 그리고 1900年에는 橫濱에 支社를 開設 경영케 되었다. 특별히 染料分野에 關心을 集中했던 이 商社는 많은 外國商人과 協同으로 수많은 會社를 설립하고 經營하였는데 그중에 몇개를 소개하면 Impex Chemicals Co., Ltd., Osaka, Dyestutts & Chemicals Trading Co., Ltd., Osaka Tokio 및 Nagoya 등이다.

6) C. Illies & Co.[48]

1948年 두 Hamburg 出身의 商人인 Friedrich Pandel과 Georg Friedrich Stiehaus가 Batavia를 향하여 出發했다. 그들은 目的地에 到着하자 곧 Pandel & Stiehaus商社를 설립하고 그들의 同業者로 Hamburg에 머물러 있었던 Jakob Bollenhagen과 같이 交易을 漸進的으로 擴張해 갔다. 두 商人은 會社의 發展과 그들의 다른 目的으로 인하여 Jakob Bellenhagen에게 助力者를 파송해주기를 要求했던바 Bellenhagen는 Düsseldorf出身의 青年 Louis Kniffler를 추천했다. Kniffler는 1852年初에 Batavia로 향하였으며 급작히 1855年에 Stiehaus가 그리고 1857年에 Pandel가 別世하자 Stäcka와 더불어 Firma Pandel & Stiehaus를 引受해야만 했다. 1859年初 Kniffler와 H. M. Gildmeister는 長崎에 도착하여 日本에 最初로 1859年 7月 1日 獨逸商社 L. Kniffler & Co.를 설립했다.

Kniffler는 日本의 사정을 상세히 本國에 알리므로 獨逸商人들의 對極東進出을 위하여 크게 協助했을 뿐만 아니라 長崎駐在 領事로서 獨逸人의 先導와 保護에도 努力했다. 이 商社는 纖維製品, 鐵, 錫, 鉛 등 金屬類, 寒天, 銅, Rapssaat, 벌꿀 그리고 樹脂 등 廣範한 商品을 取扱했다. 長崎에 이어 橫濱에도 支店을 두었는데 여기서 주로 茶輸出을 擔當했었다. 日本에 있어서 經營은 급속도로 發展하여 모든 開港地에 支店을 설치하였으며 Kniffler는 독일에다 새로운 젊은 協助者를 要求케

48) Käthe Molsen, *C. Illies & Co.*, 1859~1959, Hamburg, 1959.

되었다. Bollenhagen & Co.를 通하여 1866年에 Carl Illies가 L. Kniffler & Co.에 왔으며 그는 성실껏 그리고 훌륭히 事業에 종사하므로 Kniffler는 그를 1868年에 横濱支社를 맡도록 責任지웠다. 그리고 1873年 1月 1日 Carl Illies를 同業者로 하였다.

70年代 初에 L. Kniffler & Co.는 日本에 4支店과 16從業員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長崎에 3名, 兵庫에 7名, 横濱에 4名 그리고 大阪에 2名이 있었다. 이 會社는 Louis Kniffler를 비롯하여 Gustav Reddelien과 Carl Illies에 의하여 運營케 되었는데 Kniffler와 Reddelie는 Illies의 能力과 人間性을 信任케 되자 1859年 7月 1日부터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單獨經營케 했다. Illies는 會社를 引受한 후 Kniffler의 허락을 받아 1880年 5月 31日부터 C. Illies & Co.로 改名하고 사업을 擴張하기 위하여 Düsseldorf에도 事業所를 開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經營을 敢行했다. 1910年부터는 그의 아들 Carl Illies Jun.이 맡아 管理케 되었다.

2. 通商條約 締結後에 있어서의 獨逸商人

最初의 駐横濱 프로이센 領事로 1863年 Max von Brandt가 任命되었고 프로이센人이 아닌 다른 모든 독일상인들도 그의 도움과 保護를 받으며 商易에 從事케 되었던 것이다. 1866年에 요꼬하마에 있었던 66個의 外國人商社는 "General Chamber of Commerce"를 組織했던바 12獨逸企業도 이에 屬하고 있었다. 商工會議所가 組織되었던 當該年度에 獨逸人 Rudolf Lindau가 會長으로 選任되었고 그리고 그 1年前에는 Municipal Council이 組織되었는바 2獨逸人이 그의 幹部로 被選되었던 것이다.[49] 독일과 日本과의 交易은 점진적으로 發展하기에 이르러 1865年에는 18척의 독일선박이 在日 獨逸商社를 위하여 訪日하던바 그 중 6척은 L. Kniffler & Co.의 商品을 수송할 目的으로 航海했던 것이다. 1869年에 設立된 H. Ahren & Co.와 1873年에 설립된 Simon

49) O.A.V., a. a. O., S. 77.

Evers & Co.를 비롯하여 1890年까지 日本에 本社 혹은 支店을 開設하였던 會社는 Carl Rohde & Co., Otto Reiners & Co., M. Raspe & Co., J. Helm Delacamp & Co., Winckler & Co. 그리고 Becker & Co. 등이다. 1877年에 橫濱에만도 10個의 독일상사가 存在했으며 1879年에 Kobe에는 12個 독일상사가 있었다. 그리고 1898年에는 兩都市에만도 獨逸人에 의하여 組織되고 運營되어지고 있었던 42本支社가 있었다. 商易을 주로 擔當하는 商社以外에도 많은 독일 경제, 기술 그리고 과학이 日本産業의 組織과 發達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으며 그중의 하나가 1896年 東京에 사무소를 開設했던 Siemens & Halske會社이다.

韓國에 처음으로 商店을 열고 事業을 經營한 商社는 E. Meyer & Co.이다. 이 會社는 1880年代에 仁川에 開設되었으며 淸日戰爭이 발발했던 1894年에는 한국에 單 2個의 外國人 商社가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유럽人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美合衆國人에 의하여 경영되었다. 즉 前者가 獨逸人에 의한 E. Meyer & Co.이고 後者가 美國人에 의한 Johnson & Co.이다. 특히 E. Meyer & Co.의 經營은 몹시 활발했었고 日本人에 比하여서도 저렴한 價格으로 상품을 판매했었다.[50] 當時의 駐仁川 英國領事는 自國政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51]

"The Germans, always more Practical than we are, have been quick to recognise this fact, and now it is almost the exception to find a German commercial house in the East, in which there is not at bast one man able to talk business with the natives in their own dialect ; …… it is almost superfluous to say that the German house has a German who can speak Corean, and that the English house has no Corean speaking Englishman."

1900年에 한국에는 單 1個社의 獨逸商社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말에

---

50) 朝鮮貿易協會編, 朝鮮貿易史, 서울, 1943, S. 265.

51) Hrsg, Foreign office, G. G.,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 on trade of Korea,* for the year 1899. London, S. 12.

능통하고 한국어도 이해할 수 있었던 능력있는 商人이 있었기에 다른 會社보다 사업이 번창했다. 1907年에 仁川에는 많은 外國人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西歐人을 보면 英國人 28名, 美國人 10名, 프랑스人 8名, 희랍人 2名, 로서아人 1名 그리고 獨逸人 28名이 있었다.[52]

1890年에 있어서 한독간의 交易比率을 보면 한국은 全獨의 輸出量에 있어서는 0.00019% 그리고 輸出面에 있어서는 0.0041%만을 차지할 程度로 극히 미미했으나[53] 獨逸商人들의 태도는 퍽 적극적이었다. 日本과 독일 兩國間에 通商條約이 체결된 후 1次大戰이 발발하기까지 활약했던 獨逸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54]

1) H. Ahrens & Co.

H. Ahrens & Co.의 設立者인 Heinrich Ahrens는 1860年代 初에 日本을 향하여 出帆했으며 1869年 1月 1日 H. Ahrens & Co.를 開設했다. 처음에는 東京과 神戶에 있는 本支店을 혼자 經營했다. 1872年에는 M. M. Bair와 Eberhard Schmid를 同業者로 했으며 東京의 本社가 주로 日本政府와의 關係라든가 청원을 取扱한데 대하여 橫濱와 神戶의 支店은 주로 輸出入을 擔當했던 것이다. H. Ahrens 스스로가 日本語에 숙달했었기 때문에 事業經營에 퍽 有利했으며 日本政府와 官史들로부터 두터운 信任을 받았던 이 젊은 獨逸商人은 비교적 단기간 內에 成功할 수가 있었다. 1875年에 H. Ahrens는 單獨으로 日本商社의 Londoner Stammhaus를 설립하고 스스로 責任者가 되고 Prokuristen W. A. Dattan과 C. Schoell을 通하여 管理케 했다. 1879年 M. M. Bair와 Eberhard Schmid가 退社하자 그는 日本人 종업원의 이름으로

---

52) Hrsg, Foreign office, G. B., a. a. O., for the year 1906, S. 8.

53)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Statistishes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Jahr gang,* Berlin, 1910, S. 225~228 & S. 273~275.
Hrsg. Kaiserliches Statistisches Amt, *Statistisches Hand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 2, Berlin, 1907, S. 508~513.

54) O.A.V., a. a. O., S. 175~228.

東京에 Takata & Co.를 설립했다.

대략 1895年까지 Londoner Stammhaus를 通하여 주로 金屬, 化學製品, 纖維類, 염료, 道具, 圖書 등을 수입했고 반대로 유럽으로는 日本製品을 수출했다. 一時 H. Ahrens & Co.는 Firma Fried. Krupp의 代行을 擔當했었고 Badische Anilin-und Sodafabrik, Ludwigshafen, Elberfelder Farbenfabriken Friedrich Bayer & Co. 그리고 Leopold Cassella & Co. 生產品인 Alizarin 염료 人造 Indigo 그리고 Indanthren 염료 등 日本으로 수입했다. 1886年 Norddeutsche Lloyd가 帝國郵便船 업무를 開始하기 前 H. Ahrens & Co.는 日本에 있어서 이 업무를 代理했다. 그러나 1886年 10月 H. Ahrens가 콜레라고 死亡함으로 이 分野에서는 큰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의 死亡後 未亡人은 Th. Hake, E. Wismer 그리고 G. R. Mosle와 그리고 London에 있었던 W. A. Dattan과 함께 H. Ahrens & Co. Nachf라는 商號로 계속 經營했다. 1889年 Th. Hake가 그리고 1892年에 G. R. Mosle와 W. A. Dattan과의 關係가 멀어지면서부터 會社內部에는 많은 人事上의 그리고 運營上의 不安定이 계속되었으나 商域은 점차 擴張되어 1928年까지는 서울과 牧丹에도 支店을 설치했던 것이다. 1923年 9月의 대지진 때에는 H. Ahrens & Co. Nachf는 13명의 獨逸人 종업원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받아야만 했다.

2) Becker & Co.

Robert Becker는 그의 동생 Ernst Becker와 더불어 그의 日本人 親友의 提議에 따라 神戶에 1890年에 Berker & Co.를 開設했으며 數年後에 Th. Bunge의 入社와 더불어 橫濱에 支店을 設置했다. 世界第1次大戰이 발발하기 直前까지 이 商社는 Casella-Farbwerke의 代理商으로서 독일염료의 工業部門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染料部門 以外에 技術分野에도 같은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日本產業建設에 參여했다. Ernst Becker의 死亡後에는 Th. Bunge에 의하여 지도되었으며 會社業務 중 機械 및 施設部門은 K. A. Büsing에 맡겨져 管理經營

되어졌다.

3) Heyn, Bröckelmann & Co.

1843年에 Wilhelm von Pustau가 廣東에 Firma Wm. Pustau & Co.를 설립하고 그후 香港과 上海에 支店이 開設되었다. 1887年에 Fritz A. Brökelmann과 Heinrich Heyn은 이 商社의 同業者로 入社했으며 2年後 von Pustau가 退社하고 1899年 7月 1日부터 商號가 Reuter Bröckelmann & Co.로 변경되었다. 이 商社는 輸出入業務 以外에 船舶代行業도 取扱했었다. 1896年에 天津으로 商域을 擴張했으며 毛皮, 양탄자 같은 商品을 去來키 시작했다. 그후 臺灣에도 支社를 설치했던바 臺灣이 日本에 併合되므로써 이 會社는 臺灣에 있어서의 樟腦去來를 獨占하다시피 했다. 일반적으로 日本에서는 이 會社가 Heyn, Bröckelmann & Co.로 오랫동안 經營되어졌다.

4) Kunst & Albers.

Kunst & Albers 商社는 1864年 두 Hamburg人에 의하여 Wladiwostok에 설립되었다. 이 두사람이 Gustav Kunst와 그의 친구 Gustav L. Albers인바 Albers는 海路를 通하여 獨逸商品을 Wladiwostok에 운송하고 交易에 제공한 첫사람이라고 전해진다. 그들이 Wladiwostok를 그들의 근거지로 選擇한 사실은 곧 퍽 賢明했다는 것이 證明되었다. 1872年에 함대근거지 및 地方行政官廳 所在地로 되면서 都市는 급속히 發展되었고 시베리아 地帶의 發展은 Firma Kunst & Albers로 하여금 東시베리아와 만주에만 28個處에 支社를 설치케 했고, 1,200名 以上의 종업원을 확보케 하였던 것이다. 즉 Hapag이나 Lloyd's社의 업무를 맡았으며 1887年에는 Wladiwostok에다 銀行業所를 開設했다. 뒤에 Kunst & Albers Co.는 Sachalin에서의 石炭採掘 許可를 얻었고 日本海域에서의 漁獲權을 얻어 경영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Wladiwostok에는 工場까지 건설하여 직접 生産에 종사까지 했다.

5) Mee-Yeh Handels Compagnie.

Hamburg에 自己의 이름으로 會社를 설립하고 天津과 仁川에 支店을 가지고 있었던 H. C. Eduard Meyer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1881年에 홍콩에다가 Mee-Yeh Handels Compagnie를 설립했다. Mee-Yeh는 독일명 Meyer를 中國文字로 發音대로 表記한 것이라고 主張되어진다. 開店直後에 Siemssen & Co.의 종업원으로 1878年 香港으로 온 J. H. Garrels가 이 會社의 同業者로 入社했고 1886年 11月 1日에 Ferdinand Lemke의 지휘하에 上海에다 Meyer Lemke & Co.이란 商號로 擴張 설립되었다. 이 商社는 주로 工產品 특히 英國產 纖維類와 獨逸產 Sundries를 수입했고 中國產의 毛皮와 煙草를 수출했다. 1890年부터 1904年 사이에는 船舶代行業을 맡아 1,500톤으로부터 1,700톤까지의 선박 4척을 가지고 Asiatischen Küstenfahrt-Gesellschaft의 업무를 委任받고 담당했다.

6) Sander Wieler & Co.

1860年代에 設立된 Hong-Kong-Firmen Sander & Co.와 Wieler & Co.가 合併하여 設立된 것이 Sander, Wieler & Co.이다. Sander & Co.는 Friedrich Sander에 의하여 설립되어 주로 輸出入業務에 從事했다. Wieler & Co.는 Firma Oscar Wieler로부터 設立되었고 이 商社는 처음 무역과 船舶業에 종사했다. 合併後 이 商社는 특히 臺灣에서의 大成을 보았다. 특히 工場의 건설, 교량가설 및 鐵道의 부설면에 많은 參與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Leopold Cassella & Co.產의 아니린 염료의 單獨販賣權을 가졌었고 Österreichischer Lloyd會社의 香港에 있어서의 業務代行을 위탁받았다. Sander, Wieler & Co.는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는 神戶와 橫濱에 所在했던 Becker & Co.와 關係를 맺고 商品의 수출입업에 종사했다. 이 商社는 中國, 日本, 香港以外에 만주, 말레이지어, 자바 및 한국과도 긴밀한 商易關係를 맺었었다.

7) Schmidt & Co.

19世紀 末부터 20世紀 初葉에 걸쳐 독일의 對 極東貿易에 크게 공헌한 業體 중의 하나로 Schmidt商店과 Schmidt & Co.가 속한다. Schmidt-Shoten은 1896年 Paul Schmidt에 의하여 東京에 設立되었다. 처음은 프랑스 光學機器會社의 代理點으로 종사했으나 후에는 日本의 工業化에 必要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독일 工產品의 교역에 그 主去來 目標를 두었다. Ernst Leitz GmbH., Wetzlar, E. Merck, Darmstadt의 이름과 生產品이 이 會社를 通하여 日本에 紹介되어졌던 것이다. Schmidt & Co.는 1912年에 北京에 開設되어졌다.

8) Simon, Evers & Co.

現在의 Simon, Evers & Co. GmbH의 歷史는 1873年 1月 2日 Julius Simon과 August Evers에 의하여 설립된 貿易會社 Simon, Evers & Co.로 소급해야 할 것이다. 當時의 이 商社의 주요 交易商品은 쌀과 機械類이었다. 이 商社는 日本 쌀을 S.E.C.라는 마크로 유럽市場으로 수출했고 그 반대로 日本의 工業化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요를 技師 Ludwig Leybold를 자문으로 해서 取扱했던 것이다. 1907年 Leybold가 死亡하자 판매조직을 일본에서 有名해지 "Leybold"라는 이름으로 支店形態로 변경했으며 1909年末에 이 貿易商社와 Simon, Evers & Co.는 GmbH형식을 변형시켰다.

9) Winckler & Co.

이 商社는 1885年 Jakob Winckler에 의하여 横濱에 설립되었다. Stade에서 敎師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로 1871年 訪日하여 처음에는 H. Ahrens & Co.에 근무하다가 Ahrens가 死亡한 후 獨立했다. Winckler & Co.의 사업은 生糸, 絹織物. 毛皮, 도자기, Pteffer-minz Menthol Agar Agar Japanwachs를 主要商品으로 取扱했고 美合衆國과의 交易도 活潑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곧 神戶와 名古屋에 支店을 開設했고 1907年에는 青島에 支社를 두어 Erdnüsse의 수출

에 적극성을 띄었다. 1890年에 Jakob Winckler는 日本에다 具類로 만드는 단추 工場을 건설했고 이어서 Lackwaren工場 Cloisonniwaren工業 그리고 Strohgeflecht工場 등을 건설했고 또한 日本 企業人에게 長期的인 金錢貸與까지 取扱했다.

紹介된 商社以外에도 직·간접적으로 日本의 工業發達과 交易에 참여한 企業은 많이 있다. 生產業體, 船舶輸送業體, 金融·銀行業體 등을 제외하고 1900年代 以前에 關聯을 맺었던 商社名은 다음과 같다.

商 社 名	設立年度	設 立 者
① O. H. Anz & Co.	1886	Otto Anz
② Behn, Meyer & Co.	1840	Theodor August Behn, Valentin Lorenz Meyer
③ Bernhard Buschmann	1862	Eduard Schellhaβ, Ludwig Bayer
④ Freudenberg & Co.	1873	Philipp Freudenberg
⑤ Germann & Co.	1846	Arnold Germann, Garlos Germann, Max Tornow, u.s.w.,
⑥ B. Grimm & Co.	1878	Bernhard Grimm, Erwin Müller
⑦ John Hagenbeck & Co.	1890	John Hagenbeck
⑧ Jebsen & Co.	1895	Jacob Jebsen, Heinrich Jessen
⑨ W. B. Ledeboer & Co.	1850	W. B. Ledeboer
⑩ Melchers & Co.	1866	Hermann Melchers
⑪ J. Mohrmann & Co.	1847	Julius Mohrmann
⑫ Buchhandlung Max Nössler & Co.	1899	Max Nössler, Heinrich Ziegenspeck
⑬ Carl Schlieper	1880	Carl Schlieper
⑭ Siemssen & Krohn	1895	Gustav Siemssen, Werner Krohn
⑮ Speidel & Co.	1873	Karl Theoder Speidel, Friedrich Wilhelm Speidel

V. 結 論

世界第2次大戰에 있어서의 敗戰國 독일은 극히 짧은 期間內에 그들

의 아팠던 상처를 씻고 또다시 經濟的 強國으로 成長했다. 그들이 再起가 不可能하다고 생각되어졌던 狀況下에서 그렇게도 빠르게 그리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었던 精神은 비단 現時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他國에 비하여 늦게 產業革命 과정에 들어갔고 또 그것도 퍽 어려운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行政的 與件下에서 進行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뒤따랐고 極東市場에 있어서의 경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앞서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 원동력인 독일국민의 努力과 鬪志가 곧 그들의 겔만 精神의 所產이라고 확신한다. 무수한 關稅地域으로 分割되어 있었던 祖國을 경제적으로 統一시킨 그들은 곧 Eulenburg-Mission을 편성 파견하여 對極東交涉에 임하게 하였으나 그 協商은 무척 곤란했었으나 인내와 기다림을 한 Eulenburg를 비롯한 모든 使節團員이 가졌던 정신과 같은 자세로 市場을 개척했고 또 직접 경영에 參加했던 商人과 商社에 대한 分析이 너무나 外皮만 더듬은듯 하다. 보다 깊은 分析은 다음으로 미루며 끝으로 參考로 第1次世界大戰이 발발하기 前에 이미 한국과 日本에서 商業에 종사한 業體 중 現存하는 商社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商社名)	(現住所)
Becker & Co.	Hamurg 1, Altstäderstr. 17
Corlowita & Co.	Hamburg 1, Burchardstr. 17
C. Illies & Co.	Hamburg 36, Gänsemarkt 45
C. Melchers & Co.	Bremen 1, Schalchte 39~40
E. G. Kistenmacher & Co.	Hamburg 1, Burchardstr. 8
Germann & Co.	Hamburg 13, Mittelweg 118
H. Delacamp & Co.	Hamburg 36, Esplande 41
Heinrich Gansberg,	Bremen, Postfach 60
Heyn, Bröckelmann & Co.	Hamburg 1, Spaldingstr. 160
Johann Grostmann Co.	Hamburg 1, Glockengiesserwall 15
Kosmos-Export GmbH.	Hamburg 1, Mönckebergstr. 17
Leo Adams,	Hamburg 11, Trostbrück 1
Ludolph Struve & Co.	Hamburg 4, Millerntorpaltz 1
Raspe & Paschen.	Hamburg 11, Zippelhaus 5

Simon, Evers & Co.	Hamburg 1, Mönckebergstr. 31
Sinalco Aktiengesellschaft Detmodl.	Detmold, Bahnhofstr. 3~4
Svipio & Co.	Bremen 1, Breitenweg 33
Schmidt & Co.	Frankfurt/M, Im Trierischen Hof 7
Sander, Wieler & Co.	Hamburg 1, Altstädterstr, 15
Winckler & Co.	Hamburg 36, Jungfernstieg 51

參考文獻

Asahi, Isoshi ; The Secret of Japan's trade expansion, Tokyo, 1934.

Bechtel, Heinrich ;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Bde. 3, München, 1956.

Berliner, S ; Organisation und Betrieb des Japanischen Importhandels Hannover, 1920.

Chung, Henry ; Korean treatics, New York, 1919.

Clapham, T.H. ;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Aufl, 4, Cambridge. 1963.

Hrsg,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 Decennial reports on the trade, navigation industries etc, of the ports open to foregn commerce in China and Korea and on the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eaty port provinces, 1882~1891, shanghai, 1893.

Hrsg. Zentralverband Deutscher Industrieller ; Der Deutsche Vertragszolltarif. Berlin. 1905.

Hrsg, Foreign Office(G.B) ;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 on the trade of Korea for the year 1890~1914, London, 1891~1915.

Hrsg, Ostasiatischer Verein ; Gedenkschriften zum 5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50.

Hrsg, Ostasiatischer Verein ; Gedenk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Hrsg, The Bureau of commerce, Department of Agricultur & commerce ; General View of commerce & Industry in the Empire of Japan, Tokyo. 1897.

Gerloff, wilhelm ; Die Finanz-und Zollpolitik des deutschen Reiches, 1867~1913, Tena. 1913.

Gothein, Georg ; Der deutsche Aussenhandel, Berlin, 1901.

Hattori Yukimasa ; The foreign commerce of Japan since the Restauration 1869~1900, in ; socia and industrial history of Johns Hopskins University Studies, Volume XXII, Baltimore, 1904.

Hirschmeier, Johannes ; The Origins of enterneveship in Meiji Japan, Cambrige, Mass., 1964.

Hrsg, Internationales Bureau für Zolltarife ; Internationaler Anzeiger für Zollwesen, *Tchosen*("Korea"), 82, Heft, 1913~1914 Tabrgans, Brüssel 1913.

Kinoshita, Yetaro ; The past and present of Japanese commerce. New York & London, 1902.

Koepsel. Kurt ; Diè Entwicklung des Japanischen Aussenhandels, insbesondere der deutsch-Japanischen Handelsbeziehungen vor dem Weltkrieg, Kassel. 1929.

Lotz, W. ; Die Handelsgeschichte des Deutschen Peichs unter Caprivi und Hohenlohe 1910.

Lütge, F. ; Deutsche Sozial-und Witschaft geschichte. Aufl. 3,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Molsen. Käthe ; C. Illies., 1859~1959,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deutsch-Japanischen Handels Hamburg. 1905.

Plaut, Theoder :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g, 1929.

Hrsg,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 Report of the foreign trade and shipping 1908, Schanghai. 1909.

Saitorius von Waltershausen. A. : Deutsche Wirtschaftsgeschichte. 1815~1914, Tena. 1920.

Stein. Walter : Handels-un Verkehrsgeschichte der deùtschen Kaiserzeit, Berlin, 1922.

Uyehara. S, : The industry and trade of Japan, London, 1926.

Wiesinger, K, : Die Zölle und Steuern des deùtschen Reiches, Aufl. 6, Münehen & Berlin, 1912.

Kwong-Soo Kim : Der Auss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cer Berü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9.

* 本 論文은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3輯, 1971에 發表했던 것임.

都中에 관한 硏究*

—開城 縮紬廛과 海州 縮緗廛을 중심으로—

金 柄 夏**

目 次

Ⅰ. 머리말
Ⅱ. 都中의 性格
1. 黑正說에 대한 吟味
2. 都中의 槪念
Ⅲ. 六矣廛과 길드
1. 六矣廛의 成立
2. 길드로서의 六矣廛
Ⅳ. 開城 선주전(縮紬廛)
1. 開城의 廛契
2. 길드로서의 선주전(縮紬廛)
Ⅴ. 海州 선상전(縮緗廛)
1. 선상전(縮緗廛)의 設立
2. 길드로서의 선상전(縮緗廛)
Ⅵ. 結 言

Ⅰ. 머리말

이 논문은 開城 선주전과 海州 선상전을 中心으로 商人길드(merchant guild)인 廛契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商人길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널리 보급된 것은 朝鮮後期이다. 商人들은 이 시기에 길드를 조직함으로써 去來獨占權과 去來介入權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주요 都市의 市廛 商人들의 길드조직이 현저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의 六矣廛만이 이와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定說처럼 되어 있다.

筆者는 哲宗 1년(1850년)의 開城 「縮紬廛立議」와 光武 3년(1899년)

* 본 연구는 1993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啓明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의 海州 「縮緗廛座目」과 「縮緗廛立議」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市廛의 길드적 성격을 구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海州의 「縮緗廛座目」과 「縮緗廛立議」는 서울과 開城 이외의 도시에 있어서도 商人길드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과 都中의 用語問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술하는 바와같이 都中은 원래 契員 전체 또는 그 가운데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廛契의 보통명사로도 사용되었다.

이 논문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開城·海州의 市廛 都中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즉 六矣廛, 縮紬廛, 縮緗廛을 중심으로 商人길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Ⅱ. 都中의 性格

1. 黑正說에 대한 吟味

都中의 性格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都中이 廛契의 통칭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都中이란 원래 契員 전체 또는 그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점차 廛契의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朝鮮後期에는 契가 전면적으로 발달하였고,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였다. 예컨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契가 있는가 하면 産業을 목적으로 하는 契도 있었고, 殖利를 목적으로 하는 契도 있었다. 이와같은 풍토에서 규모가 큰 坐商인 市廛 商人들이 廛契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去來 獨占權과 去來 介入權을 유지하려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市廛 商人들은 業種別로 廛契를 조직하게 되었다. 縮廛契·綿布廛契·綿紬廛契·紙廛契·布廛契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業種別로 조직된 契의 통칭에 해당하는 固有名詞는 없었던 것이다.

서울 市廛의 경우 예컨대, 「立廛」·「布廛」이란 말에는 길드로서의 團體性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무난하였다. 다만 六矣

廛의 禁亂廛權이 강화되면서 俗稱 都中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같이 都中은 契員 전체나 廛契에 대한 총괄적, 추상적 호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都中을 六矣廛의 商人길드와 같은 뜻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은 초기에 六矣廛을 연구한 학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길드의 시각에서 六矣廛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일본인 학자는 京都大學의 黑正 巖(코쿠쇼 이와오) 교수이다. 그는 1920년 우리나라에 와서 廛契資料를 수집해 가지고 연구하였고, 3년 뒤인 1923년에는 「길드로서의 京城 六矣廛」이란 論文을 그의 著書 『經濟史論考』에 발표하였다. 그는 길드로서의 六矣廛을 깊이 있게 硏究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都中의 槪念에 대해서는 不明한 점이 없지 않다. 그는 이 책에서 "원래 東洋經濟史는 東洋人만의 經濟史가 아니며, 全人類의 經濟史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이것을 연구하든 自由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東洋人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東洋人은 우선 동양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그 경제적 문화발전의 발자취를 구명함으로써 歐美史家의 迷忘을 타파함과 동시에 人類經濟史의 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1]고 논하였다.

黑正 교수가 六矣廛을 硏究한 것은 일본의 國運이 크게 신장하는 시기였고, 黑正 교수는 일부 西洋史家의 편견과 迷忘에 대한 반발로서 朝鮮經濟史 硏究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黑正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사 자료를 수집해 간 1920년은 3·1운동 직후 日帝가 文化政治를 표방하여 韓國硏究에 관심이 컸던 때였으므로 日帝의 大陸侵略政策에 봉사하기 위하여 朝鮮經濟史를 연구한 側面도 있다고 생각한다.

黑正 교수에 선행하여 河合 弘民(카와이 히로타미) 교수가 六矣廛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고, 그 결과가 『經濟學大辭書』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한국인 학자로는 金榮漢이 六矣廛 관계 古文書와 六矣廛 出身의 口述資料를 이용하여 調査書를 작성한 바 있다. 金榮漢의 「六矣廛에 관한

1) 黑正 巖, 『經濟史論考』, 岩波書店, 1923年 2면.

調査」·「布廛調査書」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所藏의 調査書類로 철해져 있었는데,[2] 黑正 교수가 이용한 자료 중에서 이 調査資料의 행방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黑正 교수의 六矣廛 硏究는 史料로서도 가치가 큰 것이다. 그는 金榮漢의 「六矣廛에 관한 調査」·「布廛調査書」를 이용하여 六矣廛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都中의 槪念에 대해서는 不明한 점이 있다.

"朝鮮에는 古來로 契 또는 都中이라 칭하는 團體가 있으나 이것이 과연 길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硏究는 심히 적다."[3]고 하여 契와 都中을 同一한 團體槪念으로 믿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契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具體的 團體를 가리키는 말임에 반하여 都中은 契員 전체 또는 契員中이란 뜻이 있으며, 점차 廛契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合成名詞로서 固有名詞化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六矣廛에 대하여 "李朝時代에는 六矣廛이 서울에만 있었다. 各廛은 官府로부터 專賣特權이 부여되고, 각각 都中이라 칭하는 組合을 만들고, 그 組合員인 都員만이 각자의 廛의 專賣에 속하는 물품을 팔 수 있다. 都中 이외의 사람이 이 特權을 침해하여 그 專賣品을 팔면 이를 亂廛이라 칭하고 특권이 침해 당한 都中은 그 물품을 몰수하며, 密賣者를 붙잡아 시내를 끌고 다닌 뒤 平市署에 인계하여 처형케 하였다."[4]고 한다.

黑正 교수가 이와같이 서울에만 六矣廛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六矣廛을 서울에 있었던 特權的 6大 市廛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옳다. 그러나 이것은 開城과 平壤에도 六矣廛이 있었다는 輻田德三(후쿠다 토쿠소) 교수의 說에 대한 反論的 性格도 내포되어 있으므로[5] 더 부연할

---

2) 같은 책 9~10면 참조.
3) 같은 책 8면.
4) 같은 책 12~13면.
5) 같은 책 14면.

필요가 있다. 福田 교수의 命題는 口述資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는 六矣廛을 特權的 市廛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六矣廛의 槪念을 開城과 平壤의 市廛에까지 확대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나 그가 수집한 口述資料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特權的 市廛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후술하는 바와 같이 特權的 市廛은 서울과 開城 뿐만 아니라 海州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黑正 교수는 위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廛은 都中이라 칭하는 組合을 만들고, 都員만이 각자의 廛의 專賣品을 팔 수 있는 特權을 갖는다고 했는데, 各廛은 某廛 또는 某廛契라고 칭하는 組合을 만들고 專賣特權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各廛이 都中이라 칭하는 組合을 조직하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黑正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六矣廛은 당초 御用商人의 團體였던 것이 뒤에 特權을 가진 小賣商人의 團體로 되었고, 6개 市廛을 합해서 하나의 經濟單位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六矣廛에 속하는 各廛은 아주 獨立해서 別個의 專賣權을 가지며, 각각 길드를 조직하였다. 廛이란 각 廛房의 營業所 전체를 하나로 하여 일컫는 物的設備임과 동시에 人的結合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길드에 加入한 사람만이 그 廛안의 특정한 廛房에서 영업할 수가 있었다.[6]

한편 그는 都中을 納稅團體로 보고 있다. "官設 御用商人團體였던 都中은 드디어 專賣權을 갖는 小賣商人團體로 되고, 이 特權에 대한 物品納稅團體로 되었다. 上納을 奉公役 또는 國役이라 하며, 이것을 納稅團體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 官府는 上納할 物品을 都家에 下命하고, 都家는 다시 各廛房의 營業者 즉 都員에 그 納入額을 均分 賦課하여 이것을 모아서 上納한다. 納稅團體의 색채가 점점 짙어짐에 따라 都家는 미리 각 廛房으로부터 物品을 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下命이 있을때 곧 上納하였다. 원래 上納은 定期的인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비율이 정해

6) 같은 책 17~18면.

진 것도 아니었지만, 뒤에는 定期定率로 되었다"[7]고 한다.

이와같이 市廛制가 실시된 定宗元年(1398년) 이후 御用商人團體로서 존재하다가 뒤에 特權을 가진 小賣商團體로 되었고 特權市廛은 강제성을 지닌 國役을 부담하였으므로 納稅團體的 特性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겠지만, 單純한 納稅團體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즉 去來獨占權과 去來介入權의 유지 및 相互扶助的 性格을 띤 共同體였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各廛의 都中은 旣得의 獨占權에 의하여 利得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였던"[8] 것이며, 官府의 압력에 의하여 조직된 臨機應變的 團體는 아니었다. 즉 社會的 分業이 발달함에 따라 相互依存이 긴밀하게 되는 有機的 連帶로서의 共同體였던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開城과 海州의 廛契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都中의 社會的 關係에 대해서 그는 都中의 本質은 都員의 有機的 結合團體가 아니라고 前提하고, "都中은 官府와의 關係에 있어서 獨立的 存在이며, 社會에 대해서 獨占權을 행사하고 그 權利의 侵害者를 검거하고 이것을 平市署로 납치하는 하나의 警察權을 보유하였다. (中略) 六矣廛은 政府를 去來對象으로 하기보다는 民衆을 相對로 하는 去來가 有利하게 됨에 따라 그 特權의 反對結付로서 多額의 納稅를 할 수 있었고, (中略) 都中이 亂廛禁止의 特權을 가져서 獨占價格을 消費者에게 課하고 이것에 의한 收益의 일부를 上納 시키는 것은 당시의 유치한 租稅制度下에 있어서는 가장 유효한 消費稅 徵收의 한 方法이었다"[9]고 했다.

都中은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독립적 존재이며, 亂廛禁止의 特權을 가져서 獨占價格을 消費者에게 課하고 그 收益의 일부를 上納시키는 것은 有效한 消費稅 徵收의 方法이었다고 하여 納稅 團體的 性格을 부각시키고 都員의 有機的 結合團體가 아님을 강조하였으나 이와같은 인식

---

7) 같은 책 20면.
8) 같은 책 22면.
9) 같은 책 23~24면.

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獨占權 행사의 물질적 근거가 國役負擔에 있었고, 일단 獨占權이 부여된 뒤에는 亂廛의 단속권을 중심으로 自律的인 有機的 結合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黑正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이 營業獨占權은 원래 서울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獨占權의 對象으로서 納稅를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私的 負擔이 대단히 컸으므로 販賣價格을 引上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여기에 消費量이 가장 큰 日用品은 城外에 市場이 발달하였으므로 城內의 주민은 모두 거기까지 가게 되었고, 특히 魚物廛이 큰 타격을 받은"[10]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都中이 橫斷的으로 결합하여 相互扶助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당시의 朝鮮人에게는 생각할 수 없다. (中略)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都員 상호간의 內部關係를 보면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11]고 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각종 親睦契의 組織이라든가 褓負商 團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橫斷的 결합과 相互扶助에 능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유독 特權市廛團體의 경우만 橫斷的으로 결합하여 相互扶助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市廛商人들은 各廛 단위의 廛契로써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市廛 전체의 종합적 단체를 조직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都中의 槪念

都中은 六矣廛 길드라는 命題는 學界의 定說처럼 되어 있다.[12] 黑正 교수는 都中을 서울 六矣廛에만 있는 길드로 보고 있는데, 開城·海州 등의 市廛과 客主·負商團體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都中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이 說은 수정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10) 같은 책 24면.

11) 위와 같음.

12) 劉元東, 『韓國 近代 經濟史 硏究』, 一志社, 1977년, 152, 153, 157면 참조.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都中의 「都」가 「도읍」이란 뜻 이외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즉 都家·都賣·都흥정(모개로 사고 파는 것)·都賈·都錄·都마름·都使令·都合·都會(契會·總會) 등과 같이 「통틀다」(總) 또는 「거느리다」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中」은 門中(가까운 집안)·洞中(동내)·契中 등과 같이 「가운데」의 뜻 이외에 「안」(內)의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都中은 契員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都中이 契員 전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契中과 같다. 그러나 都中의 外延은 契中의 그것보다 크다. 契中은 契라고 하는 구체적 조직의 成員전체를 가리켰던 것이다.

예컨대, 海州 「植栢廛立議」에 있어서는 都中應役이 매우 번거로우므로 慶吊·慰問하는 일은 信誼契에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上位 集團인 植栢廛의 成員 전체는 都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上位 集團의 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都中이 어느 때부터인지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植栢廛立議」에 있어서도 廛契를 都中이라 하였고, 契의 公金을 「都中錢」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壬辰六月十五日 安城鍮鑄匙店人等狀」에 의하면 陳情한 사람이 「都中頭目」으로 되어 있다.[13] 이와같이 1892년(壬辰)경에는 安城유기 제조업 조합도 都中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客主의 길드도 都中이라 하였고[14] 負商 길드도 都中이라 칭하였다.[15]

그러므로 都中은 市廛 商人 길드 뿐만 아니라 匠人 길드, 客主 길드, 負商 길드 등 모든 종류의 商工業者 組合을 가리켰던 것이다. 즉 固有名詞로서 都中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中世的 商人 길드(merchant guild)와 匠人 길드(craft guild)에 해당하는 단체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契員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物的 施設을 포함한 조직을 의미하게 되었는가가 문제인데, 이것은 團體에 있어서

---

13) 『韓國 商業史 資料 叢書』 3, 「各處所志謄錄」, 驪江出版社, 381면 참조.

14) 같은 책 332면 참조.

15) 光緖 5年(1879년) 5月 「負商節目」, 同 「庇仁官節目」.

人的構成을 매우 중요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開港 이후 外國商人과의 商權鬪爭에서 都中이란 말이 흔히 사용되었는데, 團體槪念으로서의 都中은 이 시기에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Ⅲ. 六矣廛과 길드

1. 六矣廛의 成立

六矣廛은 서울의 市廛 중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우선 市廛의 성립에 대해서 보기도 한다.

朝鮮前期에는 서울과 開城 등 큰 都市에는 常設的 官認 坐商인 市廛이 있었는데, 서울의 市廛이 대표적이었고, 규모가 가장 컸다. 集權的 封建國家가 탄생하면 遷都하고 궁궐을 지은 다음에 市廛을 조성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太祖 李成桂는 즉위한지 2년만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궁궐과 官衙 등의 공공건물 건설에 주력하였으나 商街 건설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웠을 뿐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경복궁 神武門 밖에 場이 서게 되었고, 종로 雲從街 등지에는 초라하나마 상설시가 열려서 당장에 큰 불편은 없었으나[16] 예상되는 수도에의 인구집중과 王國의 수도로서의 체면문제가 있기 때문에 官認·商街인 公廊營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그리하여 定宗 元年(1398년)에는 종로 惠政橋로부터 창덕궁 洞口에 이르기까지 좌우 양측에 800여 칸의 공랑영조에 착수하였으나 松都 還都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랑영조는 太宗이 즉위한 뒤 한성으로 환도하면서 시작되었다. 太宗 10년(1410년)에는 종합적 공랑건설 계획에 착수하였고, 이어서 京市監을 다시 설치하여 사기행위와 약탈단속, 물가조정, 세금징수 등을 맡게 했을 뿐만 아니라 淸齋監을 설치하여 상

16) 『萬機要覽』, 財用篇, 各 廛條 참조.

가의 청결상태를 감독케 하였다.[17] 이 계획에서는 大市는 長通坊 즉 지금의 貫鐵洞에 설치하고 가축시장은 장통방 川邊에, 그리고 곡식과 잡물은 蓮池洞 입구인 蓮花 洞口로 정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 太宗 12년(14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랑 건설이 진행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太宗 14년에는 2,733칸을 완공하였다. 이 공사에 징발된 목공, 僧徒, 船軍 등은 무려 8,476명이나 되었다.[18]

공랑이란 원래 公的 行廊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가가 세운 공적 행랑은 상인에게 임대함으로써 市廛이 형성되었다. 시전의 廛은 임시로 지은 假家와는 달리 격식을 갖춘 점포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에는 시전·공랑·행랑을 모두 같은 뜻으로 통용하였다.

태종 15년(1415년)에는 모든 시전 상인을 3등분하여 매월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上等은 楮貨 3장, 中等은 2장, 下等은 1장, 行商은 2장, 坐賈는 1장으로 정하였다.[19] 世祖 6년(1460년)에 간행된 『經國大典』 戶典에는 좌고가 매월 저화 4장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랑의 경우는 각 1칸에 대하여 춘추로 연 2회, 楮貨 20장 씩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楮貨의 가치변동이 있기는 하나 45년 사이에 세금이 많이 올랐고, 특히 시전은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前期에 국가가 서울의 市廛商人에 대하여 公廊을 대여하여 영업하게 한 것은 어용상인의 필요와 公廊稅를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전 상인들은 國營 貿易品과 現物稅 收入品의 잉여물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官府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로 시전이 황폐화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된 뒤 피난갔던 시전상인들이 귀환하여 다시 개업하게 되

---

17) 『太宗實錄』 卷 23, 太宗 12年 3月 戊申, 4月 丁巳, 丙寅條 참조.

18) 앞의 책 卷 24, 太宗 12年 3月 戊申, 4月 丁巳, 丙寅條 참조. 劉元東 『韓國 近代 經濟史 硏究』, 一志社, 140면 참조.

19) 『太宗實錄』 卷 29, 太宗 15年 4月 己巳條 참조.

자 사정은 달라졌다. 조세체계의 변화로 규모가 큰 시전상인은 國役을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國役이란 宮中·府中의 수리비와 도배비·왕실의 혼례·장례비 등을 분담하는 租稅이다.

國役은 여러 시전 중에서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점포에 대하여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有分各廛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크고 國役을 많이 부담하는 有分廛의 종류와 數는 시기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6개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六矣廛이라고 한다. 즉 線廛(立廛), 綿布廛(白木廛·銀木廛), 綿紬廛, 紙廛, 苧布廛(布廛), 內·外魚物廛 등 6大 主要 限定品種店 集團이 國役을 많이 부담하였다.

六矣廛의 호칭은 대체로 六矣廛 또는 六注比廛·六主夫廛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主夫」는 「크다」·「길다」의 뜻이 있다고 한다.[20] 六矣廛의 矣字가 「주비의」 즉 語助辭이기 때문에 六矣廛과 六注比廛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며, 6大市廛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六矣廛 중에서 가장 이윤율이 높은 것은 緞廛이었다. 緞廛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급 비단(緞)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것은 線廛 또는 立廛으로 통하였다. 특히 「선」은 「立」과 뜻이 같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立廛이란 호칭을 흔히 사용하였다.

緞廛의 취급상품이 귀족과 부유층에 수요가 많은 고급 비단이었고, 이윤율이 높았기 때문에 10分의 國役을 부과하였고, 綿布廛은 銀도 취급하였기 때문에 일명 銀木廛 또는 白木廛이라 하며 9分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명주를 취급하는 綿紬廛은 8分, 紙廛은 7分, 苧布廛 6分과 5分, 內·外魚物廛은 5分과 4分을 부과하였다. 그 밖의 有分廛의 國役 부담의 예를 보면, 靑布廛은 3分, 烟草廛은 5푼, 잡화점인 床廛은 1分 내지 2分, 米廛은 3分, 雜穀廛 3分, 履廛 2分, 鐵物廛·京鹽廛·馬廛·牛廛은 1分이었다. 19세기 초 有分各廛의 國役 부담은 93分이었으므로 10分

---

20) 李能和, 『李朝時代 京城 市制』(『稻葉 博士 還曆 記念 滿鮮史 論叢』), 한글학회 『큰사전』 注比廛, 劉元東, 『韓國 近代經濟史 硏究』, 一志社, 1977년 147면 참조.

을 부담하는 縞廛은 93분의 10을 부담하였던 것이다.[21]

2. 길드로서의 六矣廛

시전은 國役을 부담하는 어용적 유통기관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禁亂廛權이란 專賣特權을 보유하게 되었다. 즉 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를 허가 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자, 즉 亂廛은 平市署가 단속하게 되어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六矣廛에 警察權을 부여하여 平市署에 협력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특권상인층으로 성장한 六矣廛 전체가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전이 廛契를 조직하여 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였다. 六矣廛이란 전매특권을 가진 6대 시전의 총칭이며, 그 人的結合이 각 廛마다 조직된 廛契이다. 이 단체가 전매권을 행사하고 亂廛을 단속하는 경찰권을 가졌던 것이다. 六矣廛에 속하는 市廛은 限定된 품종별로 예컨대 縞廛契, 紙廛契 등을 조직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契字를 빼고 縞廛·紙廛 등과 같이 略稱하였다. 그리고 廛 산하의 廛房 經營者들은 의례 길드를 조직하게 마련이므로 契字가 없어도 廛을 團體名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廛契를 전체적,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都中이라고 칭하였다. 즉 廛契는 고유명사와 합성하여 구체적 상인 단체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에 대하여 都中은 전체적, 추상적 호칭이었다.

廛契의 구성원 전체는 契中 또는 都中이라 하였고, 각 구성원(契員, 廛員)은 廛契의 규약을 준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都家의 수리비·경조금·회의비 등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 각 廛마다 都家가 있었는데 都家는 都所라고도 불렀으며, 단층 木造 기와집이었다. 都家는 반드시 各 廛舖 뒷편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廛의 이름을 붙여서 예컨대

---

21) 李能和, 앞의 논문, 金玉根, 「韓國 經濟史」 245면, 劉元東, 앞의 책 143면 참조.

布廛都家라 하였다. 그리고 都家는 廛契에 관한 사무실과 회의소(guildhall)로 이용되었고 창고가 있었다. 廛契의 임원으로는 都領位·大行首·上公員·下公員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총회에서 契員(廛員)이 선출하였다. 都領位는 大行首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되었으며, 大行首는 사무를 총괄하고 下公員은 회계를 담당하였다.[22] 廛契의 구성원은 각 시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縞廛의 예를 보면 上公員에 大行首·都領位·首領位·副領位·次知領位·別任領位 등이 있었고, 下公員에 實任·矣任·書記·書寫 등이 있었다.

大行首는 縞廛의 대표로서 廛契의 사무를 총리하며, 각 領位의 기능은 평의원과 같았다. 임원의 임기는 춘추 2기로 되어 있고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70세 이상의 別任領位와 實任 이하의 실무자에게는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각 임원은 제복인 도포를 입었다. 大行首 및 領位의 선거는 都領位가 지명한 후보자 명단을 契員에게 회람하여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 밑에 날인케 하고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였다. 선거할 때에는 사사로 순회하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즉 자기 이름에 圈點해 줄 것을 부탁했을 경우 15냥의 벌금을 부과하였다.[23]

大行首는 모든 책임을 지고 廛契를 운영하였지만 특히 契員의 진퇴를 명령하며, 상벌을 행하는 실권을 장악하였다. 선거방법은 都領位가 집행하는 座中 5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고 득점자로서 당선케 하였으며, 10개월 이상의 재임을 금지하였다. 代行首가 결정되면 취임식을 거행하였는데, 大行首가 좌중에 대하여 한번 跪拜(궤배)하면 계원들은 두 번 궤배하였다. 都領位의 임기는 종신이며, 임원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고, 매년 10월에 거행하는 財神祭를 주관하였다. 일반 계원으로서 廛契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고, 공로자에 한하여 승진,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22) 李能和, 앞의 논문, 黑正巖, 앞의 책 19, 31면 참조.

23) 李能和, 앞의 논문 및 동 논문에 수록된 「立廛完議文書」참조.

禮銀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향연을 베풀었다. 즉 大行首와 都領位에게 각각 3냥과 5냥을 바쳤고, 향연조로 2~3냥을 부담하였다.[24]

六矣廛의 길드 조직과 전매특권은 초기에는 상업발달에 있었서 긍정적 기능을 다한 면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점차 자유로운 상업발달의 질곡이 되었다. 봉건정부는 상업이 필요 이상으로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간사해지고, 기간산업인 농업에 종사해야 할 인구가 상업으로 쏠리게 되어 농업이 쇠퇴해진다는 생각으로 상업의 발달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17세기 이후 상업은 크게 발달하였다. 17세기 이후 농업과 수공업도 발달하였고, 大同法의 시행으로 商品流通이 활발해졌으며, 商人資本의 축적이 촉진되었다. 서울에서는 市廛商人의 전매특권을 침범하여 상행위를 하는 潛商이 많아졌다.

잠상이란 禁制品을 취급하는 상인을 가리키는데, 18세기에는 잠상을 비롯한 無許可 私商 세력이 관가에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17세기에 있어서는 亂廛 경영자가 주로 미천한 영세민이었으나 18세기에 와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富商大賈가 주류를 이루었다. 부상대고의 부상은 자본이 많은 부유한 상인이며, 대고는 경영규모가 큰 상인을 가리킨다.

이와같이 私商이 성장하여 亂廛을 단속할 수 없게 되자 18세기 말(正祖 10년대)에는 六矣廛 이외의 市廛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의 자유를 허가하는 通共發賣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通共發賣 조치로 私商의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고, 그 중에서도 도거리로 買占하여 판매하는 都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매점매석은 당시에 있어서 상업경영의 일반적 형태였다. 공급탄력성이 약하던 시기에 있어서 매점매석으로 치부한 상인이 많았던 것이다.

通共發賣 조치 이후에 있어서 六矣廛의 전매특권을 침범하는 亂廛이 그 이전에 비하여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예컨대, 서울의 梨峴과 七牌市場, 동대문 밖의 樓院 등지에서는 通共發賣 이전부터 都賈가 불법적

24) 「立廛完議」, 劉元東, 『韓國 近代經濟史 硏究』 157~159면 참조.

으로 內·外魚物廛의 전매품인 어물을 매점하여 밀매하고 있었는데, 通共發賣 이후에는 亂廛 행위가 더욱 성행하였다. 梨峴과 七牌의 신흥 都賈 즉 中都兒의 어물 거래량은 內·外魚物廛의 그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六矣廛의 전매특권인 禁亂廛權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894년의 甲午改革을 계기로 길드로서의 六矣廛은 법적으로 해체의 운명에 당면하였던 것이다.

Ⅳ. 開城 선주전(縮紬廛)

1. 開城의 廛契

開城은 朝鮮時代의 대표적 純粹 商業都市였다. 정치적 중심지였던 高麗時代에 비하면 人口가 격감하여 쓸쓸하기는 하였으나 朝鮮時代의 개성은 商業都市로서 생기가 있었다.

특히 朝鮮後期에는 각지에 開城商人(松商)이 경영하는 松房이 있었고, 개성출신 褓負商이 전국의 行商圈을 주름잡았기 때문에 개성은 상품유통과 금융면에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성은 규모가 큰 坐商 즉 市廛도 발달하여 각 市廛별로 廛契가 조직되고 있었다. 선주전·白木廛·靑布廛·魚果廛·衣廛·紙廛·鍮器廛·藏廛·砂器廛·儀廛 등 16개의 전통적 市廛이 개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드적 조직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서 선주전과 白木廛·靑布廛·魚果廛은 1920년대 초까지도 남아 있었다.[25]

이들 市廛중 縮廛과 白木廛은 南大門內, 靑布廛은 南大門外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적 特化가 그리 엄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엄격하여 예컨대 靑布廛은 南大門外로 정해져 위반자는 亂廛으로 취급되었다. 개성의 상업 중심지는 개성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南大門 부근의 2개 간선도로 였는데, 이 도로의 양쪽에는 廛房이 즐

25) 『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1輯, 1925年, 21면 참조.

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金融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26]

이곳에 있는 各廛도 서울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길드의 해체 이전에는 廛契를 조직하여 契員 상호간의 부조와 去來獨占權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廛契의 成立時期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837년(憲宗 3년)에는 開城三廛契(선전·白木廛·靑布廛)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 규모를 보면, 縉廛의 契員數는 17명이었고, 白木廛은 20명, 靑布廛은 37명이었다.[27] 각 廛에 속하여 개별 점포 단위로 경영하는 市廛商人은 모두 廛契에 가입했을 경우 1837년경 개성에는 비단을 취급하는 점포가 17개, 白木 점포는 20개, 靑布 점포는 37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廛契에는 서울 六矣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 都家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운영이나 기능은 六矣廛 都家와 비슷하였다. 1920년대 초에 개성 南大門 밖에 靑布廛契都家와 魚果廛契都家가 있었고, 南大門 안에는 開城商友會都家가 있었는데, 그 構造와 경영은 다음과 같다.[28]

都家의 건축양식을 보면 뜰 한 가운데 사무실 건물이 있고 倉庫와 大門 건물이 뜰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였다. 사물실 건물은 별채로 되어 있으며, 전면에 大門이 있고 창고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契員은 1칸 내지 2칸 정도의 창고 房 1개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契員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한 使用料를 받고 貸與하는 일이 있었다. 靑布廛 都家의 예를 보면, 都家의 總房數는 모두 28개였는데, 그 중에서 24개가 창고로 사용되었다. 靑布廛 契員數가 37명이었으므로 倉庫房數는 契員數보다 13개 부족하였다. 縉廛契都家도 이와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

1915年 9月에 改正된 開城 南大門內 縉契 規則을 보면,[29] 事務所는

---

26) 같은 책 14, 21, 24면 참조.
27) 같은 책 21면 참조.
28) 같은 책 26면 참조.
29) 같은 책 22, 23면 참조.

南大門 안쪽 緞廛都家에 두고, 契員의 편의를 위하여 都家를 蒐集補續하여 貨物을 保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保管業이 緞廛契의 중요한 기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緞廛契 規則은 1915年 현재의 緞廛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변화과정을 연구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내용은 緞廛契 본래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이다.

2. 길드로서의 선주전(繕紬廛)

필자가 수집한 繕紬廛 資料는 1850년(庚戌年)의 「繕紬廛立議」와 1852년(哲宗 3년)의[30] 「線紬廛立議」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드로서의 繕紬廛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限界가 있다. 즉 그 이전의 繕紬廛契 資料가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8세기 말(正祖 10年代) 通共發賣政策(부분적 길드의 해체) 이후에 이루어진 위의 資料만으로 繕紬廛契의 初期 去來獨占權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繕紬廛契는 線紬廛契라고도 하는데, 線은 繕과 音이 같기 때문에 취해진 이름이다. 繕紬廛契는 보통 繕紬廛이라 불렀다. 즉 繕紬廛은 비단과 明紬 등 각종 絹織物을 취급하는 개별적 廛房의 집합적 개념이다. 1915년에 개정된 開城 南大門內 緞廛規則과 이 때 조사된 資料에 의하면, 繕紬廛는 1836년(開國 445년) 2월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31] 그러므로 緞廛契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繕紬廛契의 역사는 길었음에 틀림이 없다.

초기의 繕紬廛(契)立議에는 禁亂廛權 즉 專賣特權 規定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1850년(哲宗 1년)의 繕紬廛立議에는 去來獨占規定이 成文化되어 있지 않다. 繕紬廛立議에 있는 강력한 길드 조직이 去來獨占權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30) 原資料에는 "咸豊 二年 · 壬子 七月新設(哲宗 2年)"로 되어 있다.

31) 前揭, 『朝鮮人の商業』, 21, 22면 참조.

通共發賣政策이 실시된 1850년 경에 있어서도 開城에는 전통적 商業의 경우, 길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縮紬廛 상인들은 廛契에 가입하여 의무를 다하고 權利를 행사하였던 것이다. 마치 서울의 縮廛의 경우처럼 엄격한 商業慣習이 있어서 契에 加入한 同業者는 絹織物의 獨占的 販賣權을 장악하고 있었고, 非契員은 縮紬廛房을 경영할 수 없었다. 즉 위반자는 亂廛으로 취급하여 상품을 몰수 하였던 것이다.[32]

縮紬廛契는 다른 지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명 都中이라 하였으며, 廛契員의 義務는 매우 다양하였다.[33] 무엇보다도 그들은 廛契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廛會(길드 총회)때 서로 욕하며 싸우거나, 푼돈(分錢)이라 할지라도 公金을 횡령한 사람, 그리고 廛契에 加入하지 않은 상인을 숨겨서 영업하게 한 사람, 廛契員이 사망했을 때 撤市하지 않고 吊慰하지 않은 사람은 契규칙에 의하며 처벌되었다. 예컨대, 총회 때 서로 욕하며 싸우거나, 發喪때 참석치 않은 경우, 非契員을 숨겨서 영업하게 한 경우에는 몰아내어 契員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푼돈을 감추어 공금을 유용한 사람이나,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한 사람은 2냥 내지 5錢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새로 縮紬廛契에 加入하려면 新參禮錢을 납부해야 했으며, 契員은 매일 2사람씩 5일 동안 계속하여 숙직을(常直) 하여야 하는데, 금품이 도난당할(闖失) 경우에는 숙직한 契員이 부담해야 했다.

縮紬廛契에는 都家 즉 별채의 창고와 사무실이 있었는데, 契員은 都家使用料를 납부해야 했으며, 만약 大都家에 비어 있는 창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都家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縮紬廛契의 시설로서 그 밖에 架家가 있었는데,[34] 동쪽 架家 4間(칸)과 서쪽 架家 6間의 임대료는 每間 5냥이었다.

廛契員은 이와같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반면에 去來獨占權과 去來介

---

32) 같은 책 24면 참조.

33) 海州「縮상廛立議」, 開城「縮紬廛立議」, 「綿紬廛立議」 참조.

34) 架家는 假家 즉 가게를 가르킨다.

入權을 행사할 수 있었고, 共同體的 相互扶助의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V. 海州 선상전(緞緗廛)

1. 선상전(緞緗廛)의 設立

光武 3년(1899년) 7월에 정해진 「緞緗廛座目」과 「緞緗廛立議」에 의하면, 19세기 말에 海州에도 開城의 緞紬廛과 유사한 絹織物商人 組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海州는 政治都市였으며, 商業都市인 開城과는 대조적이었으나, 19세기 말의 緞緗廛은 開城의 緞紬廛과 유사한 길드가 조직되어 있었다.

緞緗廛은 비단과 명주를 판매하는 市廛이다. 海州 絹織物商人 組合의 구체적 生成 時期는 알 수 없지만, 市廛商人은 일찍부터 길드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독점권을 행사하였던 것 같다.[35]

緞緗廛은 다른 市廛에 비하면 길드 조직이 늦은 편에 속한다. 「緞緗廛座目」에 의하면 오직 緞緗廛만이 시초에 都中이 없었다고 한다. 즉 海州에는 都中이라고 일컬어지는 廛契가 各廛마다 있었으나 緞상廛만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였었는데, 哲宗 14년(1863년)에 都中이 설립되었다가 6년 뒤에 해산되었고, 高宗 9년(1872년)에 다시 緞緗廛契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光武 3년(1899년) 7월에 형성된 「緞緗廛座目」과 「緞緗廛立議」는 甲午改革 이후의 것이므로 그 이전 것과 길드 독점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 자료로써도 길드적 성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35) 「緞緗廛座目」 참조.

2. 길드로서의 선상전(縕緗廛)

光武 3년(1899년)의 자료로써 初期 縕緗廛의 모습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甲午改革 이후에 있어서도 길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였다.

光武 3년의 「縕緗廛立議」는 哲宗 1년(1850년) 開城의 「縕緗廛立議」보다 49년 뒤에 형성된 것이고, 甲午改革의 영향도 있었으므로 商業의 自由는 크게 신장되었다고 생각되지만, 縕緗廛의 길드적 조직은 상당한 부분 남아 있었다.

縕緗廛契는 加入하지 않으면 海州에서 絹織物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이미 加入한 契員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어긴다든가[36] 契의 규칙을 거역하는 사람은[37] 契員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廛契에 새로 加入하려면 2년간 廛房에서 경영 기법을 배운 다음 加入이 허가되면 140냥의 加入金을 바쳐야 했다.

縕緗廛契에는 다른 廛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都家가 있었는데, 창고와 사무실을 경비하는 숙직비 즉 直料錢을 연 140냥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廛契의 우두머리인 領首主의 보수로 細苧布 1疋과 명주 1疋, 그리고 4월과 10월의 遞契日에 각각 30냥씩 지급하였으며, 別任所任의 연간 보수는 40냥이었다.

廛契는 보통 契字를 생략하여 호칭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縕緗廛은 海州 絹織物販賣業者의 集合概念임과 동시에 縕緗廛契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海州에 있어서도 廛契의 보통명사로서 都中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였다. 각종 契가 보급된 당시에 있어서 廛契의 산하 단체적 下位 契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縕緗廛이란 고유명사와 都中이란 보통명사를 병용하였다. 海州 縕緗廛의 경우는 그 산하에 慶吊·慰問을 목적으로 하는 信誼契가 조직되어 있었다.

---

36) 이것을 犯上이라 하였다.

37) 패역지원(悖逆之員)을 의미한다.

길드로서의 縮紬廛契는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商業資本의 축적과 商業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甲午改革 이후의 近代化 過程에 있어서는 상업의 자유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開城의 縮紬廛과 마찬가지로[38] 海州 縮紬廛은 자유로운 근대상업의 발달에 거역할 수 없었고, 그 길드적 성격을 20세기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청산되었거나 근대적 친목단체로 개편될 수 밖에 없었다.

Ⅵ. 結　　言

이상에서 開城 縮紬廛과 海州 縮紬廛을 중심으로 都中에 관하여 考察하였다. 필자가 수집한 縮紬廛 및 縮紬廛 資料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우리나라의 商人組合 硏究 資料로서 중요한 것이며, 이 資料에 의하여 지금까지 불명하였던 都中의 槪念과 性格을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었고, 甲午改革 이후에 있어서도 지방 도시에 商人 길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고 잔존해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의하여 都中을 六矣廛의 商人 길드라는 學說은 수정되어야 한다. 都中은 원래 契員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모든 商人組合의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고유명사로서는 縮廛契와 같이 契가 사용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都中이란 用語는 誤用되기 쉬운 것이다.

都中은 市廛뿐만 아니라 褓負商과 客主의 團體에도 보통명사로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범위가 넓다. 그런 의미에서 都中에 관한 종합적 硏究가 課題로 남아 있다.

---

38) 1915년에 개정된 開城 縮廛契 規則은 근대적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上揭, 『朝鮮人の商業』, 22, 23면 참조.).

而山 李奉寧의 生涯와 經營理念

朴 載 錄*
方 漢 午**

目 次

Ⅰ. 머릿말
Ⅱ. 生涯와 業績
1. 第1期 : 企業家精神의 孕胎期(1924~1949)
2. 第2期 : 商業資本家期(1950~1962)
3. 第3期 : 產業資本家期(1963~1978)
4. 第4期 : 企業承繼와 多角化期(1979~)
Ⅲ. 企業承繼過程의 特徵
Ⅳ. 經營理念
1. 人間中心主義
2. 分配觀
3. 消費者中心主義
4. 創意精神
5. 節約精神
Ⅴ. 맺음말
參考文獻

Ⅰ. 머 리 말

이 論文은 쌍방울 그룹의 創業者인 而山 李奉寧의 生涯를 고찰함으로써 기업가로서의 經營理念을 밝히려는 것이다.

좀발트는 유럽의 近代資本主義 發達史를 형성한 국민의 계층을 분석하여 기업가를 다음의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의 기업가 유형은 權力側에 선 「위로 부터의 기업가」이고, 제2의 유형은 市民階層에서 생성한 「밑으로 부터의 기업가」이다. 제3의 유형은 사회에서 소외

* 圓光大學校 經營大學 敎授
** 圓光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博士課程

된 자들 중에서 기업가로 승격한 사람이다.[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층계급 출신자들로서 그들의 토지 자본을 기초로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한 후 零細 小規模 自營業을 거쳐 企業創業의 길을 걷는 유형과 하류계급 출신들로서 행상·점원·막노동으로 출발하여 零細者營業을 거쳐 企業創業의 길을 걷는 유형이 있다.[2)]

막스 웨버는 資本主義精神(企業家精神)을 勤勉(industry), 節約(frugality), 愼重(prudence) 등의 德性을 실천에 옮기는 禁慾的 倫理的 態度와 이러한 태도 아래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職業倫理에 관한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다.[3)]

쌍방울 그룹의 創業者 李泰寧은 貧農 출신으로 국민학교를 나온 이후에 점원·막노동·행상으로 출발하여 大規模企業集團으로서 국내 40대 그룹중 하나인 쌍방울 그룹의 총수가 된 「밑으로부터의 기업가」이며, 부르조아적 德性인 勤勉과 節約 및 冒險的 精神과 商人的 手腕을 무기로 기업가가 된 본래 의미의 資本主義的 기업가중의 한 사람이다.

李泰寧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勤勉과 節約이 체질화되었고 메리야스업계의 動搖하는 浮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자·레저 스포츠까지 기업 변신을 해가는 李泰寧과 쌍방울 그룹의 생존과 발전은 이윤추구라기보다는 급변하는 정치·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상황에 맞서 몸부림치며 타개하는 適者生存의 드라마였다.

解放 後의 벼락부자적인 民族企業으로서의 財閥의 탄생은 대부분

---

1) 黃明水, 企業家史硏究, 檀國大學敎出版部, 1976, p. 34.

2) 홍덕률, 「한국 대기업의 자본 축적 과정과 계급 지배에 대한 실증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한국 사회학 연구」 제9집, 1988, p. 101.

3)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 1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1920, Bd. I. SS. 17~26.

1953년의 휴전 이후에 창설되었으며, 歸屬財産의 拂下와 외자도입 과정에서 각종의 특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경우 정치권력자나 고급 특권관료의 연고자(학연, 혈연, 지연)나 혹은 그들과 결탁한 특정인이 주로 이 혜택을 보았고, 빈농 출신이나 저학력자, 권력자와의 연분이 없는 李秉寧과 같은 기업가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어떤 면에서도 시대적인 특혜를 얻을 소지가 없었다. 따라서 쌍방울 그룹을 創業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외롭고 힘겨운 自手成家 過程이었기에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쌍방울이 創業年度로 삼는 1963년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外資導入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기업 활동이 급속히 증대하는 시기이다. 이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차관형식으로 도입됐으며, 이 계획을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借款經營層이 형성되고, 借款企業인 新興財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4]

그러나 쌍방울은 外資導入등의 무리한 방식으로 企業擴張을 피하지 않았다. 때문에 견실한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創業者의 經營哲學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봉령은 매사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가고자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매리야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축적된 자금을 토대로 능력에 맞는 사업확장을 꾀했을 뿐, 사업이 호조를 보인다 하여 결코 무리한 사업확장을 꾀하지 않았다. 많은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도 비교적 순조로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견실한 경영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회사의 創業期가 갖는 특성은 그 創業者의 人生觀 및 經營觀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형성, 발전과정에 있어 社員들에게 전수되는 無言의 價値觀이자 그 기업의 社風이 된다는 점에서 創業者 개인의 차원을 훨씬 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 쌍방울 그룹은 創業 1세의 保守性과 創業 2세의 進取性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4) 朴載錄, 經營史論, 裕豊出版社, 1987, p. 122.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과 같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保守的이었던 李秉喆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쌍방울그룹을 키울 수 있었는지 그의 生涯와 企業家活動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李秉喆의 生涯와 業績을 개관하고 經營理念의 本源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Ⅱ. 生涯와 業績

企業家의 生涯와 업적을 고찰하는 이유는 成長過程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와 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의 흐름과 生涯와 업적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기업가적 기질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기업가는 다른 기업에서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기회를 간파한다. 기업가는 항상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반응하며, 이를 機會로 삼아 개척한다.[5]

이와 같은 기업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經濟的 要因과 非經濟的 要因으로 구성된다. 經濟的 要因으로는 시장인센티브(market incentives)가 있어야 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非經濟的 要因으로는 物資不足이나 供給不足 現象과 같은 市場機會(market opportunity)가 존재해야 하며 社會的移動(social mobility)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울 그룹의 創業者 李秉喆의 生涯와 企業家活動을 (1) 企業家精神의 孕胎期 (2) 商業資本家期 (3) 產業資本家期 (4) 企業承繼와 多角化期로 구분하여 經濟的要因과 非經濟的要因을 밝히면서 그 업적을 살피기로 한다.

---

5) Peter F.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rship*(New York : Harper & Row, 1986), pp. 28~28.

1. 第1期 : 企業家精神의 孕胎期(1924~1949)

李奉寧은 1924년 2월 5일(음력) 全羅北道 完州郡 草浦面 松田里에서 延安 李氏인 부친 李永玉과 모친 崔炳玉 슬하의 5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先代는 원래 完州郡 九耳面 일대에 일가를 이루고 살았으나 증조부 때부터 草浦面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李奉寧의 집안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농토를 소유하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중농의 집안이었으나 부친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농지를 팔고 先山까지 처분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小作農으로 전락하고 말았다.[6]

李奉寧이 태어난 1920년대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離農者와 도시 빈민의 수가 격증하여 실업자수는 대단히 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1930년에 有業者가 1,100만명이었는데 비해 無業者가 870만명에 달했다는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을[7] 정도로 그의 幼年時節은 생활고가 극심하게 어려웠던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1934년 4월에 송전리에서 약 5리 떨어진 초포에 초포국민학교(소학교)가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봉녕은 10살의 나이로 33명의 첫 입학생중 한명이 되었다.

그는 급우들에 비해서는 어린 나이였지만 총명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였고 특히 셈본 공부를 잘해 일본인 선생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급우들의 부러움을 샀고 1939년 3월에는 제 1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 해 7월 일본은 「國民徵用令」을 내렸고, 9월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으며, 10월에는 조선에도 「國民徵用令」을 공포하였다.

국민학교를 갓 졸업한 1939년 겨울, 채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16세의 李奉寧은 얼마되지 않는 小作地에 가족 모두가 매달릴 수 없는 암담한 현실 하에서 외숙이 살고 있는 함경북도 성진으로 밥벌이를 위해 먼 행로를 떠났다.

---

6) 李奉寧, 쌍방울 30년사, 쌍방울, 1993, pp. 68~69.

7) 金兌基, 勞使紛糾硏究, 한국노동연구원, 1991, p. 23.

성진에는 세 분의 외숙이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둘째 외숙과 함께 공사판을 전전하며 외숙의 페인트칠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1년을 보냈다. 그 후 책방을 하는 막내 외숙의 집으로 옮겨 서점의 점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페인트칠하러 다니는 일보다는 한결 쉽고 몸도 편했고 한가로운 시간 속에서 소설책과 위인전 등 많은 책을 읽어 이 기간이 독서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외숙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은 밥걱정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더부살이여서 말이 서점 점원이지 조카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로 편안히 있다는 사실이 점점 괴롭게 느껴졌고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서 늘 벗어나기 어려웠다.

2년여의 점원생활을 청산하고 일이 힘들기는 해도 돈벌이를 위해 함경도 아오지 탄광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때가 1942년 그의 나이 19세 되던 해이다. 아오지에서 발을 들여놓은 곳은 석탄으로 가솔린을 만드는 회사인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였다. 이 회사에 들어와 처음에 한 일은 급사로서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직업이었지만 작은 돈 이나마 혼자의 힘으로 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급사생활을 하다가 現場勤務를 自願했다. 어둠침침함 현장은 석탄가루가 날리고 기계의 소음과 기름냄새가 항상 찌들어 있어 근무조건은 매우 劣惡했지만 현장에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이 붙어서 급사보다는 나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오지에서의 생활이 그런대로 정착되자 고향에 있는 동생인 昌寧을 이 곳으로 불러 왔다. 형제의 만남은 아오지에서의 생활을 더욱 활기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들은 틈이 날 때마다 장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거듭하였다.

동생과 궁리를 한 것은 두만강 건너 滿洲에 가서 옷가지 등의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자주 왕래하는 것은 불순분자로 의심받

을 소지가 많은데다가 물건을 가져 간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휴일에 여러 켤레의 양말과 옷가지를 두텁게 껴 입고 두만강을 건너가 이것들을 벗어 파는 방식이었다.

형제는 이들 품목을 구해서 두만강을 건너가 그곳의 中國人들과 朝鮮人들을 상대로 작업복, 양말, 운동화 등을 팔았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월급외에 약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8]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가지 않았다.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朝鮮에 1943년에 3월에 徵兵制를 공포했고, 1944년 2월에는 전면적인 징용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李奉寧은 徵兵通知를 받고 1945년 3월에 入隊하여 鎭海에서 海軍으로 복무하다가 그 해 8월 해방과 함께 무사히 고향에 돌아 올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노동도 하고 장사도 해 보았지만 해방 직후의 들 뜬 社會雰圍氣와 1936년의 小賣物價指數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1945년 1월에 238이었다가 동년 8월에는 3,359로, 1946년 8월에는 17,945, 1947년 8월에는 39,665로 계속 폭등하는[9] 經濟構造에서는 어떤 일도 안정된 여건에서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해보고자 하는 일들이 신통치 않자 부모가 계시는 고향에서 농사나 짓겠다고 생각하고 형님 밑에서 당분간 농삿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23세 되던 해 가을(1946년 10월 21일) 집안의 중매로 당시 완주군 삼례면 성실리에서 살던 평범한 중농 집안의 1남 5녀 중 셋째인 金福來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은 家長으로서의 責任感에서 오는 장래에 대한 不安感이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李奉寧은 형님이 짓고 있는 소작지의 일부를 떼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형님으로부터 이 요구가 거절되자, 다시 한번 현재의 삶에 깊은 회의를 느꼈으며 농촌생활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데 그때가 1949년 겨울이었다.[10]

---

8) 李奉寧, 前偽書, pp. 72~79.

9) 金兌基, 前偽書, p. 30.

여기서 6·25 이전 까지의 인생 역정은 李秉寧이 商業資本을 형성할 수 있는 企業家的 資質의 孕胎期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第2期 : 商業資本家期(1950~1962)

李秉寧은 친지의 소개로 전주에서 모처럼 일자리를 얻었으나 안전한 직장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봉급도 워낙 적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마침 이리에 살고 있는 처남이 함께 장사를 해보자고 권유하였다. 마침 마땅히 갈 곳도 없던 李秉寧 夫婦는 1950년 봄에 이리로 이사를 하였다.

처남은 당시 근방의 시골 아낙네 들이 집에서 직접 짠 무명베를 사다가 이리 장날에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 李秉寧은 우선 처남을 따라 다니며 장삿일을 익혔다. 이때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하여 주로 全北 高敞에서 물건을 사서 인근 장을 찾아다니며 처남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일종의 中間商人 役割이었다.

호영진은 6·25는 韓國人의 성격을 積極的·競爭的으로 만들었고 잿더미 위에서, 避難生活의 결핍에서, 무에서 유를 찾겠다는 生存競爭은 실제로 무수한 創造的 企業家와 企業家精神을 孕胎시켰고, 그 것이 1960년대 초 정부의 개발야망과 접합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낳은 위대한 원동력의 몫을 해낸 것으로 보고 있다.[11]

어렸을 때의 가난과 아오지 생활, 해방 후 정치·경제의 불안속에서 貨勞動이나 장사의 시도 등도 李秉寧의 創業과 企業家精神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지만 호영진의 지적대로 6·25는 李秉寧의 企業家 資質 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6·25는 생활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을 위기를 몰고 왔다. 李秉寧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생계의 위협을 더욱 뼈져리게 느끼고 있었고 전쟁 중이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찾아 시작한 일이 양말 장사였다.

---

10) 李秉寧, 前偶書, pp. 82~84.

11) 호영진, 한국인의 가치관-감부공화국, 동아출판사, 1993, p. 42.

처음에는 양말을 사다가 장날에 파는 방식이었으나 안면을 익힌 生産者들이 장날에 팔아 달라고 맡겨 놓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로 양말을 구입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 이 물건들을 확실하게 팔아주고 약간의 利益만 남기면 되는 中間商人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되었다.

이 때 양말 露店商을 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장사의 원칙을 터득하였다. 하루 이틀 장사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린 때였던 만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生産者와 消費者 사이에서 적절한 好感과 信用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더구나 생산자들이 물건을 맡겨왔기 때문에 이봉령으로서는 물건 구입을 위해 따로 자본이 필요치 않았다. 薄利多賣를 원칙으로 하여 생산자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에 1할의 이익만을 남기고 팔았으므로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 생산자들은 물건을 직접 파는 것과 같은 값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었다. 또한 물건을 파는 즉시 생산자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였다. 즉 장날에 生産者들이 양말을 맡기고 나서 장을 보는 동안 그 물건을 팔면 즉시 現金化시켜 주었다. 생산자들로서는 대단히 믿음직한 販賣代理人으로 인정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한 양말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더구나 약속한 날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금을 지불하는 中間商人이 있다는 소문이 생산자들 사이에 전파되면서 부근의 물건들이 그의 露店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봉령의 노점상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양말들이 집중됨으로써 湖南地域의 家內生産 양말 流通本部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생산자들에게 실(면사)을 사주어 양말을 짜 오게 하고 이를 팔았다. 이는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15세기에 시작되어 16세기에 널리 성행하던 일종의 轉貸制 形態의 生産販賣 體制였다.

장삿일이 점점 바빠짐에 따라 부인은 물론이고 아오지에서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창령도 이 장사에 합세시켰다. 양말장사를 시작한지 3년만인 1954년 3월에 이리파출소 앞에 10여평의 점포를 얻어 「兄弟商

會」를 열었다. 이봉령의 나이 만 서른살 때였다.

노점상 시절에 취급하던 양말 외에 잡화도 취급하면서 상점의 구색을 갖추었다. 상회는 날로 번창하여 1년뒤인 1955년에는 점포를 30평 규모로 확장하여 근처로 이전하면서 내의류를 중심으로한 메리야스류까지 취급하였다.

메리야스 도매를 주업으로 하게 되자 과거에는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양말 생산자들에게 최대한의 信用과 誠實로써 물건을 팔아주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성실한 장사만 하면 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生産企業과의 거래에서는 공장의 생산 계획과 자체 사정에 따라 제품이 출하되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얻어 오기가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잘 팔리지 않는 품목을 떠맡기도 하였다.

李秉寧은 오랫동안 직접 물건을 팔아 왔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메리야스업계에서는 전쟁 이후의 復舊事業이 한창 진행되면서 부족한 國民衣料品 생산에만 몰두했을 뿐, 품질의 조악함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때 그는 내 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전개시켜 나갔다.

메리야스 제조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주위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형제상회의 장사가 잘 되는데 소규모 메리야스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도산하는 현실인데도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위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봉령은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기존 업체의 여러가지 허점에 대해 익히 검토하였으므로 승부를 걸어 볼 만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형제상회의 든든한 기반이 있기에 당분간의 고전이 따르더라도 그 기간은 길게 가지 않으리라는 자신도 있었다.[12]

---

12) 李秉寧, 前偶書, pp. 85~106.

이는 맥크리랜드의 「企業家는 成就欲求가 강하며,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危險(합당한 위험이지만)을 선호하며, 이 위험은 더욱 많이 노력하도록 자극한다」는 말대로 李秉寧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2년 9월 동이리역 부근에 대구에서 파산한 메리야스공장에서 구입한 중고기계를 가지고 삼남메리야스공업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았다고 해서 판로가 훤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형제상회를 통해 팔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었으므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했고, 이는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길밖에 없었다.

삼남메리야스는 공장 가동과 제품 시판 후에도 실질적인 영업 성과가 미미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兄弟商會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商業資本家期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삼남메리야스공업사를 설립한 1962년까지는 상업자본을 축적하여 産業資本家로의 길을 가게하는 쌍방울 創業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李秉寧이 산업자본가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계기로는 전라북도 이리를 배경으로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한데다가 때마침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이는 판매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李秉寧은 이 機會를 포착하고 이용하여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므로서 오늘날과 같은 大規模企業集團의 총수가 될 수 있었다.

3. 第3期 : 産業資本家期(1963~1978)

이병령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먼저 회사의 이름부터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雙寧纖維工業社」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형제가 이루어낸 회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형제를 의미하는 雙字와 秉寧, 昌寧의 이름 끝자인 寧字를 조합하여 회사의 상호를 만든 것이다. 오늘날 쌍방울 상호의 원조인 셈이다. 1963년 3월 1일 「雙寧纖維工業社」라

는 변경된 상호의 간판을 걸고 출발했으며 이날을 쌍방울의 創業日로 보고 있다.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서게 되자 동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965년 겨울 동생은 형제상회를, 李泰寧은 쌍녕섬유공업사를 각각 운영하게 되었다. 동생과 사업을 분할하고 나니 동생의 갈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과 그 동안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한가지 사업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는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봉령은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경영에 임하였다. 1966년이 되면서 먼저 자신의 숙소를 공장 옆 직원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 당시 외지에서 온 기술자와 직원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 근처에 기숙사를 지어 사용하였다. 이봉령은 이곳에서 직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品質向上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종업원들에게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3천만 국민이 입게하자」고 독려하였다. 이는 그가 품고 있던 사업가로서의 원대한 목표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안할 수 있었던 공동의 꿈이었다.

그러나 호남지방만을 겨냥한 시장으로는 기업의 발전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서울과 부산의 낯선 지역에 쌍방울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판매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제품 광고를 시도하였다. 1967년경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진입하였다. 그것은 쌍방울표 메리야스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제품으로 등장하고 전국적인 시장 형성의 실마리를 잡은 데서 기인했다.

이봉령은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萬國博覽會를 관람하러 갔다가 일본 메리야스업계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모로 큰 자극제가 되었다. 수출 상담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무산되었지만, 일본 메리야스 생산업체를 돌려 본 후 品質改善을 위한 의욕에 다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종업원들과 더불어 품질 고도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당시 국내에서의 판매 실적은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이봉령은 판매 자체보다도 최고의 품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자신과 종업원들을 독려했다. 그렇게 2년여를 노력한 끝에 1972년에는 다시 견본품을 들고 일본을 찾아갔을 때는 품질을 인정하여 그해 상반기부터는 일본 시장에 수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쌍녕섬유는 일본 진출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품질 수준을 갖춘 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주로 內需市場 공략에 힘을 쏟았다.

이리 공업단지로 공장 이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72년 6월 7일 쌍녕섬유공업사는 상호를 雙寧纖維工業株式會社로 변경하고, 1977년 3월 25일에는 오늘날과 같은 (주)쌍방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끊이지 않는 면사파동을 타개하기 위하여 1976년에 방적공장 건설을 시작하였고, 紡績部分은 사업 여하에 따라서는 큰 규모로 성장할 수도 있었으므로 雙寧紡績株式會社라는 獨立法人體로 운영하였다.

1978년 전후로 企業擴張과 새로운 系列社의 편입이 나타났다. 선일섬유와 영일섬유, 동일섬유, 이도산업, 전북관광개발 등이 새로운 계열사로 등장했다. 영일섬유와 전북관광개발(덕원관광개발의 전신), 이도산업(쌍방울 쇼핑의 전신)은 우연한 기회에 투자하게 되어 인수, 또는 설립되었다. 쌍방울의 보수적인 경영방식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쌍방울의 계열 기업 확대는 사업이 채 정상화되기도 전에 맞은 不況은 이들 기업의 진로를 어둡게 했다. 임가공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선일섬유, 영일섬유, 동일섬유 등이 모두 그러한 상황에 해당된다. 판매여건의 악화는 생산의 停滯로 이어졌고,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設備過剩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유통업 진출이라는 취지에서 1978년에 설립된 이도산업(주) 역시 불황의 도래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적자로 인한 經營壓迫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李寧寧은 創業 2세에게 經營權을 점차로 승계시키므로서 創業家族의 役割分擔을 시작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시도하며, 전국

으로의 市場擴大와 企業多角化를 위하여 1979년 12월 1일 본사를 이리에서 서울로 이전한다.

쌍방울의 創業期의 특성은 무엇이고 가치있는 유산은 무엇인가. 무명의 메리야스업체를 국내 굴지의 업체로 탈바꿈시킨 原動力은 어디에 있는가. 1963년의 메리야스 제조업 입문과 그 후의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전한 자본 축적 과정을 통해 꾸준하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쌍방울의 資本의 源泉은 형제상회를 통해 축적된 상업자본이었고, 그보다 멀리 거슬러오르면, 創業者가 거의 무나 다름없는 노점상에서 출발하여 유를 창조해 나간 자수성가의 과정에서 얻어졌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정에는 어떤 외부적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을 확대시켜 나간 노력만이 있을 뿐이었다.

初期 資本形成段階에서는 商人的인 勤勉性에 의해서, 그리고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 단계에서는 품질개선과 시장확대라는 기업가적인 안목과 자질에 의해서 성공적인 資本擴大가 이루어진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 형성 과정에는 초기부터 부정적인 측면을 간직한 경우가 많았다. 일제시대에서 이월된 귀속 재산 불하 과정에서, 혹은 1950년대의 수입원료의 배정 및 대충자금 운용의 특혜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된 1960년대에는 소위 부정축재에 대한 정리가 변질을 거치면서 특정 재벌, 특정 지역 중심의 새로운 재편의 과정에서, 기업 및 기업가의 내재적인 역량 이상의 資本蓄積 및 성장을 가능케 하는 外部的要因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방울은 매우 고독하고도 우직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며 성장해 왔다. 특혜를 기대할 여지도 없었고, 따라서 성장의 속도는 느렸지만 기업의 내용은 매우 알차고 건실했다.

李泰寧은 어떤 가문의 배경도 특정한 연줄도 후광도 없었다. 그의 성격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

았다.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장사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일단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는 혼신의 힘으로 부딪혀 나갔다. 資本主義 精神의 진수라 할 기업가의 勤勉性과 創造的인 開拓精神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초기자본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건실성이 그 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는 전통이 된 것이다.

4. 第4期 : 企業承繼와 多角化期(1979~)

우리나라 대자본가는 長子承繼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경영학 혹은 기타 상경 계통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와 단기간의 급속한 승진과정을 거쳐 경영권을 인계받으므로서 階級地位 承繼過程을 밟게 된다.[13] 李秉寧 역시 다른 대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장자승계의 과정을 밟게 한다.

李秉寧의 長子인 李義詰은 1954년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5월에 쌍녕섬유에 입사하여 영업부와 생산부, 판매촉진부, 무역부를 거쳐 기획실장의 자리에서 1979년 6월 7일 사장에 취임하고 이봉령은 회장이 된다. 이의철의 사장 취임은 그간 보수적인 경영방식으로 알려져 있던 쌍방울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때부터 李秉寧의 보수성과 이의철의 進取性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쌍방울이 그룹 규모로 변화해 간다.

쌍방울은 메리야스 생산에 소요되는 고품질의 면사가 필요하였고, 사종 생산은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설립한 쌍녕방적은 출범시의 예상과는 달리 독자적인 운영이 사실상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전망도 밝지 않아 1981년 2월 26일부로 쌍녕방적(주)를 (주)쌍방울에 흡수·합병하였다. 쌍녕방적의 흡수 합병을 계기로 별개 법인으로

---

13) 이현승, 「한국 대자본가의 형성 및 구조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8집, 문학과 지성사, 1987, p. 319.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던 공통비용의 절감, 면사 생산과 메리야스 생산이 일관성을 갖는 통합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쌍방울 제품은 1986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었다. 수출 국가도 미국·캐나다·중동·일본·홍콩 등 10여 개 국으로 확대되었다. 수출 품목도 편직 내의류의 직수출 외에 원사의 로칼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外衣類 제품도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6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 1년동안 총 2천 249만 6천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여 1987년 11월 30일 수출의 날에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그 후, 매년 3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1987년 12월 30일 〈덕유산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쌍방울이 선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구심을 표시했다. 기존의 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왜 뛰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설혹 사업의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과연 쌍방울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뭇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만 3년 뒤인 1990년 12월 스키장 1백 30만평, 골프장 26만 5천평, 집단 주거 시설지 65만여평의 국내 최대 레져 스포츠 단지인 무주리조트를 개장하였고 오는 1997년의 冬季 U大會 개최지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95년 北韓의 삼지연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은 99년의 동계아시안게임과, 2006년 동계올림픽을 이곳에서 개최한다는 목표아래 혼신의 힘과 정성을 기울여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95년 이후 이 대역사가 마무리되면 자산 규모면에서 무주리조트의 쌍방울개발이 그룹계열기업 중 최대 규모로 떠오르게 된다. (주)쌍방울과 쌍방울 개발이 쌍방울그룹을 2천년대 국내 굴지의 그룹으로 밀어올리는 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당시 쌍방울그룹 매출액인 1천6백 70억원을 훨씬 넘어선 2천5백억원이 무주리조트에 투입됐다. 쌍방울그

룹으로서는 사활을 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쌍방울그룹은 최근 들어 또 다른 변신을 위해 무선호출기사업에 뛰어들어 92년 전북지역 무선호출기 사업자로 선정됐다. 계열사인 동일섬유등을 내세워 전북지역 무선호출기사업에 나선 쌍방울은 이로써 또 하나의 「작은 변신」을 이룩했다. 쌍방울은 이를 기반으로 전자통신분야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4]

1991년에 들어와 쌍방울 그룹으로서의 새로운 위상 정립에 따른 계열사의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진행되었다. 사업 영역이 급속히 확대돼에 따라 그룹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1991년 그간 이봉령의 차남인 이의종에게 경영을 전담시켜 별도의 韓鮮 系列로 분류되었던 그룹 수출입 창구인 (주)한선은 쌍방울상사로, 전화기 생산업체인 한선전자통신(주)이 쌍방울전자로, (주)한선엔지니어링은 쌍방울엔지니어링으로, 이도백화점은 쌍방울쇼핑으로 변경하는 등 商號를 각각 「쌍방울」의 이름으로 통일시킨 것을 우선 중요한 변화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룹의 진용이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삼남인 이의석은 쌍방울 비서실, 쌍방울개발을 거쳐 1991년 7월 22일 유아복 전문업체인 (주)쌍방울베베(종전 쌍령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어 1992년 4월에는 포장 전문업체인 (주)화성실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렇게 하여 쌍방울그룹은 1990년의 이의철의 부회장 취임에 뒤어어 1991년 이의종, 이의석의 그룹 내 역할 분담을 통해 創業 1세인 이봉령과 2세들인 創業家族은 향후 그룹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즉 所有創業者에게서 過渡經營層으로 일단 과도기적 승계과정을 거쳐서 2세가 계승하는 방식으로 家族企業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승계방법[15]을 채택한 것이다.

---

14) 李 薰, 쌍방울그룹 이봉년 회장, 섬유에서 전자·레져스포츠까지－경영혁신 박차, 2001년의 企業經營, 內外經濟新聞社, 1993, p. 281.

쌍방울 그룹의 매출실적은 5천억원에 달한다. 매년 20% 가량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95년 이후 무주리조트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그룹 매출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당히 국내 굴지의 그룹사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 그룹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16]

쌍방울 그룹은 민간문화와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社會的 貢獻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동호회 성격의 여성 오케스트라단으로 시작하여 연1회의 정기 연주만을 해 오던 음악 애호 단체로서 아마튜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압박으로 해체의 위기에 처했으나 쌍방울의 지원을 받아 1987년부터 남녀 혼성 오케스트라단으로 재편되고 명칭도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변경하면서 직업 오케스트라단으로 변신하였다. 서울심포니는 쌍방울이 연간 5억원의 자금 지원을 하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예술 활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적인 관계를 맺었다.

쌍방울은 스포츠팀의 육성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 최초로 결성된 팀은 1978년 5월 22일 창단된 궁도팀이었다. 궁도의 저변 확대를 기한다는 목적에서 창단되었으나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이 둔화되자 결국 1986년 12월에 해체되었다. 궁도팀에 이어 1987년 1월 20일 육상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육상팀은 팀 창설 후 착실한 훈련을 거듭하므로써 소속 선수들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89년 9월 2일에는 (주)쌍방울레이더스가 설립되어 제8구단인 쌍방울레이더스 야구팀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전북 지역 연고팀의 신설을 결정한 KBO와 기존 구단에서도 난항을 겪던 신생팀 창단 문제가 결정되기에 이르렀고, 한국 프로 야구의 8번째 구단으로서 쌍방울레이더스는 1990년 3월 31일 창단식을 가졌다.

---

15) C. R. Christensen, *Management Succession in Small and Growing Enterprises*(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53).

16) 李 薰, 前偽書, p. 282.

또한 무주리조트의 사업에 맞는 동계 스포츠팀으로 1991년 12월 17일에 빙상팀을 창단했다. 이로써 민간문화와 체육 진흥 등의 활동 지원에 나섬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이미지 재고를 통한 촉진활동을 연계시키고 있다.

Ⅲ. 企業承繼 過程의 特徵

기업승계는 조직의 지속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必然的 과정이다. 기업이 하나의 조직체로서 수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所有權과 經營權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근대적 모습으로 형성·발전되어온 한국기업들도 전반적으로 創業 1세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 섰으며, 이미 적지 않은 기업들이 기업승계를 완료하였거나 장래의 승계과정을 구상하고 있는데[17] 쌍방울의 경우에도 제2세로 승계하는 과정중에 있으며, 이는 創業主의 의지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李奉寧은 쌍방울 그룹의 회장으로서 기업활동중에 있으므로 그의 經營理念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업승계과정을 아울러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쌍방울은 1979년 이후 이의철이 중심이 되어 토탈패션업체로 의욕적인 변신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쌍방울은 레저 스포츠 산업을 향한 또 다른 야망을 불태워 가고 있었다.

이같이 쌍방울의 기업 변신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봉령은 가속화되는 회사의 성장 구도에 맞는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진입한 쌍방울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이의철 사장에게는 무주리조트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기로

---

17) 趙東成·李智煥, 韓國財閥의 企業承繼類型이 多角化戰略에 미친 영향, 經營學 硏究 제22권 제2호, 韓國經營學會, 1993年 6月, pp. 121~122.

결정했다.

젊은 나이에 쌍방울 경영 일선에 참여했던 이의철 부회장은 부친인 이봉령 회장과는 다른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쌍방울이 새로 시도한 모든 도전의 역정 뒤에는 장남인 이의철의 執念과 冒險精神이 담겨 있다.

「집념 없이는 도전 없다」는 자신의 말대로 이의철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집념을 보여주었고, 쌍방울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 보수적인 쌍방울 경영에 획기적인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創業 2세인 이의철의 사고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은 기존체제에 대한 마찰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외형 신장과 사업 다각화에 따라 1990년도에 들어와 경영층에 큰 변동이 있었다. 경영의 專門化를 기하기 위해 부사장으로 있던 申啓均을 1990년 8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선임하였고, 그 동안 쌍방울 경영 일선에 있던 장남 이의철은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장남에 뒤 이어 차남 이의종과 삼남 이의석이 그룹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 인사는 쌍방울의 방대해진 외형과 전문화된 사업 영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 분담을 기하는 동시에, 경영의 중심이 쌍방울 단일회사에서 그룹 차원으로 확대된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財産相續 方式 즉 불균등하지만 분할 상속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재벌은 분할되어질 계기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의 주식소유와 경영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다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2세중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분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承繼 類型은 單獨型 血族承繼, 分離刑 血族承繼, 專門經營人 承繼로 대별된다.[18] 쌍방울 그룹의 기업승계 유형은 분리형 혈족 승계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승계자의 우선 관심사로서는 統合性 喪失을 극복

18) 趙東成 · 李智煥, 上偶書, pp. 130~132.

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분리부문과의 관계정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으로 쌍방울 그룹은 消極的인 多角化戰略을 구사하여 本業型 내지 關聯型으로의 事業進出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무주리조트도 결국은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메리야스 제조업에서 시작한 사업영역은 주력기업은 장남인 이의철에게, 여타의 기업은 차남·삼남등에게 분할하여 다각화하는 기업승계 과정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스토우(Rostow)는 企業家 家庭의 세대간의 변화를 조사했다. 그는 첫번째 세대는 富를 추구하고, 다음 세대는 威信(prestige)을, 세번째 세대는 일반적으로 藝術(art)과 美(beauty)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19] 일본 학자 핫도리(服部民夫)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3대 이상 계속된 오랜 기업이 아직은 드물어 가족·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특징을 이루고 있어서[20] 혈연이 소유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제 2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그룹의 威信을 추구하여, 그룹 확대와 발전 가능성이나 知面度가 높은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經營理念

經營理念은 인간의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한 제도로서 기업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경영자의 신념체계로서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제시하여 주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 할 수 있는 準據體系를 마련하여 준다. 經營理念은 (1) 變化 創造的 機能 (2) 企業活動의 正當化 (3) 役割葛藤의 解消 (4) 組織化의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21]

---

19) Wilken, *Entrepreneurship*, p. 20.

20) 服夫民夫, 「韓國經營發展」(文眞堂, 東京, 1988), pp. 120~139.

1. 人間中心主義

기업활동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누리며 생활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이를 충족시켜 줄 때 보람찬 일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일터에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봉령은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면에 초점을 둔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뉘우칠 줄 알고, 최소한 자기일에 책임을 질 줄 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봉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봉령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비록 한두가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찾아 계발시키며, 단점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勞使和合의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 기업이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하나로서 항상 분규가 끊일 날이 없었던 섬유, 메리야스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쌍방울의 노사관계는 이례적이라 할만큼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쌍방울은 회사설립 당시 후발업체로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창기 이봉령의 집은 종업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기숙하는 개방된 곳이었고, 그는 종업원과 더불어 기숙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렸다. 따라서 쌍방울의 초창기에 있어 노사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인간적으로 맺어진 同志的 關係였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이 증가한 1979년 8월 쌍방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도 쌍방울의 원만한 노사관계는 변함이 없었으며 자생적인 조직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자

---

21) 愼侑根, 企業과 社會, 經文社, 1986, pp. 72~75.

발적인 애사심을 발휘하는 뿌리깊은 조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1986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이봉령은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원만한 노사협조 관계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근로조건 개선, 복지 향상을 통한 노사협조 체제의 구축과 대화와 개방의 원칙 하에 운영된 勞使協議會는 노사 일체감의 토대 위에서 생산성 향상에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어 전국의 10대 모범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한창 호황기에 접어들었던 1987년에 시작된 노사분규는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큰 홍역을 치루게 하였다. 6·29선언을 계기로 민주화를 향한 물고가 터지면서 수십년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근로자들의 불만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 1987년의 노사분규중 96%는 7~8월 두 달 동안 이루어졌지만 쌍방울은 이보다 빠른 3월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시위로 5시간 동안 조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쌍방울로서는 최초로 겪는 일이었다.

1988년 7월에는 人事發令을 둘러싸고 염공부 사원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8월 17일에는 방적공장에서 편직부의 호봉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100여 명이 농성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 후 1989년 5월 30일에는 임금인상 찬반 투표를 둘러싸고 근로자들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500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져 약 1주일 동안 正常操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같은 몇 차례의 동요는 당시의 일반적인 분규들이 1988년 전국평균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14.0일(노조 결성 기업 15.4일), 1989년에는 19.9일(노조 결성 기업 20.8일)[22] 이었던데 비하면 오래 끌지 않았다. 당시 주된 원인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임을 일찍 간파하고 노조

22) 金兌基, 前偈書, pp. 58, 71~72.

측과 신속하게 타협함으로써 쉽게 해결되었다. 매우 심각한 양상을 빚으면서 회사별로 위기 상황을 야기하던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에 비해 그 피해는 매우 미미한 정도였다.

그 당시에 노사문제로 겪은 몇 차례의 소요는 작은 규모일망정 쌍방울이 설립된 이래 최초로 겪은 시련이었다. 이를 계기로 회사측에서는 더욱 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안정된 勞使和合의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았다.

儒敎文化圈에서는 集團主義와 家族主義가 알맞게 도입된 경우, 관리자층과 근로자층 사이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회사의 간부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한다든가 관리직의 사람들도 잔업을 조금도 싫어 하지 않는 경우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족적인 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23]

쌍녕공업사 시절 李奉寧은 자신의 숙소를 공장 옆 직원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이 곳에서 직원 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 생산과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몸으로 인화를 실천하여 왔다.

創業 후 30년간 솔선수범한 人和團結은 오늘날 쌍방울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정신적인 뼈대인 동시에 실천강령이다. 이봉령이 人和團結을 중요시하는 것은 일찍이 노점상 생활과 형제상회를 거쳐, 또 기업을 경영해 오는 동안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봉령은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독립하여 사업을 차렸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후원으로 독려하였으며, 이같은 배려는 곧 종업원들이 일터에서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쌍방울 創業 이전 형제상회에 몸담았던 종업원들과 매년 정기적으

23) 金日坤, 儒敎文化圈의 秩序와 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85, p. 244.

로 만나 옛날을 추억하는 등 人間中心主義的 經營理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 분배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그러나 이 이윤은 한없이 축적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신이나 종업원, 주주에게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하며 이윤은 사회전반에 재투자되어야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쌍방울이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한 1982년(기업공개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대주주는 0~5%의 배당을 한데 비하여 소액주주에게는 10~15%를 매년 배당액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기업주의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종업원과 회사에 출자한 일반 투자가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李奉寧의 분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李奉寧은 「재물이 모이면 민심은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민심이 모이게 된다(財聚 즉 民散이요 財散 즉 民聚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면서 말 그대로 실천하기란 매우 힘든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사원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24]

쌍방울 설립초기 회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리후생의 증진은 시간이 요하는 사항이었다. 그 후 영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종업원이 늘어나면서 쌍방울은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복리후생도 점진적으로 증진되었다.

종업원들의 자생 조직인 「상록수회」를 중심으로 1974년 6월에는 저축의 생활화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쌍방울 마을금고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판장 형태의 소비조합도 신설되었다. 쌍방울은 상록수회의 활동에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의 교육수준은 국민

---

24) 李 薰, 상게서, p. 282.

학교를 졸업한 정도였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했으나 기회만 주어진다면 배워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봉령은 자신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런 처지의 종업원들이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1975년 2월에 쌍녕학원을 개설하고 무송여상(이봉녕의 아호를 딴 而山女子商業高等學校로 변경됨)을 개교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복지회관을 1979년 2월에 시공하여 총 4억여원의 공사비로 1980년 1월에 완공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종업원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학자금·경조금 등 관련 제규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그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消費者 中心主義

李奉寧의 創業精神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주의이다. 종래에는 소비자를 기업의 입장에서 다만 물건을 팔기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는데 비하여 李奉寧의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일념이 오늘날의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다.

李奉寧은 1963년 쌍녕공업사를 설립하여 처음 메리야스 제조업을 시작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업계는 생산에만 몰두했을 뿐 품질의 조악함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4년부터 형제상회를 운영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메리야스 제품의 나쁜 품질을 개탄하고 있었다. 李奉寧은 더 좋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결심하고 공장을 설립하였고 설립 초기부터 품질 제일 주의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創業精神은, 첫째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기업만이 궁극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고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둘째 최고의 제품을 싼 값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의

무라는 점에서 심오한 기업철학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李秉寧은 자신의 공장에서 만든 메리야스제품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품질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고집과 집념은 제품을 만들 때마다 직접 입어보고 빨아 본 후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판매에 들어갈 정도였다. 따라서 불량품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불량품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불질러 버렸다.

기술자들은 이봉령의 그러한 고집스러움을 보고 지나치게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그는 소비자를 속이고 불량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사기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하곤 하였다. 이봉령의 품질에 대한 고집은 결코 맹신이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자세만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봉령이 주창한 슬로건이 「우리가 만든 제품을 3천만 국민이 입게 하자」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질좋은 의료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品質第一主義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은 기업은 국민의 소비생활의 질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례로 1968년에는 당시 우리나라 업계로서는 거의 선도적인 단계로 Q.C를 도입하여 품질관리부 조직을 운영하였다.

1973년 이후 쌍방울은 전국의 메리야스업체 중에서 선두권이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현상에 안주함은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단한 노력으로 선두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업계의 선두를 노려라」라고 했고 이는 하나의 목표이자 명실상부한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후발업체로서 힘겨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낸 자신감은 물론 선두를 향해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내의류, 외의류 산업에의 후발주자가 대표주자로 바뀌고, 리조트사업에의 참여, 무선호출기 사업에의 진출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재빨리 업계의 선두에 서겠다는 발빠른 시도라 볼 수 있다.

4. 創意精神

이봉령은 집안도 학벌도 타고난 장사手腕도 없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조건으로 보면 결코 오늘날의 쌍방울을 일으킬 아무런 객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어린시절부터 숫자에 밝고 집요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정도의 능력이나 성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남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의 독보적인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기계발의 노력을 거듭하였다. 모르는 것이 병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알지 않으려는 것이 병이라 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봉령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체면불구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사업 초창기에 이봉령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관리 분야는 물론이고 엔지니어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 이봉령은 철저하여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확신과 자신감이 설 때에는 이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이는 오랜 경험의 산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매사에 철저한 연구와 분석으로 집요하게 사물의 핵심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환경하에서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창조하여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創意精神은 어느 사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던간에 필요하다. 創意精神이야말로 개인이나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특히 기업이 성장 발전하려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創意精神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봉령은 創意精神으로서 「未來指向的 精神, 探究와 開拓精神, 專門人 精神」을 임직원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創意精神을 강조하는 이유는 점진적 혁신을 가져와 계속적인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쌍방울 그룹이 21세기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節約精神

李秉寧의 自手成家는 勤儉節約이 기반이 되었다. 「시간과 비용과 거리를 단축하는 축이 이긴다」라는 경영 명언이 있다. 이봉령은 어린 시절 및 청소년 시절의 어려운 생활과 자수성가해 온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節約하지 않으면 안되는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므로 節約精神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을 운영할 때에 節約精神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物資節約, 消費者와의 距離 短縮, 時間節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운영에만 적용하지 않고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 모두가 생활화하여 인격화되도록 하고 있다.

『부회장 이외철은 가식을 싫어 하는 소탈한 편이라고 한 측근은 전한다. 기사 없이 손수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소탈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 몰고 다니는 차는 아무데나 달릴스 있는 지프. 90년에 르망레이서에서 지프로 바꾸었다. 무주리조트현장이 험악해서 차를 바꾼 것이라는 얘기다』[25]

위는 李秉寧의 經營理念을 이어 받고 있는 그 2세들에게서도 이 節約정신이 경영 이념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李秉寧은 節約精神의 실천을 위하여 「主人意識, 奉仕精神, 健全한 人生觀」을 강조하고 있다.

---

25) 어국선, 화제의 경영인 이외철, 이코노미스트, 1992. 7. 5, p. 135.

V. 맺 음 말

李奉寧은 어려운 빈농의 출신으로서 16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성진과 아오지 등에서 점원, 급사, 막노동, 광부 생활을 하다가 징병을 가고 8·15 후에 고향에 돌아와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企業家精神을 잉태하였고, 6·25가 발발하자 호남지역의 장을 찾아다니며 양말장사를 하면서 형제상회를 설립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기회를 포착하여 産業資本家로서의 길을 걷게 되며 1990년대에는 企業承繼를 진행하면서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李奉寧은 人間中心主義, 勞使和合, 利潤의 적정한 배분관, 消費者中心主義, 人和團結, 創意精神, 節約精神등을 經營理念으로하여 지금과 같은 쌍방울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오늘날 쌍방울 계열기업으로 덕원관광개발(이리칸트리 크럽)(주), 동일섬유(주), (주)벨체인, (주)쌍방울,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주), (주)쌍방울다반, 쌍방울레이더스(주), 쌍방울록(주), (주)쌍방울베베로, 쌍방울상사(주), 영일섬유(주), 쌍방울 쇼핑(주), 태영모방(주), (주)태령상호신용금고, 화성실업(주) 등이 속해 있는 大規模企業集團이 되었다.

쌍방울의 創業은 勤勉. 節約과 商人的 手腕이 있는 保守主義 성향의 李奉寧이 하였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은 장자인 이의철의 冒險的 精神과 進取性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들의 기업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쌍방울 그룹은 생각할 수 없었고, 이의철은 부친인 李奉寧의 보수적인 견실한 기업 운영과 자금의 뒷바침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가족 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승계의 성공적 진행과 다각화, 이 과정에서 부자지간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李奉寧은 무주리조트 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 든후, 쌍방울의 생사를 건 도전과 모험을 하고 있다. 李奉寧에 대한 평가는 쌍방울개발이 무주리조트를 안정 궤도에 올려논 이후와 創業者 家族經營 體制의 추이를 보아가며 다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金日坤, 儒敎文化圈의 秩序와 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85.

金兌基, 勞使紛糾硏究, 韓國勞動硏究員, 1991.

朴載錄, 經營史論, 裕豊出版社, 1987.

愼侑根, 企業과 社會, 經文社, 1986.

어국선, 화제의 경영인 이의철, 이코노미스트, 1992. 7. 5.

李奉寧, 쌍방울 30년사, 주식회사 쌍방울, 1993.

이현승, 「한국 대자본가의 형성 및 구조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8집, 문학과 지성사, 1987.

李 薰, 쌍방울그룹 이봉년 회장, 섬유에서 전자. 레져스포츠까지－경영혁신 박차, 2001년의 企業經營, 內外經濟新聞社, 1993.

趙東成. 李智煥, 韓國財閥의 企業承繼類型이 多角化戰略에 미친 영향, 經營學 硏究 제22권 제2호, 韓國經營學會, 1993年 6月.

호영진, 한국인의 가치관－감투공화국, 동아출판사, 1993.

黃明水, 企業家史硏究, 檀國大學敎出版部, 1976.

홍덕률, 「한국 대기업의 자본축적 과정과 계급지배에 대한 실증적 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 연구회, 「한국사회학연구」 제9집, 1988.

服夫民夫, 「韓國經營發展」(文眞堂, 東京, 1988).

C. R. Christensen, Management Succession in Small and Growing Enterprises(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53)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

talismus, in Gesamme 1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1920.

Peter F.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New York : Harper & Row, 1986.

Wilken, Entrepreneurship.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要因과 그 性格에 관한 考察

—特히 1920～1930年代를 中心으로—

金 聖 壽*

目 次

Ⅰ. 問題의 提起
Ⅱ.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意味
Ⅲ. 日帝下 朝鮮工業成長과 그 要因
1. 1920年代 工業成長과 그 要因
2. 1930年代 工業成長과 그 要因
Ⅳ.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植民地 性格
Ⅴ. 結 論
參考文獻

Ⅰ. 問題의 提起

本 論文은 1910年 韓日合併에서부터 1945年 解放까지 日本 帝國主義 下에서 朝鮮工業成長의 植民地的 性格을 究明하고 朝鮮工業發達의 本質을 分析하여, 日帝下 朝鮮工業化의 問題가 韓國의 工業化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植民地 經濟史觀을 바로 잡자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日帝植民地 支配下에서 그 現象形態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 경제사회의 內在的 生産力의 自主的 發展에 基礎한 것이 아니고 日帝植民地 工業政策과 결부된 外來資本主義 侵奪의 結果였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민족의 정상적인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制約條件이 되기도 하였다.

* 慶熙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또한 이 時期는 朝鮮이 近代化의 潮流와 植民地 經濟的 收奪過程을 同時에 겪는 激動의 時期로 朝鮮經濟史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日帝植民地 經濟政策의 本質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 作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植民地 理論에 의하면 帝國主義가 어느 나라를 植民地化 할 때 第1次的인 目的은 經濟的 收奪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수탈을 위한 產業政策은 工業化政策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시기는 日帝下 植民地 期間中 高度工業成長이 示顯되었던 1920年代와 1930年代이며, 日帝下의 朝鮮工業化의 性格이 어떤 意味를 오늘의 經濟史나 經營史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보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本 論文은 研究方法에 있어서 成長論的 接近方法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포겔(Robert Fogel)교수의 지적데로 成長論的 接近方法이 經濟史 研究에 限界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經濟史 研究에 이 方法을 채용하는 것은 經濟成長이나 工業成長의 現象形態가 모두 計量的으로 分析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經濟成長率이나 工業成長率의 變化는 歷史的·數量的 價値의 檢證的 重要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力說하고 있다.[1]

經濟史나 經營史研究는 數量의 價値 즉 計量史的 接近없이는 本質究明과 性格 및 그것의 變質에 대한 分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方法의 限界를 분명히 인식하고 日帝下에서 朝鮮工業의 成長을 야기시킨 經濟的·非經濟的 要因을 分析함으로써 史實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歷史的 性格을 찾으려고 努力하였다.

---

1) Robert Fogel教授는 經濟史分野에서 計量分析技法을 導入하여 이른바 「新計量經濟史」를 成立시킨 공로로 1993年度 노벨經濟學賞을 받은 美國 시카고大學, 計量經濟史學의 碩學이다. 이것은 그의 經濟史 接近方法의 主張이다.

本 論文에서는 먼저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意味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1920年代(1920~29년)와 1930年代(1930~39년)의 工業成長과 그 要因 그리고 結論으로는 日帝下 朝鮮工業化의 植民地的 性格을 提示하는 것으로 하였다.

Ⅱ.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意味

1910年 韓日合併 이후부터 本格化한 日本資本의 朝鮮進出과 그에 의한 朝鮮의 工業成長이 과연 진정한 意味에서의 韓國의 工業化 始作을 意味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이 땅위에 工場이 들어서고, 工業이 生成한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韓國工業의 發達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는 日帝植民地 期間의 朝鮮工業成長의 性格을 分析해 보지 않고서는 解明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적어도 韓國人의 民族資本과 韓國人의 技術에 의하여 다른 韓國産業과의 有機的인 關聯性을 가지고 工業이 生成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眞正한 意味에서의 韓國工業의 發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은 日帝植民地 期間을 통해서 특히 1920年代(1921~1929年)에는 10.4%의 年平均 工業成長率을 나타내었고, 1930年代(1930~1939年)에는 13.5%의 高度의 年平均 工業成長率을 示顯하여 당시 朝鮮內에서 工業이 急激히 成長하였다.[2)]

그러나 그와같은 朝鮮工業의 急速한 成長은 自力에 의한 正常的인 成長이 아니라, 그 推進力의 實質的 主體가 侵略的 收奪性을 지닌 日本資本이었다.

다시 말해서 日帝下의 朝鮮工業의 成長은 주로 당시 日本資本의 朝鮮進出에 의한 것으로서 日本資本主義 發展에 一翼을 담당하는 것이었

---

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1936年版, 「朝鮮經濟年報」, 1931~1932年版, 1941~1943年版 參照.

을 뿐이지, 朝鮮民族工業의 發展을 意味하는 것은 絶對로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日本獨占資本의 朝鮮經濟 侵奪의 深化와 더불어 朝鮮近代工業의 生成과 成長의 根源을 가져오는 朝鮮土着工業의 驅逐過程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3)]

Ⅲ. 日帝下 朝鮮工業成長과 그 要因

1. 1920年代 工業成長과 그 要因

1) 工業成長의 變化

日帝下 朝鮮은 1920年代 工業部門의 成長率이 대단히 높아 工業生産活動이 餘他部門보다 매우 活潑하였다. 그것은 1920년대 全産業生産額에 대한 工業生産額의 比重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表 1〉 참조).

〈表 1〉 1920年代 工業生産의 比重

(단위 : 萬圓)

年度別	全産業生産額(A)	工業生産額(B)	A/B(%)
1911	409	44	10.8
1921	1,302	201	15.4
1925	1,643	269	16.4
1930	1,176	281	23.9

資料 :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年.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1948年刊)에 의하면 1911年에는 全産業生産額에 대한 工業生産額의 比重이 10.8%에 불과하였으나 1930年에 와서는 무려 23.9%로 크게 增加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統計年報와 朝鮮經濟年報 各年度에 따르면 1920年代(1921~29年) 年平均 工業成長率은 무려 10.4%의 高度成長을 示顯하여 우리나라 1960年代 經濟開發期의 工業成長率과 맞먹는 높은 成長이

3) 金聖壽, 「日帝下 朝鮮經濟史論」, 經進社, 1985, p. 241.

었다(〈表 2〉 참조).

〈表 2〉 1920年代 工業成長率의 推移

(단위 : 萬圓)

年度別	生産額 (經常價格)	生産額[1] (1920年不變價格)	成長率(%)	指數
1921	201	266	30.1	100.0
1922	223	298	11.9	112.0
1923	234	314	5.5	118.0
1924	251	311	− 1.1	116.9
1925	269	317	1.9	119.2
1926	300	391	23.5	146.9
1927	303	422	7.8	158.8
1928	319	456	8.0	171.4
1929	327	482	5.8	181.6
1920年代平均 成長率			10.4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1936年版, 「朝鮮經濟年報」1931～1932年版 參照.

註 : ①은 朝鮮銀行「統計月報」, 1920～1943年(1910年 7月基準으로 하는)의 京城物價指數(年平均値)로 修正함.

이를 좀더 구체적인 年度制로 살펴보면 1921년과 1922년 그리고 1926년에는 각각 30.1%, 11.9%, 23.5%의 높은 工業成長率을 示顯한 反面, 1925년에는 「마이너스」 1.1%의 成長率을 보였으나, 全期間동안 10% 以上의 高度成長을 記錄한 것은 특기할만한 事實이다. 이처럼 1920년대를 통하여 起伏은 있었지만 朝鮮工業 成長率이 10.4%나 되었다는 것을 驚異的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이 時代의 工業成長率은 植民地下에서 日本資本의 超過利潤 獲得을 위한 것이었고, 侵略的 收奪性을 지닌 日本의 資本力이 實質的 主體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工業構造別 生産動態

1920年代 工業構造別 生産業動態의 構成比를 〈表 3〉에서 보면 輕工

業部門에 있어서 食料品工業은 152,054千圓으로서 全生產額의 57.8%, 紡織工業은 33,674千圓으로 12.8%를 占有하고 있어서 食料品工業과 紡織工業의 合計는 全體生產額의 70.6%를 占有하고 있었다. 또한 工場數에 있어서도 食料品工業은 2,088個로 全工場數의 49.0%, 紡織工業은 270個로 6.3%를 占有하고 있어서, 이 두개의 業種이 全體의 55.3%를 占有하고 있었다. 그리고 職工數에 있어서도 이들 두 개의 業種部門이 全工場의 55%를 占有하고 있었다. 따라서 輕工業部門인 食料品工業과 紡織工業이 工場數와 生產額 및 從業員數에 있어서 重化學工業部門보다 優位를 占有하고 있었다.

〈表 3〉 工業構造別 生產動態 構成比

(1930年 現在)

工業構造	業種別	工場數		職工數		生產額	
		數(個)	構成比(%)	數(名)	構成比(%)	生產(千圓)	構成比(%)
輕工業	食料品工業	2,088	49.0	27,055	32.3	152,054	57.8
	紡織工業	270	6.3	19,011	22.7	33,674	12.8
	製材·木製品工業	163	3.8	2,926	3.1	7,037	2.7
	印刷·製本業	215	5.0	4,146	5.0	8,184	3.1
重化學工業	金屬工業	231	5.3	4,542	5.4	15,263	5.8
	機械器具工業	224	5.5	2,854	3.4	3,328	1.3
	化學工業	515	12.1	14,720	17.5	24,676	9.4
	窯業	314	7.4	5,366	6.4	8,348	3.2
	가스·電氣業	35	0.8	525	0.6	6,432	2.4
	其他工業	206	4.8	3,052	3.6	4,068	1.5
合計		4,261	100.0	83,900	100.0	263,275	100.0

資料 :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論社, 東京, 1942, p. 223.

한편 重化學工業部門을 보면 化學工業은 그 生產額에 있어서 24,876萬千圓으로 全工場生產額의 9.4%, 工場數로는 515個로 12.1%, 職工數로는 14,720名으로 17.5%를 占有하고 있어서 그 工業開發育成政策이 매우 良好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生產財 生產工業인 機械器具工業部門

은 그 生產額이 3,380千圓으로 겨우 1.3%, 工場數로는 224個로 5.3%, 職工數로는 2,584명으로 3.4%를 占有하고 있어서 매우 貧弱한 狀態에 있었다. 그리고 金屬工業은 生產額에 있어서 15,263千圓으로 全生產額의 5.8%, 工場數로는 231個로 5.5%, 職工數로는 4,542명으로 5.4%를 占有하고 있어서 역시 그 開發이 不振한 狀態에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1920年代는 朝鮮의 工業構造는 輕工業部門이 重化學工業部門보다 優位에 있었다. 즉 輕工業部門은 重化學工業部門보다 優先的으로 開發되고 育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重化學工業部門 中에서도 化學工業이 生產財工業인 機械器具工業보다 優位에 있었다. 그것은 化學工業 中에는 興南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1920년 設立)의 生產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時期에 設立된 製造工業의 規模別 특징을 보면 中小企業의 進出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1920年代의 工場 및 從業員의 증가추이를 보면 1911년에는 1個 공장당 평균 從業員數가 57名인데 반하여, 1920년에는 평균 2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926년에는 19명으로 감소하였다(〈表 4〉 참조).

〈表 4〉 1920年代 工場 및 從業員의 增加 推移

年度別	工場數		從業員數		1個工場當平均從業員數(名)
	數(個)	指數	數(名)	指數	
1911	252	100	14,575	100	57
1920	2,087	828	55,279	379	26
1921	2,384	946	49,302	338	21
1926	4,293	1,704	83,450	573	19
1930	4,261	1,691	101,943	699	24

資料 : 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28年版.
2) 朝鮮總督府, 「朝鮮統計要覽」, 1936年版.

3) 工業成長의 要因

(1) 植民地 工業政策 基調의 確立

1921년부터 1929년까지 9年間은 植民地 工業政策의 確立時期로서 이 期間은 日帝植民地 工業體制가 本格的으로 活動을 始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期間은 政治的으로 3·1運動의 結果로 「武斷政治」가 撤廢되고, 欺瞞的인 소위 「文化政治」가 표방되었던 時期이다. 1910~1920년의 前期에는 土地調査事業을 完了하였고, 貨幣金融制度를 確立시켰으며 交通 및 通信機關을 整備함으로써 經濟的 支配工作을 遂行하였다. 日帝는 이 時期에 이르러서 朝鮮으로 하여금 商品을 販賣하고, 工業原料와 食糧을 획득하는 市場의 役割을 십분 발휘시킬 것을 經濟政策으로 하였다. 특히 食糧資源의 수탈을 目的으로 한 食糧增産 役割의 強化는 植民地 支配政策의 重點이 되었다.[4] 그리하여 1920년부터 시작된 産米增殖計劃은 이 時期의 工業政策과 併行하여 中心的 政策이 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日帝의 工業政策도 1910년대에 비하면 크게 變化하였다. 그것은 1919년도의 「3·1독립만세운동의 結果」라고 보는 견해보다 經濟史的으로는 「日本 資本主義 經濟의 변모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日本 資本主義 經濟는 第1次 世界大戰中 飛躍的인 發展을 하였다. 大戰中 日本工業은 交戰國의 戰時需要로 말미암아 急進的으로 發展되었으며, 交戰國 및 기타 地域間의 貿易에서 막대한 利潤을 얻었다. 이와같은 日本經濟의 飛躍的인 발전이 朝鮮植民地 工業政策의 주효한 結果였다고 記述하고 있다.[5] 물론 이와같은 견해는 연구가 계속 된 뒤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2) 農業中心政策에서 工業誘致政策으로의 轉換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타격을 받은 日本經濟는 1929년의 世界大恐慌으로 미증유의 工業恐慌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工業原料와 食糧供給地로서의 朝鮮植民政策과 正面으로 충돌하였다. 日本帝國主義는 이러한 工業恐慌을 打開하기 위하여 먼저 農業問題의 中心이

---

4) 金聖壽, 「앞의 책」, p. 121 參照.

5)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1941, pp. 263~264 參照.

된 外國米에 대하여 1928년에 輸入制限, 1930년에는 關稅率의 2倍 引上, 1931年에는 輸入許可制를 각가 斷行하였으나, 日本米에 대한 主要한 競爭品이 朝鮮米였기 때문에 그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6] 그러므로 日本議會 및 農林省은 1927년부터 朝鮮總督府에 대한 朝鮮米增殖計劃을 中斷하도록 종용하는 한편[7] 1932년에는 朝鮮米의 朝鮮內 消費를 強要하기 위하여 수입세를 부과하였다.[8] 여기서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植民政策은 農業中心政策으로부터 工業誘致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朝鮮會社令의 撤廢와 誘致工場의 活性化

日本은 自國工業의 育成策과 植民地商業資本의 蓄積策으로서 初期에는 朝鮮內 日本人의 工業育成에 크게 힘쓰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第1次 世界大戰中 本國의 工業이 高度로 發達되고 또한 과잉자본의 蓄積으로 資本輸出의 餘力이 생겨나자 비로소 朝鮮內 日本人工業을 育成하기 始作하였다. 當時의 總督「齋藤實」은 朝鮮內 日本人의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 1920년 9월 日本國의 재벌들을 불러들여 産業調査委員會를 構成하고 공장설치를 誘致하였으며, 이 때에 일어난 공장을 그들은 誘致工場이라 하였다. 이 유치공장에 대해서 朝鮮總督府가 原料를 적기에 供給해 주는 등 공업육성지원책을 적극화 하였다.[9]

이와같은 工業育成政策과 誘致工場의 活性化를 위하여 朝鮮總督府는 1920년 4월 1일을 기해 10년만에 朝鮮會社令을 철폐하였다. 이것은 日帝의 植民地工業政策의 일대 轉換이 아닐 수 없다. 1910년에 公布한 朝鮮會社令은 朝鮮에는 近代工業을 抑制하고 朝鮮을 古典的 意味의 식

---

6) 楫西光進外三人共著, 「日本資本主義の沒落」(Ⅱ), 日本東京大學出版會, 1956, pp. 568~569.

7)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39, p. 205.

8) 楫西光進外三人共著, 「앞의 책」, p. 816.

9) 文定昌, 「軍國日本의 朝鮮經濟收奪樣相」, 3·1運動 50周年記念論集, 東亞日報, 1969, p. 852 參照.

민지로 育成하자는 政策이었다.[10]

그러나 이 朝鮮會社令의 廢止는 古典的 식민지 이론의 政策을 바꾸고 朝鮮에 대해서도 새로운 식민지 이론의 근대공업건설 육성정책을 실시함으로써 日本資本의 投入을 許容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4) 日本獨占資本의 새로운 投資市場獲得政策

1927년 이후부터 日帝는 파국적인 經濟恐慌을 克服하기 위하여 日本獨占 過剩資本의 새로운 投資地를 필요로 하여서 그 새로운 投資市場을 獲得하기 위한 工業政策을 실시하였다.

日本經濟는 世界大戰 以後 世界經濟의 相對的 安定期에도 不況을 克服하지 못하고, 國內 인플레政策에 의하여 겨우 그 활동을 持續하여 왔으나 1927년의 金融恐慌으로 破局에 直面하여 企業의 倒産이 속출하는 反面 「카르텔」, 「콘체른」 등 獨占을 強化하였다. 銀行, 會社資本의 增減趨勢를 보면 1926년을 100으로 할 때 新設增資는 1927년의 98.6에서 1930년의 61.7로 急激히 減少하고, 解散減資는 1927년의 97.6에서 1930년의 133.7로 增加하였다.[11]

이것은 단적으로 日本內에 獨占資本이 過剩資本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投資市場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는 植民地 朝鮮을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만들어 파국적인 經濟恐慌을 극복해 보자는 전략이었다.

(5) 低賃金과 長時間의 朝鮮勞動者 活用

1920년대 工業成長의 主要한 原因은 低賃金과 長時間 勞動力을 活用하는 朝鮮勞動者의 搾取가 基本이 되고 있다. 當時의 工場勞動者의 民族別·性別·年齡別 平均 賃金을 〈表 5〉에서 보면 잘 입증되고 있다. 당시 日本人 勞動者의 平均賃金은 1圓 16錢(男女成幼年工總平均)인데 비하여 朝鮮人 工場勞動者는 總平均 賃金이 58錢으로 日本人의 切半도 못되는 水準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當時의 朝鮮人 勞動者가

---

10) 金聖壽, 「앞의 책」, p. 125 參照.

11) 楫西光進外三人共著, 「앞의 책」, p. 361.

〈表 5〉 1920年代의 工場勞動者의 賃金動態

區分 \ 年度別			1929	1930
日本人	男	成年工	2.32(圓)	1.86(圓)
		幼年工	0.71	—
	女	成年工	1.01	0.98
		幼年工	0.61	—
朝鮮人	男	成年工	1.00	0.93
		幼年工	0.44	0.37
	女	成年工	0.59	0.57
		幼年工	0.32	0.33
中國人	男	成年工	1.04	—
		幼年工	0.39	—

資料 : 1) 朝鮮總督府가 1929~1933年에 걸쳐 調査한 것.
2) 調査工場 : 50名以上 職工常用工場 196個所.
3) 調査業種 : 37個의 業種.
4) 調査期間 : 1929年 1~12月, 第1次 調査.

註 : 1)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硏究」, 第2輯, 世文社, 1931~1935, p. 80.
2)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 千倉書店, 東京, 1935, p. 430.

工業勞動者로서 能率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體格이 적었던 日本人 賃金의 切半도 못된다는 것은 朝鮮人 勞動者의 賃金搾取를 意味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한편 朝鮮人 勞動者는 賃金도 기아임금 및 저임금인데다가 勞動時間도 12시간 이상의 長時間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朝鮮人勞動者는 〈表 6〉에서 보는 바와같이 12시간 이상의 勞動이 46.9%인데 반하여, 日本人 勞動者는 12시간 이상의 勞動이 0.3%에 불과하였다. 여기 日本人 勞動者의 12時間 以上 勞動이 0.3%라는 意味는 日本學者들 뿐 아니라 유럽 및 美國學者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 0.3%의 長時間 日本人 勞動者는 朝鮮人 勞動者를 감독하는 감독 노동자들이었다.

〈表 6〉 1920年代 勞動者의 勞動時間

區 分	12時間 以內	12時間 以上
朝鮮人勞動者	53.1(%)	46.9(%)
日本人勞動者	99.7	0.3

資料 :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東京, 1941.
註 : 日本人 勞動者의 勞動時間은 1930年 10月 日本內閣統計局 勞動總計 實態調査에 의함.

이와같이 民族別 勞動者의 勞動時間의 差別은 극심하였으며, 民族別 勞動者의 임금격차와 아울러 植民地 收奪의 基本을 이루었다. 특히 그 당시에 이러한 朝鮮人 勞動者의 과중한 勞動時間은 朝鮮人 勞動者들의 肉體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그들 勞動者들은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더우기 低賃金으로 나타나는 生計의 어려움과 하루에 12時間 以上의 長時間 勞動으로 말미암아 朝鮮勞動者의 대부분은 災害, 罹病 등 각종 병마에 시달려 缺勤率이 높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30년대 후반에 가서 극도에 달하였으며, 朝鮮人 勞動者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시에 여러가지 형태의 集團的 勞動運動으로 發生하게 되며 일부는 이러한 日帝에 대해서 항거운동으로 展開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20年代 朝鮮工業의 成長要因은 ① 植民地工業政策 基調의 確立 ② 農業中心政策에서 工業誘致政策으로의 轉換 ③ 朝鮮會社令의 撤廢와 誘致工場의 活性化 ④ 日本獨占資本의 새로운 投資市長獲得政策의 成功 ⑤ 低賃金과 長時間의 朝鮮勞動者 活用 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1930年代 工業成長과 그 要因

1) 高度의 工業成長 示顯

日本 資本主義의 成熟과 侵略性은 朝鮮工業을 侵略戰爭 遂行을 위한 戰時軍需工業體制로 만들었다. 그 結果는 1920年代를 통해 起伏은 있

었지만 朝鮮의 工業은 年平均 10.4%란 比較的 急速한 成長을 示顯했고, 1930年代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工業發達史上 初有의 높은 年平均 成長率인 13.5%를 示顯했다. 이리하여 朝鮮工業의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로스토우」(W. W. Rostow)敎授가 指摘하고 있는바 跳躍段階에 進入하고 있었던 1870~1905年間의 日本의 工業成長率 12%를 上廻하고 있었다.[12]

이와같이 朝鮮工業의 높은 成長率은 自力에 의한 正常的인 成長趨勢가 아니라, 그 推進力의 實質的 主體가 侵略的 收奪性의 本質을 지닌 日本의 獨占資本力이라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朝鮮工業은 初期에 그 힘이 弱하고 小規模였던 日本의 資本主義를 成熟段階로 發達시키는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日本資本主義의 侵略戰爭遂行을 위해 利用되었다는 點 등을 생각하면 表面的인 높은 成長率이 關心의 對象이 될 것이 아니라, 民族의 收奪이라는 보다 本質的인 問題가 內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1920年代는 朝鮮工業이 日本의 初期的 資本主義經濟를 高度의 工業段階로 끌어 올리는데 貢獻한 時代라고 하면 1930年代는 成熟된 日本資本主義의 帝國主義的인 侵略戰爭遂行을 위해서 犧牲된 時期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事實은 1920年代까지는 日本資本의 朝鮮工業에의 投資가 대부분 電力, 食品, 纖維, 고무, 皮革, 製紙, 窯業 등 非軍需經工業部門에 행해짐으로써 朝鮮工業이 日本工業圈의 一環으로서 또는 過剩된 資本力의 排出國으로써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였음에 대하여, 1930年代에 들어 와서는 먼저 1931年에 滿洲事變, 1932年에 日軍의 上海攻擊, 1937年에 中日戰爭 그리고 1939年에는 太平洋戰爭이 勃發함으로써 朝鮮工

---

12) 「로스토우(W.W. Rostow)」敎授는 日本經濟의 跳躍段階를 1878~1900年間으로 잡고 있는데, 이 段階를 包括하고 있는 1870~1905年間에 있어서 日本工業의 年平均 實質成長率은 約 12%였으며, 1905~1920年間은 9%, 그리고 1920~1936年間은 7%였다.

業은 日本의 軍需物資를 生産하기 위한 收奪的 軍需工業 中心의 構造的 體制로 轉換되었다는 歷史的 過程을 立證하고 있다.[13]

〈表 7〉 1930年代 工業成長率의 推移

年 度	生 産 額 (經常價格)(千圓)	生 産 額① (1920年不變價格)(千圓)	對前年平均 成長率(%)	指 數 (1921=100.0)
1930	280,964	476,210	Δ1.1	178.9
1931	252,925	532,463	11.8	200.0
1932	310,837	658,538	23.6	247.7
1933	367,236	700,831	6.4	263.6
1934	438,402	825,615	17.8	310.6
1935	607,477	1,029,622	24.7	387.2
1936	730,807	1,167,412	13.3	438.7
1937	959,308	1,423,344	21.9	535.1
1938	140,118	1,461,076	2.7	549.2
1939	1,498,277	1,655,596	13.4	622.4
1930年代 平均成長率			13.5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0~1922年版과「朝鮮經濟年報」, 1941~1943年版 및 1948年版에서 作成.

註 : ①은 朝鮮銀行「統計月報」1920~1943年(1910年 7月 基準으로 하는)의 京城物價指數(年平均値)로 修正.

2) 軍需重化學工業의 進展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日本은 準戰時 經濟體制를 갖추게 되었으며 朝鮮工業의 發展方向은 重化學工業을 爲主로 하는 日本의 準戰時 經濟體制下에 隷屬하게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1937年의 中日戰爭을 契機로 더욱 深化되었다. 그리고 이 時代의 重化學工業化는 軍需工業建設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따라서 이러한 軍需工業建設은 1937年 이전을 그 準備段階로 보고 그 이후를 本格化段階로 볼 수 있다.

13) 金聖壽, 「日帝下 朝鮮工業發達과 그 性格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0, p. 123.

日本의 植民地政策에 의해서 產業動向이 左右되어 왔던 朝鮮은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工業建設政策의 施行과 더불어 產業에서 차지하는 工業의 地位가 높아가고 이와 동시에 質的 및 量的인 變化도 현저해졌다. 그리고 質과 量的變化는 工業構造가 變化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14]

〈表 8〉에 나타낸 바와같이 重化學工業 生產額은 1930년에는 全體의 20.7%를 점유한데 不過하였으나 점차 그 比重이 增大하여, 1936年에는 全體의 32.2%를 차지하게 되었다. 朝鮮의 重化學工業은 그후 더욱

〈表 8〉 1930年代 工業의 業種別 構成比

(單位 : 千圓)

區分		1930		1936		1939		1943	
		生產額	構成比(%)	生產額	構成比(%)	生產額	構成比(%)	生產額	構成比(%)
重化學工業	金屬工業	6,040	2.1	33,735	4.6	136,092	9.1	300,000	14.8
	機械器具	10,087	3.6	13,503	1.9	53,225	3.5	115,000	5.5
	化學工業	42,056	15.0	195,431	26.7	501,749	33.5	600,000	29.2
	小計	58,183	20.7	242,669	33.2	691,066	46.1	1,015,000	49.5
輕工業	紡織工業	45,693	16.3	99,477	13.6	201,351	13.4	345,000	16.9
	窯業	10,460	3.7	21,876	3.0	43,337	2.9	90,000	4.4
	水製品工業	5,546	2.0	9,936	1.3	21,061	1.4	120,000	5.9
	印刷製本業	8,666	3.1	13,133	1.8	19,373	1.3	24,000	1.1
	食料品工業	82,173	29.2	199,883	27.4	328,352	21.9	400,000	19.5
	가스·電氣業	6,432	2.3	39,989	5.5	30,466	2.0	30,000	1.5
	기타	63,810	22.7	103,842	14.2	163,270	11.0	26,000	1.2
	小計	222,780	79.0	488,138	66.8	807,206	53.9	1,035,000	50.5
全體工業生產額		280,963	100.0	730,807	100.0	1,498,277	100.0	2,050,000	100.0
成長率		100.0		260.1		533.3		729.6	

資料 :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39年 및 1948年版 參照.

14) 金聖壽, 「앞의 論文」, p. 127 參照.

현저하게 진전되어 1939年에는 46.1%로, 戰爭末期인 1943年에는 49.5%로 增大하였다.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15年 사이에 20.7%에서 49.5%로 크게 增加하였다.

3) 朝鮮工業化의 問題

오늘날 韓國近代經營史와 韓國工業發達史의 硏究 및 評價에 있어서 1930년대의 소위 「朝鮮의 工業化」[15]問題는 經濟史學界를 비롯하여 韓國經營史를 硏究하는 學者들간에 많은 關心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歷史學者들까지도 소위 「朝鮮의 工業化」에 대한 是非의 論難을 벌이면서 植民地體制 確立期의 日本獨占資本의 正體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시호오(四方傳), 스즈키(鈴木武雄), 모리타니(森谷克己) 등의 日本植民地史觀의 合理化를 力說하는 諸學者들은 일찌기 朝鮮工業化를 「韓國의 近代化」 내지 「韓國의 工業化」 또는 「韓國經濟의 資本主義化」로의 理論構成에 目的을 두고 對韓政策의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植民地史觀의 영향을 받은 一部 學者들은 「朝鮮의 工業化」를 「韓國의 工業化」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近代化論의 論據를 經濟成長率, 즉 經濟成長의 速度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1930년대에 日本獨占資本의 積極的인 進出에 힘입어 「朝鮮經濟」의 成長率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朝鮮의 近代化」 過程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以外에 이 學說은 近代化의 論據로서 1910~24年間의 「土地調査事業」 및 「林野調査事業」에 의하여 本源的 資本蓄積이 完成되었으며

15) 「朝鮮의 工業化」 問題 參照.

① 小林英夫, 「1930年代 朝鮮工業化 政策の 展開過程」 朝鮮史硏究會論文集 第三條, 1967.

② 山田秀雄, 「植民地經濟の諸問題」, アジア經濟硏究所, 1973.

③ 林鍾哲, 「日帝末 韓國工業化에 關한 一考察」, 서울大學校, 經濟論集, 第8卷, 第3號, 1969. 9.

④ 權寧旭, 「舊植民地 經濟硏究ノート」, 歷史學硏究, 310號, 1966. 3.

1930년대에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 進出함으로써 急速한 工業化가 進行되었고, 그 結果 1930년대 後半期에 工產物 生產額 比重이 農產物의 그것을 凌駕한 事實을 들고 있다. 즉 1930年代 日本獨占資本의 積極的 進出이 朝鮮社會의 性格을 資本主義的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독특한 이해 방법은 日帝時代의 全期間을 「植民地商業資本主義時代」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說은 일본 독점자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동시에 그것을 經濟開發理論에서 정립된 「自己充足的企業」 혹은 「自己完了的企業(self-contained)」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객관적 史實과 맞지 않는다.

4) 朝鮮工業化의 要因

1930年代의 工業化 또는 資本主義化는 日本獨占資本이 民族經濟를 總體的으로 收奪하는 過程이라고 규정한다. 當時의 日本獨占資本은 國家獨占資本主義의 「파쇼적」體制下에서 國家로부터 各種의 特惠를 賦與받고 있었는데, 그 財源은 植民地 朝鮮國民의 收奪에 의하여 充當되었던 것이다. 특히 資金 및 物資統制에 의한 民族資本의 沒落, 強制貯蓄에 의한 國民大衆의 收奪, 強制勞力動員과 徵用에 의한 저렴한 勞動力 供給 등이 1930年代 工業化 또는 資本主義化의 또 하나의 側面이었으며 이것들 없이는 工業化 또는 資本主義化도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1) 日本獨占資本의 朝鮮으로 進出

日本經濟는 1930年代 大恐慌으로 말미암아 農業恐慌을 동반하고 미증유의 大恐慌으로 빠져들기 始作하였다. 日本帝國主義는 이러한 破局을 克服하기 위해서 國內產業의 合理化를 圖謀하는 한편, 帝國主義的 膨脹政策 등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日本은 自國內의 經濟的 破局을 克服하기 위해서 帝國主義的 膨脹政策을 실시하였으며, 朝鮮에의 資本 輸出을 敢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背景下에서 日本의 私的獨占資本은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게 된 動因이 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朝鮮工業化의 要因이 되었다.

日本은 1930年代 初期부터 恐慌으로 말미암아 産業一般의 利潤率이 急激히 下落하였으며 投資의 脫出口를 찾는 日本企業家의 過剩資本이 그간 相當히 蓄積되었다. 물론 日本 經濟가 帝國主義의 階段에 突入한 것은 이보다 훨씬 以前이었으나 그간 海外로의 私的獨占資本의 進出도 相當數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그것이 한층 강화된 것은 이 時期부터였는데, 海外投資를 기다리는 過剩資本이 대량으로 蓄積되었기 때문이다. 過剩資本의 蓄積을 銀行·社會資本의 增減趨勢에서 보면, 1926年을 100으로 할 때 新設·增資는 1927年의 98.6에서 1930年의 61.7로 急激히 減少하였으나 解散·減資는 1972年의 97.9에서 1930年의 133.7로 增加하였다.[16]

이것은 단적으로 投資의 出口를 갈망하는 過剩資本이 蓄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日本國內에서는 有利한 投資處를 發見할 수 없는 帝國主義政府는 朝鮮 植民地로의 工業化政策에 集中投資하게 된다.

(2) 工業資源價格의 저렴과 低賃金勞動力의 活用

朝鮮은 日本에 비하여 工業資源의 價格이 相對的으로 저렴하였으며 一部의 自然資源의 경우에 있어서는 日本보다 豊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獨占資本은 朝鮮에서 植民地 超過利潤을 保障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勞動力은 아주 豊富하였으며, 賃金水準은 日本人의 2분의 1이하로서 低賃金이었다. 地價는 형편없이 저렴하였으며 원료 가격도 매우 낮았으며, 植民地化라는 利點을 살려 대부분의 工業原料를 搾取하고 있었다. 自然資源中 朝鮮이 日本에 비하여 저렴하였다는 것은 1930年代의 소위 「朝鮮工業化」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17]

---

16) 楫西光進外三人共著, 「앞의 책」(日本資本主義の沒落)(Ⅱ), 1969, p. 361.

17) 小林英夫, 「1930年代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の朝鮮への進出 について」, 山田秀雄, 「植民地經濟史の諸問題」, アジア經濟研究所, 1973. 3, 參照.

(3) 朝鮮에서의 日本企業家의 企業活動의 自由保障

日本政府의 經濟統制에 대한 資本의 도피처로서 朝鮮이 選擇된 점을 들 수 있다. 日本에서는 이미 1925年부터 「工業組合法」 및 「輸出組合法」 등 經濟統制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經濟統制를 결정적으로 強化한 것은 1931年에 制定된 「重要產業統制法」이었다. 反面에 朝鮮에서는 日本企業家들이 企業活動의 自由를 制限하는 어떠한 統制도 없었으며, 심지어 勞動者의 保護를 위한 「工場法」마저도 없는 형편이어서 1936年 「重要產業統制法」이 朝鮮에 施行될 때까지 朝鮮은 自由로운 企業活動을 위한 別天地이었던 것이다.

(4) 日本獨占資本에 대한 特惠制度實施

1930年代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的으로 侵入하게 된 動因이 朝鮮工業化의 要因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 獨占資本의 朝鮮 進出을 더욱 促進시킨 것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의 轉換이었다.

더구나 獨占資本의 利益을 위하여 봉사하는 國家는 獨占資本에 대하여 各種의 特惠를 부여하였다. 國家가 獨占資本에 부여한 特惠로서는 ① 租稅의 減免, ② 補助金支給, ③ 特惠金融, ④ 勞動運動의 禁止와 低賃金의 維持, 그리고 ⑤ 一定水準의 利潤保障 등 多樣한 것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獨占資本의 利益을 옹호하기 위해서 植民地國에 대한 強制貯蓄 및 強制勞動 등의 收奪政策을 實施하였던 것이다.

(5) 日本財閥의 朝鮮產業支配

日本產業資本의 朝鮮產業支配 內容을 日本의 財閥別로 나누어 보면 〈表 9〉와 같다. 日本의 大財閥인 三井, 三菱 및 住友가 차지하는 比重이 各各 4.0%, 6.0% 및 2.0%로서 合計 12.0%이며, 朝鮮을 主要活動舞臺로 하는 日窒, 東拓 및 日產이 차지하는 比重은 各各 36.0%, 11.0% 및 12.0%로서 合計 59.0%, 鐘紡, 大日本紡 및 東洋紡 등 紡織工業資本이 차지하는 比重이 各各 6.0%, 2.0% 및 2.0%로서 合計 10%, 製鐵工業을 담당한 日鐵系가 차지하는 比重이 4.0%, 마지막으로 其他主要 產業

資本系가 차지하는 比重은 15.0%였다.

〈表 9〉 日本 大財閥의 朝鮮進出 現況

(單位 : %)

區 分	內 容	比 率
本據地를 日本에 둔 大財閥系	三 井 系	4.0
	三 菱 系	6.0
	住 友 系	2.0
	小 計	12.0
本據地를 朝鮮에 둔 大財閥系	日 窒 系	36.0
	東 拓 系	11.0
	日 產 系	12.0
	小 計	59.0
日本 紡織業 資本系	鐘 紡 系	6.0
	大 日 本 紡 系	2.0
	東 洋 紡 系	2.0
	小 計	10.0
日本 製鐵工業 資本系	日 鐵 系	4.0
其他 資本系	其他產業資本系	15.0
合 計		100.0

資料 :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 pp. 26~27에서 作成.

이와같은 日本大財閥의 朝鮮產業支配는 朝鮮工業化의 큰 要因이 되었으며 結局 朝鮮植民地經營의 主導的 役割을 하였다.

(6) 民族系資本의 形成과 買辦性

1930年代 「朝鮮 工業化」의 가장 중요한 要因은 朝鮮民族系資本의 形成과 買辦性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一部 經濟學者들은 日帝植民地下에서 朝鮮의 土着民族資本은 全無한 實情이며 一部 零細中小企業만이 原始的 裝備위에서 朝鮮人을 相對로 한 消費財 生產과 日本人 所有支配 工業에 依存한 零細請負工業을 운영하고 있다고 批評을 하고 있으며 反面에 一部 經濟史學家들은 民

族資本이 受難과 抵抗을 하면서도 變質性을 갖는 財閥로 形成되어 왔으며 또한 成長하여 왔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兩者의 主張이 모두 잘못 되었다고 指適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렇다고 모두 正當하다고 判斷할 수도 없는 兩面性을 내포하고 있는 特殊한 性格을 지닌 것이 日帝下의 民族資本의 形成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40年 1月에 朝鮮殖產銀行 調査部에서 出刊된 殖產調査月報와 朝鮮銀行 調査部의 朝鮮經濟年報에서 拔萃한 資料를 中心으로 民族資本의 占有率을 보도록 하겠다. 1938년말 현재 朝鮮人의 會社數는 42.1%, 公稱資本은 12.5%, 拂入資本은 11.2%로 判明되고 있다. 會社數는 무려 2,278個社에 이르고 있었으며 公稱資本이나 拂入資本은 各各 213,819千圓, 122,660千圓에 달하여 朝鮮의 民族系 會社가 日本人 會社에 비하여 規模가 相對的으로 적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表 10〉 民族資本 및 會社의 構成(1938年末 現在)

(單位 : 千圓)

區 分	會 社 數		公 稱 資 本		拂 入 資 本	
		(%)		(%)		(%)
朝鮮人	2,278	42.1	213,819	12.5	122,660	11.2
日本人	3,135	57.9	1,499,306	87.5	968,622	88.8
合 計	5,413	100.0	1,713,125	100.0	1,091,282	100.0

資料 : 朝鮮殖產銀行, 「殖產調査月報」, 1940年 1月 第20號, pp. 26~28.

다음으로 工業部門에서의 民族資本의 位置를 살펴보면, 1938년말 현재 會社數로는 釀造業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製粉工業 57.4%, 製藥業 56%, 印刷工業 51.2%, 紡績工業 48.7%, 金屬機械工業 37.9%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낮은 業種은 食料品工業으로서 18.5%를 示顯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볼 때 工業部門에서 朝鮮

18) 鈴木武雄, 「朝鮮統治の性格と實績」 東洋經濟新報社, 1942, p. 83.

人이 所有하는 企業會社는 무려 50%에 接近하는 높은 比率을 占有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人의 拂入資本을 중심으로 보면 製藥業이 64.3%로 가장 높고, 釀造業 46.5%, 印刷工業 30.0%, 紡績工業 20.9%, 製粉工業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가장 낮은 業種으로는 食料品工業으로서 2.3%에 불과한 實情이다.[19]

그러나 民族系 資本의 企業 會社數로는 日本人이 所有하는 企業 會社數에 거의 육박하고 있었으며 拂入資本도 平均 約 13%로서 朝鮮人이 所有하는 民族系 企業會社는 그 數로나 規模로 보아 朝鮮工業化의 要因이 되었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1919년 3·1運動 이후부터 1930년대를 거치는 동안 民族系 企業家들의 精神的 姿勢 및 行動樣式의 性格은 크게 두가지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民族主義를 企業維持의 動機 및 行動樣式으로 삼고 있는 企業家群과 둘째로는 貨幣的 極大化를 行動樣式의 直接的 및 窮極的 目標로 삼고 있는 企業家群이다. 그러나 이 時期의 企業家中 民族主義를 窮極的 目標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開化期 企業家의 排日 또는 抗日을 企業動機 및 行動樣式으로 하는 素朴한 民族主義와는 그 類型을 달리하고 있다. 卽 이 時期에 民族主義를 企業의 行動樣式으로 하는 企業家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第1次的 目標는 財貨蓄積이고 이

Ⅳ.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植民地的 性格

韓日合併 이후부터 本格化한 日本資本의 朝鮮進出과 그에 의한 朝鮮의 工業成長이 과연 진정한 意味에서의 韓國資本主義 形成과 發展을 意味하는 것인가는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韓國의 땅위에 工場이 들어서고, 工業이 生成한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韓國工業의 發達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는 日帝植民地 期間의 朝鮮工業成長의 性格을 分析해 보지 않고서는 解明할

19)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年報, p. 35.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본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적어도 韓國人의 民族資本과 韓國人의 技術에 의하여 다른 韓國產業과의 有機的인 關聯性을 가지고 工業이 生成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眞正한 意味에서의 「韓國工業의 發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日帝植民地 期間을 통해서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朝鮮內에서 工業이 急激히 成長하였다. 그러나 그와같은 朝鮮工業의 急速한 成長은 自力에 의한 正常的인 成長이 아니라 그 推進力의 實質的 主體가 侵略的 收奪性을 지닌 日本獨占資本이었다. 다시 말해서 日帝下의 朝鮮工業의 成長은 주로 당시 日本獨占資本의 朝鮮進出에 의한 것으로서 日本資本主義 發展에 一翼을 담당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韓國民族工業의 發展을 意味하는 것은 絕對로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것은 日本獨占資本의 朝鮮經濟 侵奪의 深化와 더불어 韓國近代工業의 生成과 成長의 根源을 가져오는 韓國土着工業의 驅逐過程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帝植民地下에 있어서 韓國工業成長의 植民地的 性格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싶다. 즉, ① 工業과 農業 등, 產業間의 不均衡性과 產業構造의 畸型性, ② 重化學工業 및 輕工業 등 工業構造의 有機的 關聯性의 缺如 ③ 軍需工業化의 跛行性, ④ 賃金과 勞動時間搾取에 의한 勞動條件의 劣惡性, ⑤ 日本獨占資本의 全的支配와 民族資本 存立의 脆弱性, ⑥ 民族資本의 變質性과 買辦性 ⑦ 日帝에 協力하는 變質된 企業家行態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植民地的 性格을 지닌 日帝下의 朝鮮工業成長은 결국 韓國資本主義의 自主的 發展을 위한 基盤造成의 沮害要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畸型的 工業構造의 繼承과 아울러 나타낸 二重構造問題는 解放後 南北經濟의 分斷과 아울러 韓國工業生產體系의 괴멸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結果를 초래하였다.

V.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1920年代는 植民地 支配體制 確立期로서 政治的으로는 3·1運動의 結果로 武斷政治가 撤廢되고, 기만적인 소위 文化政治가 표방되었던 時期이다. 그리고 日本은 自國工業의 育成과 植民地 商業資本의 蓄積을 위하여 初期에는 朝鮮內 日本人 工業의 育成에 크게 힘쓰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第1次 世界大戰中 日本工業이 高度로 發達되고, 또한 資本輸出의 여력이 생기고, 특히 不況이 日本財界를 急襲하자 이를 打開하기 위해 朝鮮內에서도 日本人 工業을 育成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20年 4月 1日 10年만에 「朝鮮會社令」이 撤廢됨으로써 日帝 植民地工業政策은 일대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朝鮮會社令」의 廢止는 朝鮮에 대해서도 近代工業 建設을 위한 日本資本의 投入을 허용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朝鮮會社令」의 철폐는 近代工業成長의 契機가 되었으나, 日帝의 掠奪的 植民地 工業政策의 結果, 朝鮮工業은 植民地的 不均衡性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 朝鮮會社令의 철폐로 말미암아 朝鮮人의 民族資本은 어느 程度 形成되었으나, 역시 微弱性을 면치 못하였으며, 오히려 工業成長에 따라 植民地的 隷屬性이 더 강화되는 植民地的 性格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1931年부터 日帝가 패망한 1945年까지에 이르는 15年間은 植民地體制 侵略戰爭期間으로서 日本獨占資本의 적극적 進出에 의한 軍需工業 및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통해 侵略戰爭 수행을 위한 物質的 基礎를 구축하는 時期이다.

특히 이 時期는 1929年 세계의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日本經濟가 不況에 빠지자 日帝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戰爭遂行의 目的으로서 朝鮮을 大陸侵略의 兵站基地化하고 軍需工業 建設을 始作하였다. 그러나 결국 朝鮮工業은 植民地的 跛行性만을 露呈하였다. 그리고 朝鮮의 民

族系資本은 植民地 統治에 協力하는 親日資本으로 변질되어 매판자본화 되어 갔던 것이다.

日本獨占資本은 大量으로 朝鮮에 進出하여 朝鮮産業의 約 94%를 支配하면서 侵略戰爭을 위한 經濟的 收奪을 감행하였으며, 軍需工業의 建設로 因하여 朝鮮工業은 植民地的 跛行性을 지니게 되었다.

소위 1930年代는 重化學工業의 促進으로 「朝鮮의 工業化」라고 자칭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工業成長率(年平均 13.5%)을 示顯하였다. 그러한 高度의 工業成長은 오히려 日本經濟로 하여금 戰爭遂行을 위한 侵略軍需 經濟體制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結果를 招來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日帝下에서의 朝鮮工業의 成長은 帝國主義의 植民地的 性格으로 규정지울 수 있다. 따라서 朝鮮工業化의 植民地性格은 일곱가지로 규정지울 수 있다.

첫째, 産業間의 不均衡性과 産業構造의 畸型性, 둘째, 重化學工業 및 輕工業의 後進性, 셋째, 軍需工業化의 跛行性, 넷째, 賃金 및 勞動時間 搾取에 의한 勞動條件의 劣惡性, 다섯째, 日本獨占資本의 全的支配와 民族資本存立의 脆弱性, 여섯째, 民族資本의 변질성과 매판성, 일곱째 日帝에 全的으로 協力한 變質된 民族系企業家 行態 등이다.

結局 이러한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植民地的 性格은 韓國資本主義 發展의 沮止要因으로 작용하였으며, 아울러 植民地 遺産으로 남겨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工業發達의 植民地的 遺産은 經濟的 二重構造의 露呈, 資本과 技術面의 對外依存性 深化 등 그것은 종국에 가서는 韓國 工業生産體系의 후진성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參 考 文 獻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nti-Non

Communist Manifesto－University Press at the Combridge, 1969.

Hoffman, W.G., The Growth of industrial Economics, university of Manchester Press, 1958

Suh, S.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40, Harvard East Asian Monograph 83. Cambridge Massachusseth, 1978.

Kim, S.S., The Coloniol Characteristics of Korean mdustrialization under Japanese Rule, Seminar in Economics, Harvard Extension Monograph, Cambridge Massachussetts , 1982.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85.

文定昌, 軍國日本의 朝鮮經濟收奪樣相 三·一運動 50周年記念論集, 東亞日報, 1969.

李如星·李世鎔, 數字朝鮮研究, 第2輯, 世文社, 1931～35.

林鍾哲, 日帝末 韓國工業化에 關한 考察,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第8圈, 第2輯, 1969.

趙璣濬, 韓國民族資本形成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Ⅳ,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8.

高橋亀吉, 現代朝鮮經濟論, 千倉書店, 1935.

權寧旭, 舊植民地 經濟研究 1～5, 歷史學研究, 第310輯, 1966.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1942

小林英夫, 1930年代 朝鮮工業化政策の展開 過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67.

山田秀雄, 植民地 經濟の諸問題, 亞細亞經濟研究所, 1973.

鈴木武雄, 朝鮮의 經濟, 日本評論社, 1942.

朝鮮統治の性格と實績, 東洋經濟新報社, 1942.

領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9.

楫西光進外三人共著, 日本資本主義の沒落(Ⅱ), 東京大學出版會, 1956.

朝鮮總督府, 朝鮮經濟年報, 1931～1932, 1941～1943年版.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20～1936年版.

朝鮮總督府, 朝鮮統計要覽, 1936年版.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

朝鮮殖產銀行, 殖產調査月報, 第20號, 1940.

朝鮮時代 忠淸北道 産出物의 變遷에 관한 硏究

金 信 雄*

目 次

Ⅰ. 序 論
Ⅱ. 朝鮮時代 産業構造
1. 朝鮮時代 物産의 分布
2. 忠淸北道의 郡·縣別 戶口 分布
Ⅲ. 朝鮮時代 忠淸北道 産出物의 變遷
1. 道內 産出物의 變化
2. 初期 産出物의 分布
3. 中期 産出物의 變化
4. 末期 忠淸北道의 産出物
Ⅳ. 朝鮮時代 忠淸北道 進貢品의 産業構造
Ⅴ. 朝鮮時代 忠淸北道 牧·郡·縣別 進貢品
1. 牧·郡·縣別 進貢品의 構造
2. 忠淸北道 鄕市와 出市品 및 手工品
Ⅵ. 結 論

Ⅰ. 序 論

사람들은 "過去의 歷史는 오직 現在의 侍女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과거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現代를 예견하고, 그것이 태동하여 발전의 계기가 되고, 社會經濟發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년에 와서 그 始源을 찾는 마음에서 과거에 대한 연구가 각분야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하여 비서구사회에서 더구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資本主義의 자립적인 발전의 전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새로운 주목을 받게되었고, 이 현

* 淸州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상이 어떤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싹을 터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역사적인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객체는 歷史上에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가 하면 반대로 급성장하여 이것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圈域을 형성하면서 전통의 뿌리를 내려 오늘날 찬란한 文化를 이루고 있다.

朝鮮初期의 資料[1]는 朝鮮後期에 비하여 많지 않다. 農林水産에 관련된 古文獻[2]에 의하면 224卷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本 硏究에서 밝혀낸 産出的 44種은 忠北地域의 天賦資源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資源들이 原料 또는 食料品이 되어 中部文化圈의 기반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朝鮮末期는 朝鮮封建國家의 존립기반이 되었던 중앙집권적 官人支配體制를 구축하고 있었던 郡·縣制度와 守令制度가 쇠퇴화과정을 거듭하였던 歷史段階이다. 이러한 郡·縣制度와 守令制度의 쇠퇴화현상은 地方土豪·士族勢力의 대두와 더불어 村落社會에 대한 領域支配制가 잠재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地方士族勢力에 의한 同族村落[3]의 成立과 地方土豪勢力에 의한 地主層의 형성이 잠재적인 地方分權體制의 대두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中央執權的 官人支配體制라는 테두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

---

1) 「朝鮮經國典」(1934), 「三峰集」(1397), 「慶向道地理志」(1424), 「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志」(1468), 「經國大典」(1471), 「東國輿地勝覽」(1484), 「大典續錄」(1492),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大典後續錄」(1543) 등.

2) 金榮鎭 著, 「農村水産 古文獻備要」, 韓國農村硏究院, 1989. 9.
綜合農書 39卷, 特殊農書 33卷, 蠶桑書 6卷 畜産醫係書 29卷, 水産關係書 9卷, 山林關係 6卷, 食品書 19卷, 農政關係書 76卷, 기타 考書 15卷 (合計 224卷).

3) 淸州經濟學會, 「淸州經濟硏究」, 第4輯, 1993. 2, 158~161쪽. 1930年 國勢調査에 의하면 忠淸北道內 90戶以上의 集性村 30, 50~87戶의 集姓村 73이었다.

하였던 地方分權的 支配體制가 각 산업분야의 경제활동 분야에 어떠한 충격을 베풀었느냐를 찾아 헤매는 것이 朝鮮後期의 社會經濟를 해명하는 기본시선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후기에 한정시키지 않고 朝鮮初期·中期·末期까지를 범위로 하여 충청북도의 특산품, 즉「충청북도의 얼굴」을 찾아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忠淸北道에 관련된 古文獻들이 많지 않고 또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런 중에서 朝鮮初期·中期·末期를 한꺼번에 엮어보려는 것은 아직 완전한 것이 못되고 기록상에 나타난 사항들을 歷史的으로 해명해 보려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특히 朝鮮末期의 歷史過程에서 忠淸北道의 進貢品들을 해명하게 되었고, 이것을 전후연결하여 이 지역의 특산품, 즉「충청북도의 얼굴」을 찾게 되었고, 계속하여 현대에까지 연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조선말기의 충청북도 사회경제의 실태 및 산업부문별 실태를 객관적으로 해명해 보려는 초보단계이다.

본 연구는 14世紀末葉에서 비롯하여 19世紀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방법으로써 朝鮮時代를 世紀別로 세분(初·中·末)하여 産出物을 地域(郡·縣)別 및 産業別로 구분하고, 進貢品을 다시 발견하여 생산의 근원지역을 형성하며, 약 70%에 가까운 山地를 값있게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생활에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하나의 제언이다.

Ⅱ. 朝鮮時代 産業構造

1. 朝鮮時代 物産의 分布

朝鮮時代 以前 朝鮮의 物産은 상세한 기록이 드물며, 지방별 분포상황을 명료히 밝힌 것은 朝鮮後期 各種의 地理書가 발간되면서부터 土

產物의 記事가 나타나게 되었다.

本 硏究者는 忠淸北道의 產物의 變遷過程을 밝히는데 편의상 時代區分을 朝鮮初期,[4] 朝鮮中期,[5] 朝鮮末期[6]로 區分하여 이것을 產業分類[7]하여 展開하였다. 당시 臨海에 거주한 사람들의 海產物名, 山地의 郡·縣에 거주한 사람들의 物產 중 名稱의 기록은 명료치 않고, 특산물도 약 23개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朝鮮末期의 生產物은 農產品, 林產品 및 水產品이 주가되고, 工業品, 手工品이 있으나 기계를 사용하는 工場工業의 태동기에서 소규모의 原始的인 手工業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었다.

「朝鮮の物產」(1927)에 의한 各 地方別 產出物의 分類를 보면 12個로 大別할 수 있는데, 產出物을 총체적으로 보면 〈表 1〉과 같다.

충북지역에서 최다 산출물류는 藥類(漢藥材)로 45品目으로 나타나

〈表 1〉 產出物의 分類別 總數

(單位 : 品目)

區分 / 番號	分 類	全國	忠北	區分 / 番號	分 類	全國	忠北
1	穀物類	45	7	7	獸 類	58	3
2	果物類	49	10	8	魚介類	234	27
3	蔬菜類	78	4	9	蟲 類	27	3
4	花卉類	39		10	藥 類	230	45
5	木竹類	60	5	11	鑛物類	82	21
6	鳥 類	89		12	雜 類	89	16
小 計		360	26			720	85
合 計						1,080	111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產」, 1927. 3. 30. 190~5쪽에 의하여 筆者作成.

4) 朝鮮初期 : 「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志」(1468),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5) 朝鮮中期 : 宣祖~景宗(1724).

6) 朝鮮末期 : 英祖(1725)~末期.

7) 大韓統計協會, 「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12에 준하여 분류함.

고 있다.

全國 1,080品目 중 忠淸北道는 10.3%인 111品目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具體化시켜 全國 13道別로 比較分析을 시도하여 당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밝힐 計劃이다.

2. 忠淸北道의 郡·縣別 戶口分布

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과거의 전통문화 속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정신)의 여하에 따라 방향과 발전의 속도가 가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거주민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주민들이 전통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이것을 화합시켜 한 지역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거주민의 전후는 선인들의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의 식생활은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소비하여 존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 또는 추진력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한 지역의 발전은 거주민들의 사상과 관습에 영향이 크다. 조선후기 충청북도 出市品과 牧·郡·縣의 戶口의 분포를 보면 〈表 2〉와 같으며, 8分類의 品目數는 39品目이며, 당시 이것을 가공하여 忠淸北道의 特產品을 만들었을 것이다. 道內의 鄕市는 약 55個所[8]가 있는데, 郡·縣別로 出市品을 보면 39品目(100.0%) 중 織造類 18品目(46.1%) 그리고 農加工物類 13品目(33.3%)이며, 地域別로는 충주목에 6品目, 청주목과 청안현 그리고 영동현은 각각 4品目이 分布되어 있다.

戶口와 面數(184面), 里數(2,421里)는 忠州牧 17,809戶에 인구 87,331名, 淸州牧 13,558戶에 47,046名, 沃川郡 5,521戶에 25,174名, 報總 4,759戶에 14,801名의 순위이다. 郡·縣 아래 面·里를 순위별로 보면 忠州牧 38面에 262里(村落), 淸州牧 24面에 774里, 報恩縣 15面에 201里, 槐山縣 12面에 58里, 沃川縣 11面에 117里의 순위이다.

---

8)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經濟」, 調査資料 第27輯, 30~37쪽.

〈表 2〉 朝鮮後期 忠淸北道 出市品 牧·郡·縣別 戶口

(單位 : 品名數, 名)

類別 / 地域	織造類	器物類	紙物類	席子類	鑛産物類	木材類	獸皮物類	農家工物類	合計	人口와 面數(里) 元戶	口	男	女	面	里
忠州	4							2	6	17,809	87,331	42,994	44,339	38	262
丹陽	1								1	2,015	7,204	3,592	3,612	7	43
淸風	1								1	2,568	7,628	4,308	3,320	8	47
槐山					1			1	2	3,275	11,995	6,387	5,608	12	58
陰城										1,808	6,951	3,461	3,490	4	21
延豐					1				1	1,817	5,465	2,768	2,697	5	28
堤川	1				1				2	2,801	12,171	6,102	6,097	8	105
永春										1,405	5,654	2,823	2,831	6	6
淸州		1						3	4	13,558	47,046	23,274	23,772	24	774
沃川	2			1					3	5,521	25,174	11,982	13,192	11	117
文義	1							1	2	3,030	9,797	5,047	4,750	7	88
淸安	2				1			1	4	2,681	10,221	4,971	2,250	6	193
永同	2			1				1	4	2,535	10,815	5,752	5,063	5	25
黃澗	1			1					2	1,981	7,180	3,556	3,633	6	110
懷仁								1	1	1,190	4,468	2,332	2,136	6	54
報恩	1								1	4,759	14,801	7,374	7,427	10	206
靑山	1							1	2	2,421	10,796	4,483	6,313	6	83
鎭川	1							2	3	5,717	30,294	13,552	16,742	15	201
合計	18	1		3	4			13	39					184	2,421
%	46.1			7.7	10.3			33.3	100.0						

資料 : 「戶口總數」, 54官, 65~115쪽.
「經國大典」, 券之 六, 工典, 工匠, 外工匠, 16~26쪽.

Ⅲ. 朝鮮時代 忠淸北道 産出物의 變遷

1. 道內 産出物의 變化

忠北地域 經濟의 將來를 우리 道民들의 손으로 건설해 나가려면 반

드시 歷史的 軌跡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未來方向을 摸索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 先祖들이 지녀온 傳統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變遷되어 왔는가를 음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朝鮮時代에 忠淸北道의 産業構造가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가를 朝鮮의 初期·中期·末期로 구분하여 分析하므로써 증감 산출물의 변천을 알고자 한다.

2. 初期 産出物의 分布

初期의 産出物은 〈表 3〉과 같이 44品目으로 産出地 116地域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忠州牧 14지역, 淸風 16, 堤川 12, 黃澗 10이며, 品目別로는 蜂蜜이 15牧·郡·縣에서 生産되고 있었으며, 紫草도 11牧·郡·縣에서 生産되고 있었다.

〈表 3〉 朝鮮初期 忠淸北道의 産出物

(單位 : 品目)

物名 \ 郡縣	忠州牧	丹陽郡	淸風郡	槐山郡	陰城縣	延豐縣	堤川縣	永春縣	淸州牧	沃川郡	文義縣	淸安縣	永同縣	黃澗縣	懷仁縣	報恩縣	靑山縣	鎭川縣	合計	%
鐵	◉						◉					○							2	1.7
海松子	○	○				◉							◉		○	○	○		2	1.7
松 蕈	◉	◉	○			◉	◉		○			●	◉	◉		◉			8	6.9
活 石																				
水 獺	◉																		1	0.9
蜂 蜜	◉	◉	◉	◉		◉	◉	◉	◉	◉	○	●	○	◉	●	◉	◉	◉	15	12.9
紫 草	◉	◉	○	◉			◉	◉	◉	◉	○	◉	◉		◉		○	◉	11	9.5
棗	○	○	◉		◉		◉	◉			●					○	◉		6	5.2
人 蔘	◉	○	◉					◉	◉	○		●	○	◉			◉	◉	8	6.9
麝 香	◉									○								◉	2	1.7
安息香	◉	○		○			◉	○	◉	◉	○	○		◉	◉	○	○		6	5.2
錦鱗魚	○		○					◉			◉		◉						3	2.5
石 蕈	◉	◉	○			◉		○	◉					●		◉			6	5.2
石硫黃	◉		○																1	0.9
竹		◉																	1	0.9
玉 石		◉																	1	0.9
黑		○	◉																1	0.9
漆		○		○																

〈계 속〉

物名 \ 郡縣	忠州牧	丹陽郡	淸風郡	槐山郡	陰城縣	延豊縣	堤川縣	永春縣	淸州牧	沃川郡	文義縣	淸安縣	永同縣	黃澗縣	懷仁縣	報恩縣	靑山縣	鎭川縣	合計	%
茯苓	●	○	◉	○			◉	◉	◉	◉	○	◉		◉	◉		◉		10	8.6
白花蛇		○	○	○			◉		◉		○			◉				◉	4	3.4
五味子		○																	1	0.9
黃楊		◉						○					◉						1	0.9
訥魚		◉		○				◉			◉		●						4	3.4
辛甘菜		○				◉	◉						○	◉					3	2.5
靑石		◉																	1	0.9
綠礬		○	◉						◉								◉		3	2.5
糸			◉																1	0.9
水鐵			◉							◉					◉	○			3	2.5
羚羊			◉				○	○								○		◉	2	1.7
石種乳			○					◉											1	0.9
靑土			○						◉										1	0.9
蓆							◉												1	0.9
羚羊角							●												1	0.9
防風							◉												1	0.9
白玉												●							1	0.9
靑玉			●						●										2	1.7
靑玉石									◉										1	0.9
朱土			◉						◉	◉									3	2.5
磁器									○			○		◉					1	0.9
陶器									◉		◉								2	1.7
地黃									◉	◉		●			◉				4	2.5
木賊														◉					1	0.9
水精石																				
態膽																				
合計	14	20	16	8	1	5	12	12	13	7	6	7	5	10	8	9	7	6	116	100.0
증(+)	1			1					1		1	5	1	1	1				12	
감(−)	3	11	8	5			1	4	2	2	5	3	3		1	5	3		36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產」, 1927年 3月 30日, 125~126쪽에 의하여 筆者作成.

보기 : ◉ 初期產出地, ○ 初, 中 產出地 ● 新產出地로 등장

增加生產地域은 12地域 중 淸安에서 5品目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 반대로 지속되지 않고 중기에 산출되는 品目에서 제외된 產出地는 36지역이나 되고 있다. 신산품 생산지로 등장한 지역은 13지역이며, 한

出產物이 2지역에서 신산출지로 나타난 產出物은 蜂蜜(淸安·懷仁) 靑玉(淸風, 淸州牧)으로 나타나고 있다.

初期에 產出되던 지역이 中期에 生產이 계속되지 않은 36지역 중 가장 많이 생산을 중지한 지역은 丹陽 11地域, 淸風 8地域이다.

3. 中期 產出物의 變化

中期에 새로운 產出物로 등장한 品目은 〈表 4〉와 같이 8品目인데 새로운 產出地를 갖고 등장한 產出物(名)은 山査로서 丹陽에서 產出되고 있다. 末期까지 지속되는 산출물은 3品目(滑石 : 忠州牧, 蟹 : 文義, 鯉魚 : 永同)이다.

〈表 4〉 朝鮮中期 忠淸北道의 產出物

(單位 : 品目)

物名 \ 郡縣	忠州牧	丹陽郡	淸風郡	槐山郡	陰城縣	延豐縣	堤川縣	永春縣	淸州牧	沃川郡	文義縣	淸安縣	永同縣	黃澗縣	懷仁縣	報恩縣	靑山縣	鎭川縣	合計	%
淸石	◉																		1	
山査		●	○																1	
玉								○											1	
蟹											○								1	
鯉魚													◉						1	
重魚													○						1	
水晶															○				1	
石蜜															○				1	
合計	1	1	1					1			1		2		2				8	
증(+)		1																	1	
감(−)				1				1					1		2				5	

4. 末期 忠淸北道의 產出物

朝鮮末期에 새로운 產出物로 등장한 20品目은 〈表 5〉와 같이 29地域에서 산출되고 있다. 가장 많은 產出地를 갖는 지역은 淸風郡으로서 6品目(=產出地)이 생산되고 있는 반면에 6地域, 즉 丹陽, 延豐, 堤川,

懷仁, 靑山, 鎭川에서는 産出物이 없다.

〈表 5〉 朝鮮末期 忠淸北道의 産出物

(單位 : 品目)

物名 \ 郡縣	忠州牧	丹陽郡	淸風郡	槐山郡	陰城縣	延豐縣	堤川縣	永春縣	淸州牧	沃川郡	文義縣	淸安縣	永同縣	黃澗縣	懷仁縣	報恩縣	靑山縣	鎭川縣	合計	%
桔梗	○														○	○			3	
栗			○		○						○	○							4	
雉			○																1	
古具			○																1	
羅蔔			○																1	
火石			○																1	
硫黃			○																1	
紫胡				○								○							2	
黃連				○															1	
黃楊木								○					○						1	
砥石									○										1	
木花										○									2	
眞荏										○									1	
水荏										○									1	
栗蒲											○								1	
當歸													○						1	
梨													○						1	
沙蔘														○		○			2	
大棗														○		○			2	
澤瀉																○			1	
合計	1		6	2	1			1	1	3	2	2	3	2	1	4			29	

資料 : 「朝鮮の物産」, 1927, 125~128쪽에 의하여 筆者 作成.

以上의 分析을 종합해 볼 때 朝鮮時代 忠淸北道에는 71品目이 203지역에서 産出되고 있었으며, 品目別로는 蜂蜜 15地域, 紫草 11, 茯令 10, 그리고 송이와 人蔘이 각각 8地域에서 産出되고 있었다. 産出地域別로는 淸風郡 23地域, 丹陽郡 20, 忠州牧 16, 永春과 淸州牧이 각가 14, 報恩 13, 堤川과 黃澗은 각각 12, 懷人 11, 槐山과 永同은 각각 10地域의 생산지를 갖고 있다.

Ⅳ. 朝鮮時代 忠淸北道 進貢品의 産業構造

일반적으로 모든 經濟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財貨 및 서어비스의 생산·유통·소비의 전체를 포함하는 데, 서로 얽혀 잊는 이들 총체를 經濟構造라고 한다. 따라서 經濟構造는 生産構造, 流通構造, 消費構造를 中核으로 하여 貿易構造, 金融構造, 財政構造 등을 포함한다.

産業構造는 生産構造를 각 생산물의 物理的 性格이나 技術的 因子에 따라 水平的으로 나누어 몇개의 産業部門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여기서 본 産業構造는 朝鮮時代의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産出物의 産出地를 당시의 地域에서 現 忠淸北道 관내에 포함되는 지역에 한정시켜 出産物과 産出地를 중심으로 몇개의 産業分類別로 나누어 分布를 밝힌 것이다.

前時代의 産業構造[9]는 원시적인 상태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경제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단계일 것이다. 筆者는 忠淸北道 內에서 산출되는 進貢品을 「한국표준산업분류」(1991年)에 준하여 분류하였으며, 産業構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漢藥材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表 6〉은 朝鮮末期의 進貢品(63品目)과 日帝時代 忠淸北道의 特産品(44品目)을 합하여 産出地 284品目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進貢品에 대한 忠淸北道의 産業構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통이란 일정한 집단공동체인 가족, 민족,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단위로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계통을 받아 전해 내려오는 사상, 신앙, 관습, 행동, 기술 등의 양식인데 때로는 그 문화적 유산 속에서 현재의 생활의 의미, 효용이 있는 인습이나 습관 또는 정신을 일컫는 것이다.[10]

---

9) ① 農業·狩獵·林業·漁業, ② 漢藥材, ③ 鑛業, ④ 製造業.

10) 한국식품과학회 농협중앙회,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현황과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1993. 4. 9, 91~125쪽.
한억, "전통식품의 가공기술 현황 및 발전방향".

〈表 6〉 忠淸北道內 進貢品의 産業構造 (單位 : 品目數)

區分	月	農業·狩獵業·林業·漁業									漢藥材										鑛業				製造業				合計	%
種類		農産物類	桑毛類	皮類	林業副産物類	果實類	魚類	魚貝類	小計	%	根類	實類	葉類	줄기類	花類	皮類	虫類	기타	小計	%	鑛類	石種類	小計	%	陶磁器類	手工製造業	小計	%		
月會	1												1					4	5	2.5									5	1.8
	2										10	1	1		1	1		6	20	10.0						1	1	3.4	27	7.4
	3										9	1	6			1		10	27	13.4						1	1	3.4	28	9.9
	4										4	1			1			4	10	5.1		1	1	5.5		1	1	3.4	12	4.2
	5										2	3			2			2	9	4.5									9	3.2
	6											3			2	2	1	2	10	5.0						1	1	3.4	11	3.9
	7										2	1			1	1		7	12	6.0						1	1	3.4	13	4.6
	8				2	1			3	8.3	1	1					1	2	5	2.5						1	1	3.4	9	3.2
	9			1		2			3	8.3	6	3		3	1	1		5	19	9.5						1	1	3.4	23	8.1
	10			1		2			3	8.3	8	2		1	2	2		11	26	12.9						2	2	6.9	31	10.9
	11		1						1	2.8	2	1	1					5	9	4.5					1	1	2	6.9	12	4.2
	12		1						1	2.8								2	2	1.0									3	1.1
小計			2	2	2	5			11	30.6	44	17	9	4	10	8	2	60	154	76.6		1	1	5.5	1	10	11	37.9	117	62.3
기타											5		1		3	1		4	14	2.0						1	1		15	5.3
到界					2	1	3		6	16.7								11	11	5.5						4	4	13.8	21	7.4
陳賀				1	1	2	2		6	16.7								10	10	5.0						5	5	17.2	21	7.4
誕日			1						1	2.8																			1	0.3
正朝			1						1	2.8								1	1	0.5									2	0.7
官對進																		1	1	0.5							2	6.9	3	1.1
																										2[1]				
小計			2	1	3	3	5		14	38.9	5		1		3	1		27	37	18.4						12	12	41.4	63	22.2
日帝				2	2	2	3	2	11	30.6	4	1	2	1		1	1		10	5.0	2	15	17	94.5	2	4	6	20.7	44	15.5
合計			4	5	7	10	8	2	36		53	18	12	5	13	10	3	87	201		2	16	18		3	26	29		284	
%			1.4	1.8	2.5	11.9	2.8	0.7	12.7	100.0	18.7	6.3	4.2	1.7	4.6	11.9	1.6	30.6	70.8	100.0	0.7	5.6	6.3	100.0	10.5	9.2	10.2	100.0		100.0

資料 :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産」, 1927., 1) 油物

進貢品은 그 地域에서 產出된 品目 중 특이한 산품으로서 중앙관아 또는 지방관아에 바치는 특산품의 일종으로 그 지역의 얼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산품의 개념은 타지역에서 산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산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특산품하면 충주 의림지에서 產出되는 공어같은 산물을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에서 산출된 284種類의 進貢品이 있는데, 이것을 때에 따라 中央·地方 管司[11]에 바치는 품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문제는 產出地 284品目을 전국 각지역(13道)에 비교하여 충청북도에서만 산출되는 품목, 즉 특산품을 지적하지 못했다. 연구를 계속하면 그 중에서 忠淸北道의 特產品으로 돋보이는 산출물이 지정할 수 있는 산물이 나오리라고 믿고 일단계의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

충청북도내에서 進貢品의 284產出地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① 農業·狩獵·林業·漁業은 4種類로 中分類하여 12.7%(36品目)

② 漢藥材 8種類로 中分類하여 70.8%(201品目)

③ 鑛業은 2種類로 中分類하여(18品目)

④ 製造業은 2種類로 中分類하여 10.2%(29品目)이다.

〈表 6〉에서 보는 바와같이 朝鮮時代 忠淸北道 속에서 漢藥材가 70.8%(201品目)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시 地域經濟를 움직이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소규모의 수공업적인 생산, 즉 製造業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비중은 10.2%(29品目)에 불과하다.

항목별로 보면 農業·狩獵業·林業 및 漁業에는 월별로 진공하는 進貢品이 11種類, 기타 각종 진상 14種類 중에는 魚類가 5種類 있다. 月令

11) 朝鮮時代 政府機構는 (中央)議政府 아래 庶政을 관장한 吏·戶·禮·兵·刑·工의 六曹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衙門이 설치되어 있었고, (地方)八道監營 아래에 府·牧·郡·縣 등이 官衙와 兵營·水營이 있었다.

進貢品 11品目 중 8, 9, 10月에 각각 3品目으로 가장 많으며, 果實類도 5品目이 있다. 到界進上品目, 陣賀進貢品도 각각 6品目으로 가장 많은 品目이다. 이외에도 誕日, 正朝 進貢品도 각각 1品目씩인데 毛皮類도 있다.

漢藥材는 月令 154種類, 기타 37種類, 日帝下의 特產品 10種類를 합하여 201種類(70.8%)이 있는데, 月令進上은 3月 27種類(13.4%), 10月 26種類(12.9%), 2月 20種類(10.0%), 9月 19種類(12.9%)로서 4개월의 합이 92種類(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細分類 項目으로는 기타 87種類(30.6%), 根類 53種類(18.7%)이다.

續藥은 18種類인데 月令(4월) 石種類가 있으며, 나머지 17種類는 日帝下의 特產品에 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續藥의 始發期는 日帝時代라고 보아진다. 製造藥은 月令進上 11種類, 기타 進上 12種類, 日帝下 特產品 6種類로 合計 29種類이다. 月令進上은 10月 31種類(10.9%), 3月 28種類(9.9%), 9月 23種類(8.1%), 2月 21種類(7.4%)로 4個 月令進上이 103種類(36.3%)이다.

이상의 分析에서 볼 때 月令進上品이 177種類(62.3%), 到界進上 등이 63種類(22.2%), 日帝下 特產品이 44種類(15.5%)로서 全體 284進貢品 중 月令進上이 60%를 넘고 있다.

V. 朝鮮時代 忠淸北道 牧·郡·縣別 進貢品

1. 牧·郡·縣別 進貢品의 構造

朝鮮初 忠淸道는 產物의 풍성함이 경상도 전라도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世宗莊憲大王實錄」 地理志에 의한 地方產物을 보면 產物의 總數 6,920種 중 忠淸道에는 1,047種(15.1%)이 產出되고 있으나, 보다 具體的으로 보면 土宜 322種(全國 1,999種), 土貢 498種(全國 3,056), 土產 65種(全國 525), 藥材 162(全國 1,345)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藥材의 生產地數는 忠淸道 162개소 가운데 忠淸北道[12]에서는 85곳에서

産出되고 있었다.

忠淸道의 地方産物 885개소 가운데 忠淸北道는 329種(37.2%)이다. 이것을 〈표 7〉에 의하면 土宜 322種 중 忠淸北道는 116種(35.3%), 土貢 498種 중 忠淸北道는 181種(55.0%), 土産 885種 중 忠淸北道는 32種(9.7%)이다.

〈表 7〉 朝鮮末期 忠淸北道의 産出物

(單位 : 品目)

品目 / 地域	토의(土宜)	토공(土貢)	토산(土産)	계(計)	%
충 주	6	10	3	19	5.7
단 양	10	10	4	24	7.3
청 풍	10	9	4	23	7.0
괴 산	5	9	2	16	4.8
음 성	6	12		18	5.5
연 풍	7	10	2	19	5.7
제 천	9	14	3	26	7.9
영 춘	6	11	3	20	6.1
청 주	8	9	2	19	5.8
옥 천	3	11	1	15	4.6
문 의	3	9		12	3.6
청 안	9	5		14	4.3
영 동	6	15	2	23	7.0
황 간	2	10	1	13	4.0
회 인	10	3	2	15	4.5
보 은	7	13	3	23	7.0
청 산	5	11		16	4.9
진 천	4	10		14	4.3
計	116	181	32	329	
%	35.5	55.0	9.7		100.0

資料 :「世宗莊憲大王實錄」地理地, 忠州牧,

12) 충주 3, 단양 9, 청풍 6, 괴산 7, 음성 3, 연풍 3, 제천 8, 영춘 5, 청주 7, 옥천 7, 문의 2, 청안 2, 영동 5, 황간 2, 회인 1, 보은 7, 청산 6, 진천 2 (계 85).

당시 忠淸道內에서 현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行政區域圈域別로 郡·縣에 한정시켜 산출물을 발췌하여 보면 〈表 7〉과 같다.

地方産物의 種數가 20種類 이상의 地域은 제천(26,), 단양(24), 청풍, 영동 그리고 보은은 각가 23종류, 영춘(20) 그리고 19種類인 地域도 세 곳(청주, 충주, 연풍)이나 된다. 이들 9地域의 합이 196種으로 전체(329)의 60%을 차지하고 있다.

月令進上品은 314産出地로서 産出되고 있으며, 到界進上品은 96곳에서 産出되고 있다. 郡·縣別로 보면 忠州牧圈域에 171地域, 淸州牧圈域에 239産出地로 약 2배 많은 것이다. 淸州牧圈域에서도 沃川郡과 文義縣은 각각 33産出地로 가장 많으며, 黃澗縣 30産出地 以上이며, 27産出地도 鎭川縣과 報恩縣이 있다. 忠州縣圈域에도 淸豐郡 30産出地, 忠州牧 20産出地가 있다.

朝鮮初期 忠淸北道의 産出物(地)는 329 곳에서 産出되는데, 初期 産出品目은 44品目에 限定되고 있다. 郡·縣別 進貢品을 分析하는 것은 본 硏究의 目的에 接近하기 위한 分析이다. 〈表 8〉과 같이 忠淸北道 進貢品木 242種類에 産出地는 410産出地로 나타나고 있다.

2. 忠淸北道 鄕市와 出市品 및 手工品

忠北地域內에서 産出된 産出品의 種類는 102種類이다. 이들 商品이 53개 鄕市에서 교환되었을 것이다.

〈表 9〉와 같이 出市品 102品目 중 手工品은 36品目(35.3%)이며, 기타 61品目으로 나타나고 있다. 18個 牧·郡·縣 중 鄕市場의 집중이 가장 높은 牧은 忠州牧으로 8市場에 出市品 21品目, 淸州牧으로 7市長에 7品目이 出市되었으며, 沃川, 永同, 報恩 등 각각 4市場이 있었다. 市場의 範圍는 10~40里 반경내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出市品(102品目) 등이 郡·縣의 지역에서 독특한 특산품으로 제조되었을 것이다.

〈表 8〉

郡·縣別 進貢品의 產出地

(單位 : 產出地)

區分 / 地域	月令 1	2	3	4	5	6	7	8	9	10	11	12	小計	進上 기타	到界	陳賀	雞日	正朝	官封	油物	小計	小計	合計	%
忠州牧		4		2		3		2	8	4			23		4	2						6	29	7.1
丹陽郡			4				4	1		4	3		16			3						3	19	4.6
淸風郡		6				1	3	2	10				22			5	2		1			8	30	7.3
槐山郡			6			2			5	6			19		1	1						2	21	5.1
陰城縣			1	4			1			3			9	3								3	12	2.9
延豐縣		1	3				4			3	3		14		3	1						4	18	4.4
堤川縣			5				4			8	5		22										22	5.4
永春縣			4				3	2	1	4	2		16		3	1						4	20	4.9
小計		11	23	6		6	19	7	24	32	13		141	3	16	10				1		30	171	41.7
淸州牧														11	5	3				2		21	21	5.1
沃天郡	1	6		2	4	3	1		4				21		1	3	8					12	33	8.0
文義縣		2	5	3		3	3	3		5		2	26		4	3						7	33	8.0
淸安縣																								
永同縣		1	5			3	3	1	1	3	3	1	21		3	3	1	1				8	28	6.8
黃澗縣		1	8			2	4			5	5	2	22		4	4						8	30	7.3
懷仁縣		1	6				4			4			15		2	2						4	19	4.6
報恩縣	3		7			2	3	1	1	3	5		25		1	1						2	27	6.6
靑山縣	1	7	1		1	2	2		4	3			21										21	5.1
鎭川縣		3	5	1	3	4	3			3			22			3		1	1			5	27	6.6
小計	5	21	37	6	8	19	23	5	10	26	10	3	173		13	25	23	2	2		2	66	239	58.3
合計	5	32	60	12	8	25	42	12	34	58	23	3	314		16	41	33	2	2	1	2	96	410	
%	1.2	7.8	17.1	2.9	2.0	6.1	10.2	2.9	8.3	14.1	5.6	0.7	76.6		3.9	10.0	8.0	0.5	0.5	0.2	0.5	23.4		100.0

資料 : 「朝鮮の物產」, 朝鮮의 初期·中期·末期.

〈表 9〉 朝鮮時代 忠淸北道의 市場 分布

區分 / 官司	市場數	範圍(里) 商業活動中心圈域	範圍(里) 商業活動圈域	出市品(계)	手工品	기타 出市品
忠州	8	30~50	30~80	12	5	7
丹陽	2	0~30	0~30	3	1	2
淸風	3	10~30	10~50	6	1	5
槐山	1	10~15	10~90	7	2	5
陰城	1			1		
延豐	2	0~40	0~40	4		
堤川	1			12	2	10
永春	1			3		
淸州	7	30~40	30~60	3	2	1
沃川	4	20~25	20~60	4	1	3
文義	1			2	2	
淸安	2	0~15	0~15	4	4	
永同	4	20~30	20~50	6	4	2
黃澗	3	20~40	20~40	3	2	1
懷仁	3	20~30	20~30	5	1	4
報恩	4	1~30	1~40	6	1	5
靑山	2	0~5	0~ 5	5	2	3
鎭川	4	20~40	20~40	6	3	3
合計	53			102	36	61

資料 :「經國大典」, 卷之 6, 工典, 工匠, 外工匠條, 16~26쪽.
徐有榮,「林園16志」, 兒圭志, 卷第 4, 貨殖, 8 城場市, 4~8쪽.
朝鮮總督府,「朝鮮の市場經濟」, 調査資料, 第27輯, 1931. 6, 30~38쪽.

Ⅵ. 結 論

한정된 자료에 의하여 조선시대, 즉 初期, 中期, 末期로 구분하여「충청북도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산출물(특산물)의 변천을 고찰하였다. 초기의 충청북도의 산출물, 진공품(進貢品)은 44종이었다. 중기에는

8품목, 그리고 말기에는 20품목이 증가하였다. 그 중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한약재(70.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말기에는 증·감의 폭이 컸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선초기 진공품의 대부분이 한약재이므로 충청북도에서는 고령 노동력을 동원하여 당시 진공품을 재발견하여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에 맞도록 식품개발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충청북도가 전통식품원료공급과 제조공장으로 탈바꿈하자는 제언이다. 이것이 「충청북도의 얼굴」로 등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한다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고, 현 농촌주민의 농업경영에 한가닥 의욕을 불어 넣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산·학협동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각계 각층에서 타당성을 확인하여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계속하여 전국각지역과 비교하여 충청북도의 특산물을 밝혀 각 지역(충북 18개 郡·縣)에 따른 특산품 단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출물들은 전통성을 갖게 될 것이며, 충청북도의 역사성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949,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Ⅱ, 6.

朝鮮史硏究會 編, 「朝鮮史硏究論文集」, 第1～25集.

朝鮮總督府, 「朝鮮の物産」, 1927.

山口精 編, 「朝鮮産業誌」, 上·中·下.

國史編執委員會, 「韓國史論」 4, ―朝鮮後期―.

韓國食品開發硏究院, 「農産物 加工産業의 地域特化에 관한 硏究」, 1992.

한국식품과학회 · 농협중앙회,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현황과 식품 산업의 발전방향」, 1993.

淸州商工會議所, 「'93 忠北製造業體總覽」, 1993.

韓國의 生命保險産業經營에 關한 史的 考察

朴 光 緖*

目 次

Ⅰ. 序 論
Ⅱ. 日帝下의 生命保險
1. 開港과 外國保險
2. 朝鮮會社令과 保險
3. 朝鮮生命의 創立
4. 植民地保險의 終末
Ⅲ. 生命保險市場의 再建(1945~1962)
1. 美軍政下 生命保險會社의 設立
2. 6.25후의 生命保險의 再建
Ⅳ. 生命保險産業의 發展(1963~1986)
1. 生命保險業界의 整備
2. 經濟開發과 生命保險
3. 共濟事業의 확장
Ⅴ. 生命保險會社의 開放과 新設(1987~)
1. 生命保險市場의 對內外 開放
2. 生命保險市場의 開放에 對한 陳情
3. 生命保險會社의 新設
Ⅵ. 結 論
參考文獻

Ⅰ. 序 論

우리나라에 근대, 과학적 경영의 保險事業이 上陸한 것은 1910년경에 日本과 外國 보험회사들의 支店, 出張所를 통해서 경영된 바 당시 12개의 生命保險會社와 18개 損害保險會社의 支店과 出張所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현대적 保險企業이 計劃된 것은 1913년 3월 日本人 秋本豐之進이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를 發起開業하였으나 실패했고 그후 1921년 10월에 韓國人 韓相龍이 중심이 되어 朝鮮生命

* 順天鄕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保險株式會社를 設立한 것이 최초의 보험회사라 할 수 있다.

朝鮮生命이 創立, 開業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가지 어언간 70여년, 그간 우리나라의 生命保險業은 많은 우여곡절과 험난한 파고를 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199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34개의 生命保險會社가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를 일별해 보면 大韓生命, 第一生命, 三星生命, 興國生命, 大韓敎育保險 및 東亞生命 등 기존사가 6個社이고, 大信生命, 太平洋生命, 國民生命, 韓德生命, 韓國生命 및 新韓生命 등 內國社 6개사, 東部 A, 東洋 B, 코오롱 M, 高麗 CM, 三新 ALL, 永豊 M, 高合 NY 등 合作社 7개사, 韓星生命, 朝鮮生命, 亞洲生命, 中央生命, 國際生命, 大一生命, 韓信生命, 太陽生命과 韓一生命 등 地方社 9개사, 푸르덴셜, 네델란드, 프랑스, 라이나 및 알리코 등 外國社 5개사가 있다.

이들 33개 生命保險會社의 1992년 12월말 현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總保有契約高가 588조 505억원이며, 總收入이 27조 4,728억원인 바 이중 收入保險料가 22조 6,414억원, 投資收入이 4조 7,204억원에 달했으며, 반면 總支出額은 21조 2,290억원 중 각종 보험금 지급액이 17조 5,881억원, 事業費가 3조 691억원이었다.

또한 이들 生命保險社들이 보유하고 있는 資產現況을 보면 總資產이 45조 1,551억원이고 이들 자산의 운용내용을 살펴보면 貸出金이 21조 3,104억원, 有價證券 11조 6,542억원, 不動產 3조 2,959억원이다. 生命保險產業의 規模는 GNP 對比 保有契約이 326.5%이고 전체 金融資產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2.2%를 시현하고 있어 1992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 4,368만명, 국민총생산 229조 9,385억원, 경제성장률 4.7%, 1인당 GNP 527만원[1]과 비교해 볼때 실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생명보험이 상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生命保險產業의 經營的 발자취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우리

1) 생명보험협회 편, 「'93생명보험」, 1993. 9. 10, pp. 9~11

나라의 生命保險業이 指向해야 할 未來指向的인 方向을 成長史的 觀點에서 考察하여 보고져 한다. 그러므로 이하 Ⅰ에서는 서론을, Ⅱ는 日帝植民治下의 生命保險, Ⅲ은 生命保險市場의 再建, Ⅳ는 生命保險産業의 發展, Ⅴ는 生命保險社會의 新設과 開放化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고 결론을 구하고져 한다.

Ⅱ. 日帝治下의 保險

1. 開國과 外國保險

1876년 朝鮮王朝가 日本의 강압에 의하여 문호가 개방되고(江華島條約) 각국과 通商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先進列強의 銀行, 商社 등이 진출하였다. 그 활동을 위하여 保險會社가 필요하였지만 그때까지 국내에는 보험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商易活動을 위하여 그들 스스로 자기나라의 보험대리점을 겸업한 것이 현대보험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당시 交易活動의 중심은 釜山과 仁川이었는데 처음에는 英國系統 보험대리점이 중심이 되었고 그후 日本에서 보험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代理店 형태로 진출하였다.

火災, 海上保險의 代理店은 적어도 1880년경에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안다. 기록에 의하면[2] 1900년 현재 仁川에는 4개의 英國系 保險會社 代理店 즉 Commercial Union Assurance, Imperial Fire Insurance, Law Union and Rock Insurance 및 Royal Excange Assurance가 영업을 영위했고, 독일계로서 Transatlantische Feure Versicherung A. G. in Hamburug代理店이 있었다. 生命保險代理店으로서는 1904년 12월 현재 釜山에서 6개의 英國系 生命保險會社代理店(美國系 1社 포함)이 이미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3]

---

2) 『仁川府史』, 1931.

3) 釜山商業會議所 편, 『釜山要覽』, 1912.

日本 보험회사는 1880년 1월 東京海上保險(1879년 설립)이 釜山代理店을 설치, 영업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10년 동안 日本에서 損害保險會社의 설립이 없었고, 1882년 4월 日本火災, 1894년 1월 明治火災가 각각 釜山과 仁川에 代理店을 설치했다. 한편 生命保險은 1891년 帝國生命 釜山代理店이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의 보험회사들은 1890~1900년의 濫設期에 많이 창설되어 1900년 保險業法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 감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영업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淸日戰爭, 露日戰爭의 승리로 日本保險市場의 무대가 되었다.[4]

2. 朝鮮會社令과 保險

1910년 8월 29일 韓日合併 이후 영국계의 보험대리점은 日本 보험회사의 영향을 다소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韓日合併 이후 日本의 보험회사들은 生命保險과 損害保險을 막론하고 代理店, 出張所, 駐在員의 형태로 크게 진출하고 있었으며 1914년 京城生命保險同業會가 조직되었다.

保險業도 다른 事業과 동일하게 1910년 12월에 제정(1911. 1. 1. 실시)된 朝鮮會社令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會社令은 本店 또는 支店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없었다.

1920년 4월 1일 會社令은 日本 資本主義 經濟의 요청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附則 제4항에 의하여 保險業 등에 대하여는 別途의 法律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하였다. 별도의 법률이란 「朝鮮保險業令」을 의미하는데 조선총독부는 8·15 해방까지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다. 會社令은 1962년 1월에 제정된 保險業法 附則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5]

---

4) 申守植, 『保險經營論』, 貿易經營社, pp. 23~24.

5) 申守植, 전게서, p. 24.

3. 朝鮮生命保險의 創立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生命保險會社는 前平壤府尹이었던 日本人 商略家 秋本豊之進이 계획하여 그때 漢城銀行 專務 取締役으로 있던 韓相龍과 협의하여 1914년 朝鮮總督府의 設立許可(商第394號, 1914. 5. 27)를 받았던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資本金 50萬圓, 一株 50圓, 發行株數 10,000株)로 發起人은 內鮮人 2名으로 大額納稅者 2名, 은행 및 보험회사 중역 4명, 경성, 釜山, 大邱, 平壤, 鎭南浦 등 각지의 朝鮮人 資本家인데 이들 발기인이 6,000株를 約受하고 일반에게 약 4,000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그중 1,500株는 이미 豫約을 終了하여 결국 2,500株가 남었으나 이것도 勸誘滿株의 예정이었다. 영업범위는 朝鮮과 支郡의 朝鮮人 生命保險을 目的으로 하고 農工債務金融組合貸付資金引受 및 기타 公共事業에 대하여 資金의 運用을 예정하였으나 秋本豊之와 韓相龍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流產되고 말았다.[6]

당사의 發起人으로는 迫間房太郎, 西崎鶴太郎, 朴字鉉, 大池忠助, 大橋實次郎, 川谷敬路, 梶原末太郎, 中村再造, 矢吹省三, 松山正義, 眞鍋道彦, 前田熊市, 藤本德之進, 鄭在學, 秋本豊之進, 三枝太三郎, 進辰馬, 徐相龍, 妹尾猪助, 關繁太郎[7] 등 제씨였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日本의 資本主義가 전시경기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會社令의 폐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산업부문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保險會社 本社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결과 1921년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가 創立되었다.

朝鮮生命은 韓相龍[8], 李達鎔, 閔丙奭 등이 大株主가 되어 資本金 50

---

6) 東亞經濟時報社 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覽』, 1923, p. 25.

7) 生命保險協會 편, 『生命保險史料』, 1990. pp. 65~68.

8) 韓相龍은 正五位勳三等. 中樞院 參議, 朝鮮生命社長, 漢城銀行 顧問, 京畿道 敎育會 副會長, 簡易生命保險審査委員, 京城生命保險 同業會 顧問, 朝鮮實業俱樂部 副會長, 朝鮮農會 特別委員, 京城都市計劃硏究

萬圓(拂入 資本金 125,000圓, 1株 50圓, 發行株數 50,000株)으로 1921년 10월 13일 設立認可[9], 11월 1일 創立總會를 갖고 11월 12일부터 개업하였다. 朝鮮生命은 全國에 7개 支部[10]를 두고(京城支部, 平壤支部, 大田支部, 大邱支部, 釜山支部, 光州支部, 咸興支部), 기구조직으로는 本社에 처음에는 營業課, 統計課, 醫務課 등의 3課를 두었으나 그후 1942년에는 1室 7課로 확대하였으며 支部組織도 支社로 확대개편하였다. 즉 秘書室, 庶務課, 外務課, 契約課, 醫務課, 統計課, 會計課, 料金課 등이며 支社는 京畿支社, 忠淸支社, 全北支社, 全南支社, 慶北支社, 慶南支社, 黃海支社, 平南支社, 平北支社, 江原支社, 咸鏡支社 등이 설립되었다.

設立 當時의 本社 所在地는 京城府 南大門通 一丁目 十四番地에 두었으며 電話番號는 164번과 488번이었으나 1942년에는 本社 所在地가

會 經濟部長, 京畿道 評議會員,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取締役, 朝鮮紡績會社 相談役.

韓相龍은 京城人으로 1871年 奎章閣 提學 韓觀洙의 三男으로 出生, 官立英語學校 및 私立成城學校를 修了, 1904年 漢城銀行 右總務를 시작으로 實業界에 投身, 同行頭取, 1909年 東洋拓殖株式會社 理事 겸 調査部長, 1916年 同社 顧問, 1922年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副社長을 거쳐 1928年 同社 社長에 취임. 그간 漢城銀行, 漢城手形組合, 京城商業會議所, 東洋拓殖株式會社, 韓國銀行, 朝鮮郵般會社, 朝鮮製糖會社, 朝鮮紡績會社, 東三省 實業公司, 朝鮮殖産銀行, 朝鮮畜産興業會社, 朝鮮農業改良會社, 日本紡績會社, 朝鮮天然水公社, 朝鮮火災海上保險會社, 朝鮮書籍印刷公社, 京城畜産大會 등의 發起人이 되고 産業役을 맡았다. 朝鮮實業界의 恩人, 1916年 臺灣視察, 1917年 南北支部을 視察, 金融産業에 끼친 功勞로 功勞賞, 勳三等瑞寶章을 수훈 內閣에서 金盃一個, 李王殿下로부터 銀盃一組, 朝鮮總督의 銀盃一組을 授與함, 취미는 독서와 바둑 및 골프.

妻 李龍鄕과의 사이에 長男 盛熙, 長女 孝熙를 둠, 京城府 嘉會洞 178番地에서 居住

〈자료 :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卷 一, p. 111〉

9) 朝鮮總督府 官報, 1921. 10. 18.

10)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pp. 84~85.

京城府 松峴町 60番地로 이전되었고 전화도 光化門 (3) 48, 81, 64, 36, 29번이었다.[11]

朝鮮生命의 保險商品으로는 養老保險, 慰安保險, 結婚保險 및 敎育保險 등의 4종목을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同社의 設立發起人 總代에는 韓相龍이, 發起人으로는 白完爀, 趙鎭泰, 趙舜澤, 李達鎔, 韓翼敎, 元惠常, 朱性根, 閔丙燮, 原田金之祐, 富田義作, 釘本藤次郎, 山本條太郎, 玄基奉, 韓相閔, 閔大植 등이며, 重役陣으로는

取締役(社　長)	閔丙奭[12]
同　(副社長)	韓相龍
同　(　同　)	李達鎔
同　(專　務)	元惠常[13]

11) 東亞保險日報社 發行, 『保險會社職員錄』, 1942,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pp. 88~8109 참조

12) 閔丙奭은 正三位勳 一等 子爵,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그는 12月 京城府 慶雲洞 89에서 出生, 1880년 2월 文科에 一次로 及第, 1889년 4월 藝文館 檢閱로 승진, 1890년 5월 奎章閣 直學, 1891년 5월 承政院 副承旨, 同年 10月 弘文館副提學, 1893년 9월 成均館 大司成, 同年 10月 承政院 都承旨, 1890년 3월 育英公院 辨理, 1897년 2월 宮內府 特進官, 1898년 7월 議政府 參贊, 1899년 8월 贊政을 歷任하고 同年 10月 農商部 大臣 겸 宮內部 大臣에 임함. 同 12月 陸軍副將, 同月 軍部大臣, 1900年 2月 遞信大臣, 同年 4月 學部大臣 겸 全權公使 등에 임함. 1901年 9月 元師府 檢査局 總長에 취임. 同年 10월 度支部 大臣이 되고 1092年 鐵道院 總裁, 1905年 9月 議政府 贊政, 1906年 1月 表勳院 總裁를 거쳐 1912年 2月 李王職 長官에 취임했다가 1920年 10月 退職, 1926年 7月 總督府 中樞院 顧問으로 選任되었다.
〈資料 : 生命保險協會編, 전게서 卷一, p. 110〉

13) 元惠常은 正七位 醫師,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 朝鮮生命保險(株) 專務取締役, 鐘路金融組合長, 그는 京城府 安國洞 177에서 1884年 11月 元世亨의 4男으로 出生. 1916年 分家하여 一家을 이룸. 이에 앞서 1912年 10月 千葉醫學專文學校 卒業, 곧 이어 京城府에 德濟醫院을 開業.

同	白完爀, 秋田金之祐, 釘本藤次郎, 韓翼敎[14], 玄基奉, 李柄學
監事役	趙鎭泰[15], 韓相閔, 金漢奎[16], 富田義作,

1921年 11月 京城府 協議公員이 되고 동시에 京畿道 評議院에 추대되고 京城商業公議所 特別評議員, 金融制度調査委員을 겸하다가 1927년 6月 中樞院 參議에 임함. 山林會 및 都市硏究會 常任 幹事, 朝鮮生命 專務 取締役, 鐘路金融組合長을 겸하고 衛生施設의 狀況視察을 위하여 日本 및 南北滿洲의 各地方을 돌아봄. 취미는 讀書와 바둑.
朴惠卿과의 사이에 長男 容寬, 次男과 長女가 있으며 京城府 安國洞 163번지에 거주함.
〈자료 : 生命保險協會 編, 전게서 卷一, p. 111〉

14) 韓翼敎는 朝鮮京南鐵道(株) 取締役, 朝鮮生命保險(株) 取締役, 京城家畜公社 監査役, 富谷農事組合長, 京城放送局 幹事, 朝鮮畜産協會 理事, 京城都市計劃 常任幹事, 朝鮮實業俱樂部 理事長
그는 1887年 2月 京畿道에서 出生. 韓國官立外國語學校를 졸업하고 第一銀行 書記가 되었고 韓國銀行 書記를 거쳐 1912年 漢城銀行에 入行, 승진을 거듭하여 1920年 同行 支店支配人이 됨, 常務取締役에 발탁되어 근무하다가 1926年 朝鮮生命의 取締役으로 부임. 이 기간중 수삼차례 府協議會員, 道評議會員으로 당선됨.
〈자료 :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卷一, p. 111〉

15) 趙鎭泰는 正五位勳 五等.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 그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嘉永 6年 6月에 出生, 1875年 武科에 응시하고, 1891년 副司果를 거침, 1926年 株式會社 軍部被服會社를 창설하고, 다시 1899年 大韓天一銀行 設立에 진력하여 同行 頭取가 됨. 1908年 京城商業會議所 新設과 함께 同會頭로 선출되고 동시에 漢城手形組合을 조직하였으며 漢城倉庫會社長을 겸임함. 1909年 東洋拓殖株式會社 創立에 즈음하여 同社 監事에 취임함. 1912年 漢湖農工銀行 理事를 겸임하였고 1913年 6月 私立 崇仁學校長이 됨. 同年 다시 朝鮮商業銀行長, 京城府協議員에 천거되고 1920年 京城現物取引所 發起人으로서 그의 설립에 임하고 同 取締役에 취임. 1927年 9月 朝鮮鐵道株式會社 取締役을 겸하였고, 1927年 6月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奏任待遇)에 선임됨.
〈자료 : 生命保險協會 編, 전게서 卷一, p. 112〉

16) 金漢奎는 從七位勳 五等, 朝鮮殖産銀行 相談役, 朝鮮生命保險(株) 監査役, 京城家畜(株) 取締役, 그는 1887年 10月 京城에서 출생. 外國語學校 副敎官, 中學校 敎官, 漢城日語學校 敎官을 거쳐 中樞院 副參議에

洪忠鉉, 朴敬錫[17] 등이다.[18]

朝鮮生命의 事業實績을 보면 〈表 1〉(1929년도)와 같다.

〈表 1〉에서 보면 年始保有契約高는 死亡保險이 총 3,878건에 3,826,800円이고, 生存保險이 869건에 779,200円으로 총 4,747건에 4,060,000円이며, 新規契約은 1,477건에 1,616,600円(死亡保險), 35건에 40,000円(生存保險)으로 총 1,512건에 1,656,600円이다.

한편 收入保險料는 死亡保險이 195,567.74円(死亡保險), 生存保險이 41,369.08円으로 총수입보험료는 226,936,62円이었다.[19]

다음으로 1940년도의 事業實績을 보면 〈表 2〉와 같다.

위의 〈表 2〉에서 보면 年始保有契約은 死亡保險이 15,001건에 15,127,354.36円이고, 生存保險이 328건에 365,600円으로 총 15,392건에 15,492,954.36円이었다. 收入保險料는 死亡保險이 904,702.16円, 生存保險 15,277.12円으로 총수입보험료는 919,929.28円이었다.[20]

취임. 그후 朝鮮商業銀行 監査役, 廣藏公社 取締役, 朝鮮生命保險(株) 監査役, 朝鮮美術品 製作所 取締役, 京城商業會議所 副會頭, 京畿道 評議員, 朝鮮火災海上保險(株) 監査役, (株) 韓一銀行 專務 取締役을 歷任하였음. 취미는 弓術과 玉突, 골프.

〈자료 : 朝鮮紳士錄刊行會, 『紳士錄』, 1931〉

17) 朴敬錫은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 그는 平壤府 覆鄕里에서 1876年 5月에 出生. 1895年 7月 平壤 漢文 四樂齋를 修了하고 1915年 4月 平壤府 協議會員에 천거되고 同年 7月 平壤民風改善紀念貯蓄組合長에 임함. 1917年 12月 平壤府 參事, 1918年 10月 國民飛行會 平安支部理事, 1918年 12月 平壤北金融組合長을 歷任한 후 1919年 12月 平壤商業會議所 副會頭로 선출되고, 1925年 4月 平安南道評議員이 되고 1928年 9月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奏任 待遇)에 부임. 朝鮮生命保險 監査役을 役任함.

〈資料 : 朝鮮紳士錄 刊行會, 『紳士錄』, 1931〉

18) 韓翼敎 저 『韓相龍君を語る』, 1941.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pp. 71~72. 申守植 저, 전게서, pp. 24~25.

19)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pp. 164~165.

20)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pp. 253~254.

〈表 1〉 事業成績一覽表

(金額單位 : 円)

死亡保險	死亡保險		生存保險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年始現在契約	3,87	3,825,800.00	869	779,200.00	4,747	4,606,600.00
新契約	1,477	1,616,600.00	35	40,000.00	1,512	1,656,600.00
其他增加	25	27,000.00	—	—	25	27,000.00
保險金額 支拂의事由發生한契約	22	19,771.78	25	22,400.00	47	42,171.78
其他事由로인한消滅한契約	(4)1,129	1,128,428.22	114	111,700.00	(4)1,243	500.00
保險金額의減少	(1)	500.00	—	—	(1)	500.00
年末現在契約	4,233	4,321,700.00	765	685,100.00	4,998	5,006,800.00
純增加契約	355	494,900.00	△104	△94,100.00	251	400,800.00
年始支拂備金		3,776,39		728.82		4,505.21
年始責任準備金		219,793.97		241,950.52		461,744.49
年始保險契利益配當準備金		1,887.50		1,692.72		3,581.22
收入保險料		195,567.74		41,369.08		226,936.82
收入諸利息		—		—		45,533.32
支拂保險金		19,771.78		22,400.00		42,171.78
支拂保險契約利益配當金		1748.48		1,546.27		3,294.75
保險金額及利益配當金의外保險		13,425.19		19,377.24		32,802.43
契約에의한支拂金額		13,425.19		19,377.24		32,802.43
事業費		—		—		102,125.45
年末支拂費金		2,962.08		2,589.10		5,551.18
年末責任準備金		293,187.72		243,590.81		536,878.53
年末保險契約利益配當準備金		3,169.81		2,396.71		5,566.52

자료 : 生命保險協會편, 전게서, pp. 164~165. △은 減少를 表示.

〈表 2〉 事業成績一覽表

(金額單位 : 円)

	死亡保險		生存保險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年始現在契約	15,001	15,127,354.36	328	365,600.00	15,329	15,492,954.36
新契約	8,479	9,008,700.00	—	—	8,479	9,008,700.00
其他增加	147	163,600.00	1	1,000.00	148	164,600.00
保險金額支拂의事由發生한契約	170	190,100.00	22	15,700.00	192	205,800.00
其他事由로인한消滅한契約	3,466	3,872,112.00	5	4,500,00	3,471	3,876,612,00
保險金額의減少	(35)	45,267.00	—	—	(35)	45,267.00
年末現在契約	19,991	20,192,175.36	302	346,400.00	20,293	20,538,575,36
純增加契約	4,990	5,064,821.00	△26	△19,200,00	4,964	5,045,621.00
年始支拂備金		110,155.59		178.47		20.334.06
年始責任準備金		1,091,870,54		157,377.22		1,249,247.76
年始保險契利益配當準備金		43,139.53		3,533.79		46,673.32
收入保險料		904,702.16		15,227.12		919,929,28
收入諸利息		—		—		81,913.74
支拂保險金		149,181.00		15,700.00		164,881.00
支拂保險契約利益配當金		19,217.68		1,520.85		20,738.53
保險金額及利益配當金의外保險契約에의한支拂金額		12,043.10		1,072.29		13,115.39
事業費		—		—		422,655.49
年末支拂費金		23,55.81		1,708.46		25,264.27
年末責任準備金		1,426,507.04		176,458.78		1,602,965.82
年末保險契約利益配當準備金		22,645.46		1,805.32		24,450.78

자료 : 生命保險協會편, 전게서, pp. 232~233.　　△은 減少를 表示.

따라서 1929년도와 1040년도의 朝鮮生命의 事業實績을 비교해 보면 年始保有契約은 11년 사이에 보유계약건수는 10,582건이 보유계약고는 10,786,954円이 증가되어 약 3배의 영업신장을 보였으며 수입보험료도 692,092.66円이 증가되어 역시 3배 이상의 신장율을 시현하였다.

朝鮮生命의 株主名單은 〈表 3〉과 같다.

그러나 朝鮮生命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영업이 중지되고 그후 영업재개를 획책했으나 6.25사변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保險業種을 生命保險에서 損害保險으로 변경하고져 시도했으나 성사치 못하고 1955년 商號를 韓國生命保險株式會社로 개칭하였으나 결국 再起하지 못하고 1962년 軍事革命政府에 의해 免許가 취소되었다.[21]

4. 植民地 保險의 終末

1920년대 朝鮮生命이 설립됨에 따라 보험시장은 크게 확장되었고, 1930년대부터 보험회사는 종래의 代理店과 出張所를 支社로 승격시켰다. 또한 朝鮮에서 거둬드린 保險料를 日本에 송금하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株式과 不動產 등에 투자하였다.

生命保險은 個人保險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死亡保險이 生存保險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29년의 朝鮮生命의 契約狀況을 보면 年末保有契約이 件數로는 4,998건이었는데 이중 死亡保險件數가 4,223건이고 生存保險이 765건에 불과했으며, 계약고는 총 5,006,800円 중 死亡保險이 4,321,700円이고, 生存保險이 685,100円이었다. 또한 收入保險料도 총 226,936.82円 중 死亡保險料가 195,567.74円이고, 生存保險料가 41,369.08円으로 死亡保險의 比重이 거의 5배에 달하였다[22]

그 당시 本社인 朝鮮生命의 영업실적은 朝鮮人과 支那人을 상대로

---

21) 申守植, 전게서, p. 25.

22)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pp. 164~165.

〈表 3〉 朝鮮生命 株主名單

株數	道府縣名	株主氏名	株數	道府縣名	株主氏名
1535	全羅南道	玄俊鎬	100	京畿道	小野敏雄
55	京畿道	權永禧	900	京畿道	李達鎔
100	京畿道	韓翼教	50	福岡縣	肥塚須磨子
800	京畿道	韓相龍	10	千葉縣	井上善次郎
50	京畿道	戶丕貞藏	800	京畿道	閔弘其
100	京畿道	宋星鎭	50	京畿道	韓盛熙
530	東京都	岩瀨亮	100	京畿道	韓文奎
32	京畿道	寺澤德三郎	500	全羅南道	玄俊鎬
100	京畿道	伊藤壽一	31	慶尙南道	鄭寅奎
430	京畿道	元眞常	100	全羅南道	玄永翊
25	京畿道	韓琦錫	400	大阪	岸本セキ
100	京畿道	吉川義弘	20	京畿道	權泰均
300	京畿道	閔大植	100	京畿道	龜田周一
20	京畿道	靑木忠秋	300	京畿道	朴潤昌
100	京畿道	閔奎植	20	京畿道	松岡まさ乃
300	平安南道	富田精一	87	咸鏡南道	名取袈裟藏
15	京畿道	李鍾承	177	滋賀縣	原田立之祐
80	京畿道	李龍卿	12	京畿道	韓東作
250	京畿道	朴興植	72	京畿道	金鉉台
10	京畿道	金亨圭	250	咸鏡南道	方義錫
70	京畿道	吉本惠七	7	京畿道	申惠均
177	京畿道	梁川在昶	60	京畿道	佐野綾子
5	全羅南道	朴正壽	160	京畿道	佐野順太郎
6	京畿道	佐野哲子	5	忠淸北道	趙奭九
150	京畿道	野田董吉	60	京畿道	朱鍾勳
5	京畿道	任商淳	4	京畿道	盧永根
2	京畿道	津野繁明	1	京畿道	大原正藏
3	京畿道	淸水篤吉	11	京畿道	徐廷泰
1	忠淸南道	朴炳星	2	京畿道	金信默
2	咸鏡南道	金鍾運			

計株數壹萬株 株主五拾九名

資料：生命保險協會편, 전게서, p.

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크게 신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事業比重도 그리 크지 못했다. 生命保險 가운데 특기할 것은 1929년 10월 朝鮮總督府 遞信局이 주관한 簡易生命保險이다.[23] 이것은 日本帝國이 제2차 대전의 전쟁수행을 위한 戰費調達을 목적으로 植民地에 강요한 半強制的 保險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保險認識에 지대한 惡影響을 끼친 장본이기도 했다. 이것은 8.15해방후 國民生命保險으로 개칭되었다.

1930년대부터 日本의 戰略經濟政策으로 保險會社가 정비·合併됨에 따라 朝鮮內의 支店들도 통폐합되어 生命保險 19개사, 損害保險 16개사로 감소되었으며, 1938년 이후 戰時保險法이 제정되고 保險會社에 대한 통제는 크게 강화되었다. 1945년 8월 日本의 敗戰으로 그때까지 有效한 生命保險契約件數는 995,974件이었으며, 契約高 24억円, 資産 1억 5천萬円은 받지 못하고 植民地下의 保險事業은 종말을 고하였다.[24]

그러나 人間의 生命에 수반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生命保險이 解放後 일반사회에서 冷待視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日本帝國主義의 資本移植으로서의 19개사의 보험회사 支店網의 진출과 아울러 朝鮮내의 유일한 生命保險會社인 朝鮮生命保險會社 역시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生命保險이 우리 朝鮮에게 준 인식은 아주 좋치 못했다. 그러나 日政時 生命保險事業은 활발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日本生命保險會社의 支店數가 19개소, 支部 및 出張所 등이 437개소, 代理店과 特約店이 3,710개소로 이에 종사하던 募集人도 9,500名으로서 保險募集網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는데 해방 당시 즉 8.15直前의 朝鮮人 加入者 狀態를 보면 契約件數 758,383건, 契約高 21억 6,180萬円, 保險料積立金 4억 5,000萬円으로(그중 朝鮮生命保險分은 契約件數 107,628건, 契約高 1억 656만8천727円, 保險料積立金 7백414천668円19錢) 巨大한 업적을 시현하였던 것이다.[25] 全體的인 業績은 資料入手가 극히 곤란한 지경이

23) 申守植, 전게서, p. 26.
24) 申守植, 전게서, p. 26.

다.

이러한 收入保險料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日本의 本店에 집결되어 日本政府의 國家資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日本系 生命保險會社別 朝鮮人 契約金額과 積立金은 아래의 〈表 4〉와 같다.

〈表 4〉 日系 生命保險會社別 韓人契約金額과 積立金表

(1945. 8, 15 現在, 단위 : 千円)

會社名	契約高	積立金	會社名	契約高	積立金
千代田生命	340,000	51,500	日本徵兵	9,022	15,000
大同生命	58,000	11,000	日本敎育	2,873	1,500
第百生命	10,390	4,500	日產生命	59,330	5,000
第一生命	485,000	84,000	野村生命	38,590	15,000
第一徵兵	155,400	30,000	住友生命	56,000	9,000
富國徵兵	56,400	10,500	大正生命	2,780	1,500
板谷生命	6,935	1,500	太陽生命	12,150	5,000
明治生命	180,000	45,000	帝國生命	176,000	45,000
三井生命	63,020	15,000	安田生命	130,000	45,000
日本生命	320,000	55,000			

資料 : 생명보험협회편, 전게서, 卷二, p. 137.

Ⅲ. 生命保險市場의 再建(1945~1962)

1. 美軍政下의 生命保險會社의 設立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2월 6일 美軍政法令 제33호에 의하여 朝鮮生命을 비롯한 日本保險會社의 국내지점은 美軍政廳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25)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p. 137.

生命保險會社는 기존 朝鮮生命 이외에 1946년 大韓生命, 協同生命, 1947년 高麗生命 및 1950년 6.25事變 직전에 興國生命이 각각 새로 創立되었다.

당시 美軍政廳은 保險會社를 인가할 法的 근거가 없었다. 즉 전술한 朝鮮保險業令은 실제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日本保險業法이 과거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947년 4월 8일 美軍 政廳의 損害保險 顧問 C. J. E. Stanton의 指示通牒에 의하여 日本의 保險業法을 사용토록 하였던 것이다.[26]

이 法은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하등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保險業法의 제정 失敗(1948년 9월)와 6.25事變으로 인한 忘却으로 日本의 保險業法은 물론 保險募集團束法과 外國保險事業者에 관한 法律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1962년 1월 우리 保險法이 정해질 때까지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8.15解放으로 日本系生命保險會社와의 朝鮮人契約分에 대한 續續 및 그 장래가 막연하게 되고 美軍政廳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과거 日本系生命保險會社에 종사하던 일부 인사가 중심이 되어 生命保險會社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한편 朝鮮生命은 약 20%의 歸屬株式을 안고 종전의 社屋(鍾路區 松峴洞 60)에서 영업재개에 임하였으나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 영업망 정비와 더불어 새로이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同社의 歸屬株式은 1947년 株當拂入額 12圓 50錢을 50圓으로 하여 韓人에게 拂下됨으로써 완전한 民間會社가 되었다.

美軍政期에 새로 創立된 生命保險會社는 大韓, 協同, 高麗生命 등 3社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大韓生命은 「生命保險朝鮮人中央自治會」의 主軸이었던 任昌鎬가 중심이 되어 1946년 9월 9일 資本金 1,000萬圓으로 출발하였다.

1946년 1월 23일 12시 雅叙園에서 發起人 總會를 개최하고 發起人 代

---

26) 申守植, 전게서, p. 26.

表로 康益夏를 선출하고 定款, 收支豫算書 및 株金拂込方法과 拂込日을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發起人으로는 康益夏, 金鴻亮, 李秉均, 康弼祥, 李明衡, 金熙俊, 任昌鎬, 張震燮, 金淳興 등이었으며 創立當時의 重役陣의 面面을 보면 다음과 같다.[27]

取締役	會 長	張稷相
〃	社 長	康益夏
〃	副社長	康弼祥
〃	常 務	任昌鎬, 張昌熙
〃	醫 長	文榮會
〃	趙俊鎬, 李明衡, 金龍周	
監査役	安錠遠, 金熙俊, 李載昌	

또한 創立當時의 株主名單은 〈表 5〉와 같다.

〈表 5〉 創立當時 株主名單

(單位 : 1株)

姓 名	數	姓 名	數	姓 名	數	姓 名	數
康益夏	60,000	安丙壽	2,000	李根培	6,000	金鴻亮	1,000
張稷祥	10,000	張熙昌	1,100	李載昌	5,000	崔錫俊	1,000
康弼祥	5,000	金熙俊	1,000	李鍾弼	20,000	金政培	1,000
金龍周	2,000	金美培	1,000	丁學鐵	5,000	任昌鎬	500
具鵬書	6,000	李之松	1,000	李道元	4,000	文承益	500
李明衡	4,000	文榮會	500	金東烈	4,000	崔 滉	300
鄭有鍾	4,000	崔在緯	500	張憲相	2,000		
張震燮	2,000	張炳寅	25,000	安錠遠	2,000		

大韓生命은 1946년 9월 3일 美軍政廳으로부터 設立許可[28]를 받고 本社를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1街 三共公社 事務室을 賃借使用했고

27)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卷二 p. 7.

1954년 10월 10일 영업재개시 서울市 中區 茶洞 10番地 배명빌딩으로 이전개업하였다.

한편 同社의 事業方法書를 보면 保險商品種類로는 利益配當付養老保險(10年 滿期, 15年, 20年, 25年, 30年, 40年)과 利益配當付長壽保險(15年 20年, 25年, 30年), 10년불입 80세 수취, 15년 불입 80세 수취, 그리고 利益配當付定期保險(1년만기) 등 3종이 있었으며 보험금최고액은 30만원으로 하고 5,000원 이하는 취급하지 않았다.

개업 당시의 기구조직을 보면 本社에 총무과, 계약과, 통계과 등 3과를 두고 출장소, 대리점 등을 본사직할로 두었으며 전국의 樞要地에 支店, 支社, 支部, 출장소, 대리점 등을 두었다.

協同生命은 1946년 10월 25일 李亘鍾이 社長이 되어 資本金 1,000萬圓으로 創立되었으나 역시 해방후의 政治, 經濟, 社會的 混亂으로 開店

---

28) 設立許可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RE
Department of Finance
Seoul, Korea

TO WHOM IT MAY CONCERN:

Be it known by these presnts that··· TAI HAN LIFE INSURANCE JOINT STOCK COMPANY is constiuted und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is hereby authorized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writing··· CONTRACTS OF LIFE INSURANCE, ENDOWMENTS AND ANNUITY···

This license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one year form the date of issue unless sooner revoked for cause.

Dated at SEOUL, KOREA, this 3rd day of September, 1946.

BY DIRECTION OF THE MILITARY GOVERNOR

Directo

〈資料 : 財務部 保存文書〉

休業의 상태로 業績이 부진한 상황으로 6.25事變을 맞게 되었다.

高麗 生命은 1947년 4월 12일 美軍政廳으로부터 營業免許[29]를 받아 1947년 4월 1일 資本金 1,000萬圓으로 初代社長 白蒼濟가 創立하였으니 이것이 生保業界 4번째 회사였다.

興國生命은 財務部로부터 1949년 12월 24일 事業許可를 받았으나 6.25事變으로 개업도 못하고 中斷하였다.

2. 6.25後의 生命保險事業의 再建

生命保險은 화재보험중심의 損害保險과는 달리 8.15해방이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우선 生命保險이 長期保險이기 때문에 인프레이션

---

29) 營業免許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RE
Department of Finance
Seoul, Korea

LICENSE

TO WHOM IT MAY CONCERN:

Be it known by these presents that THE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is constituted under existing laws and requlations and is hereby authorized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writing CONTRACTS OF LIFE INSURANCE : ENDOWMENTS, AND ANNUITY

This license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one year form the date of issue unless sooner revoked for cause.

Dater at Seoul, Korea, this 12th day of April, 1947.

Advisor　　Director.

〈資料 : 財務部 保存文書〉

의 영향을 받는데 다가 火災保險의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強制加入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外野組織을 통한 市場確保에 상당한 기간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불안과 혼란으로 生命保險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與件 속에서 基盤이 굳어지기도 전에 6.25事變이 발발하였다. 戰爭期間 동안 生命保險會社의 看板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완전한 休務狀態에 있었다.

1954년 10월 財務部는 生命保險事業의 再開를 지시하고 不毛地의 生命保險市場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業界의 自意에 의한 영업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新設會社의 許可를 정책적으로 환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때 6.25事變 以前의 旣存 生命保險會社의 형편은 事業免許만 받아 놓았을 뿐 다른 新設會社의 여건과 동일하였다. 즉 經營陣의 개편, 社員의 모집, 外野組織의 着手, 本社 事務室의 貸借, 增資 등에서 완전히 새로 출발해야 될 사정에 놓여 있었으며 事變以前의 契約이 維持된다거나 또는 保有하고 있는 資産도 거의 全無한 상태였다. 財務部가 이들 旣存 會社들에게 영업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短期間內에 영업재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新設會社와 마찬가지로 1956년까지는 거의가 準備段階에 있었다. 기존회사들의 動向을 보면 1955년 大韓生命, 1956년 高麗生命이 재개업하였을 뿐 다른 會社의 형편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大韓生命은 事變期의 4년을 하나의 영업기간으로 決算하여 기타 관계서류를 철하여 두고 1954년 資本金을 10萬圓에서 300萬圓으로 증자하고 任員을 개편, 補強하는 동시에 同年 10월10일 임시사옥(中區 茶洞)에서 업무가 재개되었다.

大韓生命의 영업재개 당시의 財産狀況으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를 보면 〈表 6〉과 같다.

大韓生命은 1954년 9월 3일자로 取締役 社長 任昌鎬에 의하여 財務部 長官 李重宰에 제출한 「生命保險事業再開에 관한 件」이 同年 10월 12일자 財理 第324號로 營業再開의 承認을 받고 드디어 업무재개에 들어갔다.

〈表 6〉 營業再開當時의 財産狀況

貸借對照表 檀紀 4287年 10月 31日 現在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借邊(資産之部)		貸邊(資本及수債之部)	
計定科目	金額	計定科目	金額
當座預金	2,015,356圓	資本金	3,000,000圓
振替預金	35圓	法定準備金	600圓
現金	9,392圓	納稅準備金	5,000圓
手形貸付金	20,090圓	責任準備金	144,941圓
什器	260,100圓	支拂備金	2,392圓
預託金	550,000圓	保險契約者利益配當金	3,500圓
假拂金	33,000圓	身元保證金金	68圓
當期損失金	271,631圓	前期移越金	1,291圓
計	3,159,604圓	計	3,159,604圓

損益計算書 自 檀紀 4283年 4月 1日
至 4287年 10月 31日

借邊(資産之部)		貸邊(資本及수債之部)	
計定科目	金額	計定科目	金額
保險金	13,300圓	募集厥費	890圓
再保險金	736圓	諸手當	16,476圓
再保險料	156圓	募集交通費	67圓
解約返戾金	180,570圓	財務費	6,800圓
其他返戾金	51圓	旅費	791圓
給料	17,473圓	保險料	429,846圓
諸手當	16,476圓	廢疾保險料	2,964圓
臨時手當	37,600圓	再保險料	819圓
募集手當	164,338圓	諸利息	22,017圓
募集督勵金	2,318圓	雜收入	119圓
募集交通雜費	917圓	財戾評價益	88,000圓

資料：財務部 保存 文書.

販賣한 保險商品은 이미 1950년 6월 13일부로 판매허가를 받은 「自由滿期團體保險」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財務部當局으로부터 同一被保險者에 대한 保險金의 최고액은 30만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30] 그외에 「不幸保障」「退職保障」「損害疾病保障」을 하는 「學生團體保險」을 創案販賣한다고 營業再開의 人事말씀[31]을 하였다.

한편 가장 역사가 오래된 朝鮮生命은 해방후 기존회사로서 업계를 리드하여 왔으나 환도 이후 生命保險의 재개 단계에서 가장 脆弱性을 나타내었다. 이 회사는 1955년 商號를 韓國生命保險株式會社로 개칭하고 업무재개를 준비하였으나 創業陣容들이 이미 作故하고 그 후의 경영진이 保險會社經營에 關心이 없어 계속 休業狀態에 있었다. 그동안 財務部로부터 5, 6차에 걸쳐 增資指示와 業務開始의 요청이 있었지만 株主들의 無誠意와 會社再建을 위한 열의가 없다고 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特別監査班(1962년 8월)의 지적에서 免許取消의 健議를 받아 1962년 事業免許가 취소되었다.

興國生命은 1951년 1월 20일 事業免許(1949년 12월 24일 설립허가)를 받고 1958년 개업(1957년 10월 31일 재개승인)하였으나 다시 休業狀態에 있다가 1960년 5월 6일 영업을 재개하였다.

協同生命은 1958년 8월 5일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불운의 연속으로

---

30) 財務部 保存文書

31) 業務再開人事의 말씀

敬頌 現下復興事業에 健鬪하시는 諸位의 健康을 삼가비나이다. 就弊社는 그동안 「六·二五」動亂으로 因하야 營業을 中斷하고 있던 바 今般斯界에 卒先하야 當局의 承認을 얻어 營業을 再開하고 集團的 勤勞大衆을 위한 現時代에 가장 適合하고 가장 進步的인 「不幸保障」「退職保障」「損害廢疾障碍」을 하는 「厚生團體保險」을 創案發賣하오니 아무쪼록 續極利用하시기를 敬望하오며 開業人事의 말씀 兼 案內를 드리나이다.

서울特別市 中區 茶洞 七○(電話 二一五○一八番)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取締役社長 任昌鎬

〈資料 : 東亞日報, 1954. 10. 24〉

再起치 못하고 1964년 7월 6일 免許가 取消되었다.[32]

高麗生命은 1954년 10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총주주수 12名, 주식총수 20만주) 資本增資의 件과 役員選任의 件을 附議事項으로 하여 討議한 결과 금후의 업무확장과 會社威身上 資本金 20萬圓을 300환으로 증자하여 그 증자액을 현주주에게 按分比例로서 배정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役員選任의 件은 取締役社長 白蒼濟, 取締役 宋錫鎬, 朴大南, 徐東祥, 監査役 金成在, 姜益馨 등 제씨는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다음과 같이 互選되었다.

代表取締役社長	尹永善
取締役副社長	孫基業
專務取締役	姜昌之
常務取締役	李根成
同	姜仁馨
監 査 役	李鴻求, 朴斗遠[33]

위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고 養老保險, 生存保險, 團體保險 및 年金保險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1954년 이후 기존생명보험회사가 재기를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財務部 當局의 新設會社 免許方針에 따라 1954년 12월 21일 第一生命保險株式會社(初代 社長 李範昇)가 資本金 2千萬환으로 설립되었다. 이어서 1957년 5월 5일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현 三星生命)의 創立으로 生命保險市場이 어느 정도 정비되는 과정에서 1958년 8월 7일 大韓敎育保險株式會社, 1958년 11월 26일 東亞生命保險株式會社의 설립으로 生命保險業界에서도 치열한 모집경쟁이 과열되어 갔다.

生命保險會社의 協議團體인 協會는 美軍政時代 朝鮮, 大韓, 高麗, 協

32)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卷二, pp. 3~4.

33) 財務部 保存文書 參照.

同의 4사가 영업할 때에 任意團體로서 朝鮮生命保險協會가 朝鮮生命內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후 協會는 1950년 2월 4일 社團法人으로 登記까지 하였으나 戰爭으로 生命保險會社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 生保業界가 활기를 띄게 됨에 따라 1958년 2월 18일 社團法人 大韓生命保險協會가 다시 발족하였다.

이하 第一生命을 비롯한 후발 각사들의 설립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生命은 1954년 10월 6일 創立委員會代表 金道鎭에 의하여 財務部 當局에 設立認可申請書[34]를 제출하여 同年 11월 24일 財理 第2950號로 設立內認可를 받았으며, 同年 12월 2일 設立本認可書를 제출하여 同年 12월 21일 財理 第3648號로 設立許可를 받아 同年 12월 22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번지 종로빌딩 402호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창립당시의 임원은 代表取締役 社長 李範昇, 取締役 金廷洙, 金道鎭, 沈鍾麟, 李忠煥, 嚴容燮, 監査役 金道鎭[35] 등이었으며 기구조직으로는 총무부, 영업부, 업무부의 3개부를 두고 그 아래 총무과, 경리과, 영업과, 조사과, 업무과, 계약과, 요금과를 설치했다.

東邦生命保險은 1957년 3월 30일 發起人 代表 姜義秀에 의해 財務部當局에 設立認可申請書를 제출하여 同年 4월 18일 財理 第1251號로 設立內認可를 얻고 公稱資本金 1億환 中 제1회 불입은 4분의 1, 제2회 불입은 6개월이내에 하도록 조건부 인가하였다. 따라서 동사는 동년 4월 18일자로 設立認可條件履行報告書를 財務部에 제출하고, 4월 25일 設立本認可書를 당국에 出願한 바 4월 19일자로 財理 第1481號로 허가되었다. 그리하여 동사는 1957년 5월 5일 서울特別市 中區 小公洞 21番地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창립당시의 任員 및 기구조직은 다음과 같다.

代表取締役 社長 姜義秀, 取締役 副社長 全仲潤, 專務取締役 姜日盛, 常務取締役 金龍洙, 監査役 金參永[36] 등이며 본사의 기구조직은 총무

34) 第一生命 30年史.

35) 재무부 보존문서 참조.

부, 업무부, 사업부 및 조사기획실을 두고 그 밑에 경리과, 서무과, 업무과, 계리과 및 사업과를 두었다. 한편 설립당시의 株式分布狀況은 〈表 6〉과 같다.

〈表 6〉 設立當時의 株式分布狀況

(單位 : 株)

株主	株式數	株主	株式數
姜義秀	28,000	鄭炳殷	1,000
全仲潤	15,000	張暻根	10,000
尹參永	5,000	李澔	10,000
姜日盛	11,000	株式會社盎山公司	4,000
金龍洙	10,000	協同證券株式會社	5,000
姜和秀	1,000		

다음으로 大韓敎育保險은 1957년 11월 發起人 代表 愼鏞鎬에 의해 設立許可申請書를 財務部에 제출하여 1958년 1월 27일 財理 第454號로 設立內許可를 얻고, 공칭자본금 2억환 제1회 불입을 4분의 1은 3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사회경제여건상 제1회 불입금 납입의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므로 당사는 당국에 불입금 연기청원서를 출원하여 30일의 연기조치를 받았다. 또한 大韓敎育保險은 원래 太陽生命保險株式會社로 출원하였으나 그후 1958년 1월 1일 定款 및 商號變更의 件을 출원하여 동년 7월 11일 財理 第3370號로 設立免許 및 商號變更認可를 얻고, 동년 8월 6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6번지 本社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설립당시의 역원 및 기구조직은 다음과 같다.

代表取締役 愼鏞鎬, 專務取締役 趙俊鎬, 取締役 安大植, 趙東完, 朴鎭洋, 監査役 鞠眞晩, 李玎雨 등이며, 기구조직은 총무부, 제1업무부, 제2업무부, 영업부 및 기획조사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총무과 경리과, 제1업무과, 수리과, 제2업무과, 제1영업과, 제2영업과, 기획조사과 및

36) 재무부 보존문서 참조.

검사실을 두었다.[37]

東亞生命保險은 1958년 8월 5일 代表取締役 劉昌學이 의해 財務部에 設立認可申請書를 제출하여 1959년 1월 23일 內認可履行促求를 받고 동년 1월 31일 대표취체역 김태웅에 의해 설립본인가신청서를 출원하여 동년 2월 18일 財理 제827호로 設立認可를 받았다. 공칭자본금은 2억환이고, 株式數 20만주, 拂入濟株金 5千만환이며, 설립당시 임원은 議長 劉昌學, 取締役 劉昌學, 朴泰浩, 李公雨, 金泰龍, 金景淑, 監査役 白壽男, 具東賢 등이었다.[38]

東海生命保險은 1973년 5월 21일 생명보험사업 면허에 따른 회사설립내인가를 財務部 保險 1223-570호에 의해 ① 수권자본금 10억원으로 하여 설립시에 8억원을 납입하고, 73년 12월말까지 2억원을 납입할 것 ②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보험 계약과 재산(자산 및 부채일체)을 포괄인수 할 것 ③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사원(외무사원 포함)을 흡수하여 계속 종사케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인가서를 승인 하였다. 따라서 동년 5월 29일 설립본인가신청서를 대표이사 사장 최준규에 의해 당국에 출원, 5월 30일 재무부 보험 1223-1156호로 사업면허를 받았다.[39]

설립당시의 주식분포 상황은 〈表 7〉과 같다.

Ⅳ. 生命保險産業의 發展(1963~1986)

1. 生命保險業界의 정비

1962년 8월 國家再建最高會議의 보험업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명보험회사는 增資 5,000만원, 손해보험회사 1억원과 통합조치에 의하여 損害保險 14社(再保 1사 포함)가 10사로 줄어들고,

37) 대한교육보험 30년사,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권 2, pp. 40~43.
38)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pp. 46~47.
39)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권 2, pp. 49~53.

〈表 7〉 設立當時株式分布狀況(設立當時株主名簿)

(서기 1973년 5월 現在)

株式名	株式數	金額
서울通商株式會社	500,000	500,000,000
東方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143,000	143,000,000
工和工業株式會社	50,000	50,000,000
유니온새로판工業株式會社	50,000	50,000,000
崔俊圭	50,000	50,000,000
朴찬容	1,000	1,000,000
金永德	1,000	1,000,000
鄭元杓	1,000	1,000,000
金敎善	1,000	1,000,000
任璟宰	1,000	1,000,000
金在赫	1,000	1,000,000
朴錠遠	1,000	1,000,000
합계	350,000	800,000,000

資料 : 생명보험협회편, 전게서 卷二, p. 51

生命保險 7社는 6社가 되었다.[40]

1960년대 이후 生命保險業界는 國民貯蓄組合法의 혜택으로 契約金額과 資産 등에서 計數的으로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흡수합병되고 協同生命과 高麗生命이 不實會社로 정리되었고, 第一生命과 大韓生命이 한때 경영의 위기를 맡기도 했다.

協同生命은 社勢가 기울어 짐에 따라 財務部는 1959년과 1961년의 감사에서 劣勢要因을 누차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회사는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당시는 第一生命도 관리중에 있었으므로 財務部와 業界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다. 同社의 劣勢要因은 內部의 不實도 있었지만 4.19와 5.16혁명으로 더욱 不運이 겹치게 되었다.

財務部는 1961년 7월 1일 協同生命에 대하여 管理命令을 내리는 한

40) 申守植 저, 전게서 p. 28.

편 그 때까지 第一生命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東邦生命에게 第一生命의 관리를 해촉하고 協同生命을 단독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協同生命의 관리를 맡은 東邦生命은 舊株主에게 責任準備金의 不足額 3,400만원을 補完 또는 增資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새 株主를 맞이하였다. 財務部는 1961년11월 株主를 더 公募하여 5,000만원을 증자하되 그 4분의 3을 불입하도록 지시하였다.

協同生命은 설립당초 公稱資本金 2,000만환의 4분의 1인 500만환만 불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財務部가 지시한 증자액의 실제불입액은 32,455,000환이었다. 그리하여 1962년 4월 10일 새 株主가 現金으로 500만환을 출자하고 公募된 株主(李粉永과 朴元箕)가 1,750만원을 현물(不動産) 출자하여 合計 2,250만환이 증자되었으나 舊株主分의 9,955,000환은 불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財務部는 구주주의 未拂入金을 15日 以內에 拂入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1962년 5월 4일 관리를 해제하였다.

協同生命의 재건을 위하여 그 동안 財務部와 同業社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재기하지 못하고 1964년 11월 10일자로 事業免許가 取消되고 東邦, 大韓, 大韓敎育의 3社로 하여금 殘存契約과 財産 및 負債를 引受하게 하였다. 3社는 1965년 5월 20일까지 分割引受하고 協同生命의 정리를 매듭지었다.[41]

高麗生命은 최고회의 감사에서도 東亞生命과 관련하여 不實要因을 많이 지적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1970년까지 항상 열세회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동안 동사는 資本의 脆弱性, 運用資産의 不健全 특히 과도한 不動産投資로 인한 流動性의 결여로 支拂不能狀態에 직면하고 對外負債가 누증됨에 따라 財務部는 1971년말 새 株主(朴文相)에게 인수시켰다. 그러나 引受과정에서 官吏와 某種의 결탁이 있었고 인수후 不實不動産의 처리를 同業他社에 알선하여 주고 부실경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전수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雙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41)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p. 45.

있었다.

朴文相의 인수후에도 業績의 不振, 不合理한 경영, 損失金의 누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사례가 허다했고, 1973년 2월말 현재의 보유계약고 146억원은 1968년의 205억원에 비하여 59억원이나 감소되고 있어 재무부는 1973년 4월 25일 기존회사에게 고려생명의 공동관리를 지시하였다.

高麗生命은 5個社의 同業社로 하여금 모든 保險契約과 財産을 포괄이전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保險契約準備金의 상당한 財産이 부족하여 보험료의 削減 등 契約條件을 變更하지 않는 한 기존계약 조건이행이 불가능하여 5월 16일 고려생명을 해산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여 동사의 계약과 財産을 이전시키도록 하였다.

財務部는 그동안 契約準備金의 不足額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고려생명의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었으나 株主 朴文相의 불응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5월 21일 서울通商그룹에게 東海生命保險의 신설을 內認可했다. 그 조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금 10억원에 8억원을 설립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2억원은 年末까지 납입하며, 고려생명의 財産, 負債 및 從業員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조건이었다.

고려생명의 강제관리직전의 경영실적(1972년 4월 1일~1973년 3월 31)을 보면 〈表 8〉과 같다.

서울通商그룹은 1973년 5월 30일 東海生命의 事業免許를 받고 계열회사인 東方海上도 일부의 株式引受를 시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1973년 3월말 현재 고려생명은 契約件數 446,909건, 契約金額 15,732,413,000원, 총자산 13억6천6백만원, 부채 22억3천5백만원이었다.[42]

第一生命保險은 환도후 신설회사로서 1958년 8월까지 契約金額 200億환을 달성하여 한때 生保業界에서 首位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동년 8월 21일 株主變動에 따라 경영진이 개편되면서부터 지나친 영업의

42)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권 2, pp. 55~56.

〈表 8〉 強制管理直前의 經營實績(1972. 4. 1~1973. 3. 31)

事 業 成 績

區 分	件 數	金額(千)
年始保有契約	441,200	11,890,703
新 契 約	112,668	9,407,545
(%)		(79.1)
其他의 增加	813	53,897
支給事由發生契約	81,322	1,744,609
失 效 解 約	27,960	6,484,374
(%)		(54.5)
其他의 減少	18	9,387
年末保有契約	445,381	13,113,775
純 增 加	4,181	1,223,072
(%)		(10.3)

區 分	金額(千)
年始責任準備金	
責任準備金	1,756,745
支給費金	139,748
特別配當金	219,918
計	2,106,411
收入保險料	973,596
利息配當收入	66,003
平均資產利廻率	5.1
支給保險金	643,281
失效·解約還給金	46,619
事 業 費	355,635
(%)	(36.5)
年末責任準備金	
責任準備金	2,006,342
支給費金	43,913
特別配當金	184,659
計	2,234,914

貸 借 對 照 表

資 產 計 定

區 分	金額(千)
運用資產	
現預金	30,449
有價證券	37,347
貸付金	92,148
不動產	731,061
小計	881,041
動產	27,779
未收金	28,454
支社金	32,264
預託金	40,178
假給金	36,276
其他	263,896
前年度移越損失金	1,235,703
當年度損失金	143,172
資產合計	2,588,763

負債및資本計定

區 分	金額(千)
保險契約準備金	
責任準備金	2,006,342
支給備金	43,913
特別配當金	184,659
小計	2,234,914
資本金	300,000
未給金	16,423
預收金	3,450
假受金	24,162
支社貸	—
其他	9,814
前年度移越利益金	—
當年度利益金	—
負債및資產合計	2,588,763

損 益 計 算 書

損失 區分	金額(千)	利益 區分	金額(千)
保險金	643,281	保險料	973,596
失效·解約還給金	46,619	再保險收入	100
再保險支出	407	利息및配當收入	66,003
事業費	355,635	資產賣却및評價益	4,398
諸稅公課金	18,307	雜收入	6,512
支給利子	449	前期移越準備金	2,116,411
財產賣却및評價損	8,846	當期純損失	143,172
次年度保險契約準備金	2,234,914		
其他	1,734		
合計	3,310,192	合計	3,310,192

資料 : 생명보험협회, 전게서.

욕으로 事業費를 과도하게 지출하였고, 支社貸와 假拂金이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갔다.

1960년 5월 財務部는 업무감사를 한후 그동안 지적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司直當局에 告發조치하고 일부의 任員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同社의 이와같은 不運은 內的 要因도 크게 작용하였지만 4.19 혁명을 전후한 사회불안으로 신계약의 감소와 환급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60년 7월 1일 財務部는 第一生命의 강제관리를 명령하고 관리인으로 東邦, 大韓, 高麗의 3社에서 책임하여 관리에 임하게 하였는 바 그 방법은 전기 協同生命과 同一하였다.

共同管理直前의 會社狀況은 다음의 〈表 9〉와 같다.

3社의 관리인들은 그후 수차에 걸쳐 새로운 株主를 물색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일반주주에 의한 제일생명의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3년간에 걸치는 강제관리가 계속되는 동안 同社의 負債는 날로 증가되어 관리종기에는 未拂保險金 8,500만원, 借入金 1,600만원, 責任準備金 1억6,000만원으로 合計 2억6천1백만원의 부채가 있는 반면

〈表 9〉 契 約 狀 況

(單位：千圓)

增加		減少	
內 容	契約高	內 容	契約高
年始現在	17,119,370	死亡·傷害·廢疾	108,175
管理以前募集新契約高	464,700	退職還拂	1,553,750
復活및其他	1,287,940	教育保險滿期	254,400
合計	18,872,010	解約·失效및其他	6,229,410
期末現在	10,726,275	合計	8,145,735
		期中差減純減少額	6,393,095

營業組織狀況

本社直營機構	分室	7
	派遣所	4
新契約募集機構	支社	8
	支店	22
	出張所	73
	代理店	8

資料：第一生命三十年史

資 產 狀 況(1959年度)

(單位：1,000圓)

資產計定		負債計定	
現金	49,072	責任準備金	76,145,546
諸預金	251,945	支給費金	11,867,145
有價證券	8,098,152	危險準備金	405,962
貸付金	16,291,985	計	88,418,653
不動產	19,668,044	未拂金	1,921,436
小計(運用資產)	44,379,198	返受金	7,825,773
動產	4,314,781	豫受金	445,000
未收金	4,994,388	資本金	2,500,000
支社및代理店貸	6,607,066	其他	26,181,980
預託金	5,770,000		
假拂金	17,303,773		
其他	1,204,302		
小計(總資產)	84,573,508		

前年度移越損失金	4,625,617		
當年度損失金	38,093,717		
合計	127,292,842	合計	127,292,842

損益狀況(1959年度)

(單位 : 1,000圓)

資產計定		負債計定	
保險金	17,191,636	保險料	91,109,280
死亡給付金(a)	(18.9)-	利益配當收入	2,898,137
解約(失效)還給金	57,793	財產賣却및評價益	(390,238)390,238
小計	(49.6)17,249,429	雜收入	37,749
事業費	45,179,696	前年度移越準備金	
稅金	1,679,634	責任準備金	41,940,225
支給利息	82,220	支給費金	414,760
財產賣却및評價損	3,926,811	危險準備金	1,804,865
雜支出	20,152,528	小計	44,159,850
次年度移越準備金		當年度純損失金	38,039,717
責任準備金	76,145,546		
支給費金	11,867,145		
危險準備金	405,962		
小計	88,418,653		
合計	176,688,971	合計	176,688,971

資料 : 生命保險協會 刊「生命保險統計年報」.

資產은 3,200만원에 불과하여 동사의 재건은 정책적인 株主募集으로 대폭적인 증자가 없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43]

第一生命의 재건이 관리인의 힘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게된 財務部는 당시 最高會議의 양해를 얻어 5개 市中銀行(第一, 商業, 韓一, 朝興, 서울)으로 하여금 1억원을 공동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市中銀行의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1963년 9월 6일에 우선 8,0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그후 1964년 4월에 구주주의 未納入株金 750만원을 다시 납입하여 동사의 자금은 설립당초의 拂入資本金 250만원과 합하여

43) 신수식 저, 「韓國保險史」, 1974.

9,000만원이었다.[44]

이상과 같이 第一生命의 정책적인 증자가 성공하자 1963년 10월 1일 관리를 해제하고 영업을 재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市中銀行의 증가만으로 기왕에 가지고 있던 동사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구제책으로 財務部는 보험금의 삭감지급과 一般負債도 3분의 1로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4,000만원의 보험금과 1,000만원의 私債가 감면되었지만 보험가입자와 私債權者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편 生命保險 9社 가운데 東亞生命이 고려생명에 吸收合併되고, 韓國生命이 면허취소되어 6개사가 존재하였다. 東亞生命은 원래 고려생명에서 무담보대부를 받아 그 자금으로 株式을 매입하여 설립된 變別的인 會社였다.[45]

2. 經濟開發과 生命保險

生命保險은 1957년부터 어려운 사회경제의 여건아래서 겨우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4.19, 5.16혁명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한 內資動員策으로 국민저축조합법이 제정되고 그 대부분이 生命保險을 통한 저축으로 유인하여 生命保險業界는 단체보험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그 결과 생명보험은 計數面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國民貯蓄組合法의 제정은 정부가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책정된 內資動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거 15년동안 방치되었던 舊日本法令을 새로이 정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내자의 동원방안으로서 종래의 "朝鮮國民貯蓄組合令"을 폐지하고 1962년 1월 23일 당시 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결을 거쳐 同年 2월 9일 法律 第1020號로서 새로이 "國民貯蓄組合法令"을 제정공포하였다.

---

44)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권2, p. 56.

45) 申守植 저, 전게서 1974.

또한 同年 3월 27일에는 각령 제375호로서 국민저축조합법시행령을 제정하여 本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규정하였다.[46]

生命保險은 同法 제3조 5항[47](生命保險會社에의 保險料의 拂入)의 규정에 의하여 貯蓄機關으로 정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業界의 活性化와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金額은 1961년 12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1972년 4,200억원, 1982년 44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資産은 1961년도 10억원, 72년 400억원, 82년 2조2,86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保險契約準備金도 61년 8억원, 72년 421억원, 82년 1조5,237억원으로 급성장하였다.[48]

生命保險에 있어서의 實質成長率을 보면 保有契約高는 1조 4315억원(1976년도)으로 연간 증가고는 3,059억원이 되어 27.2%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70년 기준 不變市場價格으로는 5,625억원이 되어 전년보다 9.9%가 증가, 75년도 실질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연간 新契約高는 9,8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4%가 증가하여 70年基準 不變價格으로 볼때에는 지난해보다 7.8%가 증가하였다.

물론 保有契約高 또는 新契約高 등은 가입자가 각각 特定, 不特定의 상이한 시점에서 보상 받고저 원하는 금액이지 실로 당해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동년도의 deflator値로서 物價寄與要因을 제거시켜 비교하는데는 그 적합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수불되거나 또는 實物價格値로 保有하고 있는 保險料, 保險金, 事業費, 資産 등은 마땅히 物價의 기여요인을 제거한 신장율을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연간 收入保險料는 856억6천2백만원으로 75년에 비해 28.9%가 증가

---

46) 생명보험협회 편, 전게서 권2, p. 286.

47) 위의 책, p. 287.

48) 申守植 저, 전게서 p. 30.

하였으나 70년 基準不變市場價格으로 볼때 前年對比 11.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年間 保險金支給(解約還給金 포함)은 426억6천7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2.4%가 증가, 실질증가율로도 23.1%가 늘어났다.

또한 資産規模는 76年度末 현재 1,452억2,100만원으로 年間 증가율은 37.7%, 실질증가율은 19.0%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76년도 GNP規模는 經常市場價格으로 12조1,434억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70년을 基準年度로 한 76년도의 deflator推計値는 254.7를 나타내어 76년도의 實質 GNP규모는 4조7679억원(70년기준 불변시장가격) 실질성장율은 15.5%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동기간중 預金銀行의 貯蓄性 預金 증가액은 6,305억원으로 年間 貯蓄性 預金 증가액의 實質伸張率은 75년도의 56.7%에서 76년도에는 18/4%로 저조한 성장을 보였으며 損害保險의 年間 保險料 收入은 967억원으로 전년의 743억원에 비해 30.2%가 증가, 실제 증가율 12.4%를 기록하였고, 民營生命保險의 收入保險料는 名目上 28.9%, 실질증가율은 11.4%를 시현하였다.

이렇게 볼때 76년도의 生命保險은 事業成長을 나타내는 대표적 指數라 할 수 있는 保有契約高, 新契約高, 收入保險料, 資産 등이 經濟成長率에 못지 않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保有契約高는 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收入保險料와 新契約高는 각각 11.6%와 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49]

관련자료를 보면 〈表 10〉과 같다.

우리나라의 保險事業은 그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76년말에는 收入保險料 1천7백74억원, 保有資産 2천8백27억원, 生命保險契約高 1조4천3백15억원에 달하였으며 현행 보험제도가 실시된 63년에 비하여 약 50배의 신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 成長에 비하여 국민 일반의

49)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권2, pp. 332~333.

보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좋은 편이 아니였으며 保險產業의 質的 改善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表 10〉

Deflator 値　　GNP　　(金額 : 10億圓)

年度	70 年 基準値 *1 *2	66年을 基準으로 한修正値	경상 시장 가격	성장지수 66年基準値(명목)	불변시장 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年基準値 (실제)	실질 성장율 (%)
67	68.5	114.0	1,269.95	123	1,853.01	108	7.8
68	76.6	127.5	1,598.04	155	2,087.12	121	12.6
69	86.7	144.3	2,081.52	202	2,400.49	140	15.0
70	100.0	166.4	2,589.26	251	2,589.26	151	7.9
71	111.5	185.5	3,151.55	305	2,826.82	164	9.2
72	127.5	212.5	3,860.00	374	3,023.63	176	7.0
73	139.9	232.8	4,901.63	475	3,507.45	204	15.7
74	177.0	294.5	6,747.07	654	3,811.27	222	8.7
75	219.9	365.9	9,080.30	879	4,129.29	240	8.3
76	254.7	423.8	12,143.40	1,176	4,767.73	277	15.5

〈註〉 *1 : 不變價格化 指數임.

*2 : 韓國銀行 所得課題供.

〈表 11〉　　保 險 金(해약환급금포함)

(金額 : 百萬圓)

年度	경상가격	성장지수 66년기준 (명목)	불변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기준 (실제)	실질증가율 (%)
67	2,140	153	3,137	134	34.3
68	3,553	253	4,638	199	47.9
69	5,155	367	5,946	255	28.2
70	7,487	533	7,487	321	25.9
71	7,775	554	6,973	299	▲ 6.9
72	13,433	957	10,519	435	50.9
73	20,699	1,474	14,796	633	40.7
74	22,283	1,587	12,589	539	▲14.9
75	29,952	2,133	13,589	583	8.2
76	42,667	3,039	16,752	717	23.0

資　　產

(金額 : 百萬圓)

年度	경상가격	성장지수 66년기준 (명목)	불변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기준 (실제)	실질증가율 (%)
67	9,327	149	13,616	130	30.4
68	14,458	230	18,875	181	38.6
69	20,607	328	23,769	228	25.9
70	26,327	425	26,677	250	12.2
71	32,328	515	28,994	278	8.7
72	40,484	645	31,702	303	9.3
73	57,328	913	40,978	392	29.3
74	80,210	1,278	45,316	434	10.6
75	105,475	1,680	47,965	459	5.9
76	145,221	2,313	57,061	546	19.0

資料 : 生命保險協會刊, 「生命保險 Fact Book」, 1977.

〈表 12〉　　保　有　契　約

(金額 : 百萬圓)

年度	경상가격	성장지수 66년기준 (명목)	불변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기준 (실제)	실질증가율 (%)
67	119,364	145	174,254	127	26.8
68	168,259	204	219,659	160	26.1
69	233,385	283	264,451	196	22.6
70	264,451	320	269,187	193	▲ 1.8
71	309,481	375	277,561	202	5.0
72	422,033	511	330,488	241	19.1
73	593,131	718	423,968	309	28.3
74	891,503	1,080	503,674	367	18.8
75	1,125,583	1,363	511,861	373	1.6
76	1,431,541	1,734	562,050	409	9.8

新 契 約

(金額 : 百萬圓)

年度	경상가격	성장지수 66년기준 (명목)	불변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기준 (실제)	실질증가율 (%)
67	75,136	185	109,688	162	61.9
68	98,334	242	28,373	190	17.0
69	132,810	326	153,183	226	19.3
70	126,135	310	126,135	186	▲ 17.7
71	123,276	303	110,561	163	▲ 12.3
72	283,154	696	221,734	327	100.6
73	403,897	992	288,704	426	30.2
74	724,232	1,779	409,171	604	41.7
75	791,020	1,943	359,718	531	▲ 12.1
76	987,103	2,425	387,555	572	7.7

收 入 保 險 料

(金額 : 百萬圓)

年度	경상가격	성장지수 66년기준 (명목)	불변가격 (70년기준)	성장지수 66년기준 (실제)	실질증가율 (%)
67	5,361	153	7,826	134	34.0
68	8,079	230	10,547	181	34.8
69	11,232	320	12,955	222	22.8
70	14,555	415	14,555	249	12.4
71	13,913	396	12,478	214	▲14.3
72	27,317	778	21,392	366	71.4
73	42,739	1,217	30,550	523	42.8
74	56,387	1,606	31,857	545	4.3
75	66,468	1,893	30,226	517	▲ 5.1
76	85,662	2,440	33,633	576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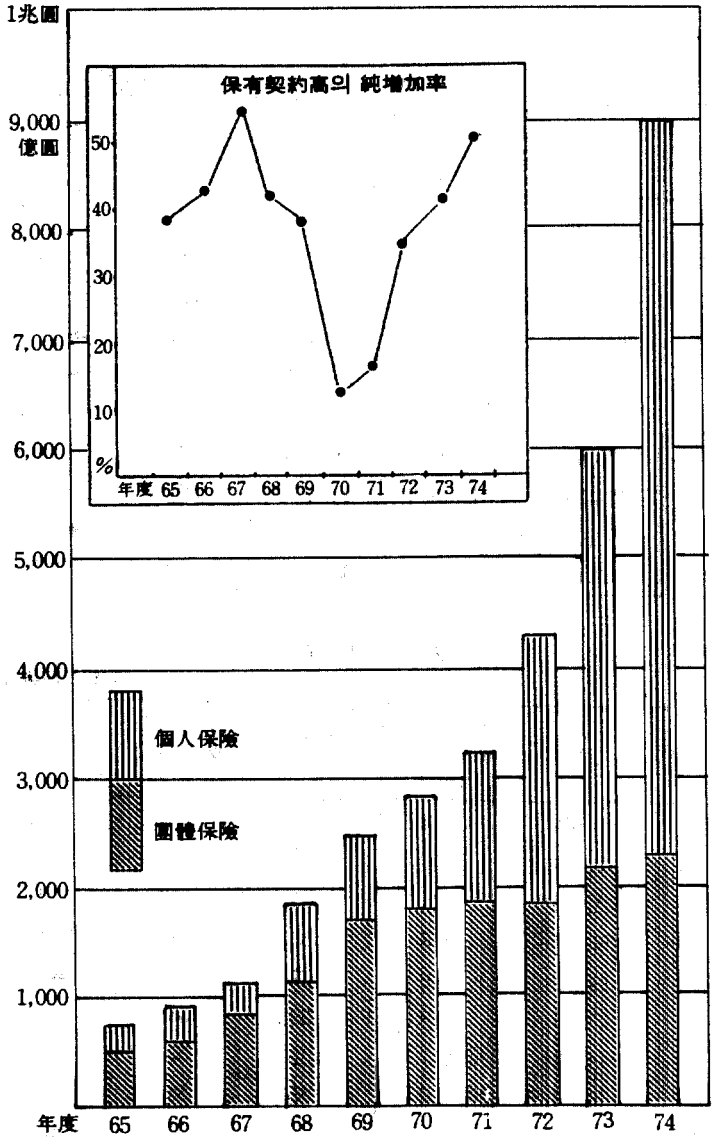

資料 :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권 2, p. 338.

〈도표 1〉 保有契約고의 成長

국민경제상 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선진국에 비교하여 보면 保險料의 對 GNP比率이 美國 7.5%, 西獨 5.1%, 日本 4.5%, 韓國 1.6%이며, 個人의 金融資産 運用構造上의 保險比重이 美國 32%, 西獨 19%, 日本 16%, 한국 6%인 점에서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相對的 落後性을 실감할 수 있다.[50]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제반 여건이 장기적인 未來設計나 將來對備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식구조가 형성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모든 분야의 성장과 안정에 따른 자신감 등 社會與件의 성숙으로 장기저축과 社會保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보험의 획기적인 개발육성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財務部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기조가 바로 內資動員의 극대화와 社會開發의 확충인 점에 가안하여 보험의 개발을 더욱 절실한 과제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財務部는 보험사업의 근대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稅制改革에서 保險에 대한 稅制支援을 대폭 확대하여 ① 月 3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月 1만원 이하의 生命保險料 納入額을 소득공제하며 ② 保險金의 相續稅免稅點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③ 企業의 종업원을 위한 團體退職保險料 부담에 대해 전액 損費認定하며 ④ 保險差益에 대한 非課稅범위를 綠色法人만에서 全法人으로 확대시행하였다.[51]

이와같은 주무당국의 적극적인 보험육성 대책과 生命保險業界의 절대적인 自己改善에 박차를 가하여 同業界는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가 있었다.

한편 遞信部가 주관하는 國民生命保險은 60년대 이후 民營保險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으나 少額保險으로서 상대적으로 계속적인 신장을 하

---

50)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권삼, p. 3.

51) 內外經濟新聞, 1977. 2. 10.

였다. 1970년대 후반에 사업이 폐지되고 殘存契約은 農協共濟로 이관되었으나 1983년 7월 1일부터 遞信保險이라는 이름으로 生命保險事業이 재개되었다.

3. 共濟事業의 확장

1960년대 이후 農協, 水協, 海運組合 등의 共濟事業이 크게 확장되면서 民營保險市場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다. 농협의 共濟事業은 1961년 10월부터 火災共濟를 실시하였고, 1965년 8월부터 生命共濟를 추가 실시하면서 民營保險을 모방하고 있다. 水產業協同組合은 1954년 漁業共濟, 1958년 船員共濟를 실시하였으나 1960년 이후 사업을 크게 확장하여 1967년 施設共濟(火災保險), 1970년 生命共濟까지 추가하였다.

韓國海運組合은 1958년 船舶共濟, 1960년 旅客傷害共濟를 海運組合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이후 사업을 확대하여 승무원까지 포함시켜 船員保險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共濟事業은 이상과 같은 農協, 水協, 海運組合이 中心이 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建設共濟組合, 運輸會社의 自動車共濟, 敎員共濟 등이 民營保險과 경합하고 있다.[52]

V. 生命保險會社의 開放과 新設(1988~현재)

1. 生命保險市場의 對內外 開放

해방후의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실태(해방후~1983년)를 보면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1962. 10. 24 이전)에는 UN군 상대 영업을 재무부의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6년 10월 1일 E. M. Almond소장이 서명한 협약에 의거 최초로 손해보험업무의 국내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財務部에 등록신청(54. 7. 9~59. 4. 19)이 있었고 재무부는 UN군 상대로의 영업은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52) 申守植 저, 전게서 p. 31.

통보하였다.(재이제3554호, 59. 8. 7)

1962년 10월 24일 이후 즉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법률시행이 시행됨과 동시에 신청회사로는

○ National Travelers Life Insurance Co.(64. 4. 18): 한국에서 보험사업 영위 면허 신청

○ Great Lawrence of London Chicago(64. 8. 10): 한국에서의 보험사업 영위 가능성 문의

○ Professional Life Insurance Co.(65. 4. 19): 주한미군상대 보험판매 면허 신청

○ Occidental Life Insurance(65. 8. 25): 주한미군상대 보험판매 신청

○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se(65. 9. 16, 66. 9. 7): 주한미군 및 그 가족대상 보험판매 면허 신청

○ George Mcgovern 上院議員→동사의 면허 신청 협조 요청(65. 8. 13)

○ Mutual of Omaha Insurance Co.(66. 7. 25):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여행보험 판매요청

○ Mutual Omaha Life Insurance Co.(66. 8. 8): 주한미군 상대 보험영업 면허 신청

○ Mutual Saving Life Insurance Co.(66. 8. 10): 주한미군 상대 보험영업 면허 신청

○ Farm & Home Life Insurance(67. 1. 25): 주한미군 및 그 가족 상대 영업면허 신청

또한 開放交涉으로 1965년 6월 1일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Whittington이 외무부를 방문,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에 따라 AIU의 등록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68년 12월 19일 제1차 외국 사업자 영업면허를 제한적(68. 12~74. 5)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회사로서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ce, Professional Insurance Co., Standard Life Accident Insurance Co.을 정하고 면해조건으로 영업범위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한민국내 거주하는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영업범위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수수를 외국에서 행하는 보험모집 행위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공탁금은 2천만원이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United Benefit Life Insurance Co.(71. 11. 27), Wored Life Insurance Co.(82. 8. 28), American Defender Life Insurance Co.(73. 4. 4), The Prudemtial Insurance Co.(73. 6. 26), American Life Insurance Co., American Amicable Life Ins. Co.(83. 5. 19), Accademy Life Ins. Co.(83. 9. 26)에 각각 영업면허가 허가되었다.[53]

그후 전면 개방요구와 그 대응조치에 관한 경과내용을 요약해 보면 〈表 13〉과 같다.

2. 生命保險市場開放에 대한 陳情

우리나라의 生命保險事業은 英國의 300년, 美國의 200년, 日本의 100년에 비해 아직도 日淺한 歷史이지만 당국의 支援과 業界의 노력으로 조기에 自力成長基盤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美國의 한국 生命保險 市場開放 요구라는 뜻밖의 우월적 지위 행사로 生命保險業界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生命保險産業의 위기상황에 마치 나누어 먹기 식으로 對外開放보다 對內開放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式의 단순논리까지 편승하여 기본 6사는 四面楚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85년 11월 14일 生命保險協會가 주관한 "生保市場 開放試案"이 발표되었고 그 내용이 그 동안 견지해온 정부당국의 政策基調 및 業界의 요망과는 달리 相反되는 것이어서 業界로서는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3) 재무부 정리자료 재구성, 1985.

〈表 13〉 全面 開放要求와 그 對應(經 過)

년 월 일	내 용	국내의 대응방향
'83.11	· 미국 레이건대통령 방문시 미국계 생보사 진출허용 요구	보험시장 개방반대 ('90년대 이후 허용)
'84. 1.31	· 제3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생보사 진출허용 요구	
'85. 7. 2	·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86. 1월이전까지 생보시장 개방계획발표 촉구	
7.15	· AIG, 미국무역정책간부위원회 GSP소위원회에 한국보험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소	
9. 7	· 레이건, 한국보험시장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위반여부의 조사를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지시	보험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나, 개방 영향력 최소화
9.16	· USTR, 한국보험시장에 대한 조사 개시	
10. 7~21	· 한국보험업계대표단(생·손보협회장)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업계대표 등과 만나 의견교환	
10.21	· 한국보험업계대표단, USTR에 의견서 제출	
10.23	· AIG, 한국보험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14	· 생보협회, 생보시장개방에 대한 토론회 개최	
11.27~30	·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1차 실무협의(워싱턴)	
12. 9~12	·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2차 실무협의(서울)	
'86. 1~7월 7	· 주미한국대사관 USTR과 협상 계속	
	· 한국보험시장개방 협상타결 및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 철회	점진적 개방 확대
11.15	· 재무부, LINA에 대해 보험사업 내허가	
'87. 4.23	· 재무부, LINA에 대해 보험사업 허가	
5.18	· 재무부, ALICO에 대해 보험사업 내허가	
7.27	· 보험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한·미간 실무협의(워싱턴)	
12.29	· 재무부, ALICO에 대해 보험사업 허가	
'88. 3.18	· 재무부, 지방생보사 설립 허가 기준 발표	
5.30	· 재무부,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 허가 기준 발표	
	· 재무부, 전국규모 순수 내국생보사 허가 기준 발표	

資料 : 생보협 편, 전게서 권4, pp. 13~14.

사실상 그간 生命保險業界는 84年末까지 決算基準으로도 1,567억원의 누적결손을 안고 있었으며, 선진국 기준인 純保險料式積立金 기준으로는 累積缺損이 무려 4,500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손누적은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어서 "개방시안"을 접한 업계로서는 존망의 위기감을 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生保業界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開放 試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첫째, 국민적 합의 결여와 추진의 급박성

둘째, 대외개방에 임박해서 先對內開放은 自中之亂의 우려가 있으며

셋째, 對內開放의 문제점으로 (가) 사장 협소와 적자누증의 현실을 고려치 않았으며 (나) 균형발전 저해로 업계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며 (다) 지방생명보험회사 신설의 非現實性 및 財閥參與 배제의 사실상 곤란을 지적하고 특히 현재의 生命保險 市場規模는 6個社로도 협소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현재의 시장규모는 總購買力과 有效市場規模로 보아 선진국에 비하여도 오히려 협소한 상태이며 신규회사의 설립은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기존회사나 신규회사 및 모집인 모두의

〈表 14〉

區分	韓國	日本	備考
時期	1984年	1973年	
會社數	6個	20個	
1個社當 GNP (GNP)	135億 $ (811億 $)	207億 $ (4,138億 $)	國內法人 1個社當 總購買力이 日本의 65%로서 絶對 不足
1個社當 有效需要 人口 (中產層 人口) (中產層 比率)	275万名 (1,648万名) (40%)	432万名 (8,646万名) (80%)	1個社當 有效市場 規模가 日本의 64%로 購買基盤 脆弱
募集人 1人當 有效需要人口 (募集人 數)	111名 (148千名)	268名 (323千名)	募集人 1人當 販賣基盤이 日本의 41%로서 絶對 劣勢

不實化를 촉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赤字累增의 加速으로는 현재 업계는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으며 당분간 적자가 계속될 전망으로 신규회사의 설립은 社當 賣出額의 저하, 치열한 모집경쟁으로 인한 과다한 事業費 支出 등으로 利益基盤을 크게 악화시켜 적자누증을 가속화시킬 것을 지적했다(表 15 參照).

〈表 15〉

年度	基準	當年	累計
'84	決 算 基 準	△ 573億	△1,567億
	純 保 基 準	△1,430	△4,500
'85	純保基準(展望)	△1,300	△5,800

자료 : 전게서 권4, p. 76

넷째, 對外開放의 時期와 方法問題로서 먼저 시기의 급박성을 보면 純粹 국내 금융산업인 보험산업은 資本自由化 완성단계에서의 개방이 선진국의 常例이고 또한 財務構造 및 國內市場의 성숙도 등 對外競爭力이 충분히 구비된 후에 개방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바 이나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는 90年代 후반에 가서야 완성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고 국내 生保業界는 거액의 누적적자로 財務構造가 취약하며, 生保普及率(市場成熟度)도 아주 낮아(27.5%) 86년부터의 개방은 너무 시기가 급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 따라서 국익을 위해 개방이 불가피 하다 다더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함은 물론 개방대상도 최소화하여 1개국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參考로 日本의 市場開放 시기와 우리나라의 현재 生保產業 여건을 비교해 보면 〈表 16〉과 같다.

다음으로 合作投資方式의 不合理로서 對外開放方法 중 合作投資方式은 大內外同時開放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 폐해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表 16〉

	日本開放時期와 備考		韓國長期展望			日本開放時期水準에 到達 展望
	韓 國 1984	日 本 1973	1991	90年代 前 半	90年代 後 半	
所得水準 (1人當 GNP, $)	1,998	3,811	3,501	4,000～4,500	4,500～5,000	90年代 前 半
世帶當生保普及率(%)	27.5	88.5	35.4	49	71.8	2000年大
財務構造(純保險料式 準備金積立 및 契約者 利益配當)	社當 500億～1,000億 赤字	1972年 業界平均 純保險料式 準備金의 108% 積立			全 業界 水準 到達	2000年代

資料 : 전게서, pp. 77～78

첫째, 외국 투자선은 큰 부담없이 국내 사업자의 현지기반을 이용하여 손쉽게 투자이득만 취할 수 있으며, 余他産業의 지금까지의 예에서 보았듯이 종국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영기술 열세로 인한 경영권의 상실 우려가 상존하고,

둘째, 국내 合作先은 外國人의 49% 持分에 對抗하기 위해 51% 持分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大企業의 參與을 유발, 촉진하게 되고 결국 財閥 排除原理의 原則 고수가 불가능하며,

셋째, 국내 재벌들의 新規 진출 요구와 外國社의 개방요구가 合勢될 때 추가 설립 요구에 대한 거절이 곤란한 점 등을 일일히 매거하였다.

이상과 같이 生保市場開放에 대한 試案은 국내 여론의 수렴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방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며, 또한 對外開放에 앞서 對內開放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부당하다고 結論 지음으로서 生命保險業界 代表者 一同은 市場開放에 따른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財務部 當局者에게 제출하였다.

健 議 案

1. 對外開放

가. 時期

- 국내생보업이 純保險株式 準備金積立을 종료하고 契約者 配當을 실시하여 對外競爭力이 갖추어질 때

나. 進出形態 : 支店

다. 進出會社數

- 1段階 : 1個 支店
- 2段階 : 총 잔존 3개 이내로 제한

라. 營業方法

- 1段階 : 商品 販賣組織의 特化
- 2段階 : 점진적으로 自律化

2. 對內開放

- 對外開放 終了
- 自律競爭體制 구축
- 中產層 70% 이상 확대시에 고려하여 판단[54]

3. 生命保險會社의 新設

1) 外國生保社의 國內支店 新設

(1) LINA生命保險(株) 韓國支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88(1987. 4. 23)

---

54) 財務部 保存文書, 기존생보 6사 공동건의문, 1985. 11. 18., 生命保險協會 편, 전게서 권四, pp. 74~78.

(내해가 : 生保 22330-805(86. 11. 15)

② 名稱 : LINA生命保險(株) 韓國支社

③ 本店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6

④ 영위할 보험종목 : 개인 및 단체정기보험(보장성 보험에 한함)

⑤ 영업기금 : 25억원

⑥ 허가조건(내인가 조건) : 영업기금납입방법, 판매방법 등 명시

⑦ 설립당시 대표자 : Chris D. Athanasiades

⑧ 설립당시 인가상품 : 라이나 정기보험, 라이나 단체정기보험

⑨ 영업개시일 : 1987. 4. 23[55]

(2)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감파니 韓國支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18(1987. 7. 27)

(내인가 : 生保 22330-343(1987. 5. 18)

② 名稱 : American Life Insurance Co. 韓國支社

③ 本店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80－1

④ 영위할 보험종목 : 인보험사업

⑤ 영업기금 : 50억원

⑥ 허가조건 : 영업기금납부방법, 각서제출, 보험업법 제5조 준수 등

⑦ 설립당시 인가대표자 : Rory M. Carson

⑧ 설립당시 인가상품 : 어린이 교육보험, 종신보험, 평준정기보험, 양로보험, 단체정기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정기특약, 보험료이체계좌특약 등

⑨ 영업개시일 : 1987. 10. 2

⑩ 事業方法書, 保險約款과 保險料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인가

---

55) 생명보험사업 내허가(財務部, 생보 22330－805, 1986. 11. 15), 보험사업 본허가 신청서(1987. 3. 23) 및 인보험사업허가(財務部, 생보 22330－288, 1987. 4. 23)

조건[56]

(3) 아메리칸 훼밀리 生命保險(株) 韓國支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301(1988. 7. 12)

(내인가 : 生保 22330-528(1987. 9. 14)

② 名稱 : American Family Life Insurance 韓國支社

③ 本店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④ 영위할 보험종목 : 인보험사업

⑤ 영업기금 : 27억원

⑥ 허가조건 : 영업기금 납입방법, 자산운영방법, 구분계리, 대한민국에서의 명칭 등

⑦ 설립당시 인가대표자 : Devern Wayne Lindholm

⑧ 설립당시 인가상품 : 아메리칸 훼밀리 암보험

⑨ 영업개시일 : 1989. 2. 4[57]

(4) 조지아 生命保險(株) 韓國支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129(1989. 3. 14)

(내허가 : 보험 22330-239(1988. 6. 9)

② 名稱 : 조지아 生命保險(株) 韓國支店

③ 本店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④ 영위할 보험종목 : 인보험사업

⑤ 영업기금 : 20억원

---

56) 외국보험사업자 인보험사업내호가(재무부 생보 22330-343, 1987. 5. 18), 인보험사업 본허가 신청(1987, 6. 11) 및 인보험사업허가(財務部, 생보 22330-518, 1987. 7. 27)

57) 외국보험사업자 인보험사업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628, 1987. 9. 14), AFLAC에 대한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301, 1988. 7. 12)

⑥ 허가조건 : (아메리칸 훼밀리 생명보험(주) 한국지사 내인가 조건과 동일)

⑦ 설립당시 인가대표자 : 文漢福

⑧ 설립당시 인가상품 : 정기보험, 단체정기보험

⑨ 영업개시일 : 1989. 10. 25[58]

2) 地方生保社의 新設

(1) 釜山生命保險株式會社(現 韓星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07(1988. 5. 16)

(내허가 : 보험 22330-65(1987. 12. 30)

② 名稱 : 釜山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6가 36

④ 영위할 보험종목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授權資本金 240억원, 納入 資本金 60억원, 발행주식수 120萬株, 발기인 인수 36천주, 公募 1백164천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1,344명

⑥ 허가조건 : 내인가조건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地方生命保險會社의 株主資格基準, 심사기간 및 유의사항을 첨부하고 〈表 17〉과 같이 地方生命社 株主資格 除外對象 系列名單을 당국이 발표한 것이다. ⑦ 발기인 대표 : 鄭珠永

⑧ 설립당시 임원 : 社長 安石淳, 專務理事 趙鑄根, 常務理事 朴七玟, 理事 姜鎭洪, 監査 孫百植

⑨ 設立當時 許可商品 : 새세대敎育保險, 老後設計年金保險, 가정복지보험외 8종

---

58) 외국보험사업자 인보험사업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239, 1988. 6. 9),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무부, 생보 22330－129, 1989. 3. 14)

〈表 17〉 지방생보사 주주자격 제외대상 계열명단

계열명	계열주	계열명	계열주	계열명	계열주
현대	정주영	동아건설	최원석	코오롱	이동찬
대우	김우중	한일합섬	김중원	금호	박성용
삼성	이건희	기아	김상문	고려합섬	장치혁
럭키금성	구자경	두산	박용곤	동부	김준기
쌍용	김석원	범양상선	—	한보	정태수
한진	조중훈	효성	조석래	해태	박건배
선경	최종현	동국제강	장상태	미원	임대홍
한국화약	김승연	삼미	김현철	조선공사	남궁련
대림	이재준	한양	배종렬	라이프	조내벽
롯데	신격호	극동건설	김용산	한라시멘트	정인영
계 : 30개					

비고 : 484개 법인, 자료 : 전게서, p. 122.

⑩ 영업개시일 : 1988. 6. 3[59]

(2) 大邱生命保險株式會社(現 朝鮮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08(1988. 5. 16)

(내허가 : 보험 22330-65(1987. 12. 30)

② 名稱 : 대구생명보험주식회사

③ 本店 :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동 1076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40억원, 납입자본금 60억원(발행주식수 120萬株, 발기인 인수 80만주, 公募 40만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102명)

59) 釜山生命保險(株) 設立內許可 申請(부산생보, 부생보 제1호, 1987. 12. 10), 생명보험사업내허가(재무부, 생보 23330-65, 1987. 12. 30), 생명보험사업 본허가신청(부생보 제13호, 1988. 3. 22),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207, 1988. 5. 16), 영업개시보고 (부생기기 1260-17, 1988. 6. 2)

⑥ 허가조건 : (내인가조건, 본 허가 조건 부산생명과 동일)

⑦ 발기인 대표 : (株) 金鼎耐 代表理事 金弘殖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李榮鎭, 전무이사 李殷鎬, 상무이사 文相鐵 등 金鐘瀅, 상임감사 郭義淳

⑨ 設立當時 認可商品 : 노후설계연금, 새종합교육, 부부금슬 외 6종

⑩ 영업개시일 : 1988. 6. 1[60]

(3) 光州生命保險株式會社(現 亞洲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09(1988. 5. 16)

(내허가 : 보험 22330-65(1987. 12. 30)

② 상호 :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③ 本店 :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652－1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25억원, 납입자본금 60억원(발행주식수 120萬株, 발기인 인수 1,114만주, 公募 86천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49명)

⑥ 허가조건 : (내인가조건, 본인가 조건 부산생명과 동일)

⑦ 발기인 대표 : 申泰浩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崔秉秀, 상무이사 趙澤根, 등 陳昌甲, 등 金鐘洙, 監査 任喆穆

⑨ 設立當時 認可商品 : 새종합교육, 광주연금, 새생활정기, 노후설계연금 외 9종

⑩ 영업개시일 : 1988. 6. 15

⑪ 기타 : 상호변경 내인가신청 및 내인가 허가 상호 湖南生命保險

---

60) 대구생명보험(주) 설립 내인가 신청(대구상공회의소, 대상조 1782호, 1987. 12. 12), 생명보험사업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3－65, 1987. 12. 30),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대구생명 1000－001호, 1988. 3. 28), 인보험사업 허간(재무부, 생보 22330－208, 1988. 5. 16)

(株)를 1988년 5월 12일부로 光洲生命保險(株)로 변경등기함[61]

(4) 大田生命保險株式會社(現 中央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10(1988. 5. 16)

(내허가 : 보험 22330-65(1987. 12. 30)

② 상호 : 대전생명보험주식회사

③ 本店 : 대전시 중구 대흥동 178－2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100억원(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60억원(발행주식수 120萬株, 발기인 인수 1,080천주, 公募 12만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34명)

⑥ 허가조건 : (내인가, 본인가 조건 부산생명과 동일)

⑦ 발기인 대표 : 이인구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姜斗植, 이사 金明典, 동 趙重元, 감사 李淵九

⑨ 設立當時 認可商品 : 할발교육보험, 대전무지개보험, 가정복지보험 외 3종

⑩ 영업개시일 : 1988. 5. 16[62]

(5) 中部生命保險株式會社(現 國際生命)

---

61) 가칭 "호남생명보험(주)" 설립 내인가 신청(광주상공회의소, 광상총 제107－1493호, 1987. 12. 19), 생명보험사업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65, 1987. 12. 30),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호남생명, 호생기 88－1, 1988. 4. 6),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30－209, 1988. 5. 16)

62) 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신청서(1987. 12), 생명보험사업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65, 1987. 12. 30),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210, 1988. 5. 16) 인보험 영업개시보고(대전생명, 기기 110－30, 1988. 6. 1)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84(1990. 3. 7)

(내허가 : 생보 22330-539(1989. 11. 16)

② 상호 : 中部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1동 3432－19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萬株, 발기인 인수 60만1백주, 公募 1,399,900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113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자본금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고 납입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호예탁금으로 보험감독원에 예탁)

⑦ 발기인 대표 : 발기인 공동대표 李起成, 동 蘇元植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成普慶, 상무이사 高龍聲, 동 柳雄植, 동 宋賢德, 동 李彰昊, 理事 朴勇進, 상임감사 河永秀

⑨ 設立當時 認可商品 : 무지개 보험

⑩ 영업개시일 : 1990. 4. 18[63]

(6) 慶南生命保險株式會社(現 大一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85(1990. 3. 7)

(내허가 : 생보 22330-522(1989. 10. 28)

② 상호 : 慶南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2－3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

63) 가칭 "중부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내허가 신청(중생제 1호, 1989. 10), 중부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539, 1989. 11. 16),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중부 제2호, 1990. 2. 15), 중부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84, 1990. 3. 7)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萬株, 발기인 인수 816천주, 公募 1,184천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563명)

⑥ 허가조건 : (中部生命 내허가 조건과 類似, 본인가 조건은 동일)

⑦ 발기인 대표 : 李光珠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사장 朱璟孝, 전무 朴相根, 상무 姜道鎔, 이사 林晃燮, 감사 姜潤中

⑨ 設立當時 인가상품 : 새종합교육보험, 무지개 보험, 노후설계연금 보험 외 5종

⑩ 영업개시일 : 1990. 4. 19[64]

(7) 全北生命保險株式會社(現 韓信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214(1990. 5. 23)

(내허가 : 생보 22330-540(1989. 11. 16)

② 상호 : 全北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00－3

④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萬株, 발기인 인수 863,200주, 公募 1,136,800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344명)

⑤ 허가조건 : (내인가 조건은 中部生命과 同一함, 본인가 조건은 중심주주(한영애, 그 특수관계인 포함)의 출자지분 변동(신규취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외에는 중부생명과 동일)

---

64) 경남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 신청(마산상공회의소, 마상조제 426호, 1989. 9. 3), 경남생명보험(주) 설립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522, 1989. 10. 28),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경남생명, 경남기획제 90－1호, 1990. 2. 16) 경남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85, 1990. 3. 7)

⑥ 발기인 대표 : 전주상공회의소 대표 안성호

⑦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사장 任昌烈, 상무이사 盧鎭成, 동 金潤鎭, 상임감사 徐相豪

⑧ 설립당시 인가상품 :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외 7종

⑨ 영업개시일 : 1990. 6. 30[65]

(8) 忠北生命保險株式會社(現 太陽生命)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381(1990. 9. 20)

(내허가 : 생보 22330-541(1989. 11. 16)

② 상호 : 忠北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충북 청주시 수동 309-3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발기인 인수 140만주, 공모 60만주, 주주수 793명

⑥ 허가조건 : (중부생명과 내인가조건 동일, 본인가조건은 중심주주(임광수와 특수관계를 포함)의 출자지분변동(신규 취득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생명보험회사로서 당해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산운용, 보험영업(인력확보, 점포설치 등)을 하여야 함 외에는 중부생명과 동일)

⑦ 발기인 대표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閔權植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河炳洙, 상임감사 宋炳榮, 상무이사 楊秀成, 동 尹玟鎬, 동 慶鳳浩

⑨ 設立當時 許可商品 : 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외 2종

---

65) 생명보험사업 내허가 신청(가칭 전북생명보험(주), 전상제 호, 1989. 10. 30), 전북생명보험(주) 설립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540, 1989. 11. 16),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전북생명 제90-34호, 1900. 4. 17), 전북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214, 1990. 5. 23)

⑩ 영업개시일 : 1990. 11. 23[66]

3) 合作生命保險會社의 新設

(1) 東部 애트나 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341(1989. 7. 15)

(내허가 : 생보 22330-69(1989. 2. 14)

② 상호 : 東部 애트나 生命保險株式會社

③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 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발기인 인수 1,999,999주, 공모 1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외국인 : Aetna International Inc. 51%

내국인 : 동부그룹 49%

⑦ 허가조건(내허가조건) :

가. 자본금과 보호예탁금

나. 외국인 투자가 절차 및 업무개시 준비

다. 전문인력양성

라. 개정보험업법 제23조의 2 제3항 및 4항 준수 등

⑧ 발기인 대표 : 이일훈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사장 李錫龍, 대표이사 부사장 B. I. Brading, 이사 孫建來, 동 韓信赫, 동 吳丙和, 동 金鎭億, 동 디. 씨, 텐크, 동 케이 피 바이트 동 엠, 제이 원십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동부 애트나 교육 노후 설계연금 외 3종

---

66) 생명보험(주) 설립허가 신청서(1988. 11. 8), 충북생명 보험(주0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541. 1989. 11. 16), 생명보험사업본허가 신청(충북생명보험(주), 충북기획 제21호, 1990. 8. 27), 충북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381, 1990. 9. 20)

⑪ 영업개시일 : 1989. 8. 9[67]

(2) 東洋 베네피트 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342(1989. 7. 15)

(내허가 : 생보 22330-69(1989. 2. 14)

② 상호 : 東洋베네피트生命保險株式會社

③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27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40억원, 납입자 자본금 60억원(발행주식수 120만주, 발기인 인수 1,199,999주, 공모 1주, 1주 금액 5천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외국인 : Mutual Benefit Life Insurance Company 49%

내국인 : 東洋시멘크(株) 51%

⑦ 허가조건(내허가 조건은 다음 조건과 東部애트나의 김준기 회장에 과한 내허가 조건을 제외하고 동부애트나와 同一, 즉 개정보험업법 제23조의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인가 조건은 동부 애트나와 同一)

⑧ 발기인 대표 : 동양시멘트주식회사 대표이사 현재현, 무츄얼생명보험회사 수석부사장 존 에프 웨멜리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회장 玄在賢, 대표이사 사장 崔善來, 상무 兪炳吉, 동 D.G. Stewart, 감사 申靖雨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동양베네피트 무지개 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종업원토직 적립보험

---

67) 생명보험사업(내)허가 신청(1988. 7. 8), 동부애트나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69, 1988. 2. 14),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1989. 5. 18), 동부애트나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330－314, 1989. 7. 15)

⑪ 영업개시일 : 1989. 8. 9[68]

(3) 코오롱－메트 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19(1989. 8. 17)

(내허가 : 생보 22330-69(1989. 2. 14)

② 상호 : 코오롱－메트 生命保險株式會社

③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53－1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70억원, 납입자 자본금 70억원(발행주식수 70만주, 발기인 인수 699,999주, 공모 1주, 1주 금액 1만원, 주주수 12명)

⑥ 출자비율 : 외국인 ;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60%
내국인 ; 코오롱 그룹 40%

⑦ 허가조건(내허가 조건;동부애트나의 持定인(김준기 회장)에 관한 조건외에 동부애트나와 동일, 본허가 조건;동부애트나와 同一)

⑧ 발기인 대표 : 메트로포리탄 생명보험사, 코오롱상사주식회사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사장 馬在九, 대표이사 부사장 Francis P. Lynch, 이사 徐承遠, 동 姜信鐘, 동 Nicholas D. 동 Harry C., 감사 Hsiang, 동 李鐘義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액티브 정기보험, 코오롱메트 정기보험(Ⅰ, Ⅱ종), 평생보장보험

⑪ 영업개시일 : 1989. 9. 30[69]

---

68)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 내허가 신청(동양제 88－823호, 1988. 8. 23), 동양베네피트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69, 1989. 2. 14), 새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동양기제 89－5, 1989. 5. 26), 동양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342, 1989. 7. 15)

69) 메트로폴리탄과 코오롱의 생명보험 합작사 설립 인가신청(1988. 6. 29), 코오롱－메트 생명보험(주) 설립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69,

(4) 高麗 씨엠 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11(1989. 8. 17)

(내허가 : 생보 22330-69(1989. 2. 14)

② 상호 : 고려 씨엠 生命保險株式會社

③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5-5 대연각빌딩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00억원, 납입자 자본금 60억원(발행주식수 120만주, 발기인 인수 120만주, 1주 금액 5만원, 주주수 9명)

⑥ 출자비율 : 외국인 : Conneticut Mutual Life Insurance Co. 50%
내국인 : 고려통상그룹 50%

⑦ 허가조건(내허가 조건 : 동부애트나의 내허가조건(持定人 김준기 회장에 관한 조건 제외)과 同一 본인가 조건 : 동부애트나와 동일

⑧ 발기인 대표 : 李彰宰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朱相國, 理事 李彰宰, 동 車和俊, 동 S. caesar Raboy, 동 David J. Thurlow, 도 David D. Whelehen, 감사 姜聲浩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노후설계연금보험, 만기환급부 실학자금 보장교육보험 외 4종

⑪ 영업개시일 : 1989. 9. 20[70]

1989. 2. 14), 합작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1989. 6. 15), 코오롱-메트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 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409, 1989. 8. 17)

70) 韓美生命保(株) 設立 內許可 申請(韓美生保 第1號, 1988. 8. 18), 고려씨엠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69, 1989. 2. 14), 고려씨엠 생명보험(주) 설립 본허가 신청(고려 씨엠, 생보제 89-1호, 1989. 7. 6), 고려씨엠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허가(재무부, 생보 22330-411, 1989. 8. 17)

(5) 三新 올스테이트 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13(1989. 10. 21)

(내허가 : 생보 22330-190(1989. 4. 11)

② 상호 : 三新 올스테이트 生命保險株式會社

③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미동 98－5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 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 금액 5만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외국인 ; Allstate International Inc. 50%

내국인 ; 삼환기업 그룹 등 50%

삼환기업 30%

신풍제약 10%

최용권 10%

⑦ 허가조건(내허가 조건 ; 보호예약금 외에 동부애트나와 동일, 본허가 조건: 동부애트나와 동일)

⑧ 발기인 대표 : 최용권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張禮準, 대표이사 Stanley H. Smith, 이사 崔龍權, 동 金敬燁, 동 David H. Mounce, 동 Robert L. Hone, 감사 尹一燮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삼신정기보험

⑪ 영업개시일 : 1989. 11. 27[71]

(6) 永豊매뉴라이프命保險株式會社(太陽生命)

---

71) 보험사업 내허가 신청(1988. 8. 2),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190, 1989. 4. 11), 생명보험 사업 본허가 신청(삼신기획 제 89－1호, 1989. 8. 25),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513, 1989. 10. 21)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20(1990. 12. 28)

(내허가 : 생보 22330-72(1990. 2. 28)

② 상호 : 영풍 매뉴라이프 생명보험주식회사

③ 本店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영풍빌딩 8층)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100만주, 1주당 금액 : 1만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내국인 : 영풍그룹측(고려아연 30%, 최강걸, 최창영, 장철진, 장형진 각 5%)

외국인 : Manu Life Financial Service Ltd 50%

⑦ 허가조건 : 내허가 및 본허가 조건 삼신올스테이트와 동일

⑧ 발기인 대표 : 崔昌杰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W. D. Macdougal, 이사 Vic Apps, 동 Elvon Harris, 동 崔昌杰, 張哲鎭, 李在銖, 감사 高重漢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장수축하연금, 영재교육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⑪ 영업개시일 : 1991. 3. 12[72]

(7) 高合 뉴욕 생명보험주식회사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85(1991. 12. 17)

(한국뉴욕생명보험(주)에 대한 내허가 변경)

② 상호 : 고합 뉴욕 生命保險株式會社

---

72) 보험사업 내허가 신청(1989. 7. 28), 영풍 매뉴라이프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72, 1990. 2. 28), 생명보험사업 영위를 위한 본 허가 신청(영풍생명 제90－013, 1990. 11. 9), 영풍 매뉴라이프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520, 1990. 12. 28)

③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납입자본금 65억원

⑥ 출자비율 :

The Newyork Life Worldwide Holding Inc의 100% 단독투자

〈자료 : 한국뉴욕생명보험(주)설립 내허가, 재무부 보험 22330－575 (89. 12. 23) 고려합섬그룹측 49%(고합상사 30%, 장치혁 10%, 고려학술문화재단 5%, 김종하, 이상운, 윤기덕, 방상길 각 1%〉

뉴욕라이프 월드와이드 홀딩 인코퍼레이트 51.0%

〈자료 ; 내허가변경, 재무부, 보험 22330－485(91. 12. 17)〉

장치혁의 지분율 10%→장치혁 지분율 5%, 나주옥 지분율 5%[73]

4) 全國規模 純粹 內國生命生命保險會社의 新設

(1) 大信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10(1989. 8. 17)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大信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9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자본금과 보호예탁금, 본인가 조건 ; 설립허가기준 준수, 점포추가설치 등)

⑦ 발기인 대표 : 梁在奉

---

73) 「한국뉴욕생명보험(주)」에 대한 내허가 변경, (재무부, 보험 22330－485, 1991. 12. 17), 한국뉴욕생명보험(주) 설립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575, 1989. 12. 13)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梁在奉, 理事 崔璟國, 동 金昌鐵, 동 徐重源, 감사 崔甲順

⑨ 설립당시 허가상품 : 새종합교육보험, 태양보험 외 3종

⑩ 영업개시일 : 1989. 10. 27[74]

(2) 太平洋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60(1989. 9. 12)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太平洋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85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대신생명과 동일, 본인가 조건 ; 다음 조건외에 大信生命 본허가 조건과 동일, 단 내허가시 평가대상인 실질적 대주주 서성환(특수관계인 포함 30% 출자)과 5% 이상 출자자는 각각 그 출자지분(순위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유지하여야 함

⑦ 발기인 대표 : 徐成煥 외 96명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鄭英謀, 전무이사 姜一奎, 이사 朴貞模, 동 李承遠, 金寬治, 曺尙鎬, 감사 崔英國

⑨ 설립당시 인가상품 : 태평양장학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외 2종

⑩ 영업개시일 : 1989. 11. 17[75]

---

74) 保險事業 內許可 申請書(1988. 7. 30), 대신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기획-7, 1989. 7. 4), 대신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410, 1989, 8. 17)

75) 생명보험회사설립 내허가 신청서제출(1988. 7. 30), 태평양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본허가 신청(태기 제89-1호, 1989. 8. 9), 태평양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3) 國民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20(1989. 10. 18)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國民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76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대신생명과 동일, 본인가 조건 : 평가대상자 김관중 등 19명의 총 출자지분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⑦ 발기인 대표 : 추인석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高相鐵, 전무이사 孫基洙, 이사 李景雨, 동 金大實, 감사 許琦

⑨ 설립당시 인가상품 : 영재교육, 노후설계, 무지개, 20세기 암보험 외 8종

⑩ 영업개시일 : 1989. 12. 7[76]

(4) 韓德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21(1989. 10. 28)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韓德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3가 14

허가(재무부, 생보 22330－460, 1989. 9. 12)

76) 보험사업허가 신청서(1988. 7. 30), 동일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국민생명보험, 국민기 89－1, 1989. 9. 7), 국민생명 보험(주)에 대한 인보험 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520, 1989. 10. 28)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8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大信生命과 동일, 본인가 조건 ; 본점은 부산직할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음)

⑦ 발기인 대표 : 이경서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회장 朴正基, 동 사장 徐馬植, 상무이사 權基周, 이사 李正鑑, 감사 薛二柄

⑨ 설립당시 인가상품 : 새종합교육보험, 가정복지보험 외 6종

⑩ 영업개시일 : 1989. 12. 1[77]

(5) 韓國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577(1989. 12. 14)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韓國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5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9명)

⑥ 허가조건 : (대신생명과 내허가 조건 동일, 본허가 조건 ; 다음 조건이 외에 대신생명과 동일, 즉 내허가시 평가대상자인 실질적 대주주 김성두(51% 출자)는 그 출자분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5년 이상 소유하지 못함)

⑦ 발기인 대표 : 白殷珪

---

77) 생명보험사업(내)허가 신청(1988. 8. 1), 한덕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한덕 89－7, 1989. 9. 9), 한덕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521, 1989. 10. 28)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黃龍雲, 전무이사, 卓榮宇, 이사 金善錫, 감사 李相淑

⑨ 설립당시 인가상품 : 가정복지보험, 원양보험, 2000년 교육보험 외 3종

⑩ 영업개시일 : 1990. 3. 5[78]

(6) 新韓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8(1990. 2. 8)

(내허가 : 생보 22330-198(1989. 4. 15)

② 상호 : 新韓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4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만원, 주주수 56명)

⑥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대신생명과 동일, 본인가 조건 : 다음 조건이 이외에 大信生命과 同一, 즉 내허가시 평가대상자인 이회건 등 7명은 각각 그 출자지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함)

⑦ 발기인 대표 : 李熙健

⑧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宋吉憲, 전무이사 金鉉泰, 이사 告雄實, 동 金永式, 감사 林炳和

⑨ 설립당시 인가상품 : 신한연재교육보험, 신한연금보험 외 4종

⑩ 영업개시일 : 1990. 3. 23[79]

---

78) 보험사업허가 신청(1988. 7. 26), 한국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한국생명 제 89－1호, 1989. 11. 22), 한국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577, 1989. 12. 14)

79) 생명보험회사 신설 내인가 신청(1988. 7. 29), 신한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생보 22330－198, 1989. 4. 15),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신청(신생기 90－1, 1990.1. 10), 신한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참고로 전국규모 순수 내국생보사 허가신청 상황을 보면 〈表 18〉과 같다.

5) 純粹 外國生命生命保險會社의 新設

(1) 한국프로덴샬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94(1990. 12. 17)

(내허가 : 생보 22330-69(1989. 2. 14)

② 상호 : 한국프로덴샬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99-15(S.K.S빌딩 6층)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5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100만주, 1주의 금액 : 1만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의 100% 단독투자

⑦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자본금 납입과 보호예탁금, 외국인 투자인가 절차와 업무개시 준비, 생명보험회사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정 보험업법 제23조의 2 제4항을 준수 및 합작생명회사 설립허가 기준 제11. 5의 규정 등, 본허가 조건 ; 설립허가 기준의 준수, 점포 추가설치, 관계법령의 준수, 영업개시 등)

⑧ 발기인 대표 : Kenneth J. O:Dea

⑨ 설립당시 임원 : Richard F. Moose, 이사 한정수, 동 Nichclas M. Graves, 동 Pellegrino Bill Porraro, 동 Daniel J. Kim, 동 Kenneth J. O'Dea, 동 Joseph J. Melone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⑪ 영업개시일 : 1991. 3. 4[80]

허가(재무주, 생보 22330-48, 1990. 2. 8)

80) 생명보험사업 내허가 신청(1988. 8. 26), 한국 프루덴샬 생명보험(주) 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69, 1989. 2. 14), 생명보험사업 본허가

〈表 18〉 전국규모 순수 내국생보사 허가신청 상황

(총 17개사 신청, 신청사 순서는 접수순임)

신청회사명	설립자본금(億)	본점소재지	주요출자자
1. 한국생명	100	서울	· 대한화재보험대표 김성두:51% · 대한화재보험(주):10%
2. 풍산생명	100	서울	· 풍산기업(주)대표 홍성목:79%
3. 한양생명	100	서울	· 한양투자금융:74% · 동남증권:26%
4. 신한생명	100	서울	· 신한은행 회장 이희건 외 21명:100%
5. 한국생명	100	서울	· 일진그룹회장 허진규:60% · 쌍마섬유공업대표 김동권:40%
6. 충북생명	100	청주	· 대성연탄공장대표 민권식 등 충북출신 상공인 33명:100%
7. 동일생명	100	서울	· 동아투자금융대표 추인석 등 76명: 100%
8. 대신생명	100	서울	· 대신증권대표 양재봉:65% · 대신증권:35%
9. 대유생명	100	마산	· 마산방직대표 이상은 가족:60%
10. 삼창생명	100	서울	· 삼창산업개발(주)회장 공상표:51%
11. 한국생명	100	서울	· 전 동아일보회장 이동욱:25% · 이화자 외 5인:75%
12. 국민교육생명	100	대전	· (주)밀알회장 최창근:50% · 삼풍건설(주)회장 이준:30%
13. 한덕생명	100	부산	· 국제화재보험대표 이경서:51% · 대한전선대표 설원량:36%
14. 영남생명	100	서울	· 흥아타이어공업(주)대표 강병중:53%
15. 태평양생명	100	서울	· 태평양화학대표 서성환 가족:25% · 우성건설대표 최주호 가족:25%
16. 아세아생명	100	서울	· 아세아종합금융대표 설원식:98.8%
17. 한일생명	100	서울	· 한일투자금융회장 배현규:84%

資料:金融産業發展審議會(1988. 12. 29)

(2) 네델란드生命保險株式會社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456(1991. 12. 4)

(내허가 : 생보 22330-267(1991. 7. 27)

② 상호 : 네델란드生命保險株式會社

③ 本店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800억원, 납입자본금 2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1만원, 주주수 8명)

⑥ 출자비율 :

Nationale Nederlander Nederland B. V.의 100% 단독투자

⑦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자본금과 예탁금, 내허가 취득후 30일 이내에 "본허가 취득과 동시에 기존 Life of Georgia 국내지점을 폐쇄하겠다는 각서 제출, 외국인 투자인가절차 및 업무개시 준수 등, 본허가 조)건

⑧ 발기인 대표 : 에이, 엘, 반 쿠르트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주상국, 상무이사 유건상, 이사 이영우, 등 T. Grier, 감사 김봉철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큰나무교육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정기보험 외 8종

⑪ 영업개시일 : 1991. 12. 4[81]

(3) 프랑스生命保險株式會社

---

81) 네덜란드 코리아 생명보험(주) 설립허가 신청서(1991. 5. 1), 네덜란드 생명보험(주) 설립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267, 1991. 7. 27), 네덜란드 생명보험(주) 설립 본허가 신청(네덜란드 04－1, 1991. 10. 15), 네덜란드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456, 1991. 12. 4)

① 設立根據

財務部, 生保 22330-77(1992. 8. 26)

(내허가 : 보험 22330-43(1991. 2. 19)

② 상호 : 프랑스生命保險株式會社

(내허가 상호변경)

현행상호 : 국문명 : 에이 지 에프 생명보험주식회사

영문명 : A.G.F. Kife Insurance Co. Ltd.

변경상호 : 국문명 : 프랑스生命保險株式會社

영문명 : France Life Insurance Co. Ltd.

③ 本店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④ 보험사업명 : 인보험사업

⑤ 자본금 : 수권자본금 200억원, 납입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만주, 1주의 금액 : 5천원, 주주수 1명)

⑥ 출자비율 :

A.G.F. Kife Insurance의 100% 단독투자

⑦ 허가조건 : (내허가 조건 : 본허가 취득과 동시에 A.G.F 주재사무소의 폐쇄를 신고해야함 이외에 네델란드 생보와 동일, 본허가 조건 : 한국프로덴셜生命과 동일)

⑧ 발기인 대표 : A.G.F. International Represented by Yves Mansion 87, rue de Richalieu

⑨ 설립당시 임원 : 대표이사 宋容建, 부사장 P. H. Leglise, 이사 P. H. Mandre, 감사 J. M. Vitoux

⑩ 설립당시 인가상품 : 프랑스 정기보험, 프랑스종신보험

⑪ 영업개시일 : 1992. 9. 15[82]

---

82) A.G.F. 생명보험(주)설립 내허가(재무부, 보험 22330－43, 1991. 2. 19), A.G.F.생명보험 내허가(상호)변경허가(재무부, 보험 22330－81, 1992. 5. 11), 프랑스 생명보험(주)에 대한 인보험사업 허가(재무부, 생보 22330－77, 1992. 8. 26)

Ⅵ.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朝鮮生命의 설립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生命保險業의 경영상을 史的으로 考察하였다.

朝鮮生命은 日政下 우리나라 唯一의 韓國人이 創立한 會社로서 保險市場의 협소,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나름대로 契約基盤의 확충, 生命保險認識의 저변확대화 및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事業基盤을 구축하여 왔으나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일거에 붕괴되고 말았다.

美軍政下의 혼란속에서 美軍政은 生命保險事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기에 서둘러 大韓, 高麗, 協同生命 등의 회사가 신설되었지만 日政下의 체신국에 의한 간이생명보험의 판매로 강제적 보험판매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일정시 가입한 기존계약의 보상불능 등 제반 여건으로 생명보험사업은 개점휴업 상태에서 6.25사변을 맞이했다.

6.25사변 중 生命保險會社의 간판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 되었으나 休戰과 더불어 환도한 정부 당국은 생명보험의 재기를 위하여 업계에 누차에 걸쳐 영업재개를 권유하였으나 大韓과 高麗生命만이 재개하고 朝鮮生命과 協同生命은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면허취소의 비운을 맞게 되었다.

1956년부터 第一生命, 東邦生命, 大韓敎育保險, 東亞生命 등의 회사가 신설되어 生命保險市場의 극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의 5.16군사혁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여건의 불안정 등으로 침체기에 들어갔고 특히 第一生命의 경영부실로 業界의 共同管理나 保險金의 削減支拂 등의 원인으로 保險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다.

혁명정부의 최고위원회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內

資動員의 일환책으로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 공포함과 동시에 同法에 의거 生命保險會社가 저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生命保險界는 職場退職 團體保險을 根幹으로 하여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저축의 대부분을 生命保險에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또한 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도 보험회사와 당국의 公信力 提高에 힘입어 많은 개선을 보게 되었다.

生命保險市場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효율화 등으로 강력한 보험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간 경영이 부실했던 고려생명의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이 東海生命이 설립되면서 生命業界는 6個社의 경합시장이 되었다.

東邦生命, 大韓生命 및 大韓敎育의 上位 3社와 第一, 興國, 東海의 下位 3社로 市場占有가 완전 구별되고 특히 東海生命이 東亞그룹으로 넘어가면서 東亞生命으로 商號가 변경, 生命保險事業은 大財閥그룹의 傘下에 놓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美國의 強力한 保險市場 開放壓力에 못이겨 우선 외국사의 韓國內 支店設置을 인가했고 뒤이어 地方生命保險社의 신설, 合作社의 新設, 순수 전국규모 生命保險社의 신설 및 순수외국생명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현재 生命保險業界 는 기존 6社, 전국규모사 6社, 合作社 7社, 地方社 9社 및 순수외국사 5社 등 33개사가 영업중에 있다.

따라서 結論的으로 볼때

1. 朝鮮生命의 경영부진 및 면허취소의 원인은 대내적 경영부실의 이유보다는 대외적 즉 경제외적인 정치, 사회적 불안의 영향이 컸으며,

2. 간이국민생명과 일정하 진출한 日本系 生命保險會社들의 강압적 보험가입 권유와 해방후 이들 기존 계약에 대한 사후처리의 불철저가 對國民的 保險感情의 惡化를 초려하여 우리나라 보험시장 육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주었고,

3. 第一生命과 高麗生命 및 (구)東亞生命 등의 경영부실로 인한 보험

금삭감 지급 등도 보험시장의 저변확대에 불안정한 요인을 제공했고,

4. 5.16이후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공포로 生命보험이 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을 통한 계약기반 확대가 우리나라 生命保險業 發展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5. 끝으로 33개사의 치열한 시장경합으로 향후 보험업계는 적자생존의 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고 보겠다.

參考文獻

申守植, 「保險經營論」, 貿易經營史, 1988.

_____, 「韓國保險史」, 1974.

方甲洙, 「最新保險論」, 博英社, 1990.

韓東湖, 「保險論」, 博英社, 1990.

具河書, 「保險學要論」, 法文社, 1993.

朴恩會, 「保險經營論」, 韓國保險硏修所, 1966.

宋基澈, 「保險論」, 博英社, 1982

生命保險協會 편, 「93생명보험」, 1993.

_____, 「生命保險史料」, 권 1~4. 1992.

_____, 「生協」, 1974~1993.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覽」, 1923.

東亞保險日報社, 「保險會社職員錄」, 1942

第一生命保險(株) 편, 「第一生命 30年史」.

大韓敎育保險(株) 편, 「大韓敎育保險 30年史」.

韓翼敎, 「韓相龍君を語る」, 1941.

朝鮮總督府, 官報

財務部, 保存文書 및 資料.

染織界의 始祖, 金德昌 硏究
-東洋染織株式會社를 중심으로-

李 漢 九*

目 次

Ⅰ. 序 論
Ⅱ. 染織業과의 인연
1. 家系 및 染織業 進出背景
2. 日本으로 進出
Ⅲ. 金德昌織布工所의 設立
1. 傳統的 生産方式
2. 近代的 織機의 등장
3. 金德昌織布工所의 出現
4. 韓國染織界의 선두주자로 부상
Ⅳ. 東洋染織의 설립
1. 設立背景
2. 織布業 現況
3. 東洋染織株式會社 발족
4. 初期經營
Ⅴ. 物産奬勵運動에 적극 참여
Ⅵ. 個人企業으로 전락
Ⅶ. 結 語

Ⅰ. 序 論

韓國 纖維産業의 近代化는 1910년대부터 개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織布業의 근대화도 병행되었는데 이 무렵 織布業의 근대화는 日本에서 수입된 改良織機의 導入에서 비롯되었다. 직포업의 근대화 또한 일제하 여타산업의 근대화처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政治, 經濟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진되어졌다.

日本은 1868년 明治維新이후 日本經濟의 近代化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이와같은 분위기는 끝내 産業革命으로 연결되었고 동 혁명의 중심은 纖維産業이었다. 당시 섬유산업의 중핵은 綿織物 및 絹織物이었는

* 水原大學校 經濟學科 副敎授, 經濟學 博士.

데 동 업종의 近代化作業 중 紡績部門은 大企業 중심으로, 紡織部門은 中小企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무렵 일본은 선진국인 유럽으로부터 동 부문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 및 자본설비들을 도입하여 근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짧은 기간동안에 섬유산업의 근대화를 완성한 일본은 自國內에서 생산된 섬유류를 인접한 韓國에 대한 輸出을 기도하였는데 특히 淸日戰爭(1894~5년) 이후 일본은 드디어 한국의 섬유류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른다.

露日戰爭(1904~5)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장차 한국을 日本商品의 販賣市場으로서,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 중국침략을 위한 兵站基地로서 개발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이후 한국의 工業化는 철저하게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국 섬유산업의 근대화 또한 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그중 직포업의 근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계 직포업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구명하는 작업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 學界를 막론하고 日帝下 民族系 企業 및 企業家에 대한 事例硏究가 전무한 실정이다.

차재에 본 연구는 일제하 韓國 織布業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事例 硏究에 촛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 직포업의 근대화 방향 및 특성, 둘째, 土着纖維工業資本의 對應過程, 셋째, 일제하 民族企業의 存在樣態 등을 한국 染織業界의 始祖인 金德昌의 企業歷 및 그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東洋染織株式會社의 成長史를 중심으로 經營, 經濟史的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金德昌은 당시 技術者 出身의 전형적인 庶民出身型 企業家인데 그가 중심이 되어 설립, 경영한 東洋染織은 民族意識이 강한 다수의 鐘路商人들에 의하여 설립된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民族企業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에 관한 당시의 단편적인 기록들 및 金德昌 後孫

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행하였다.

Ⅱ. 染織業과의 인연

1. 家系 및 染織業 進出背景

金德昌(1878~1948)은 1878년 8월 6일에 서울 鐘路에서 中人階級出身인[1] 慶州金氏 漢鏞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 위의 형이 聖昌(1871~1927)이며, 아우는 義昌(1887~?)이다. 金德昌家가 언제부터 鐘路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家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무렵 종로통에 거주하는 中人階層 사람들은 대부분 商業, 末職官僚, 自由業 등에 從事하였는데 이들 중 극히 일부는 商業을 통하여 致富한 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생산직에 종사해옴으로써 이들 계층 사람들의 사고속엔 일찍부터 實用主義(pragmatism)精神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전후사정으로 유추해 볼 때 金德昌家 또한 당시 종로통의 보편적인 中人階級으로서 윤택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金德昌은 근대적인 학문을 접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종로는 한국 상업의 중심지로써 당시 종로주변의 상업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鐘路 네거리에서 光化門을 향하여 좌측에는 綿布廛과 綿紬廛이, 그 건너편의 우측에는 線廛과 苧布廛이 자리잡고 있었고, 당시 종로에서 東大門 쪽으로는 좌우 양편에 線廛과 좌측 낙원동 일대에는 魚物廛이 있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南大門 쪽으로는 大廣橋에 이르기까지 좌측에는 苧布廛, 우측에는 綿布廛에 이어 紙廛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북편 安國洞 쪽으로는 좌우 양편에 4, 5개의 線廛이 있었다.……六矣廛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은 변두리의 市廛에서 판매하였고 변두리 市廛街로는 鐘路 4街에

1) 金聖昌의 孫子, 金東益氏 陳述.

서 東大門에 이르는 속칭 배오개, 7牌로 불리우는 南大門 일대, 西小門에서 阿峴을 넘어 麻浦, 西江에 이르는 지역 등이며 米廛, 雜穀廛, 床廛, 鍮器廛, 鐵物廛, 鹽廛, 眞絲廛 등 각종 市廛은 여기에 자리잡고 있었다.」[2]

더구나 鐘路 1街에서 東大門에 이르는 지역에는 한국인 布木商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하여 이 일대 상인들의 중심적인 존재로 군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朴承稷, 金潤冕, 白潤洙와 같은 大商業資本家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金德昌이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 이상과 같은 한국 상업의 중심지인 鐘路였기 때문에 그는 일찍부터 상인 혹은 실업가로써 성장하기를 희망했는지도 모른다.

金德昌이 언제, 어떠한 연유로 纖維産業에 발을 들여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出生 및 成長地가 鐘路인 점을 감안하여 볼때, 그는 어려서부터 이 일대의 布木商에서 從業員으로 근무하면서 섬유산업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2. 日本으로 進出

그가 본격적으로 染織業界에 진출하게 된 것은 19세 때인 189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부터였다. 당시 그는 日本語에 익숙해 있었는데[3] 이와같은 인연으로 그는 日本行을 결심하였던 것이다.[4]

---

3) 그가 어떠한 연유로 日本語에 능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그는 일찍부터 포목업계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그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포목상의 점원으로 취직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그가 일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그의 日本行에 대하여 손자인 金敬煥氏는 島山 安昌浩, 혹은 義菴 孫秉熙의 渡日時 通譯으로 同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島山은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전까지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였을 뿐 일본에 간 적은 없다. 義菴은 東學革命 실패후 海外亡命을 목적으로 1901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료 : 東亞日報社 編, 韓國近代人物百選, 新東亞, 1970年 1月號 附錄, p. 182, p. 103 참조〉 한편 金德昌은 22세 때인 1902년에 종로 장사동에서 소규모 織造工場을 설립하였는데〈•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1983, pp. 242~3 및 高承濟, 韓國經營史硏究, 1975, p.89 참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하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일본의 근대문물을 익히는 한편 생계를 위한 직업을 찾는데 열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크리스챤인 하숙집 주인의 안내로 크리스챤으로 변신하는 한편 하숙집 주인의 소개로 현지에 있는 染織工場에 職工으로 취업하였다.

金德昌이 日本에 체재하고 있던 시절의 日本은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産業革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纖維工業을 중심으로 개시되었는데 혁명의 개시기는 1883년 大阪紡績株式會社의 설립에서 비롯되었다.[5]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의 단행 이후 조속한 資本主義의 완성을 위하여 정치, 경제적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정부주도의 강력한 殖産興業政策을 실시하였다. 동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산업의 근대화였으나 동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차제에 정부가 투자 및 경영의 주체로 등장하여 鐵道, 鑛業, 機械, 시멘트, 礦子, 造船業部門에서 政府直營工場을 설립, 운영하였다.[6]

이후 일본의 섬유산업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는데 金德昌이 일본에 체재하던 시기는 일본「綿紡績業에 있어서의 勃興基였다.」[7]

일본의 섬유산업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綿工業과 絹工業이 중심이었는데 동 산업부문의 근대화는 이들 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紡績業은 大企業을 중심으로 그리고 棉織布工業이나 絹

조〉 만일 그가 義庵을 따라 渡日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도일한지 1년만에 織造技術을 터득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직조업에 생경한 그가 더구나 外地인 日本에서 단 1년만에 직조기술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가 義庵을 따라 일본에 갔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으로 추정된다.

5) 金宗炫, 近代日本經濟史, 1991. p. 67 참조.

6) 金宗炫, 上揭西, 1991. pp. 54~64 참조.

7) 金宗炫, 상게서, p. 70.

(生絲 포함)工業은 中小企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8]

일본에 근대적인 서양의 力織機가 도입된 것은 明治初였다. 당시 京都府에서는 織機 기술자 3인을 프랑스에 유학시켜 선진기술의 습득을 도모하였는데 이들이 귀국시 프랑스제 밧탄직기를 구입해왔다. 당시 유럽에는 鐵製 力織機가 유행을 했는데 밧탄직기는 木製 織機로써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구식 기계였다. 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木製 力織機를 수입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동 기계는 小幅織機로서 당시 일본에서 사용중인 在來式 織機와 유사하여 모조, 응용, 수리 등 작업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기술자들은 在來式 織機와 輸入織機를 결합하여 足踏式 織機를 만들었는데 足踏機는 織機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북(SHUTTLE)의 운동에 발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족답기가 일본전역에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綿絲를 綿布로 직조하는 생산과정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82년에서 1896년에 이르는 시기이다.[9] 당초 足踏機는 일본의 綿業先進地域인 大阪 등지를 중심으로 보급되었는데 동 직기의 보급율은 1907년 현재 全織機臺數의 10%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1917년에는 무려 90%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改良力織機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보급된 것은 輸入鐵製 力織機에 비하여 가격이 1/4~1/5 정도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在來式 織機에 비하여 생산성은 무려 2~3배 이상이었기 때문이었다.[10]

金德昌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시절은 이상과 같이 일본 織布業부문에서 한창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무렵 染織工場에서 혹독하게 고생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한 후 귀국하였다. 그가 정확히 언

---

8) 黃完晟, 日本資本主義 成立期의 工業構造, 經營史學會 編, 經營史學, 第6輯, 1991年 12月號, pp. 153~154 참조.

9) 高承濟, 韓國經營史硏究, 1975. p. 90 참조.

10) 黃完晟, 상게 논문, pp. 162~163 참조.

제 귀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1902년 2월에 鐘路 長沙洞에 織布工場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金德昌織布工所의 設立

1. 傳統的 生産方式

전통적으로 한국민들이 선호하는 섬유는 綿織物, 絹織物, 麻織物, 苧織物, 毛織物 등이었다. 그러나 毛織物은 모자의 재료 등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되었고 絹布類의 착용은 봉건귀족들에게만 常用이 허락될 뿐 일반 백성들의 경우 사치를 이유로 착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麻와 苧麻는 그 재질에 따라 夏衣, 喪服 등 특수한 용도에 국한되어 있어 한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복재료는 木棉이었다.

이들 섬유류는 쌀과 함께 주요한 物品貨幣의 하나로써 민간에 널리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한 財政收入源의 하나로써 기능하였다. 舊韓末까지 한국 섬유공업의 大宗은 綿織物 및 絹織物工業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農家副業的인 家內手工業 形態로 영위되었다.[11]

19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織布業은 철저하게 在來式 織機에 의존하였다. 당시 한국민 衣料需要의 대종인 綿布生産의 경우 織造過程을 보면 대체로 去核工程, 紡絲工程, 紡織工程으로 세분되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織機로는 물레(紡績機)와 베틀(紡織機)이 있었다. 이들 기계는 木製로써 철저하게 人力으로 작동되는 관계로 생산성은 매우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12] 대부분의 생산 농가에서는 自家消費, 租稅收

11) 1900년대에는 慶尙道 晋州를 비롯한 직포업이 성행한 몇몇 지역에서는 農家副業 이상의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져 매뉴팩추어적인 경영형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섬유생산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家內手工業段階에 있었다. 梶村秀樹, 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 사계절 편, 韓國近代經濟史硏究, 1983, p. 171 참조.

納, 販賣 등을 목적으로 생산하였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각 가정마다 이들 기계를 한, 두대씩 설치하고 생산에 임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농촌부녀자들이었다. 당시 그들은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동원되었기 때문에 동 작업은 주로 農閑期 및 여가시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綿布의 경우 농가 1戶당 평균생산량은 10疋 정도였는데 「10疋 정도만 해도 單婚家族내의 노동력으로 일하기에는 상당히 큰 노동력이 필요했다.」[13]

2. 近代的 織機의 등장

1910년 현재 서울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衣料品을 제조하는 공장수는 38個所인데 이들 공장에는 전술한 밧탄직기를 설치하고 생산에 임하였다.[14] 이들 공장중 동 직기의 보급현황을 보면 綿織物工場에 122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絹織物工場에 59대, 交織物工場에 27대 등이었으며 직공수는 면직물공장의 경우 125명, 견직물공장에 44명, 교직물공장에 40명 등이었다.[15] 밧탄직기가 일본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00년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도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밧탄직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한국내에 수입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기계류는 일본에서 근대방직업의 훈련을 쌓은 金德昌 등 선각자들 및 한국내에서 직포업을 경영하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2) 당시 原棉에서 1疋分의 실을 뽑아내는데 대체로 5日이, 그리고 布 1疋을 製織하는데 5日이 소요되어 紡絲에서 紡織에 이르는 기간은 평균 10日이었다. 뿐만 아니라 農家 1戶當 연평균 綿布織造量은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연간 20~60疋 정도이고 일반적으로는 10疋 이하 정도였다. 梶村秀樹, 상게 논문, pp. 170~171 참조.

13) 梶村秀樹, 상게논문, p. 171.

14) 朝鮮總督府 編, 京城商工業調査, 1913, p. 36 참조.

15) 朝鮮總督府 編, 상게서, pp. 36~37 참조.

한편 이들 공장중 日本製 綿絲로 織布하는 공장수는 전체의 66%인데[16]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처럼 일본 섬유산업의 근대화는 면직업, 견직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무렵 일본은 세계 최대 原絲輸入國 중의 하나였다. 차제에 일본은 자국내에서 소요되는 原絲의 자급 및 수출을 목적으로 근대적인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紡績會社의 설립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883년에는 1萬錘 규모의 大阪紡績株式會社를 설립하였는데 동사는 익년인 1884년에 3만추규모로 확대하였다. 이후 일본 각지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대규모 紡績工場이 설립되어 1890년대에는 드디어 일본은 종래 原絲輸入國에서 輸出國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淸日戰爭(1894~5) 이후부터는 한국의 原絲市長을 장악하기에 이른다.[17]

이후부터 일본은 自國內에서 생산된 原絲의 對韓輸出量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데 밧탄직기가 일본에서 생산된 만큼 동 기계수입의 증가는 자연 原絲輸入量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이 무렵 서울에 소재한 38개소의 織布工場중 2개의 日人經營工場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인 소유공장이었은데 공장소유자들 중 눈에 두드러지는 경영자들로는 金德昌 외에 浪大鎬, 崔奎翼 등 庶民出身型 企業家들[18] 및 다수의 貴族, 官僚出身型 企業家들이다.

이 시기에 직포업에 진출한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로는 舊韓末 法府大臣을 역임한 李載克을 비롯하여 學府大臣을 역임한 李容稙, 육군포병 正領出身의 魚潭, 禮曹判書出身인 金宗漢, 度支部 理財局長을 지낸 李濬相, 開城府尹을 지낸 崔錫肇, 皇室 醫官出身인 徐丙孝 등이다. 이들 중 李載克, 李容稙, 金宗漢은 1910년 韓日合邦時 각각 子爵, 男爵의 爵位를 받은 귀족중의 귀족들인데 이들은 그들의 거주지내에

16) 高承濟, 상게서, p. 85.

17) 拙稿, 開港期 新興綿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 pp. 4~9 참조, 筆山 黃明水 博士 華甲記念論叢, 1993 所收.

18)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pp. 59~60.

직기 1~2대, 직공 1~3명 등을 고용한 소규모 공장을 차려놓고 생산에 임하였다.

이 시기에 이들이 직포업에 진출한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開港期(1876년)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초창기 한국의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을 주도한 계층은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이다.[19] 動力을 이용한 근대적인 직조업의 경우 새로운 유망산업임을 감안해 보면 이 유형의 기업가들이 동 산업에 진출하고 있음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성분,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단지 資本主였을 뿐 생산의 주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비록 이 시기 직포업부문에 貴族, 官僚出身 企業家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은 한국 직포업의 근대화에 있어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하고[20] 실질적인 주도계층은 金德昌, 盧洪錫, 浪大鎬, 崔奎翼 등 庶民出身型 企業家들이었다.

3. 金德昌織布工所의 出現

1900년대의 서울에는 몇개의 群小機業場이 있었는데 그중 改良織機施設을 가진 공장으로는 浪大鎬의 染織工場, 盧洪錫의 織造工場, 崔奎翼의 綿織工場, 大韓婦人會 所屬 織造所(絹織物 製造) 등이었다.

또한 당시 開城에는 韓英書院 實業場이 있었다. 「韓英書院은 尹致昊가 1895년에 미국유학에서 귀국하여 開城에서 의국 선교사와 함께 南감리교회를 건립하였는데 이 교회의 육영사업으로 설립된 것이다. 韓英書院이 개교된 것은 1904년이며 이때 尹致昊는 학생들의 實習場으로서 織造工場을 병설했다. 이 직조공장은 비단 학생들이 실습용에 그

19) 拙著,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1989, pp. 49~55 참조.

20) 高承濟 敎授는 1900년대 한국 직포업의 근대화 시기에서 이들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들을 주도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高承濟, 상게서, p. 88 참조.

치지 않고 빈곤한 학생들의 학비조달을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21] 후일 동 실업장은 株式會社 松高實業場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에서 염직업에 대한 기술을 연마한 후 귀국한 金德昌은 한국에서 근대적인 직조공장의 설립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설립에는 다소간의 자본이 필요하였는데 그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당시 地主였던 그의 外家쪽 친척어른(성명 미상)으로부터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금을 확보한 후 그는 22세가 되던 1902년 2월에 鐘路 長沙洞에 일본에서 수입한 밧탄식 직기인 足踏機 3대로 소규모의 織布工場을 설립하였는데 그는 동 공장의 商號를 金德昌織布工所로 명명하였다.[22] 따라서 동 공장은 시작부터 근대적인 기계제 공장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동 직기는 100% 自動織機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재래식 직기에 비하여 생산성은 높을지라도 여전히 手工業性을 탈피할 수는 없었다.

金德昌織布工所는 설립 후 어떠한 생산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910년 현재 동 공장에는 직기가 무려 17대나 설치되었으며 직공수 또한 40명에 달하여 당시 서울에 소재한 織布工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장으로 성장하였다.[23]

4. 韓國染織界의 선두주자로 부상

1910년대에 들어서면 韓國織布業계에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는데 그

---

21) 趙璣濬, 상게서, p. 60 참조.

22) 金德昌의 孫子, 金敬煥氏 陳述, 한편 趙璣濬 敎授는 동년에 金德昌이 자본금 1萬圓의 金德昌織布工所를 설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萬圓은 당시 쌀로 환산할 경우 무려 1,000가마에 해당하는데 金德昌이 財力이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약관의 나이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融通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金德昌이 사업을 개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사업이 번성하여 자본금 규모가 1萬圓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趙璣濬, 상게서, p. 59 및 高承濟, 상게서, p. 90 참조.

23) 高承濟, 상게서, p. 88 참조.

것은 바로 1900년대에 한국 직포업의 근대화를 주도하였던 貴族, 官僚出身型 企業家들이 점차 퇴조하는 반면 대신 庶民出身型 企業家들이 동 부문의 近代化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 무렵에 이르면 종래 동 업종에 참여하고 있던 日本人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직포업은 서서히 民族産業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는 한국 직포업의 생산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무렵 서울에 소재한 직포공장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장으로는 京城織紐株式會社가 있었다. 동사는 1911년에 光熙洞부근의 직물업자들이 합자하여 설립한 자본금 10萬圓의 국내최대 染織會社로서[24] 동사에서는 댕기, 분합, 주머니끈, 염낭끈, 대님 등을 생산하였다.[25] 동사는 織紐機 67대, 職工 60명으로 조업을 개시하였는데 동사의 생산시설은 전근대적인 手工業施設로써 會社組織만 近代的인 體制를 갖추었을 뿐이다.[26]

京城織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직포공장들로는 金德昌織布工所 외에 다음과 같은 공장들이 있었다. 1916년 현재 비교적 규모가 큰 織造工場으로는 浪大鎬의 染織工場, 盧洪錫의 織造工場, 崔奎翼의 綿織工場 등이 있었는데 浪大鎬工場은 足踏機 11대, 職工 20명으로 년간 생산액은 9,000圓이었고 崔奎翼工場은 足踏機 16대, 手織機 3대, 직공 12명으로 연간 생산액은 3,000圓이었다. 동 공장들 또한 京城織紐의 경우처럼 여전히 수공업적인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었다.[27]

그 외에 서울에는 40여개에 이르는 群小織物業體들이 亂立하고 있었는데 이들 공장의 총생산시설은 足踏機 300여대, 手織機 100여대로 연간 생산액은 10萬餘圓으로써[28] 군소직물업체의 평균시설 규모는 足踏

24)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年 版, p. 35 참조.
25)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五十年, 1969, pp. 48~49 참조.
26)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p. 243 참조.
27) 趙璣濬, 상게서, p. 243 참조.
28) 趙璣濬, 상게서, p. 243 참조.

機 7.5대, 手織機 2.5대, 年間生產額 2,500圓 정도였다.

金德昌織布工所 또한 1910년대에도 왕성한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 공장의 생산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16년 현재 동 공장의 생산시설을 보면 足踏機 25대, 手織機 11대, 쟝가드式 織機 2대에 직공은 무려 40명이었다. 비록 이 시기까지 동사에는 본격적으로 動力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力織機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연간생산액은 男子 周衣用 縞木棉(漢陽木의 일종) 6,000反(7,200圓), 婦人夏期 衣裳用 5,000反(6,000圓), 綿縮布 500反(600圓), 洋襪製造 및 염색 10,000圓으로 생산 규모면에서는 동 업체들 중 국내 최대의 공장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다.[29]

이렇듯 동 공장이 단기간에 韓國織布業 부문의 王者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동 공장 제품의 품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뛰어난 때문이었는데 이 무렵 동 공장에서 생산해낸 제품의 종류 및 품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5년에 개최된 韓國物產共進會에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당시 동 공장이 출품한 품목들로는 洋襪製品 6種, 細升木 등 綿織物 5種, 新羅緞 등 綢緞製品 8種, 漢陽紬 등 明紬製品 7種, 漢陽苧란 명칭의 苧織物 1種 등 총 27개 品種에 달했다. 共進會에서 동 공장은 金賞을 비롯하여 4種의 賞을 받는 등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직조 공장으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시 金德昌織布工所에서는 면직물 뿐만 아니라 絹織物, 苧織物도 함께 생산하였으며 동시에 양말제조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9) 이 무렵 기업규모면에서 가장 큰 기업체는 京城織紐이다. 그러나 동사는 댕기, 분합, 염낭끈 등을 생산함으로써 金德昌織布工所와는 非競爭關係에 있었다. 京城商工會議所 月報, 1916年 4月, 第4號 p. 45 이하, 趙璣濬, 상게서, p. 243 所收.

30) 鮮于 日 編, 共進會實錄, 1916, p. 292 참조.

그러나 이 시기까지 金德昌織布工所는 京城織絰를 제외한 여느 중소 직포공장들처럼 個人業體로 존재하여 近代的인 會社組織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工場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욱일승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淸日戰爭(1894~5) 이후 한국에 대한 支配權을 공고히 하면서 장차 한국을 日本資本主義의 완성에 필요한 自國商品의 판매처로 개발하였는데 이와같은 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의 紡織資本들은 자국내에서 생산된 綿絲, 布 등 綿織物을 비롯하여 대량의 섬유류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한편 金德昌織布工所가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할 무렵, 일본의 직포업계에서는 動力을 이용한 力織機가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자본, 기술면에서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金德昌織布工所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첫째, 生產條件이다. 金德昌은 당시 일본에서 染織技術을 傳受받은 자로서 그는 製織에 필요한 원료 및 직기 등을 일본에서 도입[31]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 경영에 있어서도 과거 일본 염직공장에서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경영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경영면에서 日本製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동 업종은 勞動集約的인 生產構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勞務費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기 때문에 日本製에 비하여 제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商圈의 확보이다. 동 공장설립 이후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강점(1910년)하는 한편 한국민들의 民生을 외면하면서 수탈을 자행한 결과 한국민들의 묵시적인 저항상태에 있었는데 이 무렵 한국상인들은

---

31) 1910년 현재 서울에 소재한 직포공장들 중 日本製 輸入原絲를 원료로 하여 製織하는 공장 수는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高承濟, 상게서, p. 85 참조.

한국에 진출한 일본상인 등 외국상인들과 경쟁상태에 있었다. 차재에 한국의 상인들은 그들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商圈의 확보를 위하여 販賣組合을 결성하여 일본상인에 대항하는 한편 가급적이면 한국민들이 제조한 상품을 선호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와같은 경향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지역이 한국 商界의 1번지격인 鐘路인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상인들이 鐘路布木商들이었다.

「오래전부터 鐘路商業地 일대를 통하여 큼직한 家屋은 일체 조선사람 이외에는 아니팔기로 同業者간에 굳은 결속을 하여 지내왔다.」[32]

이러한 분위기에서 종로에서 잔뼈가 굵은 金德昌이 長沙洞에서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한 주변의 포목상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金德昌織布工所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金德昌에게는 그보다 7세가 많은 맏형 聖昌이 있었다. 그가 직물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26세 때인 1897년경부터인데[33] 그가 직물업에 종사하게된 계기는 德昌의 권유 때문이었다.[34]

이와같은 인연으로 직물업계에 발을 들어놓은 이후 金德昌은 1919년 3월에 鐘路 4丁目 6番地에서 京城物産商會를 개설하고 織組機械, 竹筬, 綜광, 洋襪機械, 針綿絲, 染料, 附屬品類의 판매 및 洋襪製造를 병행하였는데 동 상회는 信用本位 및 薄利多賣主義를 표방하여 京鄕의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다.[35]

金德昌은 오랜기간 동안 鐘路商人으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림으로서 大商人資本家로 부상하는데 이 무렵 그는 金德昌織布工所에 필요한 기계,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고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와같은 조건때문에 金德昌織布工所는 여타 직포공장에 비하여 상

32) 東亞日報, 1925年 11月 11日字 記事.
33) 張在治 編,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1927년 판, p. 63.
34) 金德昌의 손자, 金敬煥氏 진술.
35) 張在治 編, 상게서, p. 62 참조.

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동 공장은 비록 외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었을지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성장을 계속함으로써 韓國染織界의 대표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Ⅳ. 東洋染織의 설립

1. 設立背景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에 이르는 이 기간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이 절정에 달한다는 점이다. 민족계 기업체들의 年度別 設立現況을 보면 1917년까지는 全産業部門에 걸쳐 매년 불과 3~6개 업체가 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18년에는 16개 업체가, 그리고 1919년에는 무려 62개 업체가 새로 설립되었다.[36] 뿐만 아니라 1920년에는 85개 업체, 1921년에는 33개 업체, 1922년에는 26개 업체가 새로 설립되었는데 1923년 이후부터는 새로 설립되는 민족계 기업체수가 격감한다.[37]

이와같은 현상은 섬유산업 부문에서도 同樣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綿産業部門의 경우 이 기간 중에 새로 설립된 민족계 기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 산업부문의 경우 민족계 기업설립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16년부터 였다. 즉, 1915년까지 매년 동 부문에 새롭게 진출한 민족계 기업체는 3~5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1916년에는 12개 업체, 1917년에는 6개 업체, 1919년에는 무려 21개 업체가 새로 설립된다.[38]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는데 예를 들어 1920년에는 9개 업체, 1921년에는 12개 업체가 새로 동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

---

36) 拙著, 상게서, pp. 92~93, 〈표 4-9〉 참조.

37) 拙著, 상게서, pp. 146~147, 〈표 5-7〉 참조.

38) 拙著,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1), -1910년대를 중심으로-, pp. 10~11, 표 참조.

나 1922년부터 이러한 현상은 급격히 둔화한다.[39]

이상과 같이 1916년에서 1922년에 이르는 기간은 확실히 민족계 기업설립 붐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第1次 世界大戰(1914~1918)의 결과 야기된 일본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을 수 있다. 日本資本主義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크게 비약한 결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 자본을 수출할 여력이 생겼는데, 당시 한국에는 土地調査事業의 완료, 近代的 金融機關의 정비, 철도, 도로,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등으로 이들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되었다. 차재에 일본의 資本들은 1917년 이후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식민지적인 수탈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韓國強占(1910년)이래 1917년까지 한국에는 매년 20개 업체 정도가 새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18년에는 40개 업체, 그리고 1919년에는 무려 100개 업체가 새로 설립되는데 이중 절대다수가 日人系 企業體였다.[40]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지속되었는데 동 기간중의 기업설립붐 조성의 직접적 계기는 1920년 3월에 야기된 일본의 反動恐慌이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의 終戰으로 야기된 반동공황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 산업부문에 걸쳐 操業短縮을 강요하는 한편 遊休資本에 대한 韓國進出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1920년에는 무려 222개 업체, 1921년에는 177개 업체, 1922년에는 239개 업체 등이 한국에서 새로 설립되었는데 이들 기업체중 대부분은 日人系 企業體이다.[41]

이상과 같이 동 기간 중에 일본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한국내에서 일

---

39) 拙著,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2), -1920년대를 중심으로-, pp. 6~7, 표 참조.

40)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 朝鮮經濟年報, 1939년 판, 附錄, p. 21, 〈표 24〉 참조.

41) 상게, 朝鮮經濟年報, p. 21, 附錄, 25, 銀行會社新增設資本 참조.

본자본에 의한 기업설립 붐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土着資本의 質的인 變容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이 기간 중에 토착자본에 의한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1919년에 야기된 3·1運動과 이로 인한 民族意識의 고취이다. 즉, 1905년 이래 일본은 장차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개발한다는 원대한 계획하에 한국내에서 人的, 物的資源이 收奪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는 끝내 韓國民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3·1運動이 초래되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鐘路 파고다공원에서 民族代表 33人이 회동한 가운데 獨立宣言書가 낭독됨을 신호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42]

비록 이 운동은 武力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한국민들의 독립열망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선언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韓國民들의 大同團結, 民族意識의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민족의식의 고취는 이후부터 民族經濟建設運動으로 이어졌는데 그 결과 地主, 商人 등 土着資本家들에 의한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을 가속화 하였던 것이다.

셋째, 朝鮮總督府의 商工業政策의 전환이다. 일본은 韓國強占(1910년) 이후 일본자본주의의 조속한 완성을 위하여 한국을 植民地的인 經濟構造로 전환시킨다는 전제하에서 日本資本의 한국에 대한 진출을 規制하고 한국민들의 民族經濟建設企圖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1911년부터 한국내에 會社令을 실시하였다. 會社令에 의하면 한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總督府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10년대에는 회사설립이 극도로 규제되었다.

> "社長 朴泳孝氏는 취임당시 이미 60세에 가까운 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기성인이었다. 이 분을 社長으로 모신 것은 동지적인 뜻만 아니라, 회사설립의 어려움을 커버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目論見書(인용

42) 崔虎鎭, 韓國經濟史, 1981, pp. 264~271 참조.

자 주-지금의 事業計劃書)를 여러 십번 고쳐쓰게 하여 스스로 지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듯이 회사의 설립은 여러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분을 社長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43]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중 축적된 일본자본들이 식민지적인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진출길을 모색하였는데 이와같은 일본내적인 욕구를 언제까지나 會社令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은 식민지로써 개발되기 위하여 엄청난 자본의 수요가 있었다. 이와같이 1910년대 후반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내적인 조건 때문에 會社令의 존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는데 때마침 발발한 3·1運動은 會社令의 존속의미를 퇴색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차제에 朝鮮總督府는 1920년을 기하여 會社令을 철폐하였다. 이와같은 日帝의 상공업정책의 전환은 한국내에서 회사설립붐을 조성하는데 상승작용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16년에서 1922년에 이르는 기간중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民族系 企業設立運動이 전개되었다.

2. 織布業 現況

東洋染織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 방직업의 본격적인 근대화기였다. 이 시기 한국 방직산업의 근대화는 철저하게 일본 紡績産業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전술한 바처럼 일본의 산업혁명은 섬유산업의 근대화로부터 개시되었는데 그 중심은 면직물 및 견직물 공업이었다. 일본 섬유산업의 근대화는 紡績部門은 大企業 중심으로, 織布部門은 中小企業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근대화의 중심은 紡績部門이었다.[44]

일본은 韓國強占과 함께 일본 綿紡績産業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하여 장차 한국을 綿織物販賣 市場으로, 또한 棉花, 蠶繭 등 原料供給地로

43)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五十年, 1969, p. 57.

44) 黃完晟, 상게 논문, pp. 153~154 참조.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한국내에서 棉花, 蠶繭 등 원료생산의 증대를 획책하는 한편, 일본 紡績會社에서 생산된 製絲를 한국에 수출하여 한국내에서 織布하여 공급하는 방향으로 한국 섬유산업의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섬유산업 근대화는 일본에서 생산된 原絲를 원료로 하여 이를 직포하는 紡織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 朝鮮紡織, 京城紡織 등 한국에도 근대적인 大規模 紡織會社들이 출현한다.

한편 그 과정에서 직포부문의 근대화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특히 1910년대에 이르면 직포부문에서도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기업체들이 출현하는데 당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23년 현재 서울의 織布工場數는 총 24個所인데 공장별 平均資本은 8,226圓이며 평균 직공수는 18명으로 1910년대의 경우보다 비록 공장수는 감소하였으나 공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은 1920년에 白潤洙가 絹布製造를 목적으로 설립한 大昌貿易 산하공장이 있는데[45] 동 공장은 자본 20萬圓으로 60명의 직공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외에 京城機業場, 京城織紐, 敞信學校 織布工場, 京城織物公司 등이 있었다. 京城機業場은 1916년에 京畿道廳이 자본 67,381圓으로 설립하였는데 직공수는 40명이었고 敞信學校 직포공장은 1911년에 설립되었는데 자본은 16,000圓이며 직공수는 15명이었다.

이 무렵 京城織紐는 자본금은 15萬圓으로 증자하고 직공수를 무려 108명으로 확대하여 동부문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京城織物公司는 1911년에 설립되었는데 1923년 현재 자본금은 2萬圓이며 직공수는 81명이었다.[46]

---

45)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167 참조.

46) 高承濟, 상게서, pp. 87~88 참조.

3. 東洋染織株式會社 발족

東洋染織株式會社는 織物의 제조 및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1920년 1월 24일에 鐘路 長沙洞 83番地에서 설립되었다. 동사는 金德昌 및 종로 일대의 포목상, 금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자는 金德昌이었다. 그는 종래 그가 운영해 오던 金德昌織布工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東洋染織으로 재발족하였는데 따라서 東洋染織은 金德昌織布工所를 母體로 하여 설립되었다.

동사가 어떠한 연유로 설립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사는 설립과 함께 公稱資本을 50萬圓으로 하고 拂入資本은 12萬 5千圓으로 확정하는 한편 經營陣을 구성하였는데 동사의 경영진은 다음과 같다.[47]

初期經營陣 現況 :
社　　長 : 崔冀鉉
專務取締役 : 金德昌
常務取締役 : 崔奎翼
取　締　役 ; 咸世豊, 金寅枰, 邊相昊, 李昌林, 金東殷
監　事　役 ; 金潤秀, 金형植, 朴興瑞

한편 동사는 설립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1株當 가격을 50圓으로 하여 총 1萬株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株主數는 무려 177인이었다.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919년에 설립된 京城紡織의 경우 공칭자본 100萬圓에 불입자본은 25萬圓으로 東洋染織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정확히 2배이나 株主數가 191명이었다.[48] 따라서 東洋染織의 설립에는 영세한 토착자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동사 주주들의 대부분은 예외없이 종로 일대의 상인들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주주는 李昌林, 金德昌, 金寅枰 등인데 이들은 각각 800株

47) 中村資良 編, 상게서, p. 58 참조.
48) 中村資良 編, 상게서, p. 53 참조.

(총 주식수의 8% 점유)씩 보유하였다. 그 외에 崔奎翼 600株, 李鐵 570株, 金東殷, 金學奎, 金永信 등이 각 500株씩 소유하였고, 朴興瑞 380株, 崔冀鉉 340株, 崔형植 330株, 崔永載 250株 등이었는데 대주주들이 보유한 총 주식수는 6,370주로 전체주식수의 63.7%였다.

동사는 출발부터 순수하게 한국인 자본만으로 설립되었는데 동사의 경영 및 대주주로 참여한 인사들중 출신성분이 확인된 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장인 崔冀鉉은 동사의 大株主(340주 소유)였는데 이 무렵 그는 개인적으로 京城 山手町에 소재한 普昌精米所를 경영[49]하고 있었다. 그가 어떠한 연유로 생소한 織布業에 참여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식보유율이 전체 주식수의 불과 3.4%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동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무렵 그는 京城有數의 資産家일 뿐만 아니라 덕망가였으며 또한 그의 이러한 경력으로 보아 그는 단지 상징적인 존재로서 회사경영에는 깊숙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무취체역인 崔奎翼은 金德昌과 함께 한국 직포업의 선구자중의 한 사람으로 이 무렵 그는 개인적으로 직포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동 공장에서 足踏機 16대, 手織機 3대를 설치하고 직공 12명으로 연간 3,000圓의 생산액을 기록하였다.[50] 그는 金德昌과 함께 직포부문의 기술자 출신 경영자였는데 이와같은 그의 경력 때문에 동사의 경영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李昌林은 동사의 最大株主(800주 소유)로써 취체역을 맡고 있다. 그는 이 무렵 鐘路金融組合의 理事[51] 및 金東殷이 중심이 되어 섬유류 및 잡화의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東益社의 감사 및 株主(5千株중 100株 소유)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써 종로 상인출신의 기업

49) 東亞日報, 1920년 4월 3일자, 광고.

50) 趙璣濬, 상게서, p. 243 참조.

51) 東亞日報, 1920년 4월 1일자, 광고.

가였는데[52] 그의 경력으로 보아 그는 貸金業으로 성공을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金東殷은 취체역 및 대주주(500주 소유)로 동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무렵 그는 鐘路 3町目에서 개인적으로 주단,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다.[53] 그는 동사의 경영외에도 金潤晃이 설립한 東洋物産의 전무[54], 鐘路金融組合 組合長[55], (주)東益社의 취체역 및 대주주(5千株中 1,500주 소유)[56], 배오개의 포목상 출신인 崔仁成, 禹啓鈺 등이[57] 貸金業을 목적으로 설립한 東洋興産(1919년, 50萬圓, 鐘路[58])의 취체역을 맡는 등 그는 당시 종로 포목상 출신의 대표적인 민족계 기업가로서 다채로운 企業歷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였다.

金潤洙는 감사역으로 동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는 1911년 私立五星學校 商科를 졸업한 후 1915년에 京城商會(주단, 포목상, 남대문통 1정목 127)의 주인이 되면서 상인으로 변신하였다. 그 후 그는 1919년에 東洋物産의 상무, 光化門金融組合 감사, 京城布木商組合 理事 등을 맡으면서 근대기업가로 변신하는데 1922년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汎太平洋商業大會에 朝鮮人 代表로 참가하여 동 대회의 副會長에 추대되었고 귀국 후에는 金德昌, 張斗鉉 등과 함께 朝鮮物産奬勵運動에 기업가 대표로 참여하는 등 당시 한국민족경제계를 이끄는 청년 기업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59]

이들 외에 동사의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邊相昊는 광화문에서

---

52)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178.
53) 東亞日報, 1920년 4월 1일자, 광고.
54) 東亞日報, 1920년 4월 3일자, 記事.
55) 東亞日報, 1920년 4월 1일자, 광고.
56)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178.
57) 趙璣濬, 상게서, p. 184.
58)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187.
59) 拙著,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1), —1910年代를 중심으로—, p. 25 참조.

포목상[60]을 경영하는 자이고, 동사의 감사역이자 동시에 대주주(380株 소유)인 朴興瑞는 마포의 物産客主出身[61]이었다.

이상에서 볼때 동사는 토착 직물업자 및 경성의 포목상인, 금융업자 등이 공동으로 합자하여 설립한 진정한 民族企業體인데 동사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民族意識鼓吹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4. 初期經營

東洋染織은 회사설립과 함께 토지, 家屋購入費 47,469圓, 什器 4,751圓, 機械 및 器具購入費 14,343圓 등을 지출하여 공장증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동사는 설립과 함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는데 설립후 1년 동안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한 결과 외상매출금 2,580圓, 받을어음 11,261圓 등 총 13,841圓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중에 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는 기존의 金德昌織布工所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고 따라서 제품의 종류 또한 종래 金德昌織布工所 시절에 생산을 하던 染織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이상과 같은 생산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1년만에 무려 25,930圓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자본의 잠식이 일어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설립과 함께 공장, 기계설비, 종업원 임금, 창업비 등에 대한 과다한 투자가 빚은 결과로 추정된다.

第1期 貸借對照表(1921년 2월 현재)

• 資産 之部

未拂入株金	: 375,000
商品 및 原料	: 12,258

60) 高承濟, 상개서, p. 94.

61) 趙璣濬, 상개서, p. 184.

외상賣出金	:	2,580
받을 어음	:	11,261
당좌예금 및 현금	:	1,257
對替貯金	:	4
토지, 가옥	:	47,469
什器	:	4,751
假支給金	:	26,734
機械 및 器具	:	14,343
缺損金	:	25,930
합 계	:	521,619

• 負債 之部

株金	:	500,000
借入金	:	3,904
외상 買入金	:	509
지불어음	:	17,205
합 계	:	521,619

(資料 :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년 판, pp. 58~59)

동사는 직물의 제조, 표백, 염색을 主業으로 하였는데 설립후 공장건축이 지연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株式代金拂入의 저조로 인한 공장건축자금 조달난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후 동사는 우여곡절끝인 1922년 5월중에 공장을 준공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는 한편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하였다. 당시 동사는 不變色 黑苧, 男女學生用 黑周衣, 婦人用 玄裳, 中國產 細唐苧 등을 각각 1천필씩 생산하였는데 동사제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품종류 : 一等 白唐苧 1疋－9圓 90錢
二等 白唐苧 1疋－9圓 50錢
不變色 黑苧 1疋－10圓
生唐苧 1疋－10圓

(資料 : 東亞日報 1922년 6월 3일자, 광고)

동사의 생산시설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무렵 동사의 생산시설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京城紡織은 1919년 설립과 함께 日本 豊田式織機株式會社에서 생산된 織機 100대를 설치하는 한편, 大日本紡績株式會社의 明石工場으로부터 수입된 綿絲를 원료로 하여 1922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다. 동 직기는 動力化된 力織機로써 바닥이 고르고 폭이 넓은 廣木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동 직기는 비록 북실을 자동으로 교환해 주는 自動織機는 아니었으나 동 직기 1대당 생산능률은 재래식 직기인 베틀보다 5배 이상이었고 직공 1인당 생산성은 30배 이상에 달하는 최신식 직기였다.[62]

東洋染織 또한 공장준공 후 장사동 공장에는 京城紡織과 같은 기종인 豊田式 織機와 原田式 織機를 설치하고 생산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직기대수 및 직공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사의 직기대수는 京城紡績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63]

이상과 같이 동사는 설립과 함께 직물생산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동사는 1923년 4월에 자본금을 종래 50萬圓에서 40萬圓으로 축소하였다.[64] 이 무렵 동사가 어떠한 연유로 減資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도 직접적인 원인은 株金의 불입지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아뭏든 동사는 이 시기 이후부터 점차 축소경영 상태에 돌입한다.

V. 物産奬勵運動에 적극 참여

한편 동양염직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개시할 무렵에는 物産奬勵運動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동 운동은 3·1運動 이후 "朝鮮사람 朝鮮 것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民族企業의 육성에 촛점을 맞춘 운동이었다. 3·1運動이 日帝의 武力에 의하여 실패로 끝

62) 京城紡織 編, 京城紡織 50年, 1969, p. 58, p. 221 참조.

63) 1930년대 후반 金敎煥氏가 유년기시 견학한 바에 의하면 東洋染織의 織機臺數가 100여대 정도였다.

64)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7년 판, p. 142 참조.

나자 한국민들은 차제에 독립 열망을 民族經濟建設運動으로 승화시켰다.

동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22년초부터 평양의 曺晩植, 吳胤善, 金東元 등 민족지도자들」[65]이 가세하면서부터였다. 同社는 초창기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동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洋染織會社에서는 國產을 장려하기 위하여 今般에 製造實習部를 設하고 洋襪織造, 各種 染色法 기타를 實習케 한다는데 其 製品은 同社에서 引受한다며 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든 崔奎瓚氏가 敎授한다더라.」
(東亞日報 1922년 9월 5일자, 記事)

「東洋染織會社에서는 加工實習部를 설립하고 實習生을 모집중인 바 신청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약간명을 增募한다더라.」
(東亞日報 1922년 10월 2일자, 記事)

物產奬勵運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동 운동이 점차 확산되자 日帝는 1922년부터 동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급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66] 이러한 와중인 1923년 1월 9일에는 兪鎭泰, 鄭魯湜 및 東洋物產의 金潤洙 등이 중심이 되어 朝鮮物產奬勵會 發起準備會를 결성하였다.

익일인 1월 20일 하오 8시에 京城 낙원동 協成學校 構內에서 160명이 발기하여 發起總會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理事 20명을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선출된 인사들은 薛泰熙(西北學會 會員, 3·1운동시 행동대원으로 가담, 계몽운동가), 李鍾麟(天道敎人, 청년지도 담당), 羅景錫(동경유학 후 청년운동에 투신, 사회주의자), 白寬洙, 李得秊(韓末의 유지), 金喆壽(동경유학 당시 2·8선언에 가담한 청년투사), 李順鎬(연희전문 경제학 교수), 金潤洙(東洋染織 감사역), 朴鵬緖, 朴敬鎬(천도교인), 韓仁鳳, 吳玄洲(裴樂遠시 부인으로 서울婦人會의 대표로 참

65) 趙璣濬,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 1973, p. 504.
66) 東亞日報, 1922년 12월 13일자 記事.

여), 李時琓(朝鮮敎育協會에 근무), 朴東元(3·1운동 당시 33인중 1인), 李甲成(좌동), 金東縉, 金星濬(金吉濬의 아들, 普成專門 교장), 金德昌(東洋染織 전무취체역), 高龍煥, 鄭魯湜(독립운동 지도자로서 48인중 1인) 등이었다.[67]

초대 이사진에는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實業界의 대표로는 유일하게 東洋染織의 중역인 金德昌과 金潤洙가 참여하고 있다. 이 무렵 金潤洙는 이미 계몽운동가로 변신하여 物産奬勵運動에서도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金德昌은 金潤洙의 천거에 의하여 理事로 추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物産奬勵會에서 이들을 實業界의 대표로써 이사로 추대한 것을 보면 東洋染織 및 이들의 主體性, 民族性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東洋染織은 내부적으로 物産奬勵運動을 會社次元에서 전개하는 한편 동사의 경영진이 동운동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당시 민족경제계에서 東洋染織 및 金德昌, 金潤洙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동사는 초기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民族經濟 建設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Ⅵ. 個人企業으로 전락

동사의 社勢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1923년에서 1925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즉, 동사는 1920년에 공칭자본 50萬圓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1922년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하였는데 이듬해인 1923년 4월에 자본금을 40萬圓으로 축소하였다. 이후부터 동사는 종래 주력부문인 織布의 생산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業種의 多邊化를 시도하였다.

---

67)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p. 506 참조.

1924년부터 동사는 기존의 직물생산외에 추가로 모자생산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동사가 생산한 모자의 종류 및 판매망은 다음과 같다.

高麗毛織中折帽, 青年帽, 喪人用 白色 特製巾帽 판매
특약점 : 종로 2가 正屋帽子店, 鐘路商會
종로 3가 和泉商店, 光興帽子店, 瑞源商店
종로 4가 京城物產商會, 金貞商店
공평동 元興帽子店
(東亞日報 1924년 1월 22일자, 광고)

同社의 특약점 중에 京城物產商會가 눈에 띄는데 동 상회는 그의 실형인 金聖昌의 개인상회로써 경영하고 있었다. 동 상회에서는 1922년부터 기존의 거래품목 외에 洋靴 판매도 겸하였다. 당시 동 상회에서 취급한 신발의 종류는 羽緞 輕便靴 및 쓰구(속칭 加房), 洋羅紗製造靴 등이었다.[68]

한편 東洋染織은 동년(1924)에 국내에서 최초로 獨逸 白林 아날린 染料製造會社와 朝鮮總代理店 契約을 체결하고 염직, 양말제조용 염료를 직수입하여 판매를 개시하였다.[69]

이 무렵 동사는 業種多變化政策의 일환으로 양말제조업에도 적극 진출하였다. 양말제조의 경우 金德昌織布工所 시절부터 동사의 주력생산품목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東洋染織의 설립 이후 당시 한국 양말공업의 메카인 平壤府 慶上里 19번지에 東洋染織 平壤分工場을 설치하고 양말생산에 주력하였다.[70] 정확히 언제부터 平壤分工場을 개설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감안해 볼때 대체로 1922년에서 24년에 이르는 기간에 平壤分工場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68) 東亞日報, 1922년 7월 19일자, 광고.
69) 金聖昌의 孫子인 金東益氏는 한국에서 최초로 京城物產商會에서 독일산 염료를 수입,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0) 東亞日報, 1924년 3월 15일자, 광고.

이렇듯 동사는 설립과 함께 자본축소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業種多邊化政策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경영여건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했는데 그 결과 1925년 5월에는 자본규모가 다시 종래 40萬圓에서 5萬圓(불입자본 1萬 7,500圓)으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이후부터 東洋染織은 일개 영세기업으로 전락하였다.[71]

동사의 자본규모가 어떠한 원인으로 일시에 이처럼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가 영세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으로 추정된다.

첫째, 외국산 직물의 대량 유입을 들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인 수입상들은 自國의 근대적인 공장에서 생산된 직물의 한국수입에 혈안되었는데 특히 그들은 직기개량을 통하여 廣幅織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한편 이를 한국에 대량으로 수출하였다. 당시 東洋染織에서는 종래의 小幅織物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동제품은 비록 질적인 면에서는 외국산에 손색이 없다하나 경쟁력 면에서 광폭직물에 비교되지 못했다. 이처럼 외국산 직물의 수입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내의 영세한 직포공장들의 경영을 한층 어렵게 하였다.[72]

둘째, 資本回轉率의 둔화이다. 이 무렵 한국상인간에는 信用去來가 慣行化하여 대체로 물품거래는 외상 및 어음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특히 포목계에서는 외상거래가 일반화 하였는데 동사 또한 이러한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었다.[73] 더구나 1920년대 초반에는 섬유업계가 대체로 불황상태에 있었는데 불황기를 맞이하여 판매대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은 쉽게 도산한다. 이처럼 資本回轉率의 둔화는 동사의 자금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74]

---

71)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7년 판, p. 142 참조.

72) 金敬煥氏의 幼年時 할아버지인 金德昌으로부터 東洋染織은 이 무렵 일본 수입상들의 덤핑판매 때문에 매우 고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73)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58.

74) 東亞日報, 1924년 10월 30일자, 記事.

셋째, 경영의 미숙을 들 수 있다. 한국에 근대적인 회사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민족계 기업설립 붐은 日帝下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설립된 민족계 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대부분 도산해 버렸다. 企業倒産의 원인은 대체로 다양하나 이시기 민족계 기업들의 도산이 특히 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미숙 때문이다.

동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대부분 오랜 기간동안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蓄財한 庶民出身型 企業家들로서 근대적인 企業經營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동사는 설립초기부터 섬유업계의 불황에 직면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기야는 대폭적인 자본의 축소를 결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동사는 자본 축소와 함께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金德昌을 제외한 초기 경영자들이 전부 퇴진하였다. 그 대신 사장에는 李德裕가, 전무취체역에는 金德昌이, 취체역에는 朴奎陽이, 감사역에는 金明浩가 취임하였다.[75]

李德裕는 주단포목상을 경영하여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1910년대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였는데 이 무렵 그는 京畿道 高陽郡 龍江面 阿峴里에서 개인적으로 주단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다.[76]

당시 그는 한국면포업계의 백전노장으로서[77] 1919년에 역시 포목상 출신인 金潤冕이 자본 200萬圓으로 설립한 東洋物産의 감사 및 대주주(4만주중 1,000주 소유)였다.[78] 동사의 취체역인 朴奎陽 또한 포목업자 출신의 경영자로 추정된다.[79] 한편 동사의 감사역에 취임한 金明浩(1901~1947)는 金德昌의 장남으로써 이 무렵에는 개인적으로 직물 및

75)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7年 版, p. 142 참조.

76) 東亞日報, 1920년 4월 3일자, 광고.

77) 張在治 編, 상게서, p. 89.

78)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21년 판, p. 181.

79)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p. 261.

직기제조, 염색업체인 三益商會를 경영하고 있었다.[80]

경영진개편후에도 동사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金德昌이 동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빙했던 李德裕, 朴奎陽 또한 경영진에서 퇴진하는데 이들이 언제 동사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부터 동사의 경영은 전적으로 金德昌의 직계 및 방계혈족에 의하여 경영되는데 이에 따라 동사는 명실상부한 家族會社로써 존속되었다.[81]

비록 동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개인 기업으로 전락하였으나 동사에서 생산한 東洋木(東洋染織産 綿布를 지칭)은 당시 한국민들이 가장 많이 수요하였다. 東洋木이 출현하기 이전 한국민들에 애용되던 광목은 漢陽木이었는데 漢陽木은 20番數라는 올이 굵은 綿絲로 직조한 면포였다. 그러나 東洋木이 출현하면서 한양목의 수요는 점차 둔화하였고 급기야는 東洋木이 한국민들의 대중적인 수요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東洋木이 이처럼 한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동양목은 품질이 매우 견고하고 특히 서민들에게 애용되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동양목은 일본제 면포를 한국 시장에서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82]

Ⅵ. 結　　語

한국 섬유산업의 근대화는 日帝下에서 철저하게 日本纖維産業과 補完的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일제하 한국의 섬유산업 부문은 紡績業 및 織布業 등을 중심으로 近代化 하였는데 특히 織布業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으로 경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동 산업부문에 진출한 기업체들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뿐만 아니라

80) 金敬煥氏 陳述

81) 中村資良 編, 상게서, 1941년 판, p. 129 참조.

82) 「조선に 於ける 綿布需給概況」, 朝鮮經濟雜誌, 1928년 6월호, p. 10 참조.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직포업 부문은 다른 섬유산업과는 달리 일본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 산업부문의 근대화는 일찍부터 土着資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러나 1910, 20년대에 이르면 동 부문에서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기업체(京城織絰, 東洋染織) 들이 출현하는데 특히 東洋染織은 1919년 3·1運動 이후 한국민들의 民族意識 高潮, 民族經濟建設 움직임이 활발했던 시기에 출현했다는 점과 동사의 설립에 자본동원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다수의 京城 布木商들이 중심이 되어 경영되어졌다는 점, 동사는 설립과 함께 物産奬勵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무렵에 설립된 다수의 민족계 기업체들 중에서 가장 民族性이 돋보인다.

더구나 동사는 당시 드물게 보는 技術者 出身의 經營者로서 다년간 국내굴지의 金德昌織布工所를 경영해온 金德昌이 중심이 되어 경영되어 졌다는 점에서 특히 돋보인다. 또한 동사가 생산해낸 東洋木은 한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설립과 함께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株式代金拂入遲延 때문이었다. 동사는 公稱資本 50萬圓의 주식회사로 발족하였는데 설립시 拂入資本은 공칭자본의 25%에 불과한 12萬 5千圓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株式數는 총 1萬株인 반면 株主들의 숫자는 무려 177인에 달하였는데 전술한 바처럼 대부분의 주주들이 京城의 영세한 포목상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주식이 지나치게 다수의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불입자본의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못했다.

둘째, 경영의 미숙을 들 수 있다. 동사의 초기 경영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金潤洙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産業資本家들인데 金潤洙 또한 동사의 감사역으로써 동사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일찍부터 상업에 종사하여 自手成家를 한 자들인데 이들중 金東殷, 李昌林, 李德裕 등은 당시 대표적인 庶民出身型 企業家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주변적

인 존재에 불과하고 동사의 경영은 전적으로 金德昌, 崔奎眞 등에 의하여 경영되어졌다. 이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나 東洋染織과 같이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근대적인 기업체의 경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東洋染織은 民族企業으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고 전에 한낱 개인기업체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이 무렵에 설립된 민족계 기업체들중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기업체들중 京城紡織 등 몇몇 기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설립초기에 도산해 버리거나 혹은 東洋染織의 경우처럼 설립초기 명실상부한 株式會社體制에서 個人企業體로 전락해 버린다. 확실히 東洋染織은 이 시기에 등장한 민족계 기업체들의 모델 케이스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한국의 경우 西歐와는 사뭇 다른 發展段階(個人企業－株式會社－個人企業)를 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金輸出入의 史的考察

金　　新*

目　次

Ⅰ. 序　論
Ⅱ. 金生産의 史的考察
Ⅲ. 金需要의 史的考察
Ⅳ. 金輸出入의 史的考察
Ⅴ. 結　論

Ⅰ. 序　論

韓國의 金去來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貿易大國인 韓國은 金의 消費, 加工에서 世界的으로 큰 比重을 차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金投資 時代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전반적인 投資環境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투자환경 속에서 새로운 投資對象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金이다.

金은 地球에 많이 부존하고 있는 金屬이 아니다. 또한 大量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稀少性이 있으며, 다른 化學物質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서 富의 저축수단으로 최고이다.

人類의 歷史에서도 金[1]은 勞動集約的인 産物로 높게 평가되어 왔다. 古代人類도 砂金과 같은 천연으로 존재하는 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천에서 조금씩 산출되는 砂金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勞動力을 장시간 투입해야만 되었다. 따라서 金을 大量으로 소유한다는 자체가 勞動力을 대량으로 투입한 貴重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아서 貴重

* 慶熙大學校 貿易學科 敎授

品으로서의 금으로 食糧을 얻고 生産物이 응축된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견해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또한 金은 富를 상징하는 외에도 世界 어느 곳에서나 金을 代價[2]로 지불하고 財貨와 勞動力을 제공받을 수 있는 貨幣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金輸出入의 歷史를 고찰해 보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金融實名制下에서 金의 去來나 機能을 再照明해보므로써 向後 韓國에서의 金輸出入의 變動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本 硏究의 目的이다.

Ⅱ. 金生産의 史的考察

1. 金生産의 起源

1) 古代의 金生産

人類가 金[3]을 생산한 歷史는 기원전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며 '이집트', '앗시리아', '그리스' 등 古代文明의 遺物 중에서도 투탄카문의 황금마스크 등 정교한 金細工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金生産[4]이 최초로 본격적인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이후다.

노예 勞動力을 이용한 鑛山開發과 中南美地域의 궁전, 사원, 분묘 등

---

1) Solomon, R., *Interantional Monetary System*, New York : Happer & Row, 1982, pp. 121~146.

2) Eiteman, D.K., A.Z. Stonehill, and M.H. moffett,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6th ed.,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2, pp. 24~29.

3) S. Goldfeld and L. Chandler, *The Economics of momey and Banking*, 8th edition, 1981, Happer & Row, pp. 470~476.

4) Cooper, R., *The Gold Standard ; Historical Facts and Further Prospects :*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ctivity, 1982, pp. 1~45.

에서의 약탈로 1492~1600년 사이에 약 2백 50톤의 金이 中南美에서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며, 17, 18세기에는 中南美鑛山(특히 '콜럼비아 광산')에서 세계 전체 金生産의 각각 61% 및 80%가 생산되었다.

2) 19세기의 金生産

금의 본격적인 생산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金生産에 있어서 골드러쉬[5]는 제1차가 1848년의 캘리포니아 金鑛脈의 발견 때에, 제2차는 185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金鑛山의 발견으로 金生産은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주요 生産國의 時代別 生産量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왔다.

1851년~1900년에는 미국이 전체의 33%, 오스트레일리아가 27%, 남아공화국이 6%였다. 20세기에 접어들자, 남아공화국이 압도적인 몫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는 自由世界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1493년~1980년까지의 總 生産量은 8만톤, 1943년 이후의 생산량이 0.5만톤, 共産圈의 保有量 0.3만톤을 합치면 세계 전체의 金在庫는 약 9만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 2次 大戰後의 金生産

제2차대전 후 런던 金市場이 재개된 1948년 이후[6]의 서방측 금 공급량을 볼 때, 5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던 금의 공급은 달러방위와 國際金融協力이 전개된 60년대 중반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금풀(pool)이 붕괴되기 직전의 67년에는 史上最高의 2,649톤을 기록하였다.

1970년에는 1,479톤을 기록하였고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1975년에는 1,200톤 이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 이후 生産量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5) B. Pesek and T. Saving, *The Fundations of Money and Banking, New York:* Macmillian, 1968, pp. 5~16.

6) Eiteman, D. K., A. Z. Stonehill, and M. H. moffett,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6th ed.,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2, pp. 24~29.

世界最大의 金生産國인 남아공은 1970년에 사상최고인 981톤을 생산하여 世界生産의 66%를 점하였으나 그 후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여 1991년에는 世界生産의 59%에 불과하였다.

2. 韓國의 金生産

1) 古代의 金生産

금의 채취는 인류가 인류사회를 형성해왔던 최초의 시대에 많은 勞動力과 장기간의 勞動時間을 투입해야 했으므로 희소성이 있고, 생활에 필수적이었던 것같다.

農業, 목축 등[7] 식량생산의 확대로 인접한 他部族과 무력을 사용하므로써 얻어지는 저렴한 勞動力과 노예를 이용하여 금을 채취하였던 것이다.

古代國家의 성립에 의하여[8] 그때까지의 사금의 채취와 수집에서 일보진전하여 金鑛山의 개발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적정한 도구들이 필요하였다. 金鑛山의 개발은 철기의 도입이 전개되었는데, 물론 최초의 金鑛山은 금광맥이 지표에 노출된 부분을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파내는 방법이었다.

이와같은 금의 生産過程에는 대량의 노동이 투입되었다.

慶州博物館에 있는 人類發生以來 오늘날까지 발굴된 出土品을 관찰해 보면 어떤 時點부터 金製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古代國家의 성립은 金製品이 權力者의 수중에 집중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金이 權力과 富의 상징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높은 交換價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富를 확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권력의 집중이 古代國家를 人類社會 生成의 原動力으로써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

---

7) 宋台鎬, 「三國時代 韓國의 文物交流에 대한 硏究」, 慶尙大, 『慶南文化硏究所 論集』, 1978, pp. 3~15.

8) 全海宗, 「韓國朝貢關係考」, 『東洋史學硏究』, 1986, pp. 13~16.

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遺物 등은 金으로 장식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金生産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의 金의 産出은 高麗史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알도리가 없으나 金의 産出은 비교적 多量이었음[9]은 高麗史에 나와있다.[10]

그러나 朝鮮時代에 와서는 따로 金政策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94년에 정부가 金의 사용에 한계를 정하고 금에 대한 統制를 강화했다. 1409년에는 金鑛採掘을 허용하여 동북면(함경도)에서 金 56량을 채취하였다.[11] 1432년에는[12] 金의 價格을 정하였는데 전라도 금산 사람인 윤성대가 금산, 용담등지에서 金鑛産을 발견하였다. 國內의 金鑛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일본으로부터는 金을 수입하는 반면에 명나라 등 외국으로 金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1784년에는 農業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金, 銀, 銅鑛의 개발을 금지시켰다. 1795년에는 外交 및 貿易에 쓰이는 金과 銀을 國內産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金採掘場 수십개소를 허가했다.

1806년에는 採金設店을 허가하여 경기, 충청, 평양, 강원, 함경도 등지에서 個人經營金鑛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3]

1810년에는 삼수부 별해진에서 鑛山을 개발하고 관료들의 묵인하에 금의 채굴이 성행하였다. 1843년 國家의 金保有量은 145량이고 銀은 23만량으로 집계되었다. 1858년에는 金의 潛採를 금지하고 個人의 金採掘을 금지시키다가 1881년에는 금지되었던 각도의 金採掘을 허가했다. 1900년에는 英國人이 허치슨에게 金鑛採掘權을 허가해주고 1908년에

---

9) 九亀金作, 「高麗と宋との通交問題」, 『朝鮮學報』, 17, 1960.

10)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涉史の硏究』, 1959. 林克己, 「日本・高麗來航の宋商人」, 『朝鮮學報』, 14, 1959, 參照.

11) 「高麗史節要」, 券35, 恭讓王 3年 3月 條.

12) 李仁榮, 「朝初女眞貿易考」, pp. 1~13.

13)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大出版部, 1973, p. 113.

는 美國人 콜브란에게 갑산 채굴권을 내주었다.

2) 韓國의 金鑛

우리나라의 금공급은 產業用輸入, 新產金, 再生產, 밀수 등으로 분류된다. 다른 물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금도 自國의 수요는 자국의 생산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14] 사실 우리나라는 금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금은 사금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석영맥 속에서도 발견되며 1천톤이 훨씬 넘는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鑛의 숫자도 25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모든 금광이 현재 金을 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鑛業은 금광이었다. 이런 금광 採掘權과 연관해서 운산금광, 가안금광, 금성금광(강원도), 창성 대유동금광, 산금광 등의 利權이 모두 외국인 자본에 양도되었다. 광무시대 우리나라 金鑛의 現住所와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

기록 자료로 남은 것을 보아도 1880년대말 현재로 우리나라의 금광은 함경도 일대 경내에서만 20군데 정도나 드러나고 있다.[15]

이상 資料에서 보면 1883년부터 1895년까지 함경도에서 조업중이던 重要鑛山은 단천 대동광, 장영광, 갑산 하남광, 갑산 내장광, 갑산 운종광, 삼영광, 영평광, 안변광, 정평광, 영흥 산동광, 영흥 하동광, 영평광 등이었고 규모로 볼때는 영흥, 갑산, 단천금광 등에서 엄청난 產金量을 쏟아내고 있다.[16]

물론 이때까지는 東洋 最大의 산금량을 자랑했던 운산금광(미국인 소유)이나 직산 鑛山 등이아직 개광을 하지 않고 소규모 한인 광산 덕대들의 손으로 채광되고 있어서 전혀 주목할 만한 產金量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시기였다.

---

14) 自治統監, 37(券) 4(四部 叢刊本).

15) 鈴本武雄, 『朝鮮の經濟』, 日本評社, 1942, 第6, 12章.

16) 朝鮮殖產銀行調査局編, 『朝鮮工業會社の資本構成調査』, 1935.

3) 韓國의 金鑛開發實態

그러면 1910년 한일합병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鑛業實態는 어떠했는가?

광무시대에 이미 운산광산, 수안광산, 창성광산, 직산광산 등이 外國人의 손에 들어갔지만, 1910년 당시까지 외국인 소유 鑛山 중에서 가동중인 것은 운산광산 하나 뿐이었다.[17]

나머지 광산은 금이 잘 안나와 중간에 포기했거나 본격적인 採金事業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1908년 6월말까지 운산광산에서 나온 鑛產物 생산액은 1천70만1천1백58달러였다. 1909년 2월 1일로 끝나는 단 1년의 생산액이 1백71만6천1백4달러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운산광산의 성적을 알 수 있다. 운산광산은 미국인의 신디케이트 경영에 속하는 바, 資本金은 5백만원이며 매년 조선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2만5천원이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1년에 단돈 5백원짜리 금을 캐는 광산 하나라 없던 시대다.

이렇게 광업에 대한 發掘事業이 점차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구한국)에서는 鑛業行政과 그 제도[18]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1906년 9월 15일부터 신광업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1906년 9월 15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던 新鑛業法은 당시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뼈대만 갖춰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1908년 8월에 다시 고쳤고, 韓日合併이 된 뒤 1915년 12월에도 대폭 수정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광업법[19]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

17) 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段階』, 東洋經濟新聞社, 1943.

18) 坂本和一, 『現代工業經濟論』, 有斐閣, 1988, 序章, 第1部.

19) 原朗, 「『大東亞共榮圈』の經濟的 實態」, 『土地制度史學』 71號, 1976, 參照.

Ⅲ. 金需要의 史的考察

1. 金의 特性

금은 그 品質이 균일하여 分割이나 결합으로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 또한 부식되지 않으며 녹슬지도 않을 뿐더러 변색되지도 않는다. 古代의 이집트 묘에서 발굴된 것이나 침몰된 해적선에서 끌어올린 것이나 金製品은 신품처럼 광택이 난다. 그리고 왕수(초산과 염산의 혼합물)나 시안화 알칼리용액 등 극히 소수의 특수한 것 외에는 용해되지 않는다.[20]

이러한 금의 有用性은 다른 金屬과는 달리 첫째, 稀少性에 있고 둘째, 뛰어난 심미성 셋째, 부식성 넷째, 전연성 다섯째, 전도성 여섯째, 저용해성 등에 뛰어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特性을 보면 금의 統一原子量은 196.96으로써 원자번호가 79이다. 이 原子核에는 양자 79개, 중성자 118개, 전자 79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금은 유황이나 유산에는 반응하지도 않고 다른 金屬과는 달리 높은 온도에서 산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의 융점은 섭씨 1,063도로써 유화물과 산화물이 되지 않는 점에서 동과 은보다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열전도성 역시 섭씨 마이너스 185도에서 플러스 100.5도 사이에는 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밖에도 광학적으로도 금은 높은 반사성이 있어서 적외선에도 약 98.4%를 반사한다. 금은 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연성이 뛰어나 1인치의 5억분의 1두께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온스의 금으로 100만분의 10인치의 두께로서 68.3평방피트의 박판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금은 야금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따른 금속과의 화합으로 색상 뿐만 아니라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물리적인 우수한 특성을 효과적으

20) 廉永夏, 「金屬材料學」, 東明社, 1991, pp. 16~21.

로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特性에 따라 오늘날 우주산업분야의 技術革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工業用途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金需要의 急增

1) 實用的面에서의 金需要

實用的面에서의 금의 수요는 반지 목걸이 같은 장식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같은 전자공업부품의 일부로 사용되었거나 치아의 치료에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古代로부터 쓰여오던 금이 최첨단을 가는 전자공업에 결부되어 있음은 의외의 감이 든다. 그러나 산화하지 않는 금은 다른 어떤 金屬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우주선에서도 미사일에도 금은 불가결의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비치 퇴장용으로서의 需要는 같은 총수요의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 2할의 투자, 퇴장수요가 金時勢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용, 퇴장용의 금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유럽에서는 누구나 긴급히 도망갈 경우에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금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가지고 다니는데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價値의 판정이 쉽다는 점, 즉 地金이나 될 수 있으면 地金에 가까운 것이 필요하다.

2) 寶石類 및 産業用 金需要

보석 및 産業用 金需要는 보통 비투기적인 것으로 소득수준이나 金價格 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먼저 보석류 수요는 대체로 開發途上國에서는 실질금가가 오르면 감소하고, 내리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先進國에서는 주로 실질 GNP 성장율과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금은 工業用을 중심으로 가속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며 민간인들의 금퇴장열이 가세하여 그 수요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의 급속적인 성장으로 國民所得이 늘어감에 따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용 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한편 産業의 高度化에 따른 공업용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工業製品의 전자화가 매우 빠르게 신장하고 있다.

3) 世界의 金需要圖

장식용 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이태리로써 金細工 技術의 발달로 많은 細工品들을 수출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인도와 이집트,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수 있다. 또한 홍콩, 싱가폴 등 큰 수요국으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宗敎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宗金思想이 아시아 국가들에 훨씬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대부분 先進國에서는 순수한 장식용으로 사용되므로 순도가 높지않은 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그외의 국가들에서는 投資의 목적도 겸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자공업용으로 쓰이는 금은 73년에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에는 이 분야에서 많은 신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재의 개발, 기술의 발달로 단위사용량의 감소 등의 이유로 년간 142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美國과 日本의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앞서 있으며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화란, 이태리 등 先進工業國이 연수요 수톤을 넘는 나라들이다.

4) 國際投資와 金需要

投資, 또는 投機 目的의 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반의 통화에 대한 신뢰 저하, 인플레이션의 가속, 미국 대통령의 미국내 및 非共産世界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리더쉽에 대한 신뢰 저하, 중동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政治 政勢의 불안, 원유 가격의 인상, 달러의 불안정

에 따른 보유준비 자산의 다양화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민간의 金 買入熱이 고조되고 있는데 남아연방이 제조한 6백 10만개의 金貨中 약 절반 이상을 사들인 미국 민간의 금 매입열과 정치 정세가 불안한 동남아 제국에서의 금 매입열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中東諸國에서의 금 매입열이다. 중동 제국의 정부나 통화당국이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金市場은 기껏해야 2~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의 잉여자금을 가진 정부가 투자하기에는 市長 規模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유 수입으로 거부가 된 2천~3천여명의 중동과 일본 등의 個人投資家들이 집중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 최근 금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금 보유별 내역은 미국의 대상품 취급업자 존아론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의 中央銀行 및 I.M.F. 등의 公的機關 40%

② 개인의 퇴장금 23%

③ 장식용 및 產業用에 사용 23%

④ 공산권 3%

⑤ 불명 11%

Ⅳ. 金輸出入의 史的考察

1. 國際的인 金去來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中南美에서 쏟아져 나오는 金은 유럽인들이 꿈도 꾸어보지 못한 양이었다. 신대륙의 原住民들은 스페인 정복자로부터 약탈 당하고, 속고, 고문당했다. 모두 金과 銀 때문이었다. 정복자는 금을 가득 실은 함대를 스페인으로 보냈다.[21] 영국과 네덜란드 해적들, 그 중 가장 유명한 프란시스 드레익경은 스페인 함대를

습격하여 그들의 보물을 노략질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유럽의 金鑛의 生産量은 일년에 약 7.5톤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의 목적은 스페인의 金을 가능한 많이 가져 오는 것이었다. 戰爭을 일으키는 것이 한 방법이었고, 그래서 몇몇 나라는 그렇게 하였다.[22]

더 많은 금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 왔다. 그리고 전쟁과 貿易을 통해서 이 금은 다른 유럽국가로 흘러 들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한정의 부가 아니라 엄청난 물가상승이었다. 당시 세계의 金保有量의 3/4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은 어떻게 빵값이 매일 오르고 금값(금의 購買力)이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스페인에서 생겼던 똑같은 일이 第1次 世界大戰後 美國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전쟁시에 영국과 프랑스에 많은 전쟁물자를 팔고 그 대금으로 대량의 금을 받았다. 그러므로 금이 뒷받침 하던 달러를 더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戰爭物資의 생산으로 활기를 띠던 경기가 주저앉게 되었다. 생산이 감소할 때 새 달러가 쏟아져 나왔으므로 증가된 貨幣量이 감소된 商品의 양을 좇기 시작하였다. 1921년과 1927년 사이 미국의 물가는 두배로 뛰었다. 반복하면 金이 富를 보증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2. 古代의 金去來

古代國家가 생산한 금은 단지 권력자의 부의 상징만이 아니라 國家機構를 유지 운영하는 자원으로도 이용되었다. 당연히 古代國家의 행정관, 권력의 기반이 된 군대를 유지하는 식량, 의복, 生活資材를 구입

---

21) W. T. Newlyn, *Theory of Money*, The Clarendon Press Oxford, 1962, p. 3.

22) J. M. Keynes, *A Treatices on Money*, Vols. 1, Macmillan and Co. Ltd., 1930, pp. 243~257.

하는 대가로서 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대륙, 오늘날 중근동지역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地中海文明은 다종다양한 상품의 국제적인 流通市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2세기의 십자군 원정 이후 13세기까지 決濟通貨로서의 금의 역할이 급속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금의 需要도 급증하여 지중해 주변의 金鑛山의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15세기에 들어 유럽제국에서 아시아의 금을 구하기 위해 여러차례 내항한 貿易船에 의하여 많은 상품이 들어왔다. 이러한 商品을 구하기 위하여 그 대금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급증하여 韓國에서의 金鑛山 개발이 촉진되고 채굴된 금광석을 제련하는 技術도 급속히 발달되었다.

유럽에서는 地中海文明을 상징하는 고대의 그리스, 로마문명의 개화로 유럽대륙 전역에서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광대한 國際市場이 성립되고, 그 사이에 대량의 각종 상품이 시장을 구하여 輸送, 판매되고 그 결재 통화로서의 금과 은광산이 점차 개발되고, 生産量도 급증하게 되었다.

일종의 國際分業體制가 정비되었으며 이 지역의 생산량이 급속히 높아진 결과 사람들의 生活水準이 상승하고[23]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욕이 강해졌고 決濟通貨로서의 금과 은의 수요를 자극하여 이 지역 전체에 금·은광산의 개발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대륙에서 黃金國 韓國을 향하여 탐험여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대항해 시대에는 美國大陸의 발견이 있었고 중남미에서의 대제국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금과 은의 수집이 횡행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중남미 대륙의 支配體制가 구축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유럽대륙으로 유입된 막대한 금과 은에 의해 유럽의 商品生産은 강하게 자극되어 여기서 축적된 부가 유럽대륙에서의 금은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精錬技術을 개발하기 위하여

---

23) Cooper, R., *The Gold Standard*: Historical Facts and Further Prospects :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2, pp. 1~45.

중세이래의 연금술로 불리우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근대 과학을 탄생시킨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대륙에서는 이와같은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國際市場의 미성숙이 이와같은 國際分業體制를 자극시킬 수 없었고, 이것은 농민에 대한 수탈을 기본으로한 國家權力의 유지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韓國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交易으로 진귀한 제품, 모직물과 화약, 각종 정밀제품, 기계류가 들어왔고, 그 대가로 지불되는 國際通貨로서의 금과 은의 역할이 급속히 증가하여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다.[24]

이와같이 人類의 歷史를 통하여 금과 은의 역할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촉진되어 國際商品市場의 성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환언하면, 이 국제시장에 속한 지역에서는 풍부한 金鑛山이 존재하였고, 19세기 후반들어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은 단지 상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고도의 國際分業體制와 국제상품시장 성립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古代의 金輸出入

高句麗, 百濟, 新羅의 고분에서 출토된 遺物들은 金으로 장식되어 있어서[25] 이 時代에 金이 왕가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句麗는 선비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는데 이 전투의 공으로 부분노에게 黃金 30근을 하사하고, 新羅에는 日本國使가 와서 黃金 300량을 바쳤는데, 三國時代에는 佛像을 만드는데[26] 金이 사용되고 金이 三國과 中國,

---

24) Solomon, R.,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New York : Happer & Row, 1982.

25)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 『震檀學報』, 1. 2. 1934, pp. 86~90.

26) 徐學洙, 「三國과 南北朝 交涉의 性格」, 『東洋學』, 11輯, 1981, pp. 5~8.

日本 등에 交換去來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에는 후진, 宋, 元나라 등에[27] 金細工品을 수출하였다. 또한 金海府에서 銀을 密輸出한 銀採掘業者와 日本商人들을 감금한 것으로 보아 金과 銀의 流出에 政府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1379년에 明나라에서 金 100근을 수출할 것을 요구하여 1382년에 明나라에 金을 輸出하였다. 明나라와는 國際決濟의 手段으로 金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政府가 직접 金의 輸出入에 대해 통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明나라 등[28] 外國으로의 金의 輸出을 금지시켰다. 日本으로부터는 金을 貿易하여 輸入하고 반면에 名나라 등[29] 外國으로 金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1678년에는 金屬貨幣의 全國的인 流通을 선포했다. 그러나 1784년에는 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銅輸入問題를 논의하는 한편, 農業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金鑛의 開發을 금지시켰다.[30] 1795년에는 貿易에 사용되는 金을 國內에서 충당하기 위해 金鑛採掘場을 허가했다. 1864년 회계부중 주요 品目과 數量을 보면 金이 100량 4전, 銀이 21만량이었다. 1881년에는 日本에서 銀貨 25만원을 차관하였고, 1900년에 英國人에게, 1908년에는 美國人에게 金採掘權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外國人이 韓國金鑛開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4. 1910年 以後의 金輸出入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침략을 뒷받침하는 천혜의 병참기지로서의 이용가치는 우리나라 광업을 거의 송두리째 일본인들이 수탈하는 내용

27) 全海宗, 「麗·元 貿易의 性格」, 『東洋史學硏究』, 第12, 13合輯, 1978, p. 53.

28) 通文館志, 卷3, 事大條.

29) 申奭鎬, 『朝鮮王朝 開國當時의 對明關係』, (國史上의 諸問題 第1輯), p. 122.

30) 姜聖祚, 『朝明間의 公貿易에 관한 考察』, 中央大 大學院, 碩士論文, 1969, p. 29.

의 朝鮮鑛業令(1915. 12. 14) 시행이후 갈수록 심화되었다.

총독부는 광구세 감면, 정부보유 광구의 개발에 이어 金 輸出禁止를 解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정령을 발표, 금 매입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의 鑛業振興政策을 잇달아 실시했다. 금 수출금지해제를 발표(1930. 1. 12)하면서 총독부 정무총감은 産金은 활황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군비확장을 위해 더욱 많은 지금을 확보해야 하는 사정에 몰린 日本政府와 총독부는 1931년 12월 14일자로 금을 주로하는 제품 및 지금의 수출취체법을 공포, 해금 1년 11개월만에 다시 金輸出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요의 급증으로 産金熱은 갈수록 높아져 32년 3월 11일 현재의 서울시중 금시세는 1돈쭝(3.75g)당 7원 25전으로 앙등된 상태였고, 이후에도 기복을 보여가며 계속 上昇勢를 이어갔다.

일본의 財閥社會들이 우리나라 金鑛山에 눈독을 들여 대개 상륙하던 1931년의 전국적 産金量은 8,546kg, 사금 1,115kg이 생산되었으며 년간 광산 총액은 3,500만원으로 기록되었다.

1932년 들어 정화의 海外 流出이 빈번해지자 일본 정부는 7월 15일자로 자본도피 방지법을 공포했는데, 중벌을 규정한 이 법이 엄격히 시행되자 日本 本土의 거액 자본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이후의 1930년대를 한반도의 골드러쉬 시대로 부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4년 하반기 이후 1918년 중반까지를 우리나라 초기의 金鑛黃金期로 볼 때, 1930년 초에 단행된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금 수출금지 해제조치는 전무후무한 金鑛業 전성기를 몰고 온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1월 이른바 産金 10個年計劃을 실시했는데, 이 계획의 줄거리는 초년도인 32년에 산금액 1,031만원을, 마지막년도인 1943년에는 10배가 늘어난 년간 10억원의 지금을 수매할 수 있도록 금광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 産金奬勵政策에 따라 총

독부는 신규 鑛山開發을 적극 권장하면서 채광장려금을 방출하는 동시에 채굴된 광석을 처리할 제련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다.

5. 國內 金需給現況과 問題點

우리나라 金 需給現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이유는 국내 1만 2천여개의 금은방이 거의 모두 고급을 음성거래하고 있고, 일부 鑛産業者도 세금계산서 없이 뒷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수금과 不正去來되는 금의 양에 의해시세가 형성된다. 현재 국내 년간 금 유통량을 203톤으로 잡고, 그 중 밀수량을 165톤으로 추정하는데, 100톤만 잡아도 13~15억달러에 이른다. 엄청난 외화가 밀수대금으로 유출되는 금시세(도매가격) 형성은 서울시내 몇몇 仲介業者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散賣 價格은 전국 金銀商聯合會에서 책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부터 韓國銀行은 公正價格(506원)에 國庫補助金(694원)을 합친 1,200원으로 금을 강제 매입했으며, 이후 정부는 51년 12월 23일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공포하여 금의 자유거래를 보장했다. 그러나 3년 후(54. 3. 4) 한은이 금을 달러화로 매입하는 새 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自由去來가 중단되었고, 이어 달러화에 의한 매입제가 강화되는 조처(56. 6)가 추가되어 求償貿易에서 50%의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한은에 의한 集中買入制로 환원되었다.

그 후 61년 2월 1일에는 1,300대 1의 單一換率制를 실시하면서 한은은 금을 한화로 매입하기 시작, 64년 7월 8일에는 금가격의 하락방지 및 産金業者 보호를 위해 외환관리법을 고쳐 鑛業製錬公社가 생산하는 지금전량을 국제가격인 그램당 1달러 12센트(285원 60전)로 한은이 매입하도록 법제화했다.

65년 7월 정부는 금 전량매입제도를 바꿔 광업제련공사에서 생산한 金을 20%만 한은이 매입하고 80%는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어 67년 1월에는 전량 자유판매제가 단행됨으로서 금에

대한 오랜 세월의 價格統制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79년 이후 3년 동안은 都小賣의 비중이 70%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82년에 55%선으로 급락, 83년에는 제조업부문의 788kg 販賣量에 비하여 도소매부문이 704kg으로 뒤져 46.8%의 비율로 다운됐으며, 이후의 金消費 패턴은 제조업부문 우위로 바뀌었다. 시장기능에 따라 공매하거나 수매도 하는 86년의 전량시판 판매제도가 실시되었다. 80년에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금값은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高金利 政策이 반영되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85년에는 79년 수준인 357달러(국내가격)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금가격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國際價格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각종 조세 부담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에 대한 담세율은 關稅 4%, 特消稅 20%, 附價稅 10%선이 지켜지고 있다.

한편 국내 金鑛業者들은 金輸入自由化論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금광업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수입자유화를 시킬 경우 국내광산이 경쟁력을 잃어 그나마도 국내공급길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해방이후 金鑛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해 産金政策을 펴왔다. 그 일환으로 금광재개발을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자원의 미비 등으로 사실상 産金政策이 빛을 보지 못했다.

6. 金에 대한 貿易上의 規制

금에 관한 무역상의 규정은 외국환관리법상 지급수단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규제되고 있었다. 다만,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으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업용이나 의료용의 금으로 외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수출용 보석가공용의 금으로 보석가공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근 수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업 및 의료용으로 약 10여톤 정도만이 수입될 뿐 금의 주소비대상인 민수용으로는 전혀 수

입이 되지 않아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는 재화의 흐름이 계속된다는 경제원리가 작용하여 부족량의 대부분은 밀수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에 대한 세율은 관세 4%, 부가가치세 10%로서 금괴 수입시 총부담세율은 14%이다.

그러나 금가공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20%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할 경우 총부담세율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세제상 합법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구조가 현격히 차이가 생기고 있어서 금소매거래상의 파행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V. 結 論

韓國도 西歐의 골드러쉬와 같은 時代가 있었다. 朝鮮朝末과 日帝時代에는 全國이 金熱風에 휩싸인 적도 있었다. 慶州博物館에 있는 人類發生이래 오늘날까지 발굴된 出土品을 관찰해 보면 어떤 時點부터 金製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金이 權力과 富의 상징 뿐만 아니라 現實的으로도 높은 交換價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富를 확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權力의 集中이 古代國家를 人類社會 생성의 原動力으로서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現在 韓國은 金의 需要가 폭발적으로 增加勢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 金의 需要構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機關은 거의 없다. 韓國經濟의 급속한 成長과 工業의 발전, 그리고 金融實名制로 인한 퇴장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金去來를 통제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國內의 年間 金 流通量은 203톤으로 추산하면, 그 중 密輸로 충

당되는 量이 165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약 20億달러로 우리나라의 輸出品 중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外貨가 密輸代金으로 海外로 流出되고 國內金價格은 서울시내의 몇몇 仲介業者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國內의 金生産의 촉진되어야 하지만 相對的으로 높은 生産費와 稅金으로 國際競爭力을 잃고 있어서 生産原價도 낮출 수가 없다. 이와같은 國內의 金流通制度와 規模의 영세성으로 인해 金의 음성적 거래가 성행하고 價格構造 또한 모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國內價格마저 國際價格보다 높아서 密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金去來의 파행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國內 金鑛散의 實態를 재조사하여 國內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國內生産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國內 金去來構造를 再整備하여 流通構造를 단순화시키고 市場機能에 의하여 國內金價格이 決定될 수 있도록 各種 規制를 調整해야 한다. 셋째, 金은 단순한 商品이 아니기 때문에 密輸로 인한 파행적인 價格決定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政府次元의 對策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歷史的으로 금이 韓國人에게 미치는 影響이 막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未來에도 韓國人의 經濟活動, 國際去來, 工業化에 金의 役割이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長期的인 金需給計劃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韓國의 金去來 패턴을 分析해 보면 古代부터 近代까지 金輸出國이었다가 最近에 와서는 金輸入國으로 轉換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韓國에 있어서 金의 開發은 유럽이나 北美 남아프리카 등과 같이 大規模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理由는 一般金鑛開發業者의 動機誘發이 없었기 때문이다.

國際金融制度上으로도 金의 重要性이 최근 제고되어 各國은 自國의 金保有量을 增加시키고 있다. 따라서 韓國도 國際的인 金保有量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金開發에 대한 새로운 動機誘發政策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表〉 時代別로 比較한 金의 輸出入

時代	年代	主 要 事 項	金의 輸出入
三國時代	612年	高句麗 살수대첩	高句麗, 日本에 불상을 만들 黃金 300량 보내줌(605).
		張保皐	新羅, 日本國使와서 황금 300량 바침. 발해, 高禮進
	828~	靑海鎭설치	등 37인, 唐나라에 金佛像 전함.
高麗時代	918~	왕건, 高麗建國	후진에 사신을 보내어 金細工品수출.
	936~	後三國統一	宋나라에 金銀細工品 및 천 4,00필, 인삼 1,00근, 잣 2,200근 등 수출. 廣州牧 洪原縣 주민이 황금 100량, 백은 150량을 캐냄.
	1236~	高麗대장경 새김	金, 銀, 輸出. 금은병, 베, 비단, 흰모시 등을 원나라에 수출(1296).
	1359~		베 2만필과 金, 銀을 원나라에 輸出(1342).
朝鮮時代	1363~		都堂에서 貨幣制度 개정문제를 논의(1361), 明나라에서 금 100근, 銀 1만량, 말 100필, 베 1만필 수출할 것을 요구(1379), 明나라에 金, 銀, 베, 말을 수출(1382), 金, 銀의 사용에 한계를 정함(1394), 金, 銀을 채굴케 함(1409), 동북면(함경도)에서 金 56량을 채취(1410) 日本人 表沙貴가 데리고 온 銅鐵匠으로부터 銅의 제련기술을 배움(1417), 明나라에 대한 金, 銀의 수출을 금함(1429).
	1437~	6진 설치	金, 銀의 價格을 정함(1432), 전라도 금산 사람 尹成大가 금산, 용담 등지에서 金, 銀, 銅의 產地를 발견(1440) 金, 銀 등을 여진족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함(1448). 일본 使僧 등이 도금한 병풍을 바침. 관노 崔元遇, 普賢寺 金字經 60축의 金 22량, 銀 6량을 절취함(1452).
	1469~	經國大典 완성	충주와 양근에서 金을 채굴(1463). 各道의 金, 옥돌, 銀, 구리, 철, 수정 등의 산지를 등록(1464). 倭人이 가져온 金의 사무역을 허가(1476).
	1510~	三浦倭亂	倭의 金을 貿易하여 輸入(1503). 金, 銀을 明나라 사신에게 파는 자를 엄히 단속(1522). 明나라에 金, 銀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1537).
	1554~	비변사 설치	日本에서 銀 1만, 5,000량을 수입. 5년동안 단천온의 채취를 금함(1542).
	1678~	常平通寶 주조	호조에서 銀鑛을 개발할 것과 동전을 유통시킬 것을 제의(1620).

時代	年代	主 要 事 項	金의 輸出入
朝鮮時代	1708~ 1786~	大同法 실시 西學을 금함	평안도 지산에서의 금채취금지(1720).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銅輸入. 문제를 논의, 農業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金, 銀, 銅鑛의 개발을 금지(1784). 호조에서 金, 銀의 채굴장 수십개소를 허가(1798). 各道에서 金캐는 것을 금함(1799). 採金設店을 허가하여 경기, 충청, 황해, 평양, 강원, 함경도 등지에서 개인경영 金鑛業이 활발히 진행됨(1806). 삼수부 별해진에서 金鑛을 개발(1810). 銀의 國內流出을 막기 위하여 銀貨使用 문제를 논의, 관료들이 묵인하여 金, 銀의 채굴이 성행(1832). 國家財政의 保有量 공개(金 145량, 銀 23만량, 쌀 21만여섬, 명주 139동, 콩 2만4천여섬)(1843). 金, 銀, 銅의 潛採 금지(1858).
	1866~	병인양요	개인의 金, 銀 채굴을 금지(1863). 1864회계부중 주요품목과 수량(金 100량 4전, 銀 21만량).
	1881~	신사유람단 및 연선사 파견	금지되었던 各道의 金鑛채굴 허가(1881). 穢山 금광 불법 채굴(1899).
	1894~	갑신정변, 러시아와 조약, 갑오개혁	英國人 허치슨에게 殷山採掘權을 허가(1890).
	1905~	을사조약	美國人 콜브란, 갑산 광산채굴권 획득(1908).
日帝時代	1910~ 1912~	國權侵奪 土地調査	朝鮮鑛業令 개정으로 金·銀의 鑛業稅를 면제(1918). 金, 銀의 鑛區는 131개, 年生産量은 金, 銀鑛이 12,276톤, 金 5,341kg, 砂金 3005kg(1927). 朝鮮總督府의 金輸出禁止 해제(1930). 産金 10個年計劃 발표, 韓半島의 골드러시 時代(1932). 朝鮮産金令이 시행되어 産金 5個年計劃이 구체화 됨(1937). 長項製所의 金生産 能力은 月 150kg규모. 採掘中인 金銀鑛區는 7,254였고, 년간 産金量은 21,487kg이었다.
大韓民國	1945~ 1948~	8·15 解放 大韓民國政府 수립	韓國銀行은 공정가격(506원)에 국고보조금(694원)을 합친 1,200원으로 金을 강제 매입(1948). 金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발표(1951). 1,300대 1의 단일환율제로 韓銀은 金을 한화로 매입(1961). 금가격 하락방지법 및 산금업자 보호위해 외환관리법 개정(1964). 金의 전량 자유판매제단행(1967).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한 200kg을 미국에 수출(1980). 600개 금광대상으로 대대적 탐사(1981). 日本商社 통해 599kg을 輸出(1984). 165여톤 密輸入추정(1993).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朝鮮經濟收奪의 金融業經營

姜 泰 景*

目 次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
Ⅱ. 朝鮮의 金融業 實態
1. 金融業의 本質과 東拓社 金融業
2. 朝鮮金融業
Ⅲ. 東拓社의 金融制度와 收奪的 金融政策
1. 金融制度와 資金調達方法
2. 收益性 貸出方法과 經濟收奪
Ⅳ. 結 論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日本人들 가운데는 아직도 帝國主義 思想을 갖고 있는 사람들, 日本國粹主義者, 그리고 過去의 植民地政策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者 등등, 다양한 思想과 思考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類의 사람들은 특히 政治人, 學界人, 一般知識人들 가운데 많이 있다. 1億2千名을 움직이는 日本指導層人物은 約 2萬名이라고 한다. 少數指導層人物 가운데, 前記의 위험한 思想을 가진 者들은 극히 少數이지만, 그들의 思想과 理論이 全體日本人 중의 많은 人員에게 意識化 시키는 位置에 있다. 過去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政治人 가운데 過去의 韓日關係에 대한 妄言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植民地 支配에 대한 솔직한 反省과

* 啓明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敎授

謝過를 주저하는 日本政府 등은 그들 祖上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후세들이 그것을 正當化하려는 思考, 美化하려는 態度가 그들의 傳統的 思考처럼 되고 있다. 이런 思考나 態度는 日本人의 汚名을 現代와 未來의 日本人에게 더럽히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침략적 根性이나, 民族優越感에 사로잡혀 있는 武士(사무라이)精神은 그들의 불행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마는 日本人 가운데 少數階層이 多數에게 영향을 주는 日本特有의 집단주의 의식구조라 하겠다.

本 論文은 日本侵略下에 怪物로 탄생한 東洋拓殖株式會社에 관한 第4篇의 연구로서, 前述한 식민지 美化論者의 무모한 주장이나, 思考를 퇴색케 하는 하나의 연구로서, 관계자료를 嚴格히 分析하여 研究키로 한 것이다. 東拓社의 金融業에 관해서 연구한 事例가 없는 此際에 東拓社의 金融業이 東拓社의 機能과 日本國益에 어떤 役割을 했는지를 밝히는데 있고, 그 金融制度나, 金融政策이 朝鮮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研究하는데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本 論文은 첫째, 文獻資料를 多角的으로 분석하여 문헌에서 나타난 東拓社의 經營戰略을 金融業에서 모색하는 방법과, 둘째는 文獻 속에서 含意되어 있는 東拓社의 計略과 日本政府의 帝國主義 팽창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밝히는 方向으로 研究코자 한다. 文獻에 나타난 日本政府의 計劃한 部分的 政治性 및 政策이 綜合的 觀點에서 나타난 政治性과 政策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研究方法이 필요하다. 이렇게 交又研究方法과 逆行研究方法을 통하여 東拓社의 金融業을 통한 日本政府의 經濟收奪 戰略을 研究코자 한다.

Ⅱ. 朝鮮의 金融業 實態

1. 金融業의 本質과 東拓社 金融業

金融業의 本質로서는 5가지를 들 수 있다. 流動性, 安全性, 收益性, 公益性 그리고 銀行의 産業投資의 規則 등이다.[1] 이중 流動性과 安全性은 預金者와 貸出者가 같이 重視하는 事項이다. 預金者의 流動性은 預金한 自己資産을 필요시에 언제든지 引出할 수 있어야 하고, 貸出者의 流動性은 貸出金의 回收가 용이해야 하는 점과 貸出에 의한 擔保物도 貸出金 回收가 不可能時에는 現金化 할 수 있는 市場性이 있어야 한다. 公共性은 金融業이 一國의 經濟成長이나, 金融利用者들의 個別經濟發展에 寄與하는 意義는 投資業體의 不實經營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損失로 波及되어, 公信力의 金融業이 危殆로와지는 것을 防止하기 이한 것이다. 이런 등의 의미에서 金融業의 資金貸出의 4大基本原則이 있다.[2] 즉, 첫째, 確實性(辨濟나 償還)이 있어야 하고, 둘째, 安全性(資金回收의 均衡性)이 있어야 한다. 어느 地域이나, 어느 少數企業에 偏重했을 때, 貸出의 回收에 무리나, 危險이 따를 수 있다. 셋째, 流動性으로서 資金回收나 他産業發展에 波及效果가 있어야 한다. 넷째, 金融業을 위한 利益性이 있는 貸出이어야 한다. 이런 金融業의 本質이나, 原則에 대해서 東拓社의 金融業의 特色을 摸索코자 한다.

1) 金融業의 一般的 本質

前述한 金融業의 5가지 本質을 토대로 經營內部 機能과 外部機能을 向上시키는 方向으로 運營하는 것이 金融業의 社會的 및 國家的 寄與와 公信力을 높혀가며, 건전하고 發展할 수 있는 길이다. 金融業도 榮利를 추구하는 企業이기 때문에 流動性과 安全性, 公共性, 企業經營의

---

1) 孫正植著, 『新貨幣金融論』, 法文社, 1993, pp. 131~136

2) 坂部悟著, 『貸付』, 有斐閣, 1964, pp. 4~8.

收益性의 하나의 手段으로 간주하고, 收益性에 치중하는 傾向이 높다. 이 收益性에 치중하기 때문에 株式賣買나 保有에 金融資金을 이용하는 경우나 債券購入에 投資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株式이나 債券에 投資하는 것은 經營外部 要因에 의해서 危險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 즉, 債券에 대한 利子危險이나 現金交換危險 등이 있을 수 있고, 株式에 관해서는 企業의 危險이나 證券市場의 危險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株式과 債券, 어음할인 등은 金融業經營에 危險을 최소화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점에 있어서 1930年의 日本全國銀行은 各種有價證券(株式 및 各種有價)의 擔保貸出比率은 24.5%였고,[3] 1926~1929年의 朝鮮內의 全銀行의 各種 有價證券 擔保貸出은 23%로써 兩地域이 비슷한 比率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38~1942年에는 朝鮮內의 全銀行은 40.5%의 각종 證券 擔保貸出을 했다.[4] 朝鮮內의 銀行들의 각종 證券擔保 貸出比率이 높아 간것은 朝鮮內의 日本人 위주의 銀行貸出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 傾向에 대해서 特殊金融業인 朝鮮 殖産銀行은 1919~1942年까지 平均 有價證券 貸出이 4%를 占했다.[5]

東拓社의 경우는 株式 및 證券貸出이 29.3%로써 朝鮮 殖産銀行보다 높았고, 朝鮮內의 全銀行의 有價證券貸出 14.8%보다 크게 높았다. 각종 有價證券 擔保貸出 比率이 總貸出額에 높은 比率을 占有해 가는 것은 金融機關이 財閥企業이나 大企業 위주로 經營하고 있다는 거을 의미한다. 中小製造業이나 中小商業, 나아가서 庶民家計를 重視하는 一般貸出의 比重을 일정한 水準으로 維持하는 것이 産業成長과 所得分配가 調和的으로 發展되어 질 수 있다. 동시에 이 傾向이 金融業의 本業에도 충실히 發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6]

顧客에게 높은 信用度와 財産增殖에 도움을 주는 受信業種(商品)을

---

3) 坂倉榮一著, 『銀行論』, 東洋經濟, 1957, p. 242.

4) 〈表 3〉, 〈表 7〉 참고.

5) 〈表 3〉, 〈表 7〉 참고.

6) 坂倉榮一著, 『銀行論』, 東洋經濟, 1957, p. 239.

開發함과,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金融業의 첫째의 課題이다. 둘째의 課題는 역시 고객에게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수 있는 資金能力과 與信制度이다. 受信業과 與信業을 均衡시키면서 一國의 產業과 經濟發展에 寄與하고, 결코 어느 地域이나 個人 또는 少數業體에게 偏重하는 金融業은 公金融이 아닌 私金融으로 볼 수 있다. 公金融은 公正과 公平에 충실해야 한다.

1) 東拓社 創設目的의 金融業

日本의 東拓社를 朝鮮에 創設한 動機는 英國의 東印度 株式會社가 印度를 中心으로 英國의 帝國資本主義 發達과 植民地 經濟 收奪의 效果를 보았던데 자극을 받은 것이다. 西歐政治 가운데 非人道的이고 醜惡한 政治나 政策을 쉽게 模倣한 日本은 日本文化의 요람지인 朝鮮에 帝國主義 經濟 思想과 軍事文化를 朝鮮國土에 展開하려는 것을 開化 또는 拓殖이란 用語로 사용하여 武力으로 侵入한 것이다. 그들이 東拓社를 設立하겠다는 創立趣旨에는 5個 要素가 있었다. 첫째는 韓國을 指導啓發하여 朝鮮民族의 文明惠澤을 입게 한다는 것, 둘째는 國際的使命을 띠고 朝鮮民族을 啓發한다는 것, 셋째는 殖產興業으로 朝鮮民族의 生活을 向上케 한다는 것, 넷째는 朝鮮國家財政을 培養하기 위해서 荒蕪地 開墾을 한다는 것, 다섯째는 日本文明의 技術로서 朝鮮農民을 指導啓發한다는 것 등이었다.[7]

이상의 5個 創設趣旨에 韓國의 親日派 勢力들이 自意半 他意半에 의해서 東拓社 創設에 同意한 것이다. 그러나 會社가 創設된 1908年의 會社法則에서는 拓殖事業을 展開하기 위해서 5個事業을 明示했다. ① 農業, ② 土地賣買 및 貸借, ③ 土地經營 및 管理, ④ 建物 築造 및 賣買·貸借, ⑤ 日韓 移民 募集 및 配置 등이었다.[8] 그후 1918年에 會社法을 改定하여 資金供給과 定期預金 取扱, 그리고 其他 事業을 經營한다는 3

7) 東拓社, 『秘, 帝國議會說明資料·業務概要』, 1938, p. 9.

8) 安藤良雄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 東京大出版會, 1986, p. 89.

個事業을 追加했다.[9]

이런 등의 東拓社 事業은 日本人의 朝鮮移住者를 위한 事業이었고, 朝鮮人을 위한 事業은 아니였다는 것이 分明하다. 農土改良이나, 農事改良에 投資한 目的이나, 農資金을 貸付한 目的은 日本의 食糧供給을 安定化하기 위한 것이였다. 1917年頃, 朝鮮과 滿洲에 東拓社의 投資와 資金貸出에 대해서, 日本內에서는 批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日本政府의 計劃은 無謀한 것이 아니였고, 貸出金은 「物件」이 對象인 만큼, 物件은 物件을 말하는 時代라고 보아, 日本政府가 意圖하고, 計劃한 그 物件을 取得하는데 資金貸出의 意義가 있었다는 北崎房太郎의 評價였다.[10] 東拓社의 投資나 資金貸出은 朝鮮에 있어서는 米穀生産으로 日本에 移出하는 것과 朝鮮의 基幹産業을 建設하여 日本軍國을 팽창케 하는데 있었고, 滿洲나 中國 등지에 投資하는 것은 軍需産業用 資源奪取에 있었던 것 등은 東拓社의 植民地 經濟收奪用의 金融業이라는 것이 浮刻되었다.

2. 朝鮮 金融業의 市場支配力

貨幣經濟時代에 金融業의 威力은 그 나라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貨幣經濟가 發達했다고 하는 近世朝鮮時代의 産業은 農業과 商業이 主流였었고, 小規模의 家內工業이 形成되고 있었으며, 日本人을 중심한 商業資本의 支配下에 消費財工業으로 成長하고 있었다. 당시의 朝鮮工業은 대부분이 日本人이 支配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工産品은 日本에서 生産되어 朝鮮市場은 消費市場으로 育成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工産品의 流通構造는 日本의 日本人과 朝鮮의 日本人으로 垂直統合되어, 日本商人의 獨占으로 流通되고 있었다.

農業의 경우는 地主階層의 農産物은 貨幣와 交換되는 높은 商品率로

9) 東拓社, 『東拓十年史』, 1918. p. 10

10) 北崎房太郎著, 『東拓三十年の足跡』, 東邦通信社, 1938, p. 6.

서 朝鮮人地主와 朝鮮人穀物商으로 流通되는 一面과, 日本人地主와 日本人商人으로 去來되는 다른 一面이 있었다. 이 以外에도 兩民族의 混合去來도 있었다. 그러나 全農家의 70% 以上을 占有하는 1町步 미만의 自作農 및 自作兼小作農家는 그들의 생산된 農產物이 대부분, 貨幣와 무관한 自給自足으로 消費되고, 商品化가 零細的이었다. 이런 產業經濟構造는 金融業과 깊은 關係를 가지는 階層은 種族的으로는 日本人이요, 產業으로는 工業과 商業이다. 農業의 경우는 地主層이 되어있다. 金融經濟를 支配하고 있는 階層은 地主와 商工人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下部組織에서 生業하고 生活하고 있는 朝鮮人들은 그런 金融經濟에 隸屬되어 生活하고 있었기 때문에 少數人의 少數金融機關의 搾取的인 獨占支配가 심하면 심할수록 下部層의 朝鮮人들이 犧牲당하는 經濟狀態는 비참할 수 밖에 없었다.

本章에서는 主要金融機關의 貸貸率과 擔保物別 貸出比率을 分析하여 봄으로써 金融機關의 貸出動向을 볼 수 있고, 一般金融機關과 農工產業 重點의 特殊金融機關의 營業動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分析을 통해서 朝鮮國土에 設置되어 經營하는 金融機關의 金融業이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는가를 부분적이나마,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朝鮮의 金融業 實態를 파악한 背景에서 東拓社의 金融業을 硏究하는 것은 意義가 있다고 본다.

1) 銀行金融業의 獨占的 實態

韓日合併 이후까지의 朝鮮內의 金融關係는 朝鮮人 經營의 銀行은 小資本規模의 銀行 등이 있었고, 大部分의 銀行은 日本人이 창설한 銀行과 日本에 本店을 두고 朝鮮에 支店을 둔 日本人經營의 銀行이 朝鮮金融을 支配하고 있었다. 朝鮮人의 普通銀行은 漢城銀行을 위시하여 韓一銀行과 朝鮮商業銀行이 있었고, 日本에 本店을 둔 第一銀行, 十八銀行, 百三十銀行, 周防銀行이 있었다. 그리고 日本人 設立의 密陽銀行이 있었다. 그외의 國策銀行으로서 朝鮮銀行과 農工銀行이 있었다. 日本人 普通銀行과 朝鮮人 普通銀行은 서울지역에 주로 營業을 하고 있었

고, 朝鮮銀行과 農工銀行은 全國 主要地域에 支店을 두고 있었다. 이런 小規模銀行을 포함한 그외의 銀行들이 10年後인 1920年頃에는 資本金 2百萬圓 미만의 銀行이 13個 銀行이 있었고, 2百萬圓 以上의 銀行은 10個銀行이 있었다. 이중 農工銀行을 擴大 改編한 朝鮮殖産銀行이 資本金 3阡萬圓이었고, 貨幣를 發行할 수 있는 朝鮮銀行은 資本金 1阡萬圓에서 8阡萬圓으로 크게 增資했다.[11] 朝鮮銀行과 殖産銀行을 제외한 群小銀行들은 資本力面에서 經營의 合理化나, 安定的인 經營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銀行들의 金融業이 朝鮮의 産業發展에나, 經濟成長에는 크게 期待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銀行의 豫貸率과 擔保物 貸出動向을 보기로 한다.

〈表 1〉 各種銀行의 豫貸率

(單位 : 千圓)

年 度	預 金	貸 出	計
1910~1914	2,196,237(56.4)	1,694,168(43.6)	3,890,405(100.0)
1915~1919	6,702,047(57.6)	4,935,815(42.4)	11,637,862(100.0)
1920~1924	18,072,979(62.5)	10,857,670(37.5)	28,930,649(100.0)
1925~1929	23,866,719(66.5)	12,001,709(33.5)	35,868,428(100.0)
1930~1932	13,840,118(68.2)	6,460,371(31.8)	20,300,489(100.0)
平 均	62.2	37.8	100.0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pp. 234~237, 1932, pp. 275~277.

〈表 1〉에 의하면, 1910年부터 1932年까지의 預貸比率을 보면, 預金比率은 初期가 56.4%인데 대해서, 貸出比率은 43.6%로 나타나, 預金이 12.8% 높았다. 이 傾向이 1932年에는 預金이 68.2%로 증가한 반면, 貸出은 31.8%로 減少했다. 年度가 經過할수록 預金比率이 增加하고, 貸出比率은 減少했다. 그러나 日本國內에서는 貸出比率이 平均 50% 初過한 것과 對照的이다.[12] 이 傾向은 첫째, 日本人을 위시한 朝鮮內의 人

11)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 pp. 56~66.

12) 安藤良雄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 東京大出版會, 1986, p. 4.

口增加와 그들의 所得增加가 銀行에 預金을 增加시키는 要因이라고 보아진다. 둘째는 預金比率은 增加하나, 相對的으로 貸出比率은 減少하는 要因은 무엇이였던가? 이점에 있어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朝鮮內의 投資事業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工業이나, 商業에서 投資需要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貸出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農業分野의 投資는 土地管理에 少資金의 人力이면 충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農業投資의 需要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地主들은 小作人의 勞動力으로 土地管理나, 水利施設을 補修하기 때문에 資金需要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1910~1914年을 기준하여, 1930~1932年에는 預金은 6.3倍 증가했으나, 貸出은 3.8倍 증가했다. 資金需要가 資金供給보다 낮아져가는 상태는 經濟成長이나, 發展이 相對的으로 해가 갈수록 침체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朝鮮內의 大多數 人口인 朝鮮人들의 80%이상이 農業에 종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貨幣와 깊은 關係가 없는 自給自足生活을 하고 있어서, 工業과 商業은 農民들의 商品需要가 증가하지 않는 經濟構造下에서는 괄목할만한 成長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狀態下에서 大部分의 工產品이 日本에서 생산되어, 朝鮮에서는 消費市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銀行資金의 需要가 그렇게 增加하지 못한 것이다.

두번째 要因은 銀行의 貸出方法이다. 貨幣價値가 높고, 交換價値도 높은 不動產이나, 證券 또는 商品들은 擔保하지 않으면 資金貸出은 억제하는 것이 銀行이다. 대부분의 朝鮮人庶民들이 銀行資金을 받을만한 擔保力이 약하기 때문에 資金이 필요해도 銀行資金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零細資金은 銀行에 豫置하기는 쉬워도, 銀行資金을 빌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그 時代였고, 銀行資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制限的이었다. 이런 점 등이 金融機關의 預貸比率이 해가 갈수록 格差가 심해졌고, 그래서 銀行利子率은 安定되어 있었는데 대해서, 私金融利子率은 크게 높았던 것을 理解할 수 있다. 1918年~1925年과, 1933年

~1942年의 各種 金融機關별 利子率을 〈表 2〉에서 보기로 한다.

〈表 2〉 金融機關別 利子率(年利)

區分 / 銀行	1918~1925 預金	1918~1925 貸出	1918~1925 差率	1933~1942 預金	1933~1942 貸出	1933~1942 差率
東拓會社	6.4	7.4	1.0	—	6.7	—
農工銀行	6.08	12.9	6.8	—	—	—
殖產銀行	6.66	8.54~12.7	1.9~6.0	3.92	6.98	3.1
朝鮮銀行	6.13	10.8	4.7	3.76	—	—
普通銀行	6.98	12.9	5.9	4.1	8.97	4.9
金融組合	6.56~8.08	12.94~13.75	6.4~5.7	4.33	8.97	4.7
私金融(朝鮮人間)	—	33.87	—	—	29.95	—
金融機關平均	6.47	11.33	4.86	4.03	8.31	4.28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pp. 260~263, 1942, pp. 132~136.

1918年~1925年간에 預金利子率이 가장 낮은 金融機關은 農工銀行이었고, 그 다음이 東拓社였다. 가장 높은 銀行은 普通銀行들이었다. 貸出利子率로서는 가장 낮은 곳은 東拓社였고, 가장 높은 銀行은 農工銀行과 普通銀行이었다. 金融組合의 경우는 差別金利를 適用하고 있으나 優待制度로서는 銀行金利 水準이었다. 預貸利子率差로서는 東拓社가 가장 낮고, 其他 金融機關은 6% 수준의 마진을 취하고 있었다. 同期間에 各種金融機關의 平均預金利子率은 6.47%였고, 貸出金利는 11.33%였다. 마진율은 4.86%를 취했다. 이 수준의 金利가 1933~1942年간의 변동을 보면, 全般的으로 내렸다. 預金의 平均金利로서는 2.44% 내렸고, 貸出金利는 3.2% 내렸다. 貸出金利子率이 預金利子率보다 높게 내린 것은 投資促進을 유도한 資金需要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의 金融機關金利를 큰 幅으로 내린 원인은 무엇인가와, 銀行의 利子 마진율은 불과 0.58% 밖에 내리지 않은 이유, 그리고 私金融利子率은 公金融利子率 보다 約 3倍 이상 높았던 原因은 무엇이였던가 등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公金融利子率 가운데, 貸出利子率보다 預金利子率이 크게 낮은 것은 銀行의 公信力을 높여주고, 不安한 時代(戰時, 軍侵略)의 日本人들의 金融資産을 銀行에 預置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投資市場을 獨占資本들이 支配하고 있었다. 日本의 大企業은 軍事財閥로 集中되어 있었고, 中小企業은 少數企業 이외에는 大多數가 農民이요, 勞動者로 형성되어 있어서, 銀行에 預金은 할 수 있어도, 被貸出者로서 財力이나, 機會가 주어지지 못했다. 獨占資本의 支配하에 日本이나, 朝鮮의 經濟構造가 硬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多數國民들의 所得은 窮乏한 生活을 하면서도 吉凶事나, 질병에 대비한 목돈 마련의 貯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經濟構造나, 社會構造가 少數獨占資本階層과 多數 勞動者階層으로 二重構造로 構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預金利子率은 낮은데 비해서 貸出利子率은 그렇게 낮지 않았다. 獨占企業의 産業構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貸出利子率이 낮기 때문에, 中小企業도 쉽게 銀行資金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銀行은 安全하고, 價値있는 擔保力을 제공하지 않으면 貸出은 쉽지 않고, 따라서 貸出限度額도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런 金融市場의 構造가 産業이 發達된 오늘에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農民이나, 中小商工業을 主去來對象으로 하겠다는 農工銀行이 設立되어 있었고, 그 후에 農工銀行을 商工業 重點의 銀行으로 擴大改編하여, 資本을 增資한 殖産銀行을 두었다. 이런 國策의 特殊銀行 이외의 普通銀行들은 信用力과 擔保力의 높은 大企業이나, 大都賣業을 主去來處로 擇했다. 市中銀行은 中央銀行의 信用度에 依存하고, 主要大企業은 金融機關에 依存케 함으로 日本政府의 統制政策의 效果를 經濟全體에 波及케 했다.[13]

셋째, 銀行의 利子마진율은 왜 그렇게 높았는가 이다. 經營論理的으로는 利子마진율이 낮으면서 총체적 마진額數가 크면 바람직한 것이

---

13) 柴垣和夫編『今日の日本資本主義』, 日本資本主義の支配構造, 大月書店, 1988, p. 170

다. 이를 위해서 預金규모도 크고, 貸出규모도 커야하며, 銀行資金의 循環이 원활해야, 利子마진율은 낮아도 經營은 정상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銀行의 利子마진율이 높은 것은 銀行間의 談合이 效果를 보고 있었고, 銀行 역시 獨占資本으로 金融市場을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私金融利子率은 왜 公金融利子率의 3倍 이상 높아야 했던가이다. 이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一般農民이나, 勞動者, 그리고 小規模商人들이 擔保力의 빈곤 때문에 銀行資金을 利用할 수 없었기 때문에, 少額融資로서 高利를 支拂하는 私金融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私金融去來者 가운데도 日本人間의 去來利子率은 朝鮮人間의 去來利子率보다 多少 낮다. 이 原因은 信用關係나, 擔保力 때문이 아니고, 日本人 私金融業은 資金供給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金融機關의 預金利子率이 貸出利子率에 비해서 큰 幅으로 낮은 것은 獨占資本 支配의 經濟構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朝鮮國土內의 金融業이 農民이나, 庶民의 勞動力을 抑取하는 產業構造下에서 이 階層의 零細的인 金融財產마저 抑取당하고, 獨占資本階層에게 有利한 金融構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民族的으로는 朝鮮民族이 自己國土에서 經濟力을 支配하지 못하고, 產業과 金融業이 유착된, 日本人에게 有利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銀行은 擔保物價値를 貸出手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擔保物의 價値如何에 따라서 貸出金의 回收實績이 달라진다. 市場性이 높은 擔保物을 實物價格以下로 貸出하였을 때에는 融資받은 측은 融資償還期日을 엄숙히 지키려하고, 銀行측은 償還期日이 經過되었을 때에는 높은 延滯利子率을 適用할 수 있는 有利한 立場에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貸出業務의 主要業務는 擔保物價値와 그 價格의 評價方法이다. 1910年에서 1942年까지의 5年間 單位로 擔保物別 貸出額을 〈表 3〉에서 보기로 한다.

〈表 3〉을 分析해보면, 첫째, 4大 擔保物 中, 不動產擔保의 貸出比率

〈表 3〉 各種銀行의 擔保物別 貸出額比率

(單位 : 千圓, %)

年度\區分	不動產	有價證券	商品	信用	其他	計
1910~1913	5,429	4,550	6,242	30,537	—	46,758
	(100.0)	(100.0)	(100.0)	(100.0)		(100.0)
1914~1917	11,298	9,643	12,220	57,515	—	90,676
1918~1921	36,413	16,988	60,001	173,976	—	287,378
1922~1925	83,798	25,188	46,983	113,061	—	269,021
1926~1929	130,162	33,579	63,232	112,802	57,966	397,741
1930~1933	281,956	56,757	116,265	301,692	64,074	820,744
1934~1937	1,121,812	237,824	415,822	1,123,042	202,060	3,100,560
1938~1942	2,184,323	1,114,490	1,066,583	1,096,256	4,052,798	9,514,450
(倍)	(402)	(245)	(36)	(36)	—	(203)
計	3,855,182	1,499,019	1,787,348	3,008,881	4,376,898	14,527,328
%	26.5	10.3	12.3	20.7	30.2	100.0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p. 250, 1942, p. 128.

이 38%를 占하고, 信用貸出比率이 29.6%, 商品貸出比率이 17.6%, 맨 끝이 有價證券으로서 14.8%로 나타났다. 農民이나, 勞動者들의 擔保가 主流가 되는 不動產이나, 商品은 銀行측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擔保物評價額의 融資額이 決定될 것이기 때문에, 低所得層의 이들에게는 金融制度도 不利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有價證券을 保有할 수 있는 企業이나, 社會地位 또는 職場이 좋은 職位를 갖고 있는 階層에게는 銀行側의 任意的 감정평가가 아닌 公正한 基準에 의해서 擔保物價格이 認定되기 때문에 被貸出者가 不利해지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不動產이나, 商品을 擔保로 하는 金融貸出에는 銀行측이 결코 損害를 보지 않는 制度이다. 擔保物의 評價價格은 그 物體의 市場價格보다 낮은 것이고, 그마저 評價額의 以下로 貸出額이 결정되기 때문에 償還期日을 어길 때는 被貸出者는 二重의 損失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점에서 日帝時代의 朝鮮人들의 金融利用에는 民族的 差別과 制度的 差別이 있어서 朝鮮人의 經濟를 日本人이 收奪했다고 보는 것은 正確한 表現인

것이다.

둘째로 其他의 擔保物로서 財團法人體나 債權證書 등이 日帝末期에는 融資擔保物로서 큰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1938~1942年의 日本이 中國大陸과 太平洋에서 戰爭을 동시에 승행하고 있을 때에 이부분의 證書貸出이 當期間에 가장 많은 金額으로 나타났다. 特히 戰時의 銀行은 產業資金供給機關으로서 軍需產業의 資金化하기 위한 兼營主義 傾向으로 強化되었다.[14] 이것은 政府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銀行資金을 이용할 수 있는 多樣한 方法이 있을 수 있다.

2) 特殊金融業의 變態營業

特殊金融業이란 國策銀行의 業務로 되어있다. 特殊銀行의 設立은 그 目的을 農業에 있어서 寄生地主階級下에 動搖 및 沒落되는 自作農과 獨占財閥 企業에 支配당하는 都市中小商工業者의 動搖를 救濟 및 維持하기 위해서 設立된 것이다. 1910年에서 1918年까지 年平均 預金比率은 59.6%이며, 貸出比率은 40.4%로 나타났다. 銀行 創設 初期부터 5年까지는 貸出比率이 42% 水準을 持續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貸出比率이 35%로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原因은 〈表 1〉에서 나타난 一般銀行 全體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現狀이다. 少數의 地主들이 貸出보다는 預金을 많이 할 수 있었던고로 預金比率이 높았으리라고 보아진다. 農

〈表 4〉 農工銀行 預貸率

(單位 : 千圓, %)

年度 區分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平均
預金	56.8	58.8	57.0	57.5	55.4	57.9	66.2	63.2	63.9	59.6
貸出	43.2	41.2	43.0	42.5	44.6	42.1	33.8	36.8	36.1	40.0
計	60,841	98,140	127,081	130,054	114,050	109,092	136,826	222,851	239,564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p. 253에 의한 作成.

14) 坂倉薰一著, 『銀行論』, 東洋經濟, 1957, p. 118

業과 農民을 위한다는 目的의 農工銀行이 貸出實績이 부진했던 것은 朝鮮農業發展을 외면한 地主 中心의 銀行이었고, 地主資本을 吸收하여, 그 預金은 農村外로 流出시키는 役割을 했던 것이 당시의 農工銀行이었다.

農工銀行의 農業과 工業에 各各 貸出한 9年間의 比率은 77.5%였고, 工業이 22.5%였다.[15] 工業貸出比率이 낮은 原因은 工業規模가 零細的인 까닭이다. 朝鮮工業은 日本工業의 下請業으로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朝鮮所在의 工業이 銀行을 相對로 獨立的 經營을 하기는 어려웠다.

〈表 5〉에 의하면 每年度 마다, 預金比率이 最下 52%에서 最高 66%까지의 고른 比率을 유지해 왔다. 25年間의 平均 預金比率은 61.2%이며, 貸出比率은 38.8%였다. 農工銀行보다 預金比率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殖產銀行으로서 預金이 많고, 貸出이 적다는데는 問題가 있는 銀行이다. 中央銀行의 資金支援에 의해서 長期償還의 低利貸出이 年次的으로 增加해야 할 殖產銀行의 經營方向이 原則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殖產의 제기능을 못한 것을 立證한 것이다. 1976年의 日本의 市中銀行들은 平均的으로 總預金의 貸出은 88.5%를 占했고, 1951~1955年까지의 西獨銀行은 預金比率이 平均 51.2%였다.[16] 貸出比率을 높이는 것은 產業發展을 위해서 特殊銀行의 設立目的을 수행하는 것이다.

日帝期의 朝鮮內의 銀行들이 貸出比率이 낮고, 預金比率이 높았던 原因은 政治性預金으로 朝鮮銀行券을 滿洲나, 大陸地域에 流通했던 까닭이다. 政府가 銀行으로 하여금, 國債를 買入토록 強要할 경우, 銀行은 民間部分에 貸出을 抑制하게 되고, 增加한 低利預金은 國債를 買入케 하여, 政府投資나, 財政을 支援하게 되는 것이다. 朝鮮內의 金融業들이 貸出比率이 預金比率보다 크게 낮다는 점은 銀行의 本質的 經營

15)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 p. 255.
16) 坂倉薰一著, 「銀行論」, 東洋經濟新報, 1957, p. 101.

〈表 5〉 朝鮮殖産銀行의 預貸率

(單位 : 千圓)

區分\年度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預金 %	89,885 (60.6)	664,524 (63.5)	711,348 (61.5)	1,012,595 (67.5)	1,144,916 (61.6)	722,284 (60.8)
貸出	58,333	382,072	445,818	486,527	713,956	465,224
計	148,218	1,046,596	1,157,166	1,499,122	1,858,872	1,187,508

區分\年度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預金 %	807,400 (53.0)	888,100 (51.9)	945,084 (51.6)	991,243 (59.2)	1,137,130 (61.4)	1,224,737 (62.8)
貸出	714,902	823,804	885,159	682,186	715,371	725,316
計	1,522,302	1,711,904	1,830,238	1,673,429	1,852,501	1,950,053

區分\年度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預金 %	985,218 (56.8)	926,285 (56.9)	1,061,052 (59.1)	1,346,847 (63.3)	1,694,559 (63.4)	2,258,407 (59.3)
貸出	748,410	703,271	732,866	777,740	976,083	1,548,715
計	1,733,628	1,629,556	1,79,918	2,124,587	2,670,642	3,806,622

區分\年度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預金 %	2,542,439 (59.7)	2,888,372 (60.6)	3,267,945 (62.4)	4,514,818 (61.8)	6,486,718 (64.8)	8,195,828 (66.5)
貸出	1,713,170	1,874,419	1,965,098	2,783,772	3,521,513	4,123,340
計	4,255,609	4,762,791	5,233,043	7,298,592	10,008,231	12,319,168

區分\年度	1942	계
預金 %	560,396 (30.9)	47,068,160 (61.2)
貸出	1,248,825	29,815,892
計	1,809,221	76,884,052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2, pp. 285~286, 1933, 1942.

〈表 6〉 朝鮮殖產銀行의 擔保物別 貸出比率

區分\年度	不 動 產	有價證券	商 品	信 用	計
1919~1923	39.5	3.7	9.7	47.1	100.0
1924~1928	47.6	3.8	5.5	43.1	100.0
1929~1933	47.1	1.9	5.1	45.9	100.0
1934~1938	42.0	4.2	9.8	43.9	100.0
1939~1942	29.5	7.8	5.7	57.0	100.0
平 均	41.3	4.0	7.9	46.8	100.0
金 銀 行	38.0	14.8	17.6	29.6	100.0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2, p. 287, 1933~1942(金融).

을 벗어난 政治性經營, 또는 지나친 商業性 經營임을 암시하고 있다. 低所得層의 預金이나, 產業體의 預金을 吸收하여, 預金者들의 生業과 福祉事業에 還元되지 않은 他分野에 預金이 流出되는 것은 朝鮮經濟를 收奪하는 金融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表 6〉에서 信用擔保貸出이 46.8%로서 1位이고, 2位가 不動產擔保貸出로서 41.3%, 그다음이 商品貸出로서 7.9%, 그리고 有價證券貸出이 4%로 各各 나타났다. 殖產銀行의 擔保貸出은 全國銀行의 擔保貸出과는 달리, 不動產과 信用貸出에 集中하고 있다. 1938年부터는 信用貸出의 比率이 높아가는 傾向이었다. 그러나 農業에서는 地主가 되고, 商工業에서는 日本人이나, 事業經營이 多少 安定되어 있는 業體나, 信用貸出을 받을 充分한 條件을 具備한 階層임은 틀림없다. 擔保物貸出 傾向을 보았을 때, 中小農民을 대상으로한 殖產銀行은 아니었음을 立證한다. 中小農民은 農產物(商品)을 擔保한 貸出이 主였기 때문이다.

Ⅲ. 東拓社의 金融制度와 收奪的 金融政策

1. 金融制度와 資金調達方法

東拓社가 1908年에 創設되었을 때에는 營業種目을 6個 種目을 設定

하였다. 즉, 土地賣買 및 貸借, 土地經營 및 管理, 建築物 築造와 賣買 및 貸借, 植民事業, 그리고 農民에게 農資材供給 및 生產物 取得 등이었다. 그러나 1910年에는 拓殖上 필요한 資金供給으로서 農業中心의 金融業種目을 추가하여, 그 實績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후, 1917年에는 會社法을 改定하여 朝鮮 이외의 滿洲, 中國, 南太平洋地域에까지 東拓社의 事業을 擴張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資金供給을 할 수 있게 했다. 農業中心의 단순한 資金供給領域을 擴大하여, 非農業產業에까지 資金供給을 하는 것과 동시, 預金 取扱과 金融業務에 관계되는 諸般業務까지 擴大시켰다.[17] 金融業을 추가함에 따라서 東拓社의 본래의 業務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年度가 經過할수록 金融業이 東拓社 영업에 큰 比重을 占할정도로 好展되었다.

1) 金融制度와 效果

金融制度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政府의 統治哲學에 따라서 金融制度가 마련될 수 있고, 國家經濟 實踐에 따라서 그 實態를 바로 잡고, 發展的인 方向으로 轉換시키려는 金融制度도 마련할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3가지 形態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政府가 政策目標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金融制度와, 둘째는 金融機關의 營利를 중시하는 金融制度, 셋째는 商業性과 兼營性을 竝行하는 金融制度를 들 수 있다. 둘째번의 金融機關의 營利重視의 金融制度란 預金과 貸出의 用途에 대해서 政府의 간섭없이, 金融機關과 顧客의 自由意思에 맞겨두는 自由主義的 金融制度이다. 預金의 비밀보장과 貸出金의 信用方法을 一體 간섭하지 않고, 金融機關의 營利를 추구하는 制度이다. 셋째번의 商業性과 兼營性이 竝行한 制度란 貸出金의 用途가 設定되어 있고, 貸出限度額數도 設定되어 있으며, 利子率과 償還期間이 公共性을 多少 포함하고 있는 制度이다.

具體的 分類에 의하면, 投資를 중점화하는 投資金融, 營利를 중점화

17)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 77

하는 營利金融, 會員制의 組合性格의 相互金融, 政府政策遂行을 補完하는 國策金融, 預金을 중점화하는 資金吸收金融, 어음과 證書를 활용하는 資金創出金融, 産業發展을 重點的으로 지원하는 商業金融, 工業金融, 그리고 農業金融 등의 制度가 있다.[18] 이런 다양한 金融制度는 그 制度에 따라서 金融業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金融市場의 變化와 經濟成長, 내지는 金融機關間의 경쟁에 따라서 重點的制度가 조금씩 退色하여 添加해가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런 金融制度나 金融市場의 변화성에서 東拓社의 金融制度는 그 特性을 볼 수 있다. 첫째, 東拓社는 朝鮮의 土地買入과 日本人의 朝鮮移住를 大事業으로한 創設社이기 때문에 朝鮮의 不動産擔保의 金融制度를 잘 이용할 수 있는데 金融制度를 마련하였다. 1906年의 總督府時代에 土地 및 建物에 관한 證明規定을 制定했고, 1908年에는 土地 및 建物의 所有權證明規定을, 1911年에는 不動産登記令과 證明令을 내렸으며, 1918年에는 土地調査事業을 완료함과 동시, 不動産擔保의 金融業을 시행케 했다.[19] 日本政府는 우리나라를 侵略하기 위해서 細部的인 計劃이 이미 마련되어, 하나 하나 計劃的으로 진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不動産金融機關으로서 農工銀行이 창립되었고, 同時에 東拓社의 金融部가 설립되어, 명실공히 不動産 金融機關으로 存續했다.

〈表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東拓社의 金融貸出制度는 資金用途에 따라서 最下 1年에서 30年까지의 償還期間을 두고 있고, 擔保物은 대부분이 土地 및 건물이었으며, 貸出金額이 少額인 경우는 短期償還의 農産物擔保였다. 특히 鑛産業인 경우는 鑛業權을 擔保로 했고, 滿洲는 鐵道權을 擔保로한 그 政府 또는 團體에게 貸出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金融制度는 植民地國 經濟를 復興한다는 名目下에 長期貸出을 하는 제도였으나, 擔保物만은 安全한 것을 요구했고, 償還能力이 없을 때에는 東拓社의 資本, 곧 日本의 資本이 現地國의 土地 및 건

18) 小口茂編, 『金融論』, 青林書院新報, 1967, pp. 125~232.

19)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 87.

〈表 7〉 用途別 償還期間 및 擔保物

用 途	償還期間	償還條件	擔保名
日本人移住費	25年	年賦償還	土地
日本人移住者	15年	年賦償還	不動產
韓國農業者			
同	3~5年	定期償還	不動產農產物
公共團體	20年	年賦償還	信用
同	5年	定期償還	信用
20人以上連帶保證	5年	定期償還	信用
農業生產者	1年	一時償還	農產物
一般事業	30年	年賦償還	不動產鐵道
一般事業	5年	定期償還	鑛業權

資料 :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90~92.

를, 주요 基幹產業施設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被貸出측이 貸出 받은 資金으로 成功하든지, 아니면 失敗하든지간에 東拓社는 항상 有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은 失敗하여 제 期日에 償還못하면, 經濟力이 높은 擔保物을 保有할 수 있어, 日本資本의 朝鮮經濟支配力을 높일 수 있고, 經濟收奪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國의 基幹事業이나, 生活源泉을 장악하고, 支配할 수 있는 것은 植民地政治의 大成功을 意味하는 것이다. 東拓社가 日本人移住政策을 大事業으로 策定한 것은 東拓社 創設의 主目的이었다. 따라서 金融業을 통한 朝鮮의 不動產을 買收하는 방법이 營業의 第1課題이기도 했다.

〈表 8〉에서 擔保物別 利子率과 資金使用途別 利子率을 볼 수 있으나, 擔保物別利子率 가운데 公共團體가 保證하는 水利組合의 土地改良事業用 利子率은 5%에서 5.5%로 낮은 편이다. 이외는 6.7%의 利子率로서 殖產銀行의 利子率과 비슷하다. 여기에서 注視할 수 있는 것을 첫째, 農產物擔保로서 1年內에 償還해야 하는 일반농민 상대의 貸出制度이다. 6.7%란 利子率은 農產物 가격이 收穫期에 폭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농민에게는 높은 利子率이며, 償還을 위해서 農產物의 市場供給增加가 가격을 더욱 下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土地改

〈表 8〉 擔保物 및 用途別 貸出利子率

擔保物	利子率	用途	利子率	資金出處
不動產擔保	6.7이상	土地改良事業	5.5	東拓社
公共團體保證	5.0~5.5	土地改良事業	4.4	大藏省
連帶保證·有價證券	6.7이상	農事改良	5.0	東拓社
財團法人		公共團體	4.8	大藏省
產業組合	6.2이상	非公共團體	6.8	東拓社
生產物·어음	6.7이상	非公共團體	4.8	大藏省
鑛業權	8.2이상			

資料 : 東拓社, 「秘, 帝國議會 說明資料 業務槪要」, 1938, p. 51, 72.

良資金이나, 農事改良資金이 年利 5%에서 5.5%는 事業 性格上, 높은 負擔의 利子率이다. 土地나, 事業改良에 投資한 增產效果가 利子率과 원금을 償還할 정도가 되느냐이다. 더욱이 改良農土가 水利組合權에 있으면, 水利組合費가 겹쳐서 생산한 農業收益은 他地域 보다 不利하다고 보아, 그 지역농토를 放賣하는 傾向과 小作人들의 離說이 심해졌다는 調査報告가 있었다.[20] 셋째, 日本政府가 노리는 鑛業權擔保의 利子率은 낮아야 하는데도 8.2%로서 높았다. 朝鮮의 진정한 產業開發과 經濟成長을 위한다면, 長期投資를 要하는 부분은 低利의 長期償還條件이 필요하다. 日本人 移住者에게 25年이란 長期償還條件이 주어졌듯이 朝鮮農民에게도 資金規模가 큰 貸出에는 그 水準의 償還條件이 주어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단기의 農事 資金貸出制度는 農民에게는 더욱 불리한 制度였다. 이것은 농민의 農土를 노리는 非生產的이며, 東拓社에게 유리한 收奪的 金融制度임을 뜻한다.

2) 特權的 資金調達方法과 經濟收奪

東拓社는 資金調達面에서는 資金創出金融制度를 이용했다. 銀行機關과 달랐기 때문에 國策社會란 特權을 利用하여, 會社債를 수시로 發行하여 金融資金을 調達했다.

20) 近藤康男著, 「農業經濟論」, 淺野書店. 1932, pp. 452~459.

〈表 9〉 年度別 社債發行額

(單位 : 1,000圓, %)

區分\年度	1913	1917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發 行 額	19,350	12,000	27,000	28,600	23,000	53,000	52,319	24,070
平均利子率	5.0	5.65	6.15	7.07	6.5	6.6	6.2	5.58
回 數	1	2	5	7	3	6	7	6

區分\年度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發 行 額	10,000	18,217	31,191	97,752	21,709	13,421	20,889	20,676
平均利子率	7.0	5.0	4.0	4.38	4.2	4.0	4.0	4.03
回 數	1	4	9	6	5	10	8	7

區分\年度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發 行 額	53,009	19,146	30,459	50,334	25,020	78,279	67,575	59,645
平均利子率	4.5	4.12	4.06	3.98	3.93	3.88	—	—
回 數	11	8	20	6	3	8	12	8

區分\年度	1941	1942	1943	產額	計
發 行 額	96,000	95,065	84,456	71,448	1,204,130
平均利子率	—	—	—	—	5.0
回 數	10	8	8	—	189

資料 : 東拓社, 「第 1 期 ~ 第 50 期營業報告書」, 1908 ~ 1943.

註 : 1943年末까지 償還額 : 588,021千圓, 未償還額 : 616,109千圓.

〈表 9〉는 1913年부터 1943년까지 189回에 걸쳐 발행한 社債額數와 支拂利子率이다. 첫째, 社債利子率과 發行額數와는 무관함을 볼 수 있다. 社債의 市場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發行額數가 많을수록 利子率을 높이는 것이 社債의 需要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東拓社의 社債는 그런 점이 무시되었다. 둘째, 1925年까지의 은행의 平均預金利子率 6.5%에 비해서 東拓社의 社債利子率은 同期間에 6.2%로서 0.3% 낮았고, 1933年에서 1938年까지의 銀行利子率은 平均 4%정도인데 대해서 社債利子率에도 발행한 巨額이 短期間내에 消化되어진다는 것은 日本人들의 東拓社에 대한 信用度와, 日本의 國益을 위한 會社라는 점에서 愛國的

次元에서 資金募集에 協力했다고 보아진다. 셋째, 1910年부터 1942년까지의 總受信高(余裕金, 借入金, 社債發行額) 가운데, 社債總發行額의 比率은 61.5%였고, 그 다음이 借入金으로서 20.8%, 그리고 余裕金이 17.7%로 나타났다. 그리고 1913年에서 1943年까지 償還한 額數는 5億8千8百萬圓으로서 총발행액의 48.8%였다. 東拓社는 圓貨調達의 社債 뿐이 아니고, 달러($)까지 調達하는 방법을 數次에 걸쳐 實施했다. 이것은 東拓社가 朝鮮과 滿洲, 中國, 太平洋에까지 軍需資源을 確保하는데 끝없는 投資市場을 軍事力의 進出과 함께 擴張해 나가기 위한 資金調達方法이었다. 이런 金融業의 性格은 現地國家의 產業開發이니, 經濟復興이란 구실을 앞세우고, 軍事力과 資本力이 合作한 現地國의 經濟侵略과 植民地를 確保하는 手段으로 이용한 것이다. 資金供給力이 強할 수록 이들 現地國의 經濟收奪은 쉽게 成就될 수 있고, 그 收奪의 效果는 日本國益을 增進시키게 하는 것이다.

2. 收益性 貸出方法과 經濟收奪

普通金融機關의 貸出方法에는 償還不能의 擔保物을 公賣處分함으로서 貸出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있다. 그것은 金融業의 經營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취하는 方法이다. 이런 경우, 利害關係는 金融機關과 顧客間의 個別關係에 국한 하는 것이다. 그러나 東拓社의 경우는 前者와 다르다. 東拓社는 거대한 日本國益을 取得하기 위한 國策會社이기 때문에 朝鮮國土의 土地나, 建物 등의 不動產을 擔保로한 貸出金은 回收不能時는, 被貸出者의 개인재산은 東拓社를 통해서 日本國策의 國益이나, 植民地化의 戰略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東拓社의 金融業의 損益이란 次元을 떠난 日本國家의 貸出制度이다. 이런 점을 다음 表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1) 產業別 貸出實績와 創立趣旨 離脫

東拓社를 創設하려는 무렵(1908年)의 創立趣旨는 朝鮮의 農業을 발

전시키기 위한 日本資本과 技術로 荒蕪地개간과 干拓事業에 主力하겠다는데 있었으나,[21] 1938年의 會社연혁문에서는 日本人移民과 豊富한 朝鮮의 資源開發 및 殖産振興, 그리고 企業資金貸出이라는 非農業産業에까지 擴大하여 創立目的을 두었다.[22] 創立時點의 韓國政府의 同意를 받기 위해서는 그 時代에 적합한 甘言을 했고, 창립 후 實權을 장악한 후부터는 자기들에게 有益한 방향으로 會社設立目的과 事業을 追加해 갔다. 그런 식의 欺瞞術의 思考와 行動이 나쁜 日本人의 傳統的 人生觀이라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다음 表에서 産業別 貸出實績을 보기로 하자.

1912年에서 1938年까지의 産業別 貸出額과 貸出比率을 보면 첫째, 農業部分의 貸出이 全體의 55.1%를 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運輸業, 電氣, 火災救濟, 衛生, 敎育)으로서 30.1%, 그 다음이 製造業으로서 8%이다. 第1次産業이 전체의 58%였고, 其他産業이 42% 占한다. 그러나 年度가 經過할수록 農業分野의 貸出比率은 減少하고, 鑛業, 製造業 및 서비스업 분야의 比率이 높아져갔다. 이것은 東拓社의 본래의 農業開發을 위해서 設立한 目的과 이탈하는 傾向을 보여준 것이다. 非農業産業의 支配와 利益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1937年부터는 全産業에 걸쳐, 貸出이 크게 增加되었다. 그 原因은 負債部의 社債發行額과 借入金 등의 增加가 작용했고, 따라서 資産部의 貸出金도 增加한 것이다.[23] 이렇게 變態的 經營을 시작한 要因은 朝鮮의 農業에 더이상 投資할 收益的 價値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非農業産業에 投資와 貸出을 擴大하는 것이 東拓社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日本의 國益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確信했기 때문이다. 資金調達을 위해서 東拓社가 保有한 土地를 放賣하기 시작한 것은 1923~1938年이다. 이 期間에 保有畓의 43.7%(15,451町)를 賣出했고, 同期間의 畓地

21) 東拓社, 『秘, 帝國議會說明資料·業務槪要』, 1938, p. 9.
22)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 1.
23)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 262.

〈表 10〉 産業別 貸出金

(單位 : 千圓)

産業\年度	1912	1917	1922	1927	1932	1937	1938	平均比率
農 業	1904	7,511 (75.5)	48,423 (44.1)	53,077 (46.2)	78,734 (62.1)	84,922 (53.7)	86,078 (48.9)	55.1
林 業	—	192 (2.0)	1,072 (1.0)	282 (0.2)	796 (0.6)	4,624 (2.0)	5,113 (2.9)	1.6
水 産 業	—	22 (0.2)	341 (0.3)	308 (0.3)	307 (0.2)	3,099 (2.0)	3,152 (1.8)	0.8
鑛 業	—	35 (0.4)	5,559 (5.0)	2,798 (2.4)	3,749 (3.0)	10,788 (6.8)	10,457 (5.9)	3.9
製 造 業	—	489 (4.9)	7,323 (6.6)	8,765 (7.7)	7,132 (5.6)	10,102 (6.8)	28,734 (16.3)	8.0
서비스業	—	1,665 (16.8)	47,046 (43.0)	49,653 (43.2)	36,071 (28.5)	39,406 (24.6)	42,327 (24.1)	30.1
計	1094	9,914 (100.0)	109,764 (100.0)	114,883 (100.0)	126,789 (100.0)	157,942 (100.0)	175,861 (100.0)	

資料 :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95~96.

價格上昇率은 150%였다.[24]

이처럼 朝鮮의 農地를 低價로 買入해서 高價時에 賣出하여, 그 資金으로 非農業産業에 朝鮮을 포함한 滿洲와 中國에까지 資本進出하여, 軍需資源과 朝鮮經濟支配에 集中한 것이다. 東拓社 硏究의 權威學者인 在日儒胞 안병대씨는 東拓社의 土地經營方式을 「經濟的 合理主義 方式」이었기 때문에 農業開發投資에는 극히 制限的이었다고 評價했다.[25]

2) 貸出金 回收와 經濟收奪

東拓社의 貸出條件이 銀行의 貸出條件 보다 利子率이나, 償還期間面에서는 被貸出者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擔保物條件은 銀行과는 차이가 없다. 東拓社는 농민을 상대한 長期貸出일 경우는 주로 土地가 擔保物

24) 東拓社, 第1期~第50期 營業報告書, 1908~1943,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 p. 6, 1938, p. 12.

25) 日本經營史學會, 『經營史學』, 東京大出版會, 1976, Vol. 11卷 1號, p. 106.

이 되며, 1年以內의 短期貸出일 경우는 農產物(벼)이 擔保가 된다. 日本市場에서 朝鮮米需要가 增加할 때에는 移出量을 確保하기 위해서 米穀擔保條件으로서 地主들에게 貸出을 권장한다. 이런 경우 農事資金을 借入한 地主가 元利金을 收穫期 즉 후에 償還期日을 설정해 두었다. 그 이유는 償還不能을 예측하여, 收穫期의 생산물을 確保 할 수 있는 점과, 收穫期의 農產物價格이 下落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計劃에서다. 따라서 資金利用者의 불리점은 東拓社의 利點이 되는 競合關係에 있다.

그 償還方法은 擔保한 米穀을 市價로 換算하여, 元利金 몫을 米穀으로 引受하는 것이다. 이경우, 東拓社는 二重利益을 취하는 것이다. 貸出利子와 低價格의 米穀을 引受하여, 高價의 日本市場에 東拓社農場의 米穀과 함께 日本으로 移出하는 것이다. 土地를 擔保받아, 貸出했을 때에는 그 土地가 東拓社 私有地隣近에 있을 때에는 그 土地를 買入하려는 意圖로 貸出한 元利金을 제 期日에 償還하는 것을 오히려 妨害하여, 償還期日을 故意的으로 어기게 한다. 例로서 借入者가 元利金을 갖고 滿期日에 會社에 나타나면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차입금을 納付하지 못하고, 期日후에 納付하려고 했을 때는 紛爭꺼리가 되어 弱한 農民이 被害를 입고, 그 土地를 強賣당하게 된다. 이처럼 擔保物貸出은 被貸出者가 조금도 東拓社 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는 없고 잘못하면 전적으로 不利해지는 立場에만 놓이게 된다. 따라서 東拓社의 貸出을 받은 經驗者는 두번 다시 貸出을 받을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가 一般的이다. 高金利의 金融組合貸出者가 增加되었다. 농민들이 東拓社金融을 選好하지 않기 때문에 그 資金이 非農業部分에 轉出되기도 했다.

3) 預貸率과 投資轉換

金融業의 核心業務인 預貸率은 金融業經營의 動向을 暗示하는 것이다. 東拓社의 余裕金으로서는 別口當座預金, 當座預金, 通貨預金, 別段預金, 定期預金, 振替預金, 現金 등으로 되어있고, 資金調達源으로서 特別 受託金, 社債發行, 借入金, 豫受金 등이 있다. 餘裕金과 貸出金에

서는 利子收入이 있고, 資金調達源에서는 利子支出이 發生한다. 以外에도 金融收入으로서 어음할인과 株式 및 債券收入이 있다. 東拓社의 投資事業 이외에 金融業이 東拓社經營에 큰 비중을 占하는 것이 年度가 經過함에 따라서 나타났다. 例로서 1918年의 資產部의 金融資金(社債, 借入金, 豫受金, 貸付金, 株式, 債券, 預金 및 現金)은 資產合計 62.1%였다. 負債部의 金融資產(社債, 借入金, 豫受金)은 負債合計의 68.5%였다. 이것이 1938年에는 資產部의 金融資金은 資產合計의 70%였고, 負債의 金融資產은 負債合計의 82.2%로 增加했다.[26] 이렇게 金融業의 比重이 높아가는 것은 東拓社의 經營이 朝鮮과 滿洲地域의 主要產業을 獨占資本으로서 支配하고, 收奪하는 방향으로 轉換함을 暗示하는 것이다.

〈表 11〉을 보면 豫受金比率은 年次的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反對로 貸出金比率은 낮아졌다. 增加한 豫受金으로 株式과 債券 또는 其他部分의 投資에 轉用한 것이다. 問題는 1920年부터는 貸出金의 金額增加

〈表 11〉 東拓社의 預金比率

(單位 : 千圓)

年 度	豫受金	貸出金	計
1910~1914	64,550 (76.0)	20,332 (24.0)	84,882 (100.0)
1915~1919	222,597 (58.7)	156,194 (41.3)	378,791 (100.0)
1920~1924	606,844 (48.7)	638,874 (51.3)	1,245,718 (100.0)
1925~1929	1,136,367 (64.0)	638,717 (36.0)	1,776,084 (100.0)
1930~1934	1,641,331 (72.2)	630,886 (27.8)	2,272,217 (100.0)
1935~1938	2,257,657 (79.6)	579,222 (20.4)	2,836,879 (100.0)
計	5,929,349 (69.0)	2,665,225 (31.0)	8,594,571 (100.0)

註 : 豫受金(社債, 借入金, 定期預金, 特別受託金)

26)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260~263.

가 없고, 이후 18年間, 從前의 貸出額 範圍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農業을 爲始하여, 殖産業에 長期間 貸出을 增加하지 않았다는 것은 東拓社의 設立趣旨를 妄覺하고, 軍需産業用資源 取得과 非農業産業의 株式과 債券買入에 投資함과 不動産(土地, 建物)買入에 資金轉用으로 轉換했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1925年을 基準해서 1938年의 貸出金增加率은 185.1%였는데 株式 및 債券의 投資增加率은 827.8%였고, 不動産投資增加率은 798.8%였다.[27] 이것을 보아도 東拓社의 創立趣旨인 朝鮮의 農業을 開發하여, 朝鮮民族의 生活을 向上케 한다 云云은 甘言利說에 불과했고, 日本帝國主義 팽창을 위한 獨占國家資本의 支配와 現地國의 經濟를 收奪하기 위한 金融業으로 탄생한 것을 充分히 立證하는 것이다.

〈表 12〉를 보면, 貸出額에 대한 利子收入率은 平均 6.5% 水準이었다. 東拓社의 各種의 貸出利子率이 각각 달랐으나, 最高 8.2%에서 最低 4.4%(大藏省資金)까지였으나, 平均 利子率을 6.7%로 보면, 〈表 13〉의 貸出額 利子收入率 6.5%는 利子率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預金에 대한 利子收入率은 平均 3.3%였다. 豫受金利子率 6.4%~5% 水準에 비하면, 3.3%는 낮은 水準이다. 그 原因은 現金과 當座預金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株式과 債券購入에 대한 收入率은 平均 5.6%로 나타났다. 貸出金의 利子收入率보다 낮고, 貸出利子率보다 낮으나, 東拓社가 이 事業에 投資를 置重한 것은 單純한 利益에 目的한 것이 아니고, 朝鮮과 滿洲 등의 많은 基幹事業을 장악하는데 國益的 意義가 있었고, 日本國民들의 資金을 吸收(私債發行)하여 東拓社의 投資領域을 넓히는데 經濟的 意義가 있었다. 初期에는 朝鮮의 農業에 投資하는 것이 日本의 食糧供給을 위해서 必要했고, 그 길이 構築된 후부터는 朝鮮의 基幹事業에 投資하여 經營權을 確保하는 것이 朝鮮의 所得과 資金을 吸收할 수 있었던 것이다. 例를 들면 東拓社가 投資한 基幹事業 總 52社中 朝鮮國

27)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261~263.

〈表 12〉 産業別 貸出金

(單位 : 千圓)

産業\年度	1908~1910	1911~1913	1914~1916	1917~1919	1920~1922	1923~1925	1926~1928
①貸出額	817	7,686	17,104	116,161	338,549	443,709	374,266
②利子	35	478	1,558	5,592	26,230	35,275	29,123
②/①	(4.3)	(6.2)	(9.1)	(4.8)	(7.7)	(8.0)	(7.8)
③預金·現金	4,145	17,270	11,542	36,710	44,594	47,027	34,653
④利子	84	—	634	1,848	1,719	2,764	1,544
④/③	(2.0)	—	(5.5)	(5.0)	(3.9)	(5.9)	(4.5)
⑤株式·債券	493	4,300	4,950	25,631	62,460	70,210	57,674
⑥收入	—	122	437	792	2,986	4,056	4,878
⑥/⑤	—	(2.8)	(8.8)	(3.1)	(4.8)	(5.8)	(8.4)

産業\年度	1929~1931	1932~1934	1935~1937	1938~1940	1941~1943	計
①貸出額	393,292	364,299	441,287	612,552	908,847	4,018,878
②利子	25,123	26,146	25,989	36,073	49,172	260,794
②/①	(6.4)	(7.2)	(5.9)	(5.9)	(5.4)	(6.5)
③預金·現金	9,964	26,917	38,436	50,118	44,749	366,025
④利子	200	513	314	680	1,676	11,976
④/③	(2.0)	(1.9)	(8.2)	(1.3)	(3.7)	(3.3)
⑤株式·債券	56,298	99,809	167,286	468,680	801,915	1,819,706
⑥收入	2,859	8,012	9,565	24,119	44,367	102,193
⑥/⑤	(5.1)	(8.0)	(5.7)	(5.1)	(5.5)	(5.6)

資料 :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東拓社, 第1期~第50期 營業報告書, 1908~1943.

土에 存在하는 會社는 23個社였고, 이들회사에 投入한 資本金은 47,184千圓으로서 總投入資本金의 43.3%를 占한다.[28] 이들 産業들은 朝鮮農民들의 生活에나 農業發展에 관계없는 日本을 위한 資源採取나 加工을 위한 産業들이다.

끝으로 〈表 13〉을 보면 利子收入額은 46.1%였는데, 利子支出額은 53.9%로 나타났다. 各種貸出과 預金에 의한 利子收入보다, 各種의 資源을 調達하기 위한 負債額의 支出利子가 더 많았던 것은 單純한 與信業과 受信業의 經營論理를 떠난, 日本國益的 意義가 內包된 東拓社 固

28)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99~107.

〈表 13〉 年度別 利子收入

區分\年度	1908~1910	1911~1913	1914~1916	1917~1919	1920~1922	1923~1925	1926~1928
利子收入	119	478	2,192	7,440	27,949	38,039	30,667
利子支出	—	1,523	2,708	15,648	33,682	37,922	22,622

產業\年度	1929~1931	1932~1934	1935~1937	1938~1940	1941~1943	計	比率
利子收入	25,323	26,659	26,303	36,753	50,848	272,770	46.1
利子支出	27,924	33,473	32,626	46,948	63,381	318,457	53.9

資料 :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pp. 264~266.
東拓社, 第1期~第50期 營業報告書, 1908~1943.

有의 使命遂行 때문에 置重한 일이다. 그래서 國策會社 東拓社는 때에 따라서, 事案에 따라서 會社의 損失을 甘受하고, 日本國益을 計劃하며, 推進하는 役割도 한 것이다.

東拓社의 一部 營業報告書에 의하면 金融業이 10余項目의 特徵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29]

① 朝鮮人 보다 移住 日本人을 우대하는 差別貸出을 했다.

② 擔保物이 不確實하거나, 書類不備 또는 기타 擔保物의 事故가 있을 때는 貸出을 거부했다.

③ 秋收期에 資金回收를 重點化했다. 그래서 資金回收率이 매우 높았다.

④ 朝鮮市場과 日本市場에 米價變動이 있을 때, 農事資金貸出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米價上昇時는 貸出을 많이 하고, 下落時는 貸出을 抑制했다. 이 方法이 農民을 搾取하는 方法이다.

⑤ 地價上昇時는 貸出을 增加시켰다.

⑥ 滿洲, 中國 등에 資金供給圈을 擴大하고, 朝鮮에는 점차 金融供給을 抑制했다.

29) 東拓社, 第7期~第35期 營業報告書, 1908~1943.

⑦ 日本軍進出地域에는 政府命令에 의해서 그 地域 投資開發産業에는 低利의 特別貸出을 했다.

⑧ 朝鮮內의 日本企業들의 資金需要는 增加했고, 農業에는 한발, 유행병 등이 생겨 農村이 窮乏해지면, 銀行金利를 引上시켜서 通貨緊縮을 했다. 이 傾向이 農民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⑨ 米穀資金이나 肥料資金은 回收가 잘 되었다. 그러나 農業部分의 新規貸出은 減少시켰다.

⑩ 日本의 米作이 不況이면 朝鮮米穀의 需要가 增加했고, 朝鮮米貯藏性이 높아졌다. 이럴 때는 市場情報를 모르는 朝鮮人은 秋收期에 米供給을 增加시켜 日本商人에게 有利하게 했다.

⑪ 日本內의 事業景氣가 好況하면 朝鮮土地去來는 活潑했다.

Ⅳ. 結 論

朝鮮內의 各種金融業은 주로 普通銀行과 國策銀行이 中心이었고, 非銀行金融業으로서는 東拓社의 金融部와 金融組合이 있었다. 普通銀行은 4大特徵을 形成하고 있었다. 첫째, 産業別로는 農業보다 商工業을 主去來産業으로 취급했다. 中小都市나 郡廳所在地域에 普通銀行의 支店이 설치되지 않을 정도로 大都市에만 集中하고 있었다. 둘째, 資金貸出規模로서는 中規模의 商工業을 重點化했고, 農業의 경우는 地主經營의 大農과 去來했다. 셋째, 民族的으로는 日本人經營의 銀行은 朝鮮內의 日本人과 去來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朝鮮人經營의 銀行은 朝鮮人經營의 大農이나 商業이었다. 넷째, 擔保物은 不動産擔保가 主流였다. 이처럼 普通銀行은 農業時代에 農業金融을 외면한 것이 朝鮮人金融業이나 日本人金融業의 共通的인 特色이었다.

國策銀行으로서 特徵的 經營은 첫째, 農業과 工業에 金融去來를 하는 것을 重點化했다. 農業에 치중한 去來였으나 70% 以上의 小農에게 適合한 金融制度가 아니었고, 大農爲主의 金融制度였다는 것이다. 그

것도 銀行資金을 非農業産業에 轉用하는 政治性 金融政策을 하여, 農業金融을 점차 縮小했다.

東拓社 金融部의 경우는 初期에는 日本人 移住者들을 中心한 金融業을 展開했으나 朝鮮人에게는 地主相對의 金融業이었기 때문에, 70% 以上의 小農農家에게는 無益한 金融業이었다. 그런 傾向이 中半期부터는 朝鮮과 滿洲, 中國등지의 非農業産業의 基幹事業의 株式引受와 農工銀行의 債券, 國債와 公債에 資金을 轉用하게 되어 朝鮮農業金融을 相對的으로 弱化시켜 갔다.

日本軍事政權은 大陸侵略과 步調를 맞추어 大陸의 資源收奪에 매진할 무렵에는 朝鮮의 東拓社 保有農土를 高價로 賣出하여, 그 資金과 小作料 등을 軍需産業과 基幹産業 獨占에 치중하게 되었고, 1942年에는 資本金 1億圓의 會社가 總 12億圓의 社債를 發行할 정도로 大國策會社로서 權力과 金力으로 東洋經濟를 支配하며, 收奪해 갔다. 이것은 朝鮮內에서 단순한 農業에 치중하여 朝鮮農業 經濟를 收奪했던 次元을 크게 擴大하여 滿洲와 中國의 經濟까지 收奪하게 된 東拓社의 金融業의 위력이었다. 이처럼 東拓社의 資本力의 기능이 무엇이었던가를 理解하게 되면 現代의 日本企業群들의 資本力의 體正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孫正植著, 新貨幣金融論, 法文社, 1993.
2. 坂部悟著, 貸付, 有斐閣, 1964.
3. 坂倉薑一著, 銀行論, 東洋經濟, 1957.
4. 安藤良雄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 東洋出版會, 1986.
5. 北崎勝太郎著, 東拓三十年の足跡, 東邦通信社, 1938.
6. 今日の日本資本主義, 大月書店, 1988.
7. 小口茂編, 金融論, 靑林書院新報, 1967.

8. 近藤康男著, 農業經濟論, 淺野書店, 1932.
9. 日本經營史學會, 經營史學, 東京大出版會, 1976.
10. 東拓社, 秘, 帝國議會說明資料, 業務概要, 1938.
11. 東拓社, 東拓十年史, 1918.
12. 東拓社, 東拓三十年誌, 1938.
13.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 1920, 1925, 1932.
14. 東拓社, 第1期～第50期營業報告書, 1908～1943.

近代株式會社의 形成과 儒敎的 價値觀의 變化

－明治初期와 韓末期의 比較－

柳　町　功*

目　次

Ⅰ. 序　論
Ⅱ. 明治初期의 思想的 狀況과 近代株式會社의 形成
1. 江戶末期의 傳統的 價値觀
2. 近代비지니스 思想의 形成 (福澤諭吉)
3. 近代비지니스 思想의 形成 (澁澤榮一)
4. 株式會社制度의 導入과 擴張
Ⅲ. 韓末期의 思想的 狀況과 近代株式會社의 形成
1. 韓末期의 政治的 混亂과 儒敎的 價値觀
2. 開化思想과 會社制度의 導入
3. 開港과 商社의 設立 －韓末前期－
4. 甲午改革 以後의 近代企業의 設立－韓末後期－
Ⅳ. 結　論
參考文獻

Ⅰ. 序　論

한 나라의 近代化 過程은 여러 側面으로 구성되어 있다. 明治維新後 日本이나 開港 以後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化 過程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近代化 過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綜合的인 視角이 필요하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近代化 過程의 經營史的 側面 가운데 특히 近代株式會社의 形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近代株式會社의 形成은 첫째로 企業家의

* 名古屋商科大學 助敎授

價値觀 또는 精神的인 側面에서 經濟的 合理性을 基礎로 한 近代비지니스思想(資本主義的 營利의 追求, 즉 利潤動機)이 形成되는 過程과, 둘째로 株式會社 設立에 관한 주로 制度面의 整備過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 論文에서는 이상과 같은 視角에서 19世紀 後半 以後의 日本과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株式會社의 形成 過程을 考察하여 각각 그 特質을 整理하기로 한다. 특히 當時 兩國의 經濟思想形成에 강하게 作用하였던 儒敎的인 價値觀과 近代비지니스 思想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檢討하고자 한다.

Ⅱ. 明治初期의 日本에 있어서의 近代 株式會社의 形成

1. 江戸末期의 傳統的 價値觀

江戸末期 日本全體의 資本蓄積 規模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그것 또한 豪商이라고 불리는 一部 商人들이 占有하고 있었다. 그들의 價値觀은 상당히 保守的으로 傳統的인 旣存事業에 대해서만 關心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莫大한 利益을 얻고 있었다. 이런 豪商들은 會社制度에 그다지 關心이 없었기 때문에[1] 明治維新 후에도 合理的인 價値觀을 가진 近代的 企業家로 바로 轉化할 수가 없어 明治期의 經濟發展을 이끌어가는 經濟主體[2]가 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

1) "會社"와 비슷한 組織으로서 例外的으로 三井의 「三井組大元方」나 鴻池의 「鴻池組」 등이 있었다. 「三井組大元方」는 合名會社와 비슷하며, 「鴻池組」는 合資會社에 가까운 組織였다고 한다. 三井이나 鴻池은 代表的인 豪商였으며 三井은 그후 最大 「財閥」로 成功的으로 成長했지만 鴻池는 保守的인 性格을 그대로 가지고 結局 沒落해 버렸다. 본 論文에서는 近代株式會社가 議論의 對象이다.

2) 東畑精一, 『日本資本主義の形成者－さまざまの經濟主體－』, 岩波書店. 1964年. pp. 26～72 參照.

한편 江戶時代의 身分制度는 士農工商이란 構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를 輕視하는 雰圍氣가 있어 一般的으로 商工業의 地位가 낮아 社會的 認識 또한 좋지 않았다. 이러한 傳統的 價値觀은 基本的으로 儒敎的인 價値觀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後進資本主義國인 日本의 경우 明治維新 후의 最大目標를 富國強兵에 두었다. 開港 以後 계속 높아져 가는 植民地化의 危機를 극복하고 西歐先進 資本主義國家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西歐文明을 積極的으로 도입하여 강력한 國民國家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明治政府의 基本方針이었다. 政府의 指導者들은 身分的으로는 下層武士出身이 大部分이었지만, 그들은 西歐先進國家들의 經濟的, 軍事的 實力을 정확하게 認識하고 이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려 했던 現實主義者였다고 볼 수 있다.

2. 近代비지니스思想 形成(福澤諭吉)[3]

福澤諭吉(Fukuzawa, Yukichi : 1834~1901)는 明治日本을 대표하는 啓蒙思想家이며 敎育者이기도 하다. 福澤는 10代 중반부터 폭넓게 漢學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계속해서 西洋思想인 蘭學과 英學도 연구함으로써 封建主義나 儒敎思想에 대한 批判을 展開하게 되었다. 福澤의 學問的 姿勢는 상당히 分析的이며 批判的이었으므로 때문에 漢學이 가지고 있는 保守性이나 固陋性이 그에게는 큰 不滿이 되었고 결국은 漢學의 限界가 儒敎에 대한 輕蔑과 彈劾이 됨으로써 극심한 封建制批判이 벌어진 것이다.

---

3) 福澤諭吉의 近代비지니스思想(實業思想)에 관해서는 다음 文獻도 參照.
藤森三男, 『福澤諭吉と『實業』の精神』, 『三田商學研究』(慶應義塾大學), 第32卷 5號, 1989年 12月. 小松章, 「福澤諭吉の實業論」, 『一橋論叢』, 第109卷 5號, 1993年 5月. 그리고 福澤諭吉과 澁澤榮一의 近代비지니스思想 比較에 관해서는 藤井賢三郎, 『評傳 澁澤榮一』, 水曜社, 1992年을 參照.

私利와 公益의 關係에 대해서 福澤는 近代市民社會에 있어서의 利殖의 正當性을 強調하여 無限한 私利追求야말로 公益의 源泉이 된다고 主張하였다.[4] 즉 私利追求를 미천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傳統的인 儒敎倫理의 病弊이며 반대로 私利追求가 近代社會를 志向하는데 필요한 推進力이 된다는 主張이었다. 福澤가 생각하는 私利란 舊社會(封建社會)의 미천하고 왜곡된 장사가 아니며 商品交換의 合理的 過程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過程에서 近代的인 生産流通關係 즉 信賴와 契約을 基礎로 한 賣買雙方의 對等하고 平等한 關係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近代的인 規則(rule)에 의거한 私利追求가 바로 公益實現을 可能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福澤는 經濟法則의 重要性을 強調한 것이다.

한편 福澤는 封建社會 以來의 잘못된 金錢感覺, 즉 經濟行爲를 輕蔑하고 그 重要性을 無視하는 것은 잘못된 認識이라고 批判하였으며, 나아가 이런 認識이야말로 日本의 經濟的 後進性의 原因이라고 指摘한 것과 동시에 殖産活動의 社會的 意義와 이를 推進하는 商工人의 地位向上을 강력하게 主張하였다.[5] 여기서 그가 主張하는 商工人은 近代市民社會에 相應하는 經濟人 즉 實業人을 말한 것이며, 오랜 陋習에 익숙해진 封建社會의 商人들은 기대할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福澤는 「學問은 實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近代的인 學問과 敎養을 가진 「學者士人」으로 하여금 새로운 實業家로서 育成해 나가는 方針을 세운 것이다.[6]

---

4) 福澤諭吉, 「福翁百話」에서 「富豪の經營は自から立國の必要なり」(65), 慶應義塾編纂, 『福澤諭吉全集』 第6卷, 岩波書店, 1970年, pp.310~311 參照.

5) 同, 「西洋の文明開化は錢に在り」, 「日本は尙未だ錢の國に非ず」, 「日本をして錢の國たらしむるに法あり,」, 『福澤諭吉全集』 第10卷, pp. 269~278, 參照.

6) 同, 「實業論」, 『福澤諭吉全集』 第6卷, pp. 143~194. 그리고 同, 「慶應義塾學生諸子に告ぐ」, 『福澤諭吉全集』 第10卷, pp. 549~553, 參照.

3. 近代비지니스思想의 形成(澁澤榮一)

澁澤榮一(Shibusawa, Eiichi : 1840~1931)는 日本 資本主義의 organizer(組織者)나 指導者的 企業家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經濟的인 近代化 過程의 中心人物 중의 한 사람이었다. 澁澤는 一般 民間企業家와 明治政府의 중간에 位置하여 兩者의 힘을 效果的으로 결합시킴으로써 近代的인 産業이나 企業 그리고 近代資本主義 자체를 育成해 왔다고 할 수 있다.[7]

澁澤도 福澤와 마찬가지로 少年時代부터 漢學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福澤의 경우와 달리 西洋의 學問까지 연구한 일은 없었고, 儒學을 중심으로 한 漢學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理解보다는 常識的이며 實踐的인 理解에 그쳤다. 澁澤의 경우 論語解釋은 人生行動의 規範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嚴密한 學問的 解釋보다는 現實主義的이고 妥協的인 解釋이 基本이었다.

따라서 福澤처럼 批判的으로 받아들이는 側面은 전혀 없었고 封建制度에 대한 명쾌한 批判도 없었다. 福澤가 항상 理想狀態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에 비해서 澁澤는 現實主義者로서의 解釋을 가장 重要視한 것이다.

따라서 私利와 公益의 槪念이나 兩者의 關係에 대해서도 澁澤는 福澤와 다른 價値觀을 가지고 있었다. 澁澤의 論理에 따르면 私利와 公益 사이에는 矛盾은 전혀 없으며, 個人의 事業活動 즉 私利追求란 것은 모두 國家社會의 利益에 直結되므로 결국은 公益實現이 되는데, 그는 여기에 하나의 條件을 붙인 것이다. 澁澤는 事業에 대하여 儒敎的인 理念을 導入시켰다. 즉 事業에는 道理에 맞는 「正業」과 道理에 맞지 않고 미천한 「不正業」이 있으며, 私利와 公益이 一致하기 위해서는 事業이

---

7) 拙稿, 「近代韓國における企業者活動－『指導者的企業家』を中心に－」, 『名古屋商科大學論集』, 第37卷 2號, 1993年 3月, 參照.

正業이야 된다는 것이 그가 主張하는 條件이었다. 여기서 道理에 맞는 正業이란 거짓말을 안하고 장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거짓말을 안하고 얻은 利益은 公益이 된다는 그의 主張은 倫理的인 側面을 重要視한 理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澁澤의 主張은 「經濟道德合一說」이나 「論語算盤說」이라고 불리는데 상당히 單純明快한 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다.[8]

澁澤의 實業論의 또 하나의 側面은 實業界의 地位向上 즉 官尊民卑思想의 打破이다. 澁澤는 1869年부터 1873年까지 大藏省의 官僚를 지냈는데, 그동안 度量衡, 租稅, 貨幣, 銀行, 公債, 鐵道 등의 制度를 만든 한편 殖產興業政策이나 會社設立指導 등에 관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商工業을 보다 本格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官僚를 辭任하고 實業界에 들어가서 直接 內部에서부터 實業界를 指導해 나갈 必要性을 느꼈다.[9] 예를들면 우수한 學生들은 모두 官僚가 되기를 目標로 하는 한편 商工業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강한 蔑視感情이 있었고, 商工業者들도 敎養이나 革新의 氣魄이 완전히 缺如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當時의 實業界를 둘러싼 認識이나 雰圍氣였다고 할 수 있다. 澁澤가 民間人으로서 상당히 많은 講演이나 啓蒙活動[10]을 한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澁澤가 主張한 合本主義思想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合本主義란 廣範圍한 社會로부터 資本을 動員, 大規模資本을 形成하여 近代的 工業化를 追求한다는 意味였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株式會社 制度와 同一한 意味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西歐遊學體驗에서

---

8) 澁澤榮一, 「道德と經濟の合一說」, 『青淵回顧錄』 下卷, 同刊行會, 1927年, pp. 1129~1134. 同, 「商業と道德」, 『最近實業談』, 國光社, 1903年, pp. 165~177. (본 論文에서는 1978年에 刊行된 復刻版을 使用하였음.) 同 『雨夜譚』, 岩波書店, 1984年에 所收된 長幸男에 의한 解說 (「論語と實業」 pp. 326~338.)도 參照.

9) 澁澤榮一, 「第一銀行創立の前後」, 『青淵回顧錄』 上卷, pp. 377~380.

10) 澁澤榮一 前揭 『最近實業談』 參照.

부터 나온 思想이었지만 大藏省 官僚時代에는 國立銀行條例를 비롯한 株式會社制度를 마련하고 實業界에 들어간 후에는 자기가 頭取인 第一國立銀行을 거점으로 直接 多數의 會社設立에 관여하였다.

4. 株式會社 制度의 導入과 浸透[11]

株式會社 制度의 紹介는 明治維新 前後부터 시작되었지만 西歐에서 發達된 近代株式會社 制度를 正確하고 完璧하게 紹介한 書籍은 아직도 없는 狀態였는데, 단지 다음과 같은 槪說書가 있었다.[12]

① 1867年, 福澤諭吉은 『西洋事情』을 썼는데 그중 「商人會社」에서 西歐의 會社構造를 紹介하였다.

② 1969年, 神田孝平은 和蘭商法의 일부를 번역하여 『泰西商會法則』으로서 출판하였다.

③ 1870年, 大藏省 官僚인 福地源一郎은 英美 經濟書 중의 會社編을 번역편집하여 『會社辨』을 썼다.

④ 1871年, 大藏省 官僚인 澁澤榮一은 『立會略則』을 썼다.

특히 『會社辨』과 『立會略則』은 合本되어 大藏省으로부터 公刊되어 全國的으로 分布되었으며 이들은 事實上의 法令 役割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書籍과 『西洋事情』에는 株式會社의 出資者나 株主의 責任에 대해서 아무런 說明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西歐視察 時의 見聞이나 經濟書 중의 株式會社에 관한 記述을 飜譯紹介한 것이지 西歐의 法律, 특히 會社法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몇년 후에는 株主責任의 有限·無限에 관해서 큰 問題가 생겼다고 한다. 그 후 특히 司法省과 大藏省 飜譯局에 의해 外國法律의 飜譯이 實施되어

---

11)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文獻을 參照. 中川敬一郎·森川英正·由井常彦 編 『近代日本經營史の基礎知識』, 有斐閣, 1979年. 小松章, 『企業形態論』, 新世社, 1990年, pp. 41~59.

12) 吉田準三, 「わが國明治前半期の會社制度の展開過程」, 『流通經濟大學論集』, 第24卷 3, 4號, 1990年 3月, 參照.

1893年에는 商法·會社編이 施行되었다.

그런데 株式會社의 設立實態에 관해서는 不充分한 內容이었지만 1869年에 設立된 通商會社와 爲替會社가 日本에 있어서의 株式會社의 起源이었다고 할 수 있다. 通商會社는 內外의 通商을 담당하는 貿易會社이며, 爲替會社는 通商會社의 業務를 金融的으로 지원하는 銀行과 비슷한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會社는 通商司라는 政府機關이 管掌하고 全國 主要都市에 設立되었다. 그러나 이들 會社는 株式會社의 制度나 組織을 전혀 모르는 豪商들이 強制로 參加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確定資本金이나 有限責任制度라는 槪念도 없었기 때문에 오래 存續되지 못하고 결국은 破綻狀況에 빠져버려 失敗한 것이다.

政府는 美國의 National Bank制度를 참고로 하여 1872年의 國立銀行條例를 마련하고 株式會社形態의 銀行을 設立할 것을 目標로 세웠다. 1873年에는 模範的인 銀行으로서 第一國立銀行이 豪商인 三井組와 小野組의 參加(大株主)로 設立되었다. 그러나 이 銀行도 진정한 株式會社라고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株式會社임에도 불구하고 株主는 無限責任이며 株式賣買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후 특히 1876年의 國立銀行條例改正 이후에는 銀行設立붐(boom)이 생겨 第一國立銀行을 모델로 많은 國立銀行이 設立되었는데, 153個銀行이 設立許可를 받은 것을 끝으로 1879年에는 이 許可制度가 끝나게 되었다.

株式會社 制度의 普及은 1878年의 東京株式取引所·大阪株式取引所의 開業이후였는데, 出資者의 有限責任制度에 대한 理解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였다. 1879年에 東京海上保險會社가 有限責任의 株式會社로서 設立되었는데, 設立의 中心人物인 澁澤榮一의 責任은 有限이 아니고 2~3倍의 保證責任制였다고 한다. 1882年에는 中央銀行인 日本銀行이 생기고 財政金融制度가 整備됨에 따라 產業革命의 進展을 背景으로 紡績이나 鐵道分野를 중심으로 한 企業設立붐이 일어나고 本格的인 株式會社 普及이 진행된 것이다. 代表的인 會社로서는 大阪紡績과 日本鐵道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近代株式會社制度의 普及·擴散過程은 試行錯誤의 連續이었으며 특히 責任制度에 대한 認識改善은 상당히 큰 課題였다고 할 수 있다. 本格的인 株式會社 普及은 明治初期에 株式會社制度가 서양에서 紹介된지 약 20年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開港以後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株式會社의 形成

1. 韓末期의 政治的 混亂과 儒敎的 價値觀[13]

500余年의 歷史를 가진 李朝의 傳統的인 儒敎思想은 朱子學만을 正學으로 固守하여 다른 모든 思想的인 流派를 邪學으로 規定함으로써 敵對的으로 現實의 變化에는 適應하기 어려운 保守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었다. 19世紀에 들어와서 李朝에서는 西學硏究를 禁壓하였는데, 이 때문에 西洋事情에 대한 옳바른 知識의 貧困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19世紀 後半부터의 現實的인 外交實施를 不可能하게 한 것이다. 이 西學禁壓은 宗敎的인 側面과 科學的인 側面의 양자를 區別하지 않았으며 邪學槪念의 부당한 擴大에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그 底邊에는 衛正斥邪思想이 있었다. 結果的으로 政治的 次元의 鎖國과 思想的 次元의 斥邪가 結合되어 外部世界와의 孤立狀況을 招來한 것이다.[14]

물론 鎖國狀況의 17~8世紀 當時에도 西學硏究는 있었지만, 그것은 中國을 媒介로 中國에 들어온 西士會士들과의 接觸과 그들의 書籍을 통해서 얻은 間接的인 知識이며 西洋과 直接的으로 連結된 西洋認識이 아니었다는 데 큰 限界가 있었다.

그런데 近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傳統的인 一元的 思想體系는 크게

---

13) 여기서는 姜在彦의 議論에 立脚하여 整理했다. 특히 다음 文獻을 參照. 姜在彦, 『朝鮮近代史硏究』, 日本評論社, 1970年, 同, 『近代朝鮮の變革思想』, 日本評論社, 1973年. 同, 『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年.

14) 同, 前揭『朝鮮の開化思想』, p. 162.

두가지로 分化되었는데, 하나는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一元的 思想體系를 頑固한 態度로 固守한 衛正斥邪思想이었으며, 또 하나는 一元的 思想體系를 새로운 歷史的 變動에 맞추어 思想과 學問을 修正한 實學思想과 또 이것을 繼承하여 質的으로 發展시킨 開化思想이었다.

자세한 內容은 省略하겠지만 實學思想과 開化思想의 質的差異는 李朝時代를 둘러싼 內部要因과 外部要因의 變化로부터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內部要因은 그 동안의 資本主義的 萌芽의 成長이며, 外部要因은 1860年代부터 시작된 西洋으로부터의 對外的危機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보다 重要한 要因이었다. 實學派에 있어서 「夷」는 直接的으로는 中國(淸國)이었으며 中國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北學이었다. 그러나 開化派에 있어서의 「夷」는 資本主義國家인 西洋과 「倭洋一體」가 된 日本을 意味하며 軍事力과 近代工業商品이 그 象徵이었다.[15] 따라서 近代志向的인 性格을 가지면서도 體制內的인 改良에 그쳤던 實學思想과 새로운 資本主義體制에 對應한다는 積極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었던 開化思想 사이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保守的인 衛正斥邪思想이 政權中樞에서 계속해서 큰 威力을 가지고 있는 한편 開化思想은 基本的으로 朴珪壽 以後 두개의 큰 潮流, 變法的 開化派와 改良的 開化派가 생김으로써 새로운 段階에 進入했다. 代表的인 人士로서는 變法的 開化派에 金玉均, 洪英植 등이 있었고 改良的 開化派에는 金允植, 兪吉濬, 金弘集, 魚允中 등이 있었다. 그들 主張의 差異는 주로 近代化 모델(model)의 選擇과 舊體制打破의 方法에 관한 것이었다.

變法的 開化派는 中國과의 封建的인 事大關係와 對決하여 完全한 自主權을 確立하고 日本의 明治維新을 近代化 모델로 한 데에 비해서 改良的 開化派는 中國과의 傳統的인 關係를 尊重하면서 中國洋務運動을 近代化 모델로 한 것이다. 그리고 變法的 開化派가 執權層인 守舊派와 對決하는 急進的인 變法을 主張한 데에 비해서 改良的 開化派는 오히

15) 同上書, pp. 122~124.

려 對決을 피하고 妥協을 통한 體制內部에 있어서의 漸進的인 改良을 主張한 것이다.[16]

2. 開化思想과 會社制度의 導入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開港前後의 李朝政府는 強硬한 鎖國政策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內容은 특히 大院君의 政治姿勢에 典型的으로 나타나 있었다. 大院君政權과 그 후에 나온 閔妃政權은 保守的으로 改革에 消極的이었다는 共通點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重要한 점은 自國을 둘러싼 國際的인 政治狀況이나 軍事的 狀況을 正確하게 認識할 수 있는 사람, 즉 現實主義者가 政權中樞部에 없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開化派에 속하는 在野의 靑年知識層은 進取的이며 革新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었으며 政府에 대해서도 점차 影響力을 미치게 되었다. 開化派 人士들은 자기 主張을 넓히기 위해서 『漢城旬報』라는 新聞을 만들고, 또 上疏를 올리고, 內政改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들의 意見은 政府의 殖産興業政策에 反映하게 된 部分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殖産興業政策의 成果는 미미하였다. 그 理由로서는 政界의 不安이라는 事情도 있었으나 그와 더불어 近代工業建設에 대한 經濟的 與件이 未成熟이었다는 점도 看過할 수 없다. 여기서 經濟的 與件이 未成熟이란 政府의 財政難, 技術의 不足, 訓鍊된 經營者의 不在, 그리고 民間企業家들의 製造業에 대한 無關心 등이었다.[17]

그런데 開化派 靑年知識層 人士들이 西歐의 會社制度를 紹介하면서 會社設立을 촉구하는 論說이 發表되었다. 몇가지 發表된 論說 중에서 1882年에 兪吉濬이 紹介한 「商會規則」과 1883年의 『漢城旬報』 第3號에 揭載된 「會社說」은 西歐의 會社制度를 韓末期에 紹介한 最初의 論說이었다고 한다.[18] 이들 論說은 開港以後 外國商人들의 急激한 流入이

16) 同上書, pp. 210~211.

17)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全訂版)』, 大旺社, 1982年, pp. 339~340.

라는 背景 하에서 民族商人에 의한 商業會社設立을 志向한 것이었으며 國內商權을 防衛한다는 내셔날리즘(nationalism)에 立脚한 國家的 危機意識에서 나온 主張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그 內容을 살펴보면 그들의 主張은 自國의 富國強兵의 길은 商業에 있다는 基本意識을 바탕으로 近代商業上의 會社設立의 必要性과 組織 및 設立節次를 상세히 紹介한 것이며, 이는 開港以後 民族商人의 會社設立에 관한 指針이 된 것이다.

兪吉濬이 紹介한 「商會規則」은 全25條로 되어 있으며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즉 株式의 發行 및 出資(第1條), 社長의 選出方法(第3條), 事務員의 服務規定(第4條), 不誠實한 社長의 交替條項(第5條), 本社의 住所 및 支社設置(第6條), 本社의 機構(第7條), 社長 有故時의 代理權(第8條), 社員(株主)補充(第11條), 帳簿에 관한 規定(第12條), 株主總會(第13條), 社員 및 社旗와 船旗의 制定(第16條), 外國 船舶 購入 및 外國人雇傭問題(第18條), 違約社員의 徵戒(第20條), 臨時總會開催에 관한 條項(第21條), 鴉片禁輸規定(第24條), 貨物稅納付에 관한 規定(第25條) 등이었다.[19]

그런데 『漢城旬報』의 「會社說」은 兪吉濬의 「商會規則」과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商會規則」의 경우에는 위의 第16條나 第18條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特定會社인 商船會社를 設立한다는 目的으로 章程을 紹介하였는데, 「會社說」의 경우는 會社設立 一般論을 紹介한 것이다.

『漢城旬報』의 「會社說」에서는 會社設立의 必要性과 意義 뿐만 아니라 緊急性이 강하게 主張되었다. 「會社說」에서 紹介된 定款5관은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즉 株式會社 設立節次에 관한 說明(第1款), 株式讓渡에 관한 說明(第4款), 無限會社인 合資會社에 관한 說明(第5款)

---

18) 同上書, p. 287.

19) 同上書, p. 287. 兪吉濬의 思想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 金炳夏, 『韓國經濟經營思想史』, 啓明大學校出版部, 1989年, pp. 267~301를 參照.

등이었다.[20]

3. 開港과 商社의 設立(韓末前期)

江華島條約 締結에 따른 많은 變化의 하나로서 日本商人들의 急激한 流入을 指摘할 수 있다. 開港 전에는 少數의 日本商人이 釜山에 常駐하였으나 開港 후에는 釜山, 仁川, 元山, 서울 등으로 活動範圍를 擴張하였을 뿐만 아니라 常駐人員도 激增하게 되었다.

이런 變化에 대해서 國內에서는 客主와 旅閣이라고 불리는 新興商人層이 敏感하게 對應하였다. 그들은 封建的이고 保守的인 特權市廛과 달리 革新的이고 進取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었으나, 19世紀 초에는 巨商도 많았다. 이런 客主와 旅閣은 開港 후 7, 8年 동안은 傳統的인 商業網을 통하여 開港場의 國際貿易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였으며 富를 蓄積하게 되었다.

그러나 188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는 中國(淸國)商人들도 國內에 進出하게 되며, 특히 日本商人과 中國商人의 競爭이 開港場에서 뿐만 아니라 地方에서도 激化됨으로써 國內商人을 위한 商權防衛의 課題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國內商人間의 商業을 組織化하고 商業方式을 革新하여 外國商人에 對抗하는 運動이 展開된 것이다. 1880年代초부터 商社를 設立하는 등 會社企業이 國內 商人界에 胎動하게 된 것은 이러한 狀況變化에 對應한 革新運動의 結果였다.[21]

韓末期의 會社設立氣運은 基本的으로는 위에서 說明한 狀況, 즉「商會規則」이나「會社說」등의 開化派 靑年知識層 人士에 의한 西歐會社制度의 啓蒙과 紹介, 그리고 外國商人으로부터의 商權防衛라는 狀況을 背景으로 점차 高潮되었다. 事實 甲午改革 전에는 文獻에 나타난 會社만해도 40餘個에 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서울과 初期 開港場인 仁川

---

20) 趙璣濬, 前揭書, pp. 288~289.

21) 同上書, pp. 283~286.

및 釜山에 設立된 商會 또는 會社를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22]

서울 : 長通會社, 長春社, 保영社, 信義社, 捲烟局, 釀春局, 豆餅局, 撮影局, 廣印局, 大興商會, 濟興社, 鹽油商會社, 永信會社, 濟生會社, 米商會社, 農桑會社

仁川 : 大平會社, 順信昌會社, 大同商會, 紳商會社, 廣成會社, 陸運會社

釜山 : 海産會社, 汽船會社, 平均會社(客主商法會社), 保險會社, 東航會社, 電察會社

그런데 開港初期에 設立된 이런 會社는 名稱은 會社였지만 組織이나 機能面에 있어서는 여전히 前近代的인 側面이 강했다. 그 理由는 첫째로 이들 會社의 組織은 반드시 會社라고 할 수 없는 個人商社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撮影局이나 廣印局은 個人營業體가 實態였다고 한다. 둘째로 이들 會社는 組織과 機能面에서 보아 一種의 同職者組合이나 協會인 것이 적지 않았다. 商法會社나 紳商會社는 客主組合이었다고 한다. 셋째로 이들 會社는 大部分 一種의 特權團體이었다. 당시 會社에서 官設會社와 民間人發議의 會社가 있었는데 이런 會社도 官許會社였다. 官許에는 營業獨占 등이 特權이 附與되어 있었기 때문에 前近代的인 性格을 가진 特權團體의 側面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開港初期 會社의 前近代性의 背景으로는 李朝時代의 傳統的인 商業秩序 및 商慣習의 存在, 그리고 當時 政府의 政策的인 對應의 缺如, 즉 政府에 의한 會社制度의 整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狀態였다는 事實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時期에는 開化派人士들의 勢力이 政治的으로 아직도 미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主張이 政策的인 影響力을 充分히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限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甲午改革 以後의 近代企業의 設立(韓末後期)

1895年의 甲午改革 이후를 韓末後期로 볼 경우 前期와의 差異點은 첫째로 많은 産業分野에 있어서의 近代企業의 設立增加, 둘째로 貴族

22) 同上書, p. 290.

또는 官僚出身 企業家의 本格的인 登場, 셋째로 零細規模가 大部分이었지만 紡織工場을 中心으로 하는 近代工業의 形成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여기서는 主要産業分野 중 銀行, 鐵道, 運輸, 그리고 製造業에 대해서 그 實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銀行部門

最初의 民族銀行은 1896年에 設立된 朝鮮銀行이며 設立關係者로서는 李朝政府의 要人 및 最高位 官僚職에 있는 安駉壽, 金宗漢[23], 沈相薰, 李完用 등이었다. 朝鮮銀行의 設立事務에는 政府의 官吏들이 주동이 되었으나 銀行의 組織은 순수한 民間株式會社였으며, 創設當時의 資本金은 20萬圓이었다고 한다. 朝鮮銀行은 1900年에 名稱을 韓興銀行으로 改稱하여 영업을 하다가 1905~6年에는 廢業된 것으로 推定되어 있다.[24]

1897年에는 漢城銀行(오늘의 朝興銀行)이 設立되었으며 李載完, 李允用, 金宗漢, 李晋應, 韓相龍 등 李朝의 貴族 및 最高位 官僚들이 設立에 關係하고 있었다. 특히 朝鮮銀行 設立者로서도 나온 金宗漢은 官僚로서 金融·貨幣制度의 整備를 推進해 온 한편 商人들을 상대로 貸金業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事實들로 보아 理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그의 性格을 알 수 있다.[25]

---

23) 金宗漢에 관한 자세한 內容은 다음 文獻을 參照.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1973年, pp. 108~123.

24) 趙璣濬, 前揭,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pp. 311~312.

25) 趙璣濬, 前揭, 『韓國企業家史』, pp. 114~118. 그리고 漢城銀行의 그후에 관해서는 議論이 있다. 즉 1897年에 設立된 후 業績不振 때문에 營業을 中止하였다가 1903年에 當時의 外交問題(500萬圓의 借款交涉을 둘러싼 露-日과의 關係)의 影響을 받으면서 다시 「漢城銀行」의 이름으로 設立되었다는 主張이 있다. (高承濟, 『韓國金融史硏究』, 一潮閣, 1970年, pp. 14~20. 등) 한편 이런 史實은 確認할 수 없으며 1897年에 設立된 漢城銀行은 1903年에 「公立漢城銀行」으로 改編되었다는 主張이 있다. (趙璣濬, 前揭書, pp. 118~123. 등) 그러나 여기서는 1897年의 設立 當時의 狀況을 살펴보는 데에 議論을 限定한다.

1899年에는 大韓天一銀行(오늘의 韓國商業銀行)이 設立되었는데 이 銀行도 역시 設立에 관해서는 最高位 官僚들, 즉 沈相薰, 閔丙奭, 閔泳綺, 李根澔, 李容翊[26], 趙東潤 등이 發起人 役割을 擔當하였다. 그러나 이들 高級官僚들이 大韓天一銀行에 投資한 總額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지니고 있는 官權이 大韓天一銀行 役割에 미친 役割에 注目해야 한다. 그리고 實質的인 投資家로서는 高級官僚層과 밀접하게 結合되었던 商人들을 無視할 수 없다. 즉 宋文燮, 鄭永斗, 金基永, 金斗昇, 白完爀, 그리고 趙鎭泰 등 서울의 實業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銀行設立에 크게 寄與하였다는 것을 評價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27]

1906年에는 舊韓國政府 財政顧問에 就任하였던 日本人 目賀田種太郎에 의하여 銀行條例가 作成, 發表되었다. 이 銀行條例 이후 設立된 것으로 韓一銀行이 있는데, 이는 漢城銀行이나 大韓天一銀行과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즉 韓一銀行의 代表的 設立發起人은 趙秉澤, 孫錫基, 白周鉉 등이었는데 그들은 資本力과 經營能力을 함께 가진 韓末期의 指導的 實業家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漢城銀行과 大韓天一銀行을 創設, 運營한 사람들은 李朝政府의 官僚로서 最高位에 오른 사람들이었음에 반하여, 韓一銀行의 創設과 初期의 運營을 擔當한 사람들은 官僚로서는 最低位에 있었거나, 巨大한 富를 所有했던 사람들이거나 官門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던 단순한 商人들이었다고 한다.[28] 이런 狀況도 銀行條例의 發表를 契機로 發生되었으며, 따라서 누구나 銀行을 設立할 수 있는 時代는 지나고 웬만한 資本力과 經營能力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상 韓末後期에 設立된 民族銀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高級官僚層에 企業家的 性格에 관해서 言及해야 될 것이다. 李朝

---

26) 李容翊에 관한 자세한 內容은 다음 文獻을 參照. 趙璣濬, 前揭『韓國企業家史』, pp. 63~86.

27) 高承濟, 前揭書, pp. 5~9.

28) 同上書, pp. 34~39.

封建時代에 있어서는 富가 中央 및 地方의 行政權을 掌握하고 있었던 封建官僚의 手中에 偏在하여 民富가 形成되지 못하였다. 즉 封建官僚가 유일한 富의 蓄積者이었는데, 이것은 封建官僚가 地主, 商人, 高利貸業者로서의 機能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9] 韓末期의 高級官僚層도 基本的으로는 이런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鐵道業

巨額의 資本과 技術이 要求되는 鐵道敷設은 當時의 民族企業家들이 쉽게 着手할 수 있는 事業이 아니었다. 韓末期의 代表的 鐵道企業家로서는 朴琪淙이 있었다. 朴琪淙은 官僚로서의 經歷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다지 높은 位置에 있지 않았다. 1890年代 후반부터 國內의 鐵道敷設權을 둘러싸고 外國의 競爭이 熾烈하게 되자 釜山警務官에 就任한 朴琪淙은 鐵道敷設의 緊急性을 認識하여 1898年 國內最初의 鐵道會社인 釜下鐵道會社를, 그리고 1899年에는 大韓鐵道株式會社도 設立하였다. 그러나 釜下鐵道會社의 鐵道佛設工事는 뜻대로 進行되지 못하고 中斷되고 말았다. 中斷의 原因으로서는 鐵道敷設을 위한 資金調達上의 困難, 路線의 低採算性, 京釜線 敷設에 따른 路線의 無意味 등이 있었지만[30], 特殊한 狀況下에서 獲得한 利權을 日本側에 賣却한 朴琪淙의 企業家活動에 관한 內容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31]

3) 運輸業

海運權에 관해서는 日本의 巨大資本이 초기부터 進出했으므로 民族企業家들은 比較的 小規模資本으로 運營할 수 있는 陸運權 確保를 目標로 積極的으로 活動하게 되었다. 1897年에는 馬車會社가 設立되었는

---

29) 高承濟, 『韓國近代化論』, 社會思想社, 1976年, pp. 30~32.

30) 趙璣濬, 前揭, 『韓國企業家史』, pp. 87~107.

31) 朴琪淙의 企業家活動의 評價에 대해서는 다음 文獻을 參照. 藤永 壯, 「開港後の『會社』設立問題をめぐつてー朴琪淙と汽船業・鐵道業ー(上・下)」, 『朝鮮學報』(朝鮮學會), 第140輯・第141輯, 1991年 7月・10月.

데, 이 會社는 安駉壽, 金基永, 白完爀 등의 發議에 의한 會社였다. 또 1899年에는 沿岸運送을 目的으로 하는 利運社가 設立되었다. 그 밖에 鐵道用達會社(1899年), 京釜鐵道夫役會社(1900年), 通運社(1901年), 通同會社(1903年), 從船會社(1903年), 昌盛社(1906年) 등이 계속해서 設立되었다.[32]

4) 製造業

開港 後의 韓末前期에는 위에서 說明했듯이 商業會社의 設立이 大部分이었는데, 1890年代 후반부터는 民間企業人에 의한 近代工業 建設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特徵이다. 물론 이 時期에는 本格的인 巨大製造企業은 아직도 出現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첫째로 政府의 殖産興業政策이 修正·強化되었다. 특히 官制改革이 斷行되는 한편 租稅·貨幣·度量衡 등의 制度改革이 積極的으로 推進되었다. 둘째로 新聞·雜誌 등 言論機關를 통한 啓蒙效果가 높아졌다. 記事內容의 範圍도 상당히 넓어 多樣한 情報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企業人들의 姿勢가 轉換되었는데, 특히 商業中心에서 製造業中心으로 思考方式이 바뀐 것은 큰 意味가 있다. 즉 都市 뿐만 아니라 地方 農村까지 日本의 近代工業 製品이 浸透해 왔기 때문에 國內企業家들도 스스로 工場을 設立하여 近代工業에 着手한 것이다.

이 時期의 代表的 會社로서는 위에서 登場한 安駉壽등이 關與한 大韓織造 工場이나 苧麻製絲會社 등이 있었는데, 政治的 變動으로 充分한 生産實績을 올리지 못하고 閉鎖되고 말았다고 한다.[33]

Ⅳ. 結　　論

明治初期와 韓末期를 比較하면서 兩國에 있어서의 近代株式會社의

32) 趙璣濬, 前揭,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pp. 294~295.
33) 趙璣濬, 前揭,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pp. 340~346.

形成·展開過程에 대해서 整理해 왔다. 여기서는 結論으로서 몇가지 事項을 指摘하기로 한다.

첫째로 兩國에 있어서의 儒敎的 價値觀은 전혀 다른 方向으로 作用했다. 日本의 경우 福澤諭吉이나 澁澤榮一가 主張하였듯이 儒敎的 價値觀에 대해서는 攻擊과 打破를 追求하는 立場과 融合 및 結合을 追求하는 立場이 있었다. 그리고 明治政府 內部에서는 儒敎的 價値觀에 固執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當時 日本에 있어서는 儒敎는 絶對的 價値觀보다는 相對的價値觀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韓末期에 있어서는 儒敎가 國家統治의 思想的인 基盤이 되어 있다는 李朝時代의 傳統的인 性格이 基本的으로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 政府 中樞部는 특히 이런 傾向이 강하고, 결국 激變하는 國際政治에 積極的으로 對應한다는 必要性은 거의 認識되지 못한 狀況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自國을 둘러싼 國際政治的 危機狀況을 冷靜하게 認識하고 效果的인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現實主義者라고 한다면, 明治政府에는 이런 現實主義者가 많았으나 韓末期의 李朝政府에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韓末期의 初期 開化派 人士들은 開港을 前後로 積極的이며 柔軟히 對應하고 또 思想的으로 많은 貢獻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人士들의 改革의 主張은 傳統的인 儒敎的 價値觀의 範圍內에 그치고 말았으며, 資本主義的 營利追求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價値觀을 傳播시킬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政治的인 勢力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政權中樞部에 位置할 수가 없었으며 政策決定에 直接的 影響力을 行使하지 못했다는 점에 限界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會社制度 面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明治初期의 日本에서는 通商會社나 爲替會社와 같은 株式會社는 처음부터 政府의 강력한 指導에 의해서 設立되었다. 한편 韓國에서는 開港 後에 設立된 商社會社의 경우 經濟的인 蓄積에 成功한 商人層(客主와 旅閣)에 의해서 設立되었고, 韓末後期에는 貴族이나 最高位의 官僚 및 商人 등이 結合함으로써

銀行을 비롯한 近代企業이 設立되었는데, 政府에 의한 直接的인 會社組織化의 努力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開國 直後부터 日本이나 韓國에서는 主要都市에서 商社가 組織化되었는데, 商社設立의 動機로서는 資本主義的인 營利追求라는 株式會社의 가장 중요한 側面보다 外國商人에 대한 對抗이라는 순수한 내셔날리즘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會社設立自體가 큰 意味를 가지고 있었고 經營을 維持하거나 營利를 追求한다는 意圖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經營에 필요한 訓鍊도 못 받고 經營技術도 부족한 狀態였기 때문에 設立 몇년 후에는 失敗한 경우가 많았다.

近代株式會社가 本格的으로 發展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前提條件은 資本主義的인 營利追求를 肯定하는 價値觀의 形成이었다. 日本의 경우 明治維新 후 약 20年이 지나면서 資本主義的인 近代株式會社가 出現되었다. 韓國에서 營利追求 動機에 立脚해서 民族企業이 設立되는 것은 3·1獨立運動 以後인 1920年代에 들어와서부터였다.[34] 특히 1929年에 操業에 들어간 朝鮮紡織株式會社와 1923年에 操業에 들어간 京城紡織株式會社의 設立은 韓國에서 「産業主義」가 발로되기 시작한 점에서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5]

參考文獻

〈日本語文獻〉

東畑精一, 『日本資本主義の形成者ーさまざまの經濟主體ー』, 岩波書店. 1964年.

野田一夫, 『日本會社史(明治編)』, 文藝春秋, 1966年.

中川敬一郎, 『經營理念』, ダイヤモンド社, 1972年.

34) 黃明水, 「韓國の經營理念ーその史的變遷ー」, 『經營史學』(日本經營史學會), 第25卷 2號, 1990年 7月, pp. 36~39.

35) 高承濟, 前揭, 『韓國近代化論』, p. 39.

森川英正,『日本型經營の源流』, 東洋經濟新報社, 1973年.

中川敬一郎 他編,『近代日本經營史の基礎知識』, 有斐閣, 1979年.

淺野俊光,『日本の近代化と經營理念』, 日本經濟評論社, 1991年.

藤井賢三郎,『評傳 澁澤榮一』, 水曜社, 1992年.

澁澤榮一,『青淵回顧錄』, 青淵回顧錄刊行會, 1937年.

澁澤榮一,『雨夜譚』, 岩派書店, 1984年.

慶應義塾編纂,『福澤諭吉全集』, 岩派書店, 1970年.

渡邊學編,『朝鮮近代史』, 勁草書店, 1968年.

姜在彦,『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年.

_____,『近代朝鮮の變革思想』, 日本評論社, 1973年.

_____,『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年.

黃明水,「韓國の經營理念－その史的變遷－」,『經營史學』(日本經營史學會), 第25卷 2號, 1990年 7月.

〈韓國語文獻〉

高承濟,『韓國金融史研究』, 一潮閣, 1970年.

_____,『韓國近代化論』, 社會思想社, 1976年.

趙璣濬,『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全訂版)』, 大旺社, 1982年.

_____,『韓國企業家史』, 博英社, 1982年.

李漢九,『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青史, 1989年.

金柄夏,『韓國經濟經營思想史』, 啓明大學校出版部, 1989年.

閔庚晥,「우리나라 民族銀行의 經營 近代化 過程에 관한 研究－近代 金融機關의 成立過程을 中心으로－」,『經營史學』(韓國經營史學會), 第6輯, 1991年 12月.

朴載錄,「한말의 민족기업과 기업가의 성격」.『韓國企業經營의 歷史的性格(筆山 黃明水敎授 華甲記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93年.

스위스의 전통면업

崔 榮 順*

目 次

Ⅰ. 머리말
Ⅱ. 면업의 전개
Ⅲ. 선대제下의 전통면업
1. 선대제와 수공업 입지
2. 생산양식과 기술수준
3. 선대주
4. 커피를 마시는 방적공과 직조공
5. 사회, 문화적 변화
Ⅳ. 면업의 기계화
Ⅴ. 맺는말

Ⅰ. 머리말

14세기 중엽 이탈리아로부터 처음 면실이 독일을 거쳐 스위스에 전래된 이후, 린넨업과 함께 면업은 동부 스위스의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주민들의 수입구조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한 면업이 당시의 생산/유통제도인 선대제 하에서 어떻게 발전하였고, 기계제 생산으로 이행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내수공업으로의 수방적과 수방직의 기술발달 정도와 제작과정, 이들 면업수공업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상적인 생활의 변모를 당시대인들의 시각에서 부각시켜 면업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 끼친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면업의 기계화 과정을 통하여 근대공장제와 그 이전의 생산양식인 선대제와의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스위스 산업화에 미친 도시 상인자본과 농촌의 가내수공업자본의 기여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 이화여대 강사

Ⅱ. 면업의 전개

면업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젤(Basel)에서 면업은 동업조합 춘프트(Zunft)에 가입된 도시 직조공들을 중심으로 15세기 경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수한 품질이 인정되어 외국에서 주문이 쇄도하자 도시 직조공만으로는 부족하여 일부 농촌의 직조공도 이에 편입되었다. 이런 초기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춘프트의 규제로 인하여 면업의 성장은 저지되어 16세기에는 쇠잔하게 되었다. 바젤과는 달리 쮜리히(Zürich)에서는 17세기 중반까지 춘프트 가입에 강제성이 배제된 채 면업이 자유로이 행해졌다. 그 결과 짧은 시일 내에 도시, 농촌에 걸쳐 면업의 확산되었다. 또한 1690년대에 위그노파의 종교 이주자를 통하여 모슬린 직조업이 도입된 후, 린넨업이 성행하던 동부 스위스에서 린넨업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면업은 바로 그곳에서 전성기를 맞는다.

아펜첼-아우써호덴(Appenzell-Ausserhoden), 쮜리히(Zürich), 성갈렌(St. Gallen), 아르가우(Aargau), 글라루스(Glarus) 그리고 투르가우(Thurgau)와 같이 아마업이 성행하던 지방에서 새로운 副수입원으로 등장하여 이곳 주민들의 구조와 경제생활에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1] 추가된 수입은 일찍 결혼할 계기를 마련하여 주어 인구의 급증을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면업에 값싼 노동력이 집중되어 1770년 경에는 100,000명 이상(수방적업 : 70,000)이 종사하고, 1787년

1) 생계를 잇기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ndreas Heidegger가 1714년 쮜리히에서 글라루스 지방으로 면방적업을 전했다. 다음의 문장은 이곳 주민들에 미친 면업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목면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하지만 이들이나 수입원을 전해준 박애주의자나 얼마나 큰 행복,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불행이 이와함께 이 지방에 뿌리내리게 된 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Schuler, M., Geschichte und Beschreibung des Landes Glarus, Zürich 1837, S. 132 인용.

에는 150,000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기계제 생산이 등장하는 1799년을 기점으로 수방직업의 감소와 함께 주춤하게 된다.[2]

프랑스의 보호무역 조치와 영국의 기계제 면방직업에 밀리어 1790년대에 들어서 스위스에서의 면업은 첫번째 타격을 받는다.[3] 스위스인들은 면방직의 기계화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로서 대략 1820년대에는 수방직이 스위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반하여, 일자리를 잃은 수방직공들이 합세하여 수방직이 선대제도하에 활발히 전개된다.[4]

1840년대에 수방직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서너 대의 베틀이 놓여 있고 온 식구들이 직조업에 매달렸다. 40년대말 전 스위스에는 약 35,000명의 직조공이 면직업에 종사했다. 1786년에 12,000대이던 베틀이 60년 이내에 50,300대로 증가되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1850년을 기점으로 근대식 방직공장에 몰리게 된다. 뛰어난 모슬린 제조공들을 제외하고는 1847/48년의 경제불황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기계제 생산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Ⅲ. 선대제下의 전통면업

1. 선대제와 수공업 입지

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

2) 18세기 칸톤 쮜리히에서는 수방직과 수방직에 종사하는 가내수공업자들의 몫이 모든 고용인력의 26페센트에 달했다. 1800년을 전후하여 전 스위스를 대상으로 하면 이 비율은 10페센트에 이른다. Jenny Adolf, Die schweizerische Baumwollindustrie, Bern 1909, S. 12 참조.

3) 1785년 성 갈렌 지역에 영국 기계면사가 수입된 이래, 점차 증가하며 1799년 경에는 수방직 수요의 1/4을 점유했다.

4) 칸톤 쮜리히의 베틀 수는 1806년에 대략 6,000대에서 1827년에는 12,000대로 증가되었다. Meyer von Knonau, Gerold, Der Kanton Zürich(Gemälde der Schweiz), St. Gallen und Bern 1844, S. 302 참조.

서 서술하는 바처럼 스위스의 면업은 마케도니아(Mazedonien)와 사이프러스 섬(Cypern)에서 수입된 목면에 의존한다.[5] 농촌의 수방적공이 원면을 직접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의 상업회사나 선대주에 의하여 수입된 후, 이것은 나귀 등에 실리어 마을 구석구석, 산간 곡곡에 산재한 방적공과 직조공에게 전달된다. 소수의 선대주들에게 특정지역의 판매-, 구매특권이 보장되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선대주와 가내수공업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여 훼르거(Fergger)라는 중개인이 선대주의 임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먼 곳에 위치한 시장이나 선대주에게 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완성된 면사가 실운반자(Garnträger)라 불리는 중개인에 의하여 거두어져 직조공에 넘겨지기도 한다. 완성된 면포는 중개인을 거쳐 도시선대주에게 넘겨지거나 단속의 눈을 피하여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기도 한다. 이로서 선대제도에는 선대주, 중개인, 가내수공업자의 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생산과 유통조직으로의 선대제는 수공업입지의 조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새로운 가내수공업의 도시 츄프트의 규제가 없거나 농촌마을의 규약이 엄격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다. 조합규제는 수공업의 확산을 통제하고 마을의 규약은 마을의 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지와 산림의 사용권이 주민의

---

5) 18세기 말의 면업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Goethe를 인용하였다. 그의 문학적 표현은 1797년 가을 슈테파(Stäfa)에 머물렀던 것을 인연으로 하여 쮜리히 호수를 중심으로 리히터스봐일(Richtersweil)과 슈테파 등지에서 기계화 되기 바로 직전에 한창이던 수방적업과 수방직업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당시의 제작방식을 재현하기에 충분하다. 기계화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만큼 새로운 생산양식에 대한 수방적공들의 두려움도 생생하게 표현되어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Friedrich Bertheau는 그의 수필 "괴테와 스위스 면업과의 관계"에서 Goethe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가 역사적인 자료로 취급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Bertheau, Friedrich, Goethe und seine Beziehungen zur schweizerischen Baumwoll-Industrie, Wetzikon 1888, S. 2 und S. 9 참조.

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새로운 이주자들을 받아 들이기를 꺼린다. 가내수공업은 인구의 증가, 특히 아주 빈곤한 층의 증가를 초래함으로 인하여 마을의 규제가 느슨한 곳이나, 전혀 없는 산간지방에 근거를 두게 된다: "짐승들이나 가끔 찾아들 듯한 민둥산 언저리나 벌채하다 만 숲의 황량한 모퉁이에 조차 새로운 집터를 마련하여 행복에 찬 사람들로 북적댄다."[6]

이런 이유로 춘프트의 규제가 강한 도시에 근거를 둔 유통판매지와 농촌, 산간지방에 위치한 생산지의 분리가 이루어진다.[7]

2. 생산양식과 기술수준

면업의 제작기술이나 기구는 주로 아마업에서 그냥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선대제는 경쟁력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기까지 기술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선대주들의 관심에 따라 기술적 진보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다.

방적기는 실의 회전과 꼬임에 유의하여 개량되었다. 방적과정도 단

---

6) Meiners, C., Briefe über die Schweiz, 1788, Berlin 1790, S. 45f (Dritter Theil).

7) Werner Sombart는 이런 지역적 분리를 입지의 사회적 분할이라고 한다. Sombart, Werner, Der moderne Kapitalismus, Bd. 2, 6.Aufl., München und Leipzig 1924, S. 800 참조.

8) 이런 논리가 분명코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다. Carlo Ginzburg이 '사회주의의 심리학'에서 Hendrik De Man이 한 말을 인용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2세기와 13세기의 플란더스와 북이탈리아의 섬유도시에서 경쟁력을 위하여 사용되던 半기계적인 방법이 14세기에는 폐지되었다. "요사이 말하는 것처럼 수익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너무나도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시대의 사회윤리적 관점에 어긋나는 생산방식을 유포시키기를 강제적으로라도 막으려 했다." Ginzburg, Carlo, Spurensicherungen, München 1988, S. 141 인용.

순화되었다. 물레가락은 지속적으로 실을 생산할 수 있게끔 17세기 말 회전물레로 변모하였고, 발틀이 부착된 회전물레는 실의 생산을 향상시키게 된다. 뢰틀리간(Löthligarn)이라는 고급면사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물레가락이 사용되었다. 거친 면사는 주로 글라루스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반하여 토겐부룩(Toggenburg)과 아펜첼(Appenzell)에서는 고급면사의 생산에 주력했다.

직조의 길고 복잡한 생산과정은 고도의 손기술을 필요로 한다. 베틀과 그에 따른 부속물, 그리고 제조기술은 상당 부분이 아마직조업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약간의 수정만으로 면직조에 사용되었다. 날으는 북과 바디의 도입은 날로 커가는 면포의 수요에 대응한 조처로 여겨진다. 1733년 John Kay의 날으는 북이 발명되었음에도 1800년 이후에서야 토겐부룩의 Konrad Egli에 의하여 흘라빌(Flawil)에서 처음으로 부착되었다.[9] 날으는 북의 이점은 한 직조공의 능률을 25퍼센트 정도 높여준다는 데 있다. 직조공의 능률이 오름으로 인해 면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방적기의 개선이 시급해지게 됐다.

3. 선대주

선대제도하에서 선대주는 우선적인 판매권과 구매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힘을 행사한다. 선대주로의 자격조건은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수완이라 하겠다.

초기 선대주의 범주에는 상인, 수공업자와 같이 특권을 지닌 도시시민들만이 속해 있었다. 도시의 선대주들은 임금방적공, 임금직조공들에게 자본주로 군림하여 필요한 원면, 면사 등을 제공해 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지시까지도 내렸다.

---

9) 영국에서는 이미 1760년 경에 John Kay의 날으는 북이 많이 보급되어 있었지만 스위스에 도입되기까지는 이로부터 40여 년이 더 걸렸다. Landes, David S., Der entfesselte Prometheus, München 1983, S. 88 참조.

도시의 선대주와 시골에 흩어져 있는 가내수공업자들이 지역적인 분리로 인하여 진취적인 시골의 직조공이 튀흘러(Tüchler)라 일컬어지는 시골의 선대주로 성장하게 된다.[10] 시골 선대주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행동범위를 축소하려는 도시 선대주의 시도가 있었다.[11] 물론 이런 시도는 결국 백지화된다: 나폴레옹군대가 스위스에 주둔하면서 계급이 없는 헬베티쉬공화국(Helvetische Republik)이 1798년 성립되고 도시인이나 시골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산업의 자유화가 보장된다. 이로서 튀흘러나 훼르거가 자립적인 선대주로서 근대공장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장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스위스에서는 산업화의 이행이 도시의 상업자본보다는 자립한 시골선대주들의 축적된 산업자본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4. 커피를 마시는 방적공과 직조공

면업은 동부 스위스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득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특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부들은 이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영국 의회의 전권대사이던 John Bowring이 관찰한 바와 같이 집집마다 몇 대씩의 베틀을 놓고 비단이나 면직을 짜곤 했다.

면방적공과 직조공은 그들의 일을 집안공동체에서 나이에 따른 분업으로 처리했고, 선대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베틀 위에서 베를 짰고 실을 잣는 일은 부녀자들의 몫이었다. 그렇다고 남녀 업무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

---

10) 그렇지만 시골 선대주들은 1670년 7월 11일자 법령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품인 면포 (Tüchli : 튀흘리)의 완전한 판매권을 포기해야 했다. Staatsarchiv des Kantons Zürich (StAZ), Manual Staatsschreiber vom 11. Juli 1670 참조.

11) 1693년 칸톤 쮜리히에서는 고급면사(뢰플리간)와 면포(튀흘리)의 구매권은 도시 선대주들에게만 주어졌다. StAZ, Manual Staatsschreiber vom 6. Februar 1693 참조.

적을 위주로 하는 집에서는 여성들과 함께 강한 남성들도 물레를 돌리며 그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을 늘리는 데 주력하였다.[12]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면업의 수입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언급할 수 있다. 실을 짜는 곳이나 베틀이 놓인 지하실에서 쉽사리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13] 이와 함께 당시대인이던 M. Schuler의 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농토가 없는 가내수공업자들의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생활이 識者들에게는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방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동부족, 침침하고 습기찬 지하실에서의 노동, 질 나쁜 커피와 자극적인 화주를 즐겨 마시는 것 등이 이들을 약하게 하고 병에 자주 걸리게 한다. 가난한 이들이 그 많은 수입을 멋드러지게 차려 입는데, 먹고 마시는데 다 소비한다."[14]

이런 생활태도에서 오는 위협적인 상황은 특히 판로가 막힌다든지 불경기가 되면 더 심각해 진다.[15]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신의 뜻"으로

---

12) Schuler, M., Geschichte des Landes Glarus, S. 147 참조.

13) Goethe, Johann Wolfgang von,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9. Aufl. München 1977, S. 341 참조.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찬 베짜는 지하실에서 일하면서 학교공부를 등한시하고 건강상태를 해쳐가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StAZ, Jahresbericht der Bezirksschulpflege, Bezirk Pfäffikon, 1841/42, S. 3 참조.

14) M. Schuler는 농경사회의 규범하에서 가내수공업자들의 생활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Schuler, M., Geschichte des Landes Glarus, S. 212 인용.

15) 조금이나마 자신의 농토를 가진 가내수공업자들은 그래도 쉽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에 칸톤 쮜리히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 Martin Salzmann은 이와는 달리 자급자족적 농업과 가내수공업을 함께 영위하는 직조공은 불황에 이중적으로 시달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빚으로 토지를 마련할 경우가 허다하여 불황기에 빚에 시달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수방직에 18시간이 넘는 긴 노동으로 매어달리면서도 자신의 터

받아들여 목화에서 운영의 실을 뽑아내며 참고 견딘다.

5. 사회, 문화적 변화

선대제도에서 일하던 가내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6]

먼저 가족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화 이전의 산업(Protoindustrie)이 전통적인 인구변화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Franklin Mendels의 이론에서처럼 이곳 스위스에서도 면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인하여 유산상속 없이도 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면업이 활성화되던 18세기 말에는 두드러지게 인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一子相續權 없이 물레와 베틀만에 의지하여 결혼을 하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농촌의 결혼풍습이 바뀌어 갔다.

농업에 근거를 둔 전통적인 인구통제 메카니즘이 가내수공업으로 인하여 붕괴된 결과 빚어진 인구의 증가는 빈민층 가내수공업자들의 수를 급증시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불가피하게 했다. 마을 통제의 눈을 피하여 한 화덕에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방식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와는 아주 달리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한 가내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농촌에 도시풍의 주거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그들의 작업환경을 청결하게 변모시켰다. 1782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소감을 적은 C. Meiners의 첫번째 편지는 쥐리히 근방의 집들이 도시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면업의 지속적인 발달에 유추하여 보면 주택문화는 더욱 다듬어지고 넓게 확산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밭에서 나오는 감자를 식량삼아 직조업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다른 방도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Salzmann, Martin, Die Wirtschaftskrise im Kanton Zürich 1845 bis 1848, Diss. Bern 1978, S. 345 참조.

16) 생활상태의 변화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토지가 없는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인구증가, 의식주 생활의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데 C. Meiners가 1788년 보낸 두번째 편지가 이를 입증해 준다.

"가내수공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마을들은 집들의 새단장, 견고함, 아름다움으로 다른 집들과 비교가 된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두 채씩 흩어져 서 있던 집들이 이제는 번듯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나무로 된 지저분한 오막살이에서 기거를 한데 반하여 가내수공업을 하는 농부들은 돌로 지은 집에 기와를 얹었다. 부지런하고 절약을 미덕으로 아는 이들은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다."[17]

주생활과 함께 식생활에도 농경생활에서 이탈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었다. 다시 Göttingen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C. Meiners의 글을 빌어서 단순한 가내수공업자들의 식생활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내수공업자들은 앉아서 하는 가벼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노동하는 농부들과는 달리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수공업자들은 영양가 높고 소화가 잘되는 값싸고 단순한 음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도시인들의 식도락을 탐닉하였다. 유지 함유량이 높은 크림을 넣은 커피는 그들의 일상적인 음료였고, 부드럽고 비싼 고기음식은 그들이 매일 대하는 음식이었다. 귀하고 비싼 시간대에 송아지고기를 사러가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18]

이처럼 대부분의 가내수공업자들은 커피, 최고의 크림, 부드러운 송아지고기 그리고 흰빵과 같은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들이 번 돈을 소비했다.

C. Meiners는 역시 의복의 변화에 대하여서도 감지했다. 1782년 6월 20일에 쓴 편지에 의하면 쥐리히의 농부들은 몇 백년 전에 입었을 듯한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며, 자신의 옷치장보다는 교회 치장에

---

17) Meiners, C., Briefe von 1788, S. 45f (Dritter Theil) 인용.

18) Meiners, C., Briefe von 1788, S. 55f (Dritter Theil) 인용.

열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1788년 7월 18일은 6년 전과는 아주 다른 사실을 전해준다.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한다든지, 농지나 정원을 구입하기 보다는 비싼 옷과 유행에 온통 돈을 낭비하는 허영에 찬 수공업자들의 변화된 복장문화를 엿보게 된다. 이 때는 의복의 사치풍조를 막고 신교도적인 검소한 의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인과 농촌주민들을 위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풍의 유행이 가내수공업자들, 특히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빈민 수공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을 보면 외면적으로나마 사회적인 계급의 향상을 연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이런 옷치장이 당대인들에게는 '상류사회의 모방으로' 부정적으로만 여겨진데 반하여 Rudolf Braun(1965)은 기본욕구를 충족하려는 수공업자들의 당연한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Rudolf Braun은 이런 사회 문화적 변화를 세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첫째로는, 방적과 직조의, 땅과는 무관한 일거리가 신과 연결된 종교적인 고리를 느슨하게 했다. 두번째로는, 이들이 색색가지 실을 만들고 천을 짜는 가운데 그들의 일과 연관된 욕구의 표출이며 셋째로, 불란서 혁명 이후 새로운 사상이 독서모임들을 통하여 가내수공업자들 간에 퍼져 나가 사회 문화적 변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신교도적인 의복, 관습법과 마찰을 빚으며 전개되었다.[19]

가내수공업자들의 정신적 자세도 독서모임, 노래모임, 체조서클 등 다양한 문화모임과 음악회, 무도회 등을 통하여 변화하게 된다. Thomas Scherr는 이를 "시골사람들 풍습의 고상화"라고 표현한다.[20] 그러나 이런 변화와 함께 경솔함, 낭비, 거만함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

---

19) 토지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가내수공업자들간의 행동양식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에 더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Scherr, Thomas, Meine Beobachtungen, Bestrebungen und Schicksale während meines Aufenthaltes im Kanton Zürich vom Jahr 1825~1830, St. Gallen 1840, S. 9 참조.

한 방종스러운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격감하는 불경기에는 면업이 초래한 어두운 면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Ⅳ. 면업의 기계화

전통면업이 기계제로의 이행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면업의 기계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저렴한 영국산 기계면사의 대량 유입과 프랑스 등지의 산업보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의 판매시장을 잃게 되어 수면방적업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면방적에 대한 기계화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수면방적업계를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본받아 면사의 기계생산을 서두른다. 1801년 성 갈렌 수도원에 26대의 손으로 작동시키는 실짜는 기계 Mule-Jenny가 영국 기술자 John Heywood와 James Longworth에 의해 제작되어 가동되면서 스위스 산업화가 전개된다. 이와는 달리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꾀하는 면방적업자들의 노력을 들 수 있다. 기계산업의 불모로 초기에 스위스는 생산기계의 부족을 겪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면방적업자, 기계공, 기술자들이 영국, 작센(Sachsen), 프랑스 등지를 찾아 다니며 힘쓴 결과, Escher Wyss Cie.와 Johann Jakob Rieter 등의 면방적 공장은 방적기계를 생산하여 쮜리히지방 전역에 걸쳐 기계화를 가능케 하며 스위스 기계산업의 산실이 된다. 결국 영국 기술자들의 외국이주금지(1825년까지)와 1842년까지의 생산기계수출 금지조처는 스위스의 기계화, 산업화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소규모의 수공업적 생산방식에 근거한 면방적업자들이 용이하게 기계면방적 공장주인으로 변모하게 된다.[21] 이 당시는 약

21) 기계면방적업은 1804년에 서부 스위스 베른(Bern)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방적기계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기계화를 추진시킬 기업가들의 결여로 실패하고 만다. Streiff, Sam, Der Standort der Baumwollspinnerei, Diss. Bern 1924, S. 151 참조.

간의 자본과 한 두대의 기계를 놓을 다락방이나 창고 같은 장소, 상업상의 경험, 기술적 지식만 있으면 기계면방적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또한 무리없이 이끌어 갈 수 있었기에 다수의 지방 先貸主들이 새로이 각광받는 기계면방적 공장에 손을 댄다.[22] 이로서 선대제와 근대기계공장과의 지속적인 연관관계가 지역, 자본, 인물 면에서 보여진다.

산업화에 따른 자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면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초기와는 달리 1830년대에는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과 개량으로 기계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상업자본으로의 전환이 촉진된다. 전통면업에 종사하던 이들 이외에도 다수의 면제품을 취급하던 도시상인들이 혹은 자본이 적은 기술자와 합자하여 공장 형태를 갖춘 대규모 기계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소규모의 공장들도 여러 생산단계의 기계화와 아울러 증축의 필요성을 느낀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기계장비에 드는 경비가 계속 커짐에 따라 소규모이나마 자기자본에 의존해 오던 중소면방적 공장은 은행 융자를 얻거나 재력이 있는 목면수입상들과 합자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의 시골선대주를 중심으로한 축적된 산업자본이 기술혁신을 요하는 30년대에는 상업자본의 도움을 받게 되며 상업자본의 비중이 높아진다.

V. 맺는말

18세기 중반 면업이 새로운 소득가능성으로 등장하면서 린넨업을 제치고, 선대제의 형태하에 동부 스위스의 농촌과 산지에서 괄목할 발전을 보였다. 유럽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신대륙에까지 제품의 우수성이

22) 1814년 당시 섬유산업국이던 영국이 500만 추 이상의 방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을때, 스위스는 고작 15만 추 정도가 가동 중이었다. 대륙봉쇄(1806~1814)가 해제되면서 스위스 면방적업은 다시금 반자동 기계(Halb-Selfaktor)로 빠르고 싸게 생산하는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 Mule-Jenny를 Halb-Selfaktor로 바꾸어야 할 운명에 처한다. 여기에서 경쟁을 통한 진보의 원리가 강조된다.

인정되어 널리 판매되었다.

선대제와 지정학적인 요인은 스위스에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 하나로는 수완이 좋은 시골 직조공의 사회적 신분상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도시 선대주의 중개 역할을 하다가 자립하여 독자적인 선대주가 되고 후에 면방적의 기계화에 공장주로서 근대공장제 공업을 받아들이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 다른 변화는 방적공과 직조공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가내수공업을 통한 부수입의 확보는 이들의 의식주에 대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낭비, 사치가 심하다는 당시대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구매력의 증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였다.

18세기 말 면사의 새로운 기계제 생산방식이 도입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면방적업은 선대제하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영국제 기계면사와 스위스 자체에서 일어난 방적의 기계화에 밀리어 1820년대 말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로서 일거리를 잃은 많은 방적공을 흡수병합하여 수면방직공은 역직기가 도입되는 1850년대까지 계속 선대제를 고수하면서 발전하였다. 시골선대주들의 축적된 자본과 경험을 중심으로 면업에서 기계공장제의 이행이 이루어져 산업자본의 역할이 산업화 초기에는 두드러지나, 기술의 진보와 함께 1830년대를 시점으로 산업화 초기에는 별 비중이 없던 도시 상업자본이 두각을 나타낸다. 시골의 가내수공업을 거점으로 근대공장제 공업의 성립, 발전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산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나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스위스 산업화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Bertheau, Friedrich, Goethe und seine Beziehungen zur schweizerischen Baumwoll-Industrie, Wetzikon, 1888.

Ginzburg, Carlo, Spurensicherungen, München, 1988.

Jenny, Adolf, Die schweizerische Baumwollindustrie, Bern, 1909.

Landes, David S., Der entfesslte Prometheus, München, 1983.

Meiners, C., Briefe über die Schweiz, 1788, Berlin 1790(Dritter Theil).

Meyer von Knonau, Gerold, Der Kanton Zürich (Gemälde der Schweiz), St. Gallen und Bern 1844.

Salzmann, Martin, Die Wirtschaftskrise im Kanton Zürich 1845 bis 1848, Diss. Bern 1978.

Scherr, Thomas, Meine Beobachtungen, Bestrebungen und Schicksale während meines Anfenthaltes im Kanton Zürich vom Jahr 1825~1830, St. Gallen 1840.

Schuler, M., Geschichte und Beschreibung des Landes Glarus, Zürich 1837.

Sombart, Werner, Der moderne Kapitalismus, Bd. 2, 6. Aufl., München und Leipzig, 1924.

Staatsarchiv des Kantons Zürich (StAZ), Manual Staatsschreiber vom 11. Juli 1670.

StAZ, Manual Staatsschreiber vom 6. Februar 1693.

StAZ, Jahresbericht der Bezirksschulpflege, Bezirk Pfäffikon, 1841/42.

Streiff, Sam, Der Standort der Baumwollspinnerei, Diss. Bern 1924.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1905~1915: An Empirical Analysis.[1]

Joo-Hoon Kang[2]

I. Introduc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American economy experienced profound industrial changes which have been described as the great merger move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that century, manufacturing industries consisted of small firms and the industries were unconcentrated. This pattern changed considerably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wo ways. First, large-scale firms were made possible by a ser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an expansion of the marketing area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financing corporations and operating large concerns.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economy in this period. The index of manufacturing production increased over five times between 1870 and 1905. The manufacturing proportion of gross national product grew from 35.8 percent to 71.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Table 1).

---

1) The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Korean Economic Association, February 1992.

2)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conomics, Kwandong University, Kangreung City, Naegok-dong San 72-1.

〈Table 1〉 Growth of Manufacturing Sector

	1870	1900	1905
Indexes of Manufacturing Production(1900=100)	25	100	140
Proportions of GNP(%)	35.8%	76.4%	71.5%

Source : U. S. Bureau of Census, *Census of Manufactures(1905), Vol I*,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5), p. xxxvi ; U. S. Bureau of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 Colonial Times to 1970*, p. 231.

Second,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me considerably more concentrated in this period. During the period 1897~1903, the first merger movement progressed with particular rapid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3](Table 2). John Moody(1904) compiled a list of over three hundred industrial combinations with a capitalization, as measured by the value of securities issued, of over seven billion dollars. The list contained firms that accounted for 1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manufacturing plants.[4]

Abundant evidence on the high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resulting from these mergers exists. Of 92 large mergers studied by Moody, 78 resulted in control of 50 percent or more of the industry output, and 57 controlled 60 percent of more. 26 controlled 80 percent or more (Moody, 1904, pp. 486~487). These percentages are large enough to indicate profound changes in the com-

3) This study concerns only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as Faulkner(1951) stat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consolidation had been going on for a half century in the steam railroads and in such public services as the telephone, telegraph, gas, and electric power and light.

4) The Bureau of Census recorded 296,440 manufacturing plants for the year 1900. Moody's list involved 5,288 plants.

〈Table 2〉 Number and Capitalization of Consolidations Formed During the First Merger Movement.

Year	Number	Capitalization($: million)[5]
Up to 1896	61	1,005.2
1897~1904	257	6,146.1
Total	318	7,151.3

Source : Calculated from John Moody, *The Truth About the Trust*, (Moody Publishing Co., 1904), pp. 453~477.

petitive structure of the American industry.

Many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factors facilitating or causing the great merger movement and with its effect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for example, Nelson(1959)].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consolidated firms following the merger movement at the turn of the century. Early investigators also attempted to determine what proportion of the mergers proved successful and which factors determined the success of the mergers.

One of the early studies of the performance of these consolidations was done by Livermore(1935). Based on a sample of 328 companies involved in mergers during 1888~1904, Livermore's examination showed that about one-half of the consolidations not only maintained a continuous existence but "survived" during the succeeding quarter century, while the other half failed. The main question with which this study is concerned, is what factors ex-

5) Capitalization includes the stocks and bonds. The figures given are the par values. Stock watering was commonplace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figures are only approximately correct for size of consolidations.

plain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solidated firms in the 1905~1915 period. Several possible reasons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solidated firms have been suggested; economies of scale, product differentiation through advertising and brand names, patents and tariffs [Livermore(1935), Chandler(1977), Porter(1973), Lamoreaux(1985)].

Each of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has examined those factors without the use of econometric analysis that would provide a new meaning on possible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is study is to present case studies during the first merger movement an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performance of consolidated firms between 1905 and 1915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Ⅱ. Case Studies of Consolidated Firms[6]

1. The United States Leather Company

In 1893 the United States Leather Company was formed for the purpose of combining the principal tanning companies making sole leather. The chief economic reason for the formation of U. S. Leather was to avoid severe price competition and to obtain the economies of scale that organizers believed possible with large-scale production. The price of sole leather had fallen steadily from 1884 to 1891, and competition among the tanners was growing increasingly unstable. By 1893 there were signs of marked overproduction. As a result, the large tanners entered into an agree-

6) Much of this section is based upon Dewing(1914), Clark(1929), Laidler(1931).

ment to reduce their output. At first, the collusion worked well but was doomed to failure over time due to several problems. First, some producers stayed out and undermined the cartel. Second, there always existed the incentive (extra profits) for existing firms to cheat on the pre-arranged agreement. Third, the successful cartel quickly attracted new producers into the industry, which brought prices and profits down again. Furthermore, the Sherman Act as a result of political reaction to monopoly became law in 1890. The failure of the collusion led to a search for a new way, that is, horizontal combination.[7]

The widely recognized success of the oil, whisky and sugar combinations encouraged the large tanner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economies of scale by merging their different interests in one company. In this way, U. S. Leather acquired approximately 110 tanners, controlled by some 60 leather houses. At its formation in 1892, U. S. Leather's market share of the sole leather tanned domestically was about 58 percent. U. S. Leather had the largest book capitalization($131,000,000) of any American industrial corporation (cf. the American Sugar Refining Co.: $ 75,000,000, the American Tobacco Co.: $35,000,000 and the United states Rubber Co.: $50,000,000).[8] The large market share

---

7) According to the Sherman Act, cartel behavior(price-fixing) was *per se* illegal while horizontal combination was subject to a rule of reason. Bittlingmayer(1985) argued that this asymmetry encouraged mergers rather than collusion.

8)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United States Leather Company had an assessed market value of $ 60,000,000. Against these assets the Company issued $ 131,000,000 of securities (common stock: $ 63,000,000, preferred stock: $ 62,000,000, bonds: $ 6,000,000).

gave the leaders of the enterprise confidence that they would earn large profits and justified the high value that they placed on their asset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low price of the finished product wa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severe competition, they confidently expected that when the economies of combination had been introduced, a period of high prices and trade prosperity would necessarily follow. In addition, they believed that they would achieve large econom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salesmen and subagencies and by closing tanneries less advantageously situated.

In spite of their expectation, however, the immediate result of the combination was failure which finally end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U. S. Leather Company into the Central Leather Company in 1905. Sever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Leather Company may be considered. The first is the general business depression which prevailed immediately after its consolidation. The first four to five years following the panic of 1893 were characterized by a marked industrial stagnation. At a time of falling prices, the price of hides lags behind that of leather because the production process between the purchase of hides and actual sale of the finished leather to the domestic consumer required a time from six months to a year. As a result, the Company was compelled to sell leather for less than its cost of production. Additionally, U. S. Leather was burdened by the large amount of bark lands it owned and against the estimated value of which it had issued its preferred stock with 8% dividends to be paid from the net earnings of the business.

Another reason for the failure lay in the highly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the leather industry. Only a small amount of capital for plant and equipment is required in proportion to output. The raw materials of industry (hide and bark) are purchased in a highly competitive market. From the beginning the leather combination had weak control over the market in which it bought its hides. No large amount of skilled labor is required in the industry, since the tanning of hides is a long-term process in which the cost of labor is subordinate to the cost of the raw material. The advantageously located small tanner could, indeed, tan hides quite as cheaply as the large tanner. Under these conditions it would seem that U. S. Leather could derive little advantage from consolidation.

2. The National Cordage Company

The spinning of rope was among the first industries set up in colonial days. In this early period, rope making was dependent on the business of shipbuilding so that with the gradual decline of the latter industry, rope-making became relatively unimportant. After the invention of the self-binding harvester machinery, a sudden stimulus was given to the industry through the increased demand for binder's twine.

To overcome problems of over-production and falling prices manufacturers of cordage(rope and twine) formed associations and pools in the 1870s and 1880s. These combinations, however, did not bring the stability and security the producers wanted. In 1887, four of the leading companies took the next step, uniting to form the National Cordage Company with the idea of reducing the cost of production by combining plants and stabilizing raw material

prices by eliminating competition. In an attempt to gain control of the industry, the National Cordage started with an ambitious program of expansion. In summer 1890, the capital stock of National Cordage was increased from $ 1,500,000 to $ 15,000,000 and more competitors were brought into the combine. The objective of the enlarged activity was to attain actual control over the industry. To accomplish this purpose, National Cordage became aggressive in three directions. First, they sought to control the market on raw hemp. Second, they sought to control the manufacture of cordage making machinery. Third, they sought to buy up all the competing cordage mills. In the spring of 1892, the company's position was dominant in the market both for raw hemp and manufactured cordage. The company controlled approximately 90 percent of the cordage mills in the country. The nation's leading financial journal, the *Commercial and Financial and Chronicle,* referred to the National Cordage as the "great industrial corporation." Surprisingly, three month later, it announced, "Cordage has collapsed like a bursted meteor." This sudden failure was partly due to faulty methods of organization. The Company bought all the raw materials for various concerns which it controlled and sold their products, but the constituent firms preserved their identity and a certain amount of operational autonomy. This might constrain the combination from realizing all the economies of scale originally contemplated.

The weakest point of the combination, however, was its inability to control new competition. As rapidly as the officials of the Company would buy up the competing mills, the old owners either in their own name or as representitives of others would

start to build new mills. This indicates that there exist inherent difficulty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monopoly of production in an industry where there are low barriers to entry into the industry. In the winter of 1892 and spring of 1893, in the face of increasing competition, the National Cordage manufactured very large quantities of binder twine and something more than the normal production of rope. Unable to carry the financial burden coming from an over-supply of raw material and finished product, with its trade position undermined by new competitors, the Consolidation collapsed in a receivership. After its failure, the National Cordage was reorganized as the United States Cordage Company and again reorganized as Standard Rope and Twine Co., all the while with a considerable reduction of assets and capitalization. Like the leather industry, the cordage industry was competitive and open to all. The raw material was bought in an open competitive market and the finished product was sold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was no advantage in consolidation in this industry.

3. The United Shoe Machinery Company

In February 1899, the United Shoe Machinery was organized as a consolidation of five shoe machinery manufactures. Each constituent company produced different types of machines and was dominant in its respective branches of the industry. Thus the merger achieved a very high degree of market control in the major fields of shoe machinery. It seems safe to say that the new company's market share was 70 percent or greater. Following the merger, the United Shoe substantially controlled shoe machinery

bus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as successful. By 1910, the total assets of the company had reached $ 40.8 million which represents an annual rate of growth of nearly 10 percent. This growth was financed from earnings of the business: over the period 1905~1915 the average annual profit rate on total capitalization was 14.25 percent. About half of this was paid out in dividends and half reinvested. This success can be explained in several ways. First, the success came from a series of acquisitions of business, patents, and inventions. Though the Company was powerful, it wa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vention of new types of shoe machinery. Frequently it was forced to buy out such potential competitors. From 1899 to 1911 United Shoe concluded 59 acquisitions of one sort or another. For example, from the acquisition of Thomas G. Plant Shoe Co., made in September 1910, the United Shoe received 206 patents, 28 patent applications, machine tools. The Company also created an experimental department. Expenditures for research averaged about $ 0.5 million per year. About 150 new machines were brought out in the period 1899~1914. Second, the Company concentrated all manufacturing activities in one new plant, in Beverly, Massachusetts, and it created a service organization. By 1911 the service department employed over 600 men, had 27 branch organizations in 13 states, and an annual operating expenditure of $ 1.2 millon. And the United shoe continued the practice of its major predecessors of leasing rather than selling most of its machines.

Another reason of its success was that major machines of the United Shoe were not easily substituted. That is, there were no close substitutes in production—shoe machinery manufacture

presents special problem of precision and complexity. The demands in terms of knowledge of the shoe-making art and manufacturing technique, which potential competitors in major machinery must meet are high. In his testimony Wilson Palmer, Vice-President describes this point, "the manufacturing technique required in making a wide line of shoe machines is, in general, more advanced than that required in other branches of the machinery industry: the problems presented by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parts in each machine are unusual"(Keysen, 1956, p. 54).

It seems fair to conclude that no competitors can offer a significant competitive threat to the United Shoe or act as a substantial check on the united Shoe's position in the market. The leasing system, United's patent structure, and accumulated know-how in research all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United Shoe's market power, but basically formidable barriers to entry protected United Shoe's existing position.

4. The National Biscuit Company

In the 1898 the New York City Biscuit Co., The American Biscuit and Manufacturing Co., The United States Baking Co., and the United States Biscuit Co., consolidated as the National Biscuit Company with total capital of $ 55,000,000, controlling the 40~70 percent of craker and biscuit trade in the country. National Biscuit was a successful merger, maintaining its market share substantially and making high profits(9.31%)[9] during the 1905~1915.

9) Profit is average annual rate during 1905~1915, calculated from Moody's *Manuals of Industrial Securities*.

Like the leather industry, baking and bread industry does not require complex technology and capital intensity which could have caused high barriers to entry into industry. In the face of few natural advantages deriving from industry conditions, if the Company had attempted to maintain its horizontal combination by cutting prices or buying out competitors, it might have been a financial failure like the National Cordage. The Company realized the need for a change in strategy. In spite of large market share of baking business it had, the first report of the president stated: "we have no monopoly…… we always expect to have a great deal of competition. We propose to get the business and to hold it by selling better goods, by furnishing them in a better condition to consumers and at lower prices…than our competitors are able to do"(Clark, 1929, p. 269). National Biscuit, renamed Nabisco, started out with a new policy to differentiate its products instead of producing in bulk for the retailers' cracker barrels. Nabisco did this by extensively advertising and distributing its products in attractive sanitary packages using the brand name "Uneeda Biscuit." The words "Uneeda Biscuit" was outstanding brands and became the controlling factor in the biscuit and craker trade.

In reviewing two successful firms and two failed firms it is clear that structural conditions of industry were important determinants influencing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National Cordage and U.S. Leather suffered from the presence of competitors in spite of their efforts to control competition. In both the leather and cordage industry consolidations could not generate economies of scale from large-scale production. They could not control both the raw material market and the output market. Glenn Porter(1973, pp.

81~82) describes this point, "The supply of raw material was abundant, the cost of beginning production was low, and no control was possible at the marketing end of the business. The appearence of competitors broke prices and often resulted in the collapse of the combine."

By contrast, the shoe machinery industry required complex technology which created high barriers to entry into the industry. The technical barriers to entry protected United Shoe's market position from the potential competition. United Shoe could also obtain cost advantage as a result of patent protection and superiority in production know-how. In the baking and bread industry horizontal combination did not lead to realization of economies of scale and was not enough for its success. Nabisco's success resulted from advantages gained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by extensive advertising.

The question of why some consolidated firms were successful while others not was important in the study of the first merger movement. Case studies suggest that structural and artificial barriers to entry were crucial to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section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proposition will be presented.

Ⅲ. Model and Methodology

1. Empirical Model

In order to test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it is useful to classify the variables us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into three groups : structural variables reflecting industry

characteristics, consolidated firms' strategic variables designed to erect barriers to entry, and others(industry growth rate and initial market share).

The structural variables expected to influence the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PRF) include vertical integration of industry (VIS), economies of scale(MES), capital cost requirements(K), and the extent of multiplant operation(MP). The second group of variables are strategic ones designed to erect barriers to entry by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y(PD), preemptive patents strategy(PAT) and tariff protection strategy(TA). The other variables to be included are the growth rate of industry(GR) and initial market share(IMS).

The model to ass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determinants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solidated firms is with the expected signs as follows:

$$PRF_j = \beta_0 + \overset{+}{\beta_1 VIS_j} + \overset{+}{\beta_2 MES_j} + \overset{+}{\beta_3 K_j} + \overset{+}{\beta_4 MP_j} + \overset{+}{\beta_5 PD_j} + \overset{+}{\beta_6 PAT_j}$$
$$+ \overset{+}{\beta_7 TA_j} + \overset{?}{\beta_8 GR_j} + \overset{+}{\beta_9 IMS_j} + U_j, \text{ where } j = 1 \cdots\cdots n$$

The model indicate that structural barriers and artificial barriers to entry erected by firm's strategy lead the firm to be successful. To the extent that those barriers protect the existing firms from potential entrants, it is likely to be reflected in supra-competitive profit of consolidated firms. Those variables are controversial in their definition and measurement(see Appendix 1).

2. Estimation Procedure

When profit rat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 there is a

problem that we can not observe the profit rates of those firms which were out of business or were in receivership. We can only measure for the certain periods profit rates of those firms which maintained their existence, making positive profits. Thu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estimation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in terms of profitability is limited to positive values.

With the limitations of dependent variable, other estimation procedures more suitable for the study are needed.[10] Two approaches, probit and Tobit models, seem to offer more promising alternatives. A probit regression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chotomous dependent variable(whether or not consolidated firms were successful)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ere is not a clear-cut criterion to make the lin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The problem here is where on the spectrum of profit rates success and failure are divided. It is, however, obvious that when consolidated firms disappeared, had a deficit over time, were in receivership or were reorganized, those firms should be classified as 'failure' and that those firms making positive profits are classified as 'successful.'[11] When a probit regression is used, the value of dependent

10) Usual regression procedures suffer from some drawbacks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n a model can have only a limited range of values: there are heteroscedasticity problems of the disturbance term so that the OLS estimators, although unbised, are not efficient. Therefore the ordinary regrssion analysis would be an inappropriate technique to apply to the problems with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in this study.

11) Livermore(1935, pp. 92~95) classified his collected firms into success failure and two intermediate groups(limping and rejuven-

variable(PRF) equals zero if the firms are classified as failure, and equals one if the firms were successful.

When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 consolidated firms is the only variable of interest, the probit model would be sufficient. But using the probit model, as Tobin(1958) points out, would be inefficient, since information on the magnitude of the dependent variable(in this case, profit rate of successful firms) is available. Given a large concentration of observations at the zero profit rate,[12] ordinar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ould not be appropriate. The Tobit technique(Tobin's probit) permits us to use all observations, both those at the limit and those above it, to estimate a regression line. The Tobit model, which combines the properties of the probit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therefore more appropriate for estimation of the model.

The Tobit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may be specified as follows:

$$PRF_j = \beta_0 + \beta_1 VIS_j + \beta_2 MES_j + \beta_3 K_j + \beta_4 MP_j + \beta_5 PD_j + \beta_6 PAT_j + \beta_7 TA_j + \beta_8 GR_j + \beta_9 IMS_j + U_j, \text{ when } PRF_j > 0$$

$$= 0 \qquad PRF_j = 0, \text{ when } j = 1 \cdots\cdots n$$

Rewriting the above equation using matrix notation,

---

ation). He did this by studying earnings on capitalization in a survey of the dividends records and company histories. Most of failure group was easily classified because they had terminated their exitstence and were in receivership or reorganized. But in the case of the successful companies and intermediate groups, Livermore did not give any specific average earning rate for his classification.

12) The profit rates of failed firm are assumed to be zero.

$$PRF_j = X_j\beta + U_j \qquad \text{if } PRF_j > 0$$
$$= 0 \qquad \text{otherwise, } j = 1 \cdots\cdots n$$

where n is the number of observations. PRF_j is the dependent variable. X_j is a matrix of independent variables, β is a vector of unknown coefficients, and U_j is an independently distributed error term assumed to be normal, with zero mean and constant variance.

Tobin suggested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to estimate the unknown coefficients(β). The subject of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as further studied by Amemiya. He proves that the Tobit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is strongly consistent and asymptotically normal.

Following Amemiya(1973), the likelihood function is defined as

$$L = \prod_s [1 - F(X_j\beta, \sigma^2)] \cdot \prod_r f(PRF_j - X_j\beta, \sigma^2)$$

where given n independent observations, s observations record a zero value for the dependent variable and r(=n−s) observations record a positive value.

$$\text{And } F_j(X\beta, \sigma^2) = \int_{-\infty}^{X\beta} f(Z, \sigma^2)dz$$

$$f_j(Z, \sigma^2) = \frac{1}{\sqrt{2\Pi}\sigma} e^{-Z/2}$$

where $F_j(\cdot)$ and $f_j(\cdot)$ ar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a $N(0, \sigma^2)$ random variable respectively. we can write the log likelihood function as

$$\log L = \sum_s \log(1 - F_j) - \frac{PRF_j}{2} \log \sigma^2 - \sum_r \frac{1}{2\sigma^2} (PRF_j - X_j\beta)^2$$

The first order conditions for maximizing the log L with respect to

β and σ^2 are:

$$\frac{d \log L}{d \beta} = 0 \text{ and } \frac{d \log L}{d \sigma^2} = 0$$

From the above equations, σ^2 can be obtained as a function of β. Those equations are nonlinear in parmenters and hence must be solved iteratively. Given σ^2, the Newon-Raphson method can be applied to find unknown coefficients β.

3. Data and Data Sour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the 1905~1915 period[13] and were deriv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Moody's *Manuals*(1905~1915) and *The Truth About the Trusts*(1904), and *The Census of Manufactures*(1905, 1915). Moody published his *Truth About the Trusts*(1904) as a study on results of the first merger movement. Since then,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s a primary source even though there have been criticisms.[14] According to Moody, 318 industrial mergers formed prior to 1904, involving over $ 7 billion in securities issues and 5,288 independent manufacturing plants disappeared by merger between 1880 and 1904. Among the 318, Moody examined 92 larger mergers in more detail and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competitive advantages-patents, trade marks, raw-material supplies, tariffs, market shares that may

13) The data were not extened beyond 1915 to avoid the potential distortions caused by World War I.

14) See Markham(1955), pp. 158~162, Moody's sources seem to be based on contemporary journals, especially *Commercial and Financial Chronicle*.

have affect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binations.

Criticizing that Moody included a large number of concerns only by "a fantastic stretching of the terms," Livermore included in his study only mergers that gave rise to firms with sufficient power to influence their respective markets. He omitted mergers that at the outset could clearly be recognized as non-monopolistic, while Moody's list included all mergers that had over $ 1 million in capital.

Another criticism of Moody's data is concerned with percentages of market share which Moody calculated for 92 consolidated firms. Moody's percentages of market share seem to be not reliable for this study because classification by industry was not undertaken. Lamoreaux (1985, pp. 2~4) pointed out that Moody's own sources relied heavily on the statements of promoters and Moody's estimates were exaggerated. Lamoreaux checked Moody's findings against other sources whenever possible(mainly secondary sources). The way Lamoreaux did this was to classify market share into three broad numerical categories: below 40%, between 40% and 70% and above 70%. Lamoreaux also did this without defining the extent of market. In spite of the criticisms Moody's data have been recognized as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percentage of market share reported by Moody is not used, because Moody's implicit definition of industry is different from the size of industry which is defined by the *Census of Manufactures*. The alternative way is to use Livermore's classification through dummy variable.

With consideration of Livermore's criticism of Moody's list, consolidated firms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Moody's. Thirteen

mergers from the Moody list were eliminated because they were formed prior to 1887, the beginning year of the first merger movement or were foreign corporations. 38 mergers were dropped from the list because they were local and so small that they obviously obtained no greater market influence through consolidations. Thus this study starts with 267 consolidated firms which were formed through between 1887 and 1904. Firms for which complete information made classification by success and failure impossilble were eliminated from the sample firms. Non-manufacturing firms and those for which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products were also dropped. The number of observations for each model is given in Table 3.

〈Table 3〉 Number of Consolidated Firms for Probit and Tobit Regression Model.

Probit Model		Tobit Model	
Successful Firms	135	Successful Firms	82
Failed Firm	93	Failed Firms	93
Total	228	Total	175

Source : John Moody, *The Truth About the Truth*, (Moody Publishing Co., 1904) and Moody's *Manuals of Industrial Securities*, 1905~1915.

The reason for differences in numbers of successful firms in both models is that even though consolidated firms were successful, their profit rates were not reported. Thus, these firms were eliminated in the Tobit regression model.

The *Census of Manufactures* (1905) provides necessary data to measure industry variables. The 4-digit SIC code of 1967 is used for each industry becaues SIC codes were not given to the 1905 *Census of Manufactures*.

The consolidated firms are classified into four-digit groups in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1967. Data on structural variables are collected at the industry level from the *Census of Manufactures*, and data on firms' strategic variables at the firm level from Moody's *Manuals* and *Truth About the Trusts*. Thus, the empirical model contains firm data and industry data in the same equation.

Ⅳ. The Empirical Results and its Interpretation

The estimated coefficients in a Tobit model must be interpreted with care. MacDonald and Moffitt(1980) explored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estimated Tobit coefficients. Specifically, the change in a firm's profit rate(PRF) associated with a change in a given independent variable, X_i, is

$$\beta_i = \frac{d\,PRF}{d\,X_i} = F(z)\,\frac{d\,E(PRF)}{d\,X_i} + E(PRF)\,\frac{d\,F(z)}{d\,X_i}$$

where $Z = X_i\beta/\sigma^2$(the Tobit index), $F(z)$ is the cumulativ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and E(PRF) is the expected value of the dependent variable PRF, given that PRF>0. Thus, the total change in PRF associated with a change in an independent variable can be disaggregated into two parts: first, the change in PRF for those above the limit(PRF>0) weight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above the limit and second, the change in probability of having PRF>0, weighted by the expected value of PRF given that PRF>0. These valuse, of course, depend upon the Tobit procedure as well as the valu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X. Interpreti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e Tobit procedure is somewhat complicated because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equal to magnitude of the change in PRF associated with an incremental change in any independent variable.

Instead, the total effect on PRF from an incremental change in on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is given by $F(z) \cdot \beta_i$ where β_i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ith independent variable. When evaluated at the mean value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F(z) = 0.437$, which indicates that the total effect of a change in an independent variable on PRF is given by 43.7 percent of the coefficients reported in Table 4.

For the Tobit and probit model, eight independent variables[15] were regressed on dependent variable(PRF) which represents zero or positive profit rate of consolidated firms and on the dummy dependent variable (SF) reflecting firm's success and failure.

The coefficients on the degree of vertical integration of industry(VIS) proved to be insignificant in both models with the positive sign in the probit and the negative sign in the Tobit. The insignificance of VIS might reflect a bised measurement of VIS by value-added ratio(Adelman, 1955). The estimation also indicates that economies of scale(MES) w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determinant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as t-values indicate the 99% significance in both Tobit and probit models.

The variable PD(Product differentiation) is also highly signifi-

15) The multiplant variable(MP) was deleted in the probit and Tobit model becaus the proxy was not reliable and results were not improved.

cant at .01 level in both models with expected signs. The significance of the PD variable indicates that consolidated firms that engaged in a strategy of product differentiation tended to be successful and obtained significantly higher profit rates. In addition, this finding confirms many previous findings that product differention leads to entry barriers and then to profitability.

The negative sign of the coefficient of the industry growth rate(GR) variable in the Tobit model was consistent with the Bain and Caves argument(Caves, 1984). That is, a high growth rate in an industry is expected to lower barriers to entry and then to reduce profit rates. The calculated t-values in the both model, howev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percent confidence level. The GR variable proved to be an insignificant factor in affecting a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e capital requirements variable(K) had a positive sign of the coefficients, and the t-ratio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odels. This insignificance is interpreted as follows. First, capital requirements cannot present a barrier to entry as Stigler (Demsetz, 1982, pp. 47~48) argued. Secondly, the variable K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variable VIS(the coefficient is −0.43 at .05 level), so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might be not correct. Third, the insignificance of capital requirements as a barrier to entry may be attributed to overcapitalization of consolidated firms at the turn of the century. Firms issued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in excess of the value of the firms' assets.[16] The large

16) In his study, of fourteen large consolidations, Dewing(1914, p. 541) found that on the average actual tangible property without goodwill accounted for only 40 percent of the par value of the total issued securities.

capitalization by stock-watering, in fact, does not reflect the large capital requirements of a barrier to entry. The Census data used in the regression may have been affected by overcapitalization that accompanied the consolidations. Firms were requested to report the value of land, buildings, machinery, etc., as distinct from their capitalization. All the items of fixed and live capital might be taken at the amounts carried on the books. In the case of overcapitalization. it happens that an arbitrary value is assigned to the assets of the firm in order to balance its securities, and this arbitrary value was likely to be reported to the Census Bureau rather than the actual market value. In view of this, the figures for capital did not show the actual amount of the capital invested in manufacturing firms. Thus, given that inflation of the book value of assets, it is not surprising that capital requirements(k) was not a significant determinant for the performance of consolidated firms during 1905~1915.

Those three variables, PAT(patents), TA(tariffs) and IMS (initial market share) seemed very sensitive to the model specification. In the probit model TA was significant at .05 level, and PAT and IMS were not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the Tobit IMS and PAT were significant with expected signs at .01 and .5 levels while TA was not. However, as Tobin(1958) points out, the Tobit model uses a given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than the probit model.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that is, the weighted R^2 (0.26) of the Tobit model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probit(0.13). Thus the Tobit model, which combines the properties of the probit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seems more appropriate for estimation of the model.

Assuming that the Tobit results are more appropriate, the significance of IMS indicates that when firms consolidation resulted in large matket share, their success was highly probable. This results in an interesting interpretation. The result dose not support Livermore's findings that market control variable did not affect consolidated firm's success or failure.[17]

〈Table 4〉 Tobit and Probit Regression Results.

Independent Variables	Tobit Model Coefficient	Tobit Model T-Ratio	Probit Model Coefficient	Probit Model T-Ratio
VIS	0.23	−0.39	0.26	0.46
MES	9.74	3.74**	8.70	2.94***
K	0.14	0.93	0.08	0.52
IMS	0.87	3.86***	−0.16	−0.93
PD	0.77	2.96***	0.93	2.66**
PAT	0.53	2.16***	0.08	0.45
GR	−0.11	−0.56	0.38	1.38
TA	0.11	0.58	0.73	2.22**
CONSTANT	−1.15	−3.43***	−0.41	1.36
d.w. : 2.13, R^2 : 0.26			d.w. : 1.97, R^2 : 0.13	
Tobit analysis, limit=0			228 Total observations	
93 Limit observations			135 Observations at 1	
82 Non-limit observations.			93 Observationsd at 0	

** 5 percent level of significance *** 1 percent

17) Livermore(1935) divided consolidated firms into two main groups: first those which influence the market, and second, those which did not, He found that the number of success and failure firms are not different in both groups. Thus, by the simple comparison of numbers between two groups he concluded that the market share variable was not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firm's success or failure.

V. Summary and Conclusion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velope an empirical model in order to examine which factors might affect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during 1905~1915. In turning to the variables of primary interest, economies of scale (MES) and product differentiation (PD) proved to be significant determinants to the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e result seems stable, for MES and PD were significant at 1 percent confidence level in all the Tobit, probit models.

First, from the statistical results, we may conclude that consolidated firms tended to be more successful when the minimum efficient scale of industry in which they were operating was larger. This finding substantially supported Chandler's and Porter's argument, that is, "big buissiness were much more likely to succeed if they were in industries which achieved genuine economies of scale." (Porter, 1973, p. 81) Consolidated firms in industries that did not realize economies of scale could not control the potential competition. The appearance of potential competitors was main cause of their failure as in the cases of National Cordage and U. S. Leather.

Secondly,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duct dirrerentiation (PD) would be another major determinant to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is finding also supported the argument of Livermore, Chandler, Porter and Lamoreaux that product differentiation by advertising and brand names was a strategy for consolidated firms' success. We may conclude that even though the consoli-

dated firms were operating in industries where structural barriers to entry were not substantial, the firms would be successful by taking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y designed to erect artificial barriers to entry. This statistical result of product differentiation (PD) was consistent with other empirical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Comanor-Wilson(1967), Deutsch(1984), and M. Porter (1974)].

Third,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vertical integration (VIS), capital requirements (K) and growth rate (GR) on the level of industry proved to be insignificant determinants to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The insignificance of capital requirements (K) contradicts many previous findings, which showe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requirements barrier and profitability [Comanor-Wilson(1967), Caves *et al.* (1984) and M. Porter(1974)]. The insignificance of the growth rate of industry seemed to b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in which growth rate proved to be insignificant factor of profitability.

Patents were expected to be an important means of restricting competition and obtaining high and steady profits by protecting products of consolidated firms. Tariff protection was also expected to affect profit rates of consolidated firms. But the regression result shows that patents strategy (PAT) and tariff protection (TA) proved to be unstable deteminants due to their sensitivity to the model specification. Patent (PAT) was significant in Tobit but not in probit.

Tariffs(TA) proved to be significant in probit model but not in Tobit and OLS regressions. Caves et al.(1984) also found PAT and

TA insignificant variables for dominant firms' profit rates during 1905~1915.

The insignificance of PAT may come from the fact that the growth of systematic research and development to develop new products began in the 1920's. Before that, R & D for preemptive patents was not developed and thus only the possession of patents did not seem to be a good proxy of preemptive patent strategy. One explanation of the insignificance of tariffs (TA) is that some industries, such as steel, cotton, and paper, are largely independent of the tariff. The cost of production of those industries was in the United States quite as low as in foreign countries owing to the economies of production on a very large scale or to the closer proximity of domestic firms to the sources of supply for the raw material of manufacture as in the case of the cotton manufacture. Thus the effect of tariff protection on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did not seem to be consistent. It has been recognized that some variables such as both tariffs and patents may have been endogeneously determined. That is, those variables themselves can be linked to the market structure. The development of adequate models to explain the simultaneity requires further work.

Generally,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ed the suggestion that structural and artificial barriers to entry affected the consolidated firms' performance during 1905~1915. In particular, we may conclude that structural barriers to entry by economies of scale protected consolidated firms from the potential competition and allowed success. The consolidated firms operating in industries with substantial barriers and taking strategic behavior were more successful.

References

Adelman, M. A.(1959), "Concept and Statistical Measurement of Vertical Integration," *Business Concentration and Price Policy*, pp. 281~322,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memiya, T.(1973), "Regression Analysis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Truncated Normal," *Econometrica*, 41, pp. 997~1016.

Bittlingmayer, George(1985), "Did Antitrust Policy Cause the Great Mergerwav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8, pp. 77~118.

Caves, Richard E. et al.(1984), "The Decline of Dominant Firms, 1905~1929,"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pp. 523~546.

Chandler, Alfred D. Jr. (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ss.: Belkap Press, 1977.

Clark, Victor S.(1929), *History of Manufactur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cGraw-Hill.

Comanor W. S. and Wilson, T. A.(1967), "Advertising,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pp. 423~40.

Demsetz, Harold(1982), "Barriers to E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72, 1982, pp. 47~57.

Deutsch, Larry L.(1984), "Entry and The Extent of Multiplant Oper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2, pp. 477~487.

Dewing, Arthur S.(1914), *Corporate Promotions and Reorganiz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aulkner, Harold U.(1951), *The Decline of Laissez Faire 1897~1917*, Volume VII, Th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Rinehart and Company, Inc.

Keysen, Carl(1956), *United States vs. United Shoe Machinery Corporation: An Economic Analysis of an Anti-Trust Ca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idler, Harry W.(1931), *Concentration of Control in American Industry*, New York: Crowell.

Lamoreaux, Naomi R.(1985), *The Great Merger Movement in American Business, 1895~190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vermore Shaw(1935), "The Success of Industrial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0, pp. 68~95.

Markham, Jesse W.(1955), "Survey of the Evidence and Finding on Mergers," *Business Concentration and Public policy*, pp. 141~182.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oody, John(1904), *The Truth About Trusts: A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American Trust Movement*, New York: Moody Publishing Co.

_____, *Manuals of Industrial Securities*,(1905~1915).

Nelson, Ralph L.(1959), *Merger Movements in American Industry: 1895~195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eneral Series No. 6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rter. Glenn(1973), *The Rise of Big Business, 1860~1910*,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Porter Michael E.(1974), "Consumer Behavior, Retailer Power and Market Performance in Consumer Goods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pp. 419~432.

Tobin J.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26, pp. 24~36.

U. S. Bereau of the Budget,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Manual*,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U. S. Bureau of the Census, *The Census of Manufactures*,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5, 1909, 1915.

U. S.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White Kenneth J. *Shazam: An Econometrics Computer Program*, Version 4.6,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4.

Appendix 1: Discussion of Variables and their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Data Sources
PRF: The dependent variable indicating firm's success or failure	net earnings(or net income) after tax and charges for depreciation to equity(Livermore, 1935, p. 79)	B
VIS: Vertical Integration	Ratio of value added to shipment(Adelman, 1959)	A
MES: Economies of scale	Average plant size among the largest plants accounting for 50 percent of industry value of products(Comanor and Wilson, 1967)	A
K: Capital requirements	Multiplication of MES by industry fixed capital(Comanor and Wilson, 1967)	A
MP: Multiplant operation	Firm's number of plant divided by average plant number in industry(Deutsch, 1984)	A, B
PD: Product differentiation	Dummy variable indicating brandnames, trademarks, ect.	B, C
PAT: Preemptive patenting	Dummy variable indicating control of significant patents	B, C
TA: Tariff protection	Dummy variable indicating substantial tariff protection	B, C
GR: Growth rate of industry output	The ratio of 1915 industry output to 1905 industry output	A
IMS: Initial market share	Dummy variable indicating market power	C, D

Data Sources

A: *Census of Manufactures, 1905, 1915.*

B: Moody's *Manuals of Industrial Securities, 1905~1915.*

C: Moody's *The Truth About The Trusts(1904)*

D: Livermore's classification(Livermore, 1935)

〈국문요약〉

합병기업성과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1905~1915)

미국의 제1차 企業併合運動(1890~1905) 기간에 전개된 대규모적인 기업합병은 미국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경쟁적 구조에서 과점적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병기업 가운데 약 절반의 합병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존속된 반면, 다른 절반의 합병기업들은 다시 다른 기업에 흡수 병합되거나 파산하는 등 失敗企業으로 끝이 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기업병합운동이 끝난 이후 약 10년간에 걸쳐 합병기업의 成果를 결정했던 미시경제적 여러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합병기업들의 事例硏究를 통해서 합병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산업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구조적 進入障壁과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을 저지하는 기존기업의 전략적 진입장벽들이 중요한 요인들로서 지적되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과 합병기업의 성과와의 因果關係를 설명하는 계량분석모형으로 Tobit 모형을 제시하였다. 계량분석에서는 175개의 합병기업과 89개의 제조산업의 통계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출처는 *Census of Manufactures*(1905, 1909, 1914), Moody's *Truth about the Trust*(1904)와 *Manuals of Industrial Securities*(1905~1915)이다.

實證分析의 結果는 1905~1915년 기간에 합병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산업의 구조적 요인과 기업의 전략적 요인이 모두 주요 변수로서 작용하였으며, 특히 規模의 經濟가 크게 존재하는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합병기업은 더 성공적이었으며 또한 상품차별화 전략을 취한 합병기업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經營史學會 任員名單

職 責	姓 名	所屬大學校 및 學科	職 場	自 宅
顧 問	김병하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053-580-5402	053-256-5781
	황명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02-709-2130	02-543-7561
會 長	김광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02-820-0275	02-599-8459
副 會 長	박재륵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0653-50-5217	0653-856-1188
	김성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3	02-568-0645
監 事	박광서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0418-549-1169	0343-45-6717
常任理事	고승희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02-709-2530	02-567-5986
	김도경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02-913-2001	02-446-5538
	안춘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02-290-1046	02-452-8580
	이승옥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02-709-2515	02-542-9594
	최태호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02-910-4523	02-387-1833
	이한구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0331-31-8310	02-643-7007
	김신용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0431-51-8127	02-954-4073
理 事	강계삼	서원대학교 상업교육학과	0431-62-8813	042-482-3641
	김문관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064-54-2114	064-43-5474
	김준헌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053-810-2751	053-623-1020
	민경환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02-709-2170	02-448-8638
	서길수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02-919-0411	02-646-5413
	설봉식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02-236-0091	02-593-5093
	이정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053-950-5420	053-423-2527
	이해주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051-510-2542	051-56-2068
	권병탁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053-810-2714	053-624-4561
	황남길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02-709-2516	02-593-9639
	배주한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0391-49-7346	02-821-6849
	양재선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0661-50-3496	0661-745-2506
	이건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02-360-2779	02-568-2842
	이상옥	대신대학교 경영학과	0343-49-5271	0343-41-5827
	김 신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741-5701교2321	02-443-0390
	유병주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042-821-5539	042-482-2655
	이성혜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042-220-6247	042-226-1659
	천명섭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032-860-7734	02-543-5894
	이진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2-920-1176	02-514-6400

職 責	姓 名	所屬大學校 및 學科	職 場	自 宅
理 事	김성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0431-61-2218	0331-291-8087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042-629-7606	042-623-1853
	조병찬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02-260-3326	02-902-6918
	이훈섭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0331-40-7412	02-802-1231
	김광철	동아대학교 사학과	051-200-7070	0551-84-9757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0331-281-5500	0331-283-9995
	조영건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0551-49-2409	0551-82-4536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0591-751-5749	0591-43-8037
	홍성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02-361-2487	02-338-4689
	김정식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062-230-6825	062-671-1302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02-233-4251~7	0342-701-0245
	서정익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0418-40-5232	02-831-3388
	이원우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02-820-0563	02-552-4546
總務幹事	황준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02-820-0558	032-671-0654

經營史學會 會員名單

姓　名	所　　屬	電　話
강 경 훈(姜璟薰)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450－2622
강 민 주(姜玟株)	중아대학교 경영학과	813－8069
강 병 창(康秉昌)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강 원 대학교 도서관	강원대학교	53－9000
강 용 수(姜龍洙)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83－2151
강 인 호(姜仁鎬)	경북실업전문대학 관광학과	82－7001
강 주 훈(姜周薰)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49－7349
강 태 경(姜泰景)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403
고 승 희(高承禧)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709－2530
고 시 천(高時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450－3635
고 재 경(高在經)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378
공 병 호(孔柄湖)	한국경제연구원	786－4928
공 신 영(孔信永)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83－2151
곽 동 성(郭東星)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14－1731
구 정 모(具正謨)	경남대학교 박사과정 경영학과	423－1234
권 병 탁(權丙卓)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권 상 장(權相璋)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580－5379
권 영 호(權寧鎬)	동광스텐레스 사장	22－5644
권 호 기(權琥基)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권 혁 소(權赫紹)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 경 태(金敬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545－7292
김 경 호(金璟浩)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김　광(金　光)	국사편찬위원회	752－2982
김 광 수(金光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820－0275
김 광 윤(金光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219－2716
김 광 철(金光哲)	창원대학교 사학과	83－2151
김 기 선(金基善)	쌍용 대구지점	67－5204
김 대 우(金大羽)	용인대학교 사무처장	35－6971
김 대 원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04－0107
김 도 경(金禱經)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931－2001
김 동 균(金東鈞)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39
김 동 희(金東會)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姓 名	所 屬	電 話
김 민 채(金民彩)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 병 곤(金炳坤)	정주물산(주) 대표이사	547－4739
김 병 태(金炳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843－5920
김 병 하(金柄夏)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580－5402
김 상 규(金相圭)	경원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750－5763
김 상 무(金相武)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626－1321
김 상 호(金尙鎬)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3－2151
김 순 곤(金舜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762－0748
김 선 정(金善政)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김 성 규(金盛奎)	삼우공업주식회사 업무과장	54－3159
김 성 수(金聖壽)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3
김 식 현(金植鉉)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80－6900
김 신 웅(金信雄)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1－8127
김 양 화(金洋和)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56－0171
김 영 건(金榮建)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김 영 호(金永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김 옥 근(金玉根)	부산산업대학교 경제학과	622－5331
김 용 환(金容煥)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경영학과	862－0077
김 원 배(金元培)	경원전문대학 교양학과	750－5524
김 윤 상(金潤詳)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10－2738
김 응 식(金應植)	제주전문대학 관광학과	23－6113
김 인 환(金人煥)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67－8021
김 재 진(金載珍)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김 종 규(金鍾圭)	효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66－6374
김 종 현(金宗炫)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13－1106
김 종 호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51
김 준(金 埈)	동의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04－0171
김 준 헌(金峻憲)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김 중 식(金重植)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813－3811
김 진 병(金珍炳)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2
김 진 수(金鎭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김 진 탁(金鎭卓)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626－1321
김 창 남(金昌男)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김 창 의(金倉宜)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4
김 창 주(金昌柱)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814－2731

姓 名	所 屬	電 話
김 충 현(金忠鉉)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김 태 환(金台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김 한 규(金漢圭)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김 혜 수(金惠水)	강릉대학교 사학과(강사)	42－7001
김 호 언(金鎬彦)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김 홍 식(金鴻植)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김 효 동(金孝東)	중앙대학교 사학과	813－8069
나 경 수(羅慶洙)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955－5001
노 덕 률(盧德律)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노 직 수(盧直樹)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2－2151
노 택 환(盧宅煥)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노 형 진(盧炯晋)	경기대학교 경상대	43－5648
류 건 우(柳建佑)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류 기 덕(柳基惠)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3－9201
류 창 우(柳昌佑)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민 찬 식(閔燦植)	경원전문대학 경영학과	252－1103
박 광 순(朴光淳)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55－0011
박 광 서(朴光緖)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549－1169
박 기 동(朴起東)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박 동 국(朴東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박 동 수(朴東守)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 동 운(朴東雲)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498
박 명 광(朴明光)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박 명 호(朴明鎬)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0－2360
박 무 현(朴武鉉)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박 성 규(朴誠圭)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 성 봉(朴性鳳)	경희대학교 사학과	962－9800
박 승 준(朴勝俊)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90－2499
박 영 상(朴瀅祥)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박 영 철(朴英哲)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박 용 기(朴容基)	대신대학교 경영학과	49－5271
박 우 룡(朴佑龍)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박 인 태(朴寅泰)	효성여자대학교 경제학과	66－6374
박 일 근(朴一根)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박 은 희(朴恩會)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762－5021

姓 名	所 屬	電 話
박 재 록(朴載錄)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2－5217
박 정 윤(朴貞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 종 기(朴鍾基)	삼우공업주식회사 사장	553－2567
박 종 수(朴宗洙)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52－4331
박 종 신(朴鍾信)	청주대학교 무역학과	54－211
박 종 헌(朴鍾憲)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박 준 채(朴準埰)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851
박 현 재(朴炫哉)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배 성 현(裵聖鉉)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배 수 진(裵守鎭)	계명실업전문대학 경영학과	620－2733
배 연 수(裵然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배 주 한(裵注漢)	관동대학교 경제학과	49－7346
상 무 달(尙戊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서 길 수(徐吉洙)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919－0411
서 인 덕(徐麟德)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서 정 형(徐正衡)	경북개방대학교 경영학과	952－1661
서 청 석(徐靑錫)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962－9800
서 진 수(徐鎭洙)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281－5500
설 봉 식(薛鳳植)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236－0091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교 도서관	582－8805
성 태 현(成泰鉉)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45－5000
손 국 호(孫國鎬)	계명대학교 법학과	626－1321
손 일 선(孫一善)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503－4704
송 성 진(宋成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4
송 용 종(宋龍鍾)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66
송 희 영(宋喜永)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84－5920
신 규 성(愼奎晟)	부산동아대학교 경제학과	242－0101
신 두 휴(申斗休)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41－6040
신 수 철(申壽澈)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신 용 수(申容守)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550－3376
신 용 휘(申容輝)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862－0077
신 유 근(愼侑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77－0101
신 재 정(申宰貞)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신 현 종(申鉉鍾)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심 정 택(沈靖擇)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2－2151

姓 名	所 屬	電 話
안 병 직(安秉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71
안 윤 태(安潤泰)	영남대학교 상업교육학과	82－5111
안 춘 식(安春植)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290－1046
안 태 백(安泰佰)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양 동 휴(梁東烋)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51~8
양 재 선(梁在鮮)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50－3496
여 동 길(呂東吉)	계명대학교 상업교육학과	626－1321
여 진 구(呂珍九)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67－2081
오 두 환(吳斗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82－1321
오 세 창(吳世昌)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오 흥 수(吳興秀)	청주교육대학교	4－8151
우 갑 정(禹甲禎)	경북전문대학	82－7001
우 성 대(禹成大)	경북공고 기계과	626－1321
우 영 환(禹英煥)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550－3372
유 봉 로(兪鵬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92－0103
유 원 동(劉元東)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713－9390
야나기마찌(柳町 功)	일본 나고야상과대학교 경영학과	(05617)3－2111
유 진 채(兪鎭采)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61－2591
유 한 우(柳漢佑)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유 호 근(兪好根)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윤 기 복(尹基福)	산업경제연구원 경영연구실	546－3984
윤 재 권(尹在權)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954－6001
이 경 희(李慶喜)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3－2151
이 계 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232－8151
이 광 종(李光鍾)	신흥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870－3491
이 광 주(李光周)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09－2522
이 대 근(李大根)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582－8805
이 동 우(李東雨)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914－3141
이 덕 훈(李惠薰)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629－7510
이 말 남(李末南)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 병 찬(李炳贊)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40－5271
이 상 옥(李相玉)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713－9240
이 상 조(李相祚)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 승 엽(李承燁)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6－1321
이 승 욱(李承旭)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709－2515

姓 名	所 屬	電 話
이 영 훈(李榮勳)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582－8805
이 영 훈(李榮勳)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61－2114
이 용 욱(李容旭)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 원 달(李元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 원 우(李元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820－0563
이 윤 복(李允馥)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50－6114
이 인 기(李仁書)	서점경영	914－4849
이 재 율(李在律)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이 정 규(李正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962－9800
이 정 도(李正道)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955－5001
이 종 오(李鐘旿)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626－1321
이 종 훈(李鍾燻)	중앙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813－3811
이 천 우(李天雨)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이 철 희(李喆熙)	계명대학교 체육학과	626－1321
이 춘 삼(李春三)	청주대학교 무역학과	54－2111
이 필 우(李弼佑)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843－5920
이 한 구(李漢九)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31－8310
이 해 주(李海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56－0171
이 헌 창(李憲昶)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43－5648
이 호 철(李鎬澈)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955－5001
이 효 수(李孝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82－5111
이 효 영(李孝永)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이 희 경(李熙慶)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50－6142
이 희 대(李熙大)	대구한의과대학교	83－0551
임 향 근(任香根)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50－6247
장 동 섭(張東燮)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55－0011
장 시 원(張矢遠)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743－8420
장 홍 석(張洪碩)	유풍출판사 대표이사	967－5351
전 경 태(全景泰)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전 기 호(戰基浩)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962－9800
전남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55－0011
전 철 환(全哲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822－0101
전 형(田 馨)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505
정 경 섭(鄭京燮)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
정 기 숙(鄭基淑)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姓 名	所 屬	電 話
정 덕 기(鄭德基)	충남대학교 사학과	822－0101
정 병 휴(丁炳烋)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877－4171
정 상 천(鄭相天)	공주사대 상업교육학과	52－2529
정 성 호(丁聖浩)	계명전문대학	626－1321
정 종 수(鄭鍾秀)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83－2151
정 초 시(鄭超時)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4－2111
정 해 동(丁海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813－8059
조 군 제(趙君濟)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83－2151
조 기 준(趙璣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52－2216
조 덕 구(趙德九)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305－1581
조 봉 진(遭峯震)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620－2388
조 상 국(趙相國)	효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66－6374
조 수 종(曺壽鍾)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61－2214
조 영 건(曺永建)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45－5000
조 영 호	아주대학교 경상대학	219－2714
조 인 석(趙仁錫)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82－1321
조 진 하(趙進夏)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962－9800
조 현 정(曺賢正)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주 종 환(朱宗桓)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67－8131
지 정 택(池禎擇)	아주대학교 경상대	219－2707
차 진 무(車珍武)	중앙공업(주) 대표이사	62－8031
채 종 찬(蔡鍾瓚)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626－1321
최 길 상(崔吉相)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72－8153
최 단 옥(催丹鈺)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760－8323
최 동 호(崔東湖)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82－5111
최 만 기(崔晩基)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최 명 규(崔明圭)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94－7004
최 명 주(崔明周)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626－1321
최 송 열(崔松烈)	계명대학교 상업교육학과	626－1321
최 영 곤(崔永坤)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626－1321
최 영 순(崔榮順)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강사)	359－0752
최 원 철(崔元喆)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23－6141
최 태 호(崔泰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910－4523
추 교 완(秋敎完)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82－2151
편 인 범(片仁範)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797－0581

姓　名	所　　屬	電　話
하 치 덕(河致德)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82－5111
한 한 수(韓漢洙)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741－5701(교)2314
허 수 열(許粹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822－0101
허　화(許　嶂)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56－0171
허 익 구(許益九)	포항전문대학 무역학과	2－8001
호리가즈오(堀和生)		일본 075－645－4008
황 완 성(黃完晟)	국민대학교 경제학과(강사)	388－0096
황 남 일(黃南逸)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709－2516
황 명 수(黃明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709－2130
황 성 규(凰聖圭)	중앙대학교 일본학과	813－8096
황 신 모(黃信模)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51－8132
황 하 현(黃夏鉉)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290－1021

經營史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學會는 經營史學會(이하 本 學會)라 한다.

第2條(所在地) 本 學會의 事務所는 大韓民國內에 둔다.

第3條(目的) 本 學會는 經營史에 관련된 學術硏究와 會員 相互間의 친목 도모를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 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經營史와 이에 관련된 硏究와 調査

(2) 會誌 및 硏究書籍의 刊行

(3) 硏究發表會 및 公開講座의 開催

(4) 本 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 關聯機關과 産業界와의 交流

(5) 創業大賞 選定에 관한 事業

(6) 其他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關聯事業

第5條(機構) 本 學會는 前條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두며 各 委員會의 設置內規는 따로 定한다.

(1) 編輯委員會

(2) 創業大賞審査委員會

(3) 企業史硏究委員會

(4) 企業家思想硏究委員會

(5) 組織委員會

(6) 弘報委員會

第2章 會 員

第6條(會員의 構成) 本 學會의 會員은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로 하고, 이를 區分하여 (1) 正會員 (2) 準會員 (3) 特別會員 (4) 機關會員으로 한다.

第7條(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大學 또는 專門大學의 專任講師 이상의 者와 硏究機關의 硏究員으로 한다. 準會員은 經營史에 관심을 가

진 大學院의 碩士過程의 在學生 및 그에 준하는 者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機關會員은 本 學會의 事業에 계속하여 贊助나 出捐을 하는 機關(團體포함)으로 하고 그 加入은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8條(會員의 權利·義務) 本 學會의 會員은 소정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本 學會의 諸般事業에 자유롭게 參加할 수 있다.

第9條(會員의 資格喪失) ① 本 學會의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會員自身의 脫退意思를 表現했을 때

(2) 本 學會의 名譽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② 前項의 (2)에 해당하는 會員은 總會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10條(任員의 構成) ① 本 學會의 任員은 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理事 및 監事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會長 1人, 副會長 약간명, 常任理事 약간명, 理事 20명 內外로 구성한다.

③ 監事는 2人으로 한다.

④ 本 學會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社會 各界의 人士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顧問 및 諮問委員으로 추대할 수 있다.

第11條(會長의 選出) 會長은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 또는 正會員 3분의 1이상의 推薦을 받은 者로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出한다.

第12條(監事 및 理事의 選出) ① 監事는 總會에서 선출한다.

② 副會長, 常任理事 및 理事는 會長의 推薦에 의하며 總會에서 認准한다.

第13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 重任할 수 없다.

第14條(任員의 權限) ①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常任理事는 會長의 主宰下에 本 學會의 業務를 協議한다.

④ 監事는 會務를 監事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理事會의 召集

을 요구할 수 있으며 理事會에서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⑤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本 學會의 發展을 위한 諮問을 할 수 있다.

第 15條(事務局 設置) ① 本 學會에 事務局을 두며, 會長은 常任理事 中에서 幹事를 任命한다.

② 會長은 필요할 경우, 幹事 및에 實務를 擔當할 幹事補를 任命할 수 있다.

第4章 會 義

第 16條(總會) 本 學會의 總會는 定期總會 외 臨時總會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年1回 정기적으로 會長이 소집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會員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第 17條(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改正

(2) 會長 및 監事의 選任

(3)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

(5) 豫算 및 決算

(6) 기타 主要事項

第 18條(理事會)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 運營에 관한 事項

(3) 豫算書 및 決算書 作成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5) 會則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6) 기타 主要事項

第 19條(定足數) ① 모든 會議는 會員 多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決議한다.

② 不得已한 사유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會員은 議決權을 會長 및 出席委員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 20條(會議錄) 會議事項에 관하여는 반드시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5章 財 政

第21條(財政) ① 本 學會의 財政은 회원이 納付하는 會費와 寄附金, 補助金, 出捐金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2條(會計年度)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1條 ①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른다.

② 本 學會의 總會나 理事會에서 特別한 決議가 없는 한, 通常慣例에 따른다.

第2條(施行) 本 會則은 1986年 2月 22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 會則은 199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은 施行當時의 任員의 任期는 1993年 2月 28日까지로 한다.

經營史學會 論文集 編輯委員會 設置 內規

第1條 이 規程은 經營史學會의 學術硏究誌인 「經營史學」의 發刊을 위한 編輯委員會의 設置, 運營 및 그 編輯方針에 의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 學會의 論文集 發刊을 위하여 「經營史學」 發刊 編輯委員會를 설치 운영한다.

第3條 編輯委員會의 委員은 本 學會의 論文集 發刊時마다 會長의 推薦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第4條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執行한다.

(1) 論文集 發刊計劃의 樹立 및 施行

(2) 提出된 論文의 揭載與否 審議

(3) 기타 論文集 發刊 編輯에 관한 事項

第5條 編輯委員會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는 本 學會의 豫算에서 執行한다.

第6條 投稿者는 原則的으로 經營史學會의 會員에 限한다. 다만, 會員과 共同 硏究者 및 招請된 寄稿者는 例外로 한다.

第7條 揭載된 論文의 責任은 執筆者가 진다.

第8條 硏究論文은 다른 刊行物에 發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第9條 提出된 論文은 編輯委員會에서 위촉하는 審査委員에 의한 審査가 이루어지고 審査結果에 따라 編輯委員會에서 그 揭載與否를 決定하고 이를 執筆者에게 通報한다.

第10條 編輯委員會는 揭載될 論文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을 執筆者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11條 揭載될 論文의 審査基準은 :

(1) 硏究主題의 重要性

(2) 硏究方法의 妥當性

(3) 內容의 創意性 및 檢證性

(4) 理論的, 實務的 및 敎育的 寄與度

(5) 其他 編輯技術上의 要件에 適合與否 등

第12條 論文集 內容은 硏究論文, 硏究노트, 書評 및 通信欄으로 구분될 수 있다.

第 13 條 揭載되는 論文의 體制에 관한 事項은 編輯委員會에서 정한다.

第 14 條 「經營史學」에 揭載된 論文의 版權은 經營史學會가 所有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

이 규정은 1991年년 9月 1日부터 시행한다.